

발 간 사

언론보도로 인한 법적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언론중재위원회가 2001년 한해 동안 처리했던 중재신청사건이 총 659건으로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고, 법원에 제기되는 언론소송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다수 수용자들에게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계에 종사하는 언론인들 또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위축감으로 인해 언론이 갖는 사회의 비판, 감시라는 공적 임무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도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화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용자 입장에서라도 보도에 의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최종해결수단인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간 교섭이나 언론중재절차 등을 통한 화해를 모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건전하고 책임있는 언론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발행해 오고 있으며, 이제 제9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종 심급 판결을 기준으로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반론보도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각종 언론관계 판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법적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침으로서 수용자, 언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2002년 6 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 영 식

차 례

I. 반론보도청구사례

1. 피신청인은 음성변조와 모자이크처리로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러가지 방송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들과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 외 17인 대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합1414) 13
2. 정부의 언론장악의도에 따라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시됐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청구는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다
국정홍보처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0823) 30
3. 기사에서 지칭하는 사학재단이 신청인이라고 하여도 보도내용만으로는
학교법인인 신청인 자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학교법인 청강학원 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카합518) 36
4. '우리나라 의사들' 이란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 개개인 또는 대한의사협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대 한국방송공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합1884)	42
5. 해당기사에서 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론의 대상과 그에 대한 주장의 요지가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그와 별도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외 3인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2496)	47
6.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 대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외 7인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6806)	56

II. 손해배상청구사례

1. 이 사건 사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이 외 11인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정 (서울고등법원 2000나9859)	96
2. 경찰 조사단계에서의 혐의사실을 두고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단정정보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조 대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외 5인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64132)	107

3. 사디즘적 병리현상이라는 표현은 특정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이 대 주식회사 월간 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4917, 서울고등법원 2000나18822) 118

4. 원고가 개설한 무료혈액센터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단속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1104) 143

5. 개인의 진술을 수많은 독자에게 확대 배포하는 전파자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와는 별도의 명예훼손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백 대 최 (서울고등법원 2000나11081) 154

6. '대전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대전지역 검사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다
김 외 20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5683) 167

7.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인 한
확정적인 사실보도와 더불어 언론기관의 속성상 당연히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엄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1563) 189

8. 보도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자와 언론사는 필요한 취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조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9가합2207, 서울고등법원 2000나25745) 200

9. 언론기관의 보도가 그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을 비방 내지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라고 볼 수 없다

임 대 주식회사 서울방송 외 2인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7982) 222

10. 사회적 범죄의 원인이 교회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교회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11180) 234

11.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일방적, 극단적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정당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 이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5인

(서울지방법원 97가합68721) 248

12. 이 사건 보도가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조 외 3인 대 한국방송공사,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1961) 264

13. 추가등락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최 , 유 대 로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01나8495) 278

14. 언론사들이 검사의 공식발표에 기하여 피의사실을 보도한 이상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건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 외 2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8인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68769) 284

15. 변호사인 원고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로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신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9514, 서울고등법원 2001나11989) 301

16.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언론보도라도 그 보도내용은 진실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신 , 윤 대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이십일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8399) 321

17. 피고 언론사들이 공개한 원고의 편지 및 사진들은 원고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와 관련된 것들로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박○○ 대 주식회사 학원사 외 2인(서울지방법원 2001가합25387) 331
18.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 8인 대 주식회사 한국논단 외 2인
〔서울고등법원 99나3282,3299(병합), 대법원 2000다37524, 2000다37531(병합)] 350

Ⅲ.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1.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문화방송(헌법재판소 2000헌바36) 378

Ⅳ. 기 타 사 례

1. 원고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자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른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대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43456) 387

2. 방송사 사정으로 통상의 방영시간과 달리 반론보도문이 방송되었더라도
판결이 정한 방송순서에 따라 방송하였다면 이는 판결주문의
적법한 이행이라 할 수 있다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이.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법원 2001다81450) 392

I .반론보도청구사례

**피신청인은 음성변조와 모자이크처리로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러가지 방송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들과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7. 26.자 판결 (2001카합1414)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001년 7월 26일 강남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소속 공무원 김 외 17인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강남구청을 언급하여 비리사실을 말하거나, 신청인 공무원들을 지명한 바 없고, 더군다나 신청인 공무원들에 대한 영상과 음성은 음성변조와 모자이크처리를 통하여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 공무원들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신청인 주장에 대해 “반론보도청구권이 갖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제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내부를

비추고,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이라는 자막을 표시한 상태에서 일부 신청인 공무원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내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에 대한 상납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유홍업소들의 소재지가 강남구청 관할 내인 청담동, 압구정동 등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관할구청이 불법영업을 묵인한다는 취지로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 앞부분에서는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16명 전원이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방송한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유홍업소 주인들로부터 상납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들이 신청인 공무원들이 속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위생과 공무원들 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과 이 사건 방송내용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 공무원들의 주장 자체를 인용반론해 준 바 있으므로 신청인 공무원들의 주장 내용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방송내용은 공무원들에 대한 유홍업소 주인들의 상납사실에 대한 피신청인측의 취재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신청인 공무원들측의 주장 전에 장시간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이 상납사실을 부인한다는 내용이 일부 방송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 공무원들이 반론보도청구를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충분히 반론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SBS가 2001년 5월 11일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불법영업의 비밀 - 상납’이라는 제하로 서울 강남의 유홍업소 등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도 영업정지기간 중에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고 윤락을 알선하는 등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고, 이 같은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데에는 유홍업소들이 경찰관과 구청직원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인 상납을 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 비호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신청인들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들은 2001년 6월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160)을 하였으나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1카합1414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1. 김

2. 서

3. 박
4. 고
5. 주
6. 최
7. 정
8. 임
9. 윤
10. 진
11. 박
12. 오
13. 임
14. 민
15. 박
16. 함
17. 이

신청인 1 내지 17 주소 서울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윤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대표이사 윤 세 영, 송 도 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 동 원, 조 승 우

변론종결 : 2001. 7. 12.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추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반론보도문 내용을 방송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게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신청 및 나머지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SBS-TV 「뉴스추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강남구청 위생과 공무원들, 상납비리 혐의없음'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뉴스보도와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매주 30,000,000원씩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신청인 강남구라고만 한다)는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자치단체이고, 나머지 신청인들(이하, 신청인 공무원들이라고 한다)은 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로서 현재 신청인 김 ○ ○ 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1계장, 신청인 주 ○ ○ 은 식품위생1계 소속 공무원들이고, 신청인 서 ○ ○ 은 식품위생2계장, 신청인 최 ○ ○ 은 식품위생2계 소속 공무원들이고, 신청인 박 ○ ○ 은 공중위생계장, 신청인 정 ○ ○ 은 공중위생계 소속 직원들이고, 신청인 고 ○ ○ 은 청소년대책반장이고, 피신청인은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뉴스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방송내용

피신청인은 2001. 5. 11.에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불법영업의 비밀 - 상납'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도 영업정지기간 중에 여성접대부를 고용하고 윤락을 알선하는 등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고, 위와 같은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데에는 유흥업소들이 경찰관과 구청직원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인

상납을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묵인, 비호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는데, 위 방송에서 신청인 공무원들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방송내용(이하, 이 사건 방송내용이라고 한다)과 같다.

2. 신청인 공무원들의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인용되는 부분

(1)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공무원들은 위 「뉴스추적」에서 공표된 이 사건 방송내용에 의하여 자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방송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위 방송내용에 대하여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반론보도문 내용을 방송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강남구청을 언급하여 비리사실을 말하거나, 신청인 공무원들을 지명한 바 없고, 더군다나 신청인 공무원들에 대한 영상과 음성은 음성변조와 모자이크처리를 통하여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 공무원들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방송법 제91조 제1항 소정의 반론보도청구권자로서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나, 반론보도청구권이 갖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내부를 비추고,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이라는 자막을 표시한 상태에서 일부 신청인 공무원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내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에 대한 상납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유흥업소들의 소재지가 강남구청 관할 내인 청담동, 압구정동

등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관찰구청이 불법영업을 묵인한다는 취지로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 앞부분에서는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16명 전원이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방송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유흥업소 주인들로부터의 상납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들이 신청인 공무원들이 속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과 이 사건 방송내용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 공무원들의 주장 자체를 인용 반론해 준 바 있으므로 신청인 공무원들의 주장 내용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에서 피신청인측 기자가 방송 도중 “강남구청 위생과에서는 업주의 상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금품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신청인 공무원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바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방송내용은 공무원들에 대한 유흥업소 주인들의 상납사실에 대한 피신청인측의 취재결과가 방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위와 같은 신청인 공무원들측의 주장 전에 장시간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이 상납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하여 위 신청인 공무원들측의 주장이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들리기 쉬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방송 중 신청인 공무원들이 상납사실을 부인한다는 내용이 일부 방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 공무원들이 반론보도청구를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충분히 반론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신청인은 또한, 신청인 공무원들이 청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론보도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방송법 제9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별지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각되는 부분

신청인 공무원들은 위 인용부분 이외에 별지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이 (1) 강남구청은 1995년부터 위생공무원의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구역담당제’를 폐지하고,

1999년부터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2001. 4.부터는 행정처분업소의 처분이행 여부 확인 및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한 일일점검을 민간전문업체에 맡기는 ‘위생업무 아웃소싱’ 제도를 실시하는 등 투명·공정하고, 신속·철저한 위해업소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민간업체의 불법업소 단속은 실효성이 없어 뇌물 수수의혹을 벗어나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채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도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고, (2) 피신청인은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16명 전원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으나, 위 직원들에게 주어졌던 혐의인 행정처분게시문의 업주교부행위 및 형사고발 미조치 등의 사유는 당초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당시에는 행정처분시에 반드시 형사고발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도 반론보도문에 포함되어야 하며, (3) 그밖에, 강남구 소재 사후관리 위생업소 7개소에 대한 단속결과, 1개 업소가 취재 당일에 영업을 시작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에서는 동업소가 계속 영업 중이었으며, 대다수 영업정지업소가 불법영업 중이라는 허위의 방송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이 단속공무원이 단속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함정취재를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하였다는 내용도 반론보도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1) 강남구청의 유흥업소 단속을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역담당제, 주민자율감시단 부분 등 대부분은 이 사건 방송의 사실적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고, ‘위생업무 아웃소싱’ 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방송에서 강남구청에서 실시 중인 위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평가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정책평가만으로 신청인 공무원들 개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에 대한 무혐의처분 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위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전원을 입건했지만, 처벌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취지로 방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의하여 피신청인 공무원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무혐의처분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불과한 위 부분 역시 반론보도문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 공무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3) 불법영업실태 부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함정취재 실패 부분에 관하여도, 이 부분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방송에서의 사실적 주장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

청인 공무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청인 강남구의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 강남구는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 강남구에 속한 압구정동, 청담동 등지의 유흥업소들에서 불법영업이 만연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상납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으로써 강남구 지역 전체가 음주와 율락 등 환락지역이며, 이는 뇌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심어주었고, 이에 의하여 신청인 강남구의 인격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 강남구에 속한 압구정동, 청담동 등지의 유흥업소들에서 불법영업이 만연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상납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보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신청인 강남구 자체의 명예 등이 침해되어 피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 공무원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 공무원들의 나머지 신청과 신청인 강남구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7. 26.

재판장 판사 손 윤 하

판사 최 병 립

판사 정 석 중

〈반론보도문〉

(1) 방송방법 : 중앙상단 화면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원 프로그램 「뉴스추적」의 통상표제(「뉴스추적」)와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원 프로그램의 자막과 같은 크기, 줄 간격, 글자간격의 자막으로 천천히 표시하고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보다 빠르지 않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반론보도문 내용 : SBS-TV는 2001. 5. 11. 「뉴스추적」에서 ‘불법영업의 비밀 - 상납’이라는 제목으로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이 유흥업소 상납비리에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인 김 외 16인은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론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위 김 외 16인은,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상납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적도 없고, 불법영업 업주를 비호하거나, 불법영업을 묵인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에도 불법영업 업주를 옹호하는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유흥업소의 위법현장을 직접 적발하기가 어려워 공무원의 위법업소 단속시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설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 외 16인의 반론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반론보도요구문〉

SBS-TV는 2001년 5월 11일 저녁 「뉴스추적」에서 ‘불법영업의 비밀 - 상납’이라는 제목으로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소속 현직 공무원들이 상납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및 강남구청 보건위생과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유흥업소가 식품위생법령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범위반 현상은 단지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인데도 SBS는 「뉴스추적」의 예고 방송에서는 ‘환락1번지 강남 - 그 뇌물커넥션’이라고, 본 방송의 타이틀에서는 ‘불법영업의 비밀 - 상납’이라고 방송함으로써 마치 강남구 지역 전체가 음주와 율락 등 환락지역이며, 또한 강남구만이 환락지역이라거나 또는 최소한 강남구가 가장 환락지역이며,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뇌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 주어 강남구민과 보건위생과 직원들의 명예와 강남구의 보건위생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강남구청은 1995년부터 위생공무원의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구역담당제’를 과감하게 폐지하였으며, 1999년 1월부터는 18,000여개에 달하는 위생업소를 단지 10여명의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관리·단속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어 주민 140명으로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강남구는 2001년 4월부터 생계위협 및 과도한 처분 등을 사유로 불법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행정처분업소의 처분이행 여부 확인 및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한 일일점검을 민간전문업체에 맡기는 '위생업무 아웃소싱' 제도를 실시하여, 아웃소싱업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법규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이와 함께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구 시건장치 확인, 통로적치물 제거 등과 청소년 관련 위반 사항을 중점 계도하여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한 1399번 신고전화를 가동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공무원과 용역업체가 동시에 현장 출장하여 확인 점검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3-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신속하고 철저한 위해업소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SBS는 강남구청이 연간 1억3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흥업소 단속업무를 민간 용역업체에 맡겼으나, 민간업체의 불법업소 단속은 실효성이 없어서 뇌물수수 의혹에서 벗어나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채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SBS는 2000년 7월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16명 전원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들은 당시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게시문의 업주교부행위 및 형사고발 미조치 등의 사유로 입건된 것뿐이며, 그러한 사유는 당초부터 형사처벌의 대상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2000년 1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8. 9. 2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시 형사고발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식품위생감시지침에 상습고질업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도록 한 것이 상습고질업소가 아닌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1999. 6. 16.자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관계법령, 감시지침, 위반업소 관련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처분관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회시를 보내오므로 강남구 보건위생과에서도 재량으로 행정처분시 형사고발의 병행 여부를 결정하여 왔는데, 그 후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2000. 6. 10.자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병행되도록 조치하라는 업무지시를 함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그 이후에는 고발조치를 반드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업주들로부터 상납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또는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영업 업주를 비호하거나, 불법영업을 묵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반면 구청 보건위생과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로 인해 마치 강남구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금품을 요구한 양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지난 5월 3일 강남구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SBS 취재진과 함께 강남구 소재 사후관리 위생업소 7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는데 행정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업소는 1군데뿐이었고, 동 업소 또한 취재 당일해야 영업을 시작(소위 재오픈)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BS는 동 업소가 10여 일전부터 계속 영업 중이었으며, 대다수의 영업정지업소가 불법영업 중이었다는 등의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당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영업장폐쇄)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4일 밤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단속직원들은 당초 단속대상 업소가 아닌 음식점 2곳에 대한 SBS 취재진의 단속요청을 받고 업소에 들어가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노래방 기기 또는 밴드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고 단지 룸에서 손님 옆에서 서빙하는 젊은 여자들이 앉아 있었을 뿐이어서 보건위생과 김 계장이 이러한 상황으로는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므로 엄격한 의미의 유흥형태 영업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무원의 위법업소 단속시의 어려운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도 SBS는 이 부분을 전후 설명없이 특정부분만 편집하여 방영함으로써 김 계장이 마치 업자와 유착하여 그를 비호하는 장면으로 오인되도록 편집하여 방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노래하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석작배' 사실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SBS의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지 손님방에 노래방기가 있는 정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도 SBS는 마치 김 계장이 업주를 두둔 내지 비호하고 있다고 잘못 보도하였습니다.

SBS는 청담동 소재 휴게음식점에 대해 몰래카메라를 휴대한 취재진을 미리 업소에 침투시켜 놓고 업자와 단속공무원을 상대로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는 지 등의 유착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함정취재를 하였으나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직원에 대해 아무런 혐의 점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직원에게 매월 50만원씩의 상납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상납을 받은 사실도 없고,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미리 단속정보를 받는 등 단속정보가 새는 일도 없으며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불법영업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업소주인들의 입장만을 두둔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 사건 방송내용〉

(프로그램 앞머리에서 방송내용 중 주요부분을 요약하면서) 성명불상자 : 구청은 오십, 경찰서는 오십, 파출소는 삼십, 이런식으로 계속 주죠.

성명불상자 : 돈을 얼마나 번다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세상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단란주점 사장 :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하고 의례적으로 와서 한달에 한 번씩 받으러 오죠.

기자 : 돈을 주면 뭐가 달라져요?

단란주점 사장 : 아무래도 단속을 피해서 가죠. 오늘은 위험하니까 장사를 하지 말라든지, 불을 끄고 하라든지.

현직 공무원(성명불상자) : 직원을 해 가지고 가서 하면, 뭐랄까 저,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봐주자 이렇게 하면은 봐주고 나면 그 자리에서 보통 4~50만원씩 줘요.

기자 : 그게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직 공무원(성명불상자) : 그게 아무리 해도 한 2-30군데 정도.

[사이에, 현직 경찰관과의 인터뷰 장면이 방송됨]

단란주점 주인(여성) : 단속이나 하고, 단속도 아닌 단속하고 돈 먹으로 오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저희 시민들이 아주 피가 빠져요. 피가. 생눈물이 나고 내가 왜 이 가게를 차렸나 한숨질 때가 아주 한 두번이 아니예요.

유 기자 : 방금 보신 화면은 유흥업소 업주와, 현직 구청공무원 그리고 경찰의 얘기입니다. 올해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 26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청의 위생과 직원 16명 전원이 경찰에 입건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 기자 : 당시 경찰은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

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전원을 입건했지만, 처벌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9곳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이들 업소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사이에, 압구정동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 여성접대부를 고용하고, 윤락알선 등의 불법영업을 하는 장면이 방송됨]

정 기자 : 그렇다면 다른 업소들은 어떨까? 취재진은 지난 1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았던 서울 청담동의 한 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간판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지만, 여전히 폐쇄된 업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불은 꺼져 있는데도, 업소에선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옵니다. 자정을 넘어서자 이 업소에서 나오는 젊은 여성들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10여 분쯤 뒤, 고급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여성들을 태우고 사라집니다. 남자손님과 팔짱을 낀 채 잇따라 업소에서 나오고 있는 여성들. 불을 꺼놓은 채 여전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날 취재진은 직접 업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제처럼 입구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예상대로 영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 단속 나와서 걸리면?

종업원 : 미리 전화가 와요. 단속 나오면.

취재진 : 종업원은 단속기관에서 정보를 준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합니다.

[사이에, 위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위해 경찰관들에게 접대를 한다는 종업원의 진술이 방송됨]

(‘보건위생과’ 간판을 비추며)

기자 :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난해 문제가 됐던 9개 업소 가운데 5개 업소가 여전히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영업 단속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인 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 접객부 고용은 아까 말한 대로 단란주점 천개 중에 한 8-90%가 한다니까. 그걸 어떻게.

기자 : 알고 있으면서 현실이 이러니깐 어쩔 수 없다란 얘기에요?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 그러면 그 천개를 다 단속해서 영업정지 3개월 때리라고요? 그렇게 보도해 줘요. 때리게. SBS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보도를.

기자 : 당연히 이런 업소를 단속해야 할 식품위생과 직원이 업소 주인들의 입장만을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이에, 취재진이 경찰관, 구청직원과 함께 불법영업 유흥업소 단속에 참여하였는데, 유

홍업소들의 불법영업장면, 단속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 업주가 사법처리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방송됨]

유 기자 : 취재진은 단속 공무원과 불법업소 단속을 동행취재하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속정보가 새는 일이 많았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이천여 개의 유흥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강남지역의 불법영업 실태는 과연 어떤지 직접 현장확인에 나섰습니다.

[사이에, 호텔 일식집에서의 접대부 고용, 윤락알선 등의 불법영업 실태가 방송되고, 주택가에 소재한 한식집에서의 위와 같은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현장, 업주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변명 등이 방송됨]

기자 : 더 어처구니 없는 점은 취재진과 함께 불법현장을 목격한 구청공무원까지 별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관할 구청단속직원 : 문제가 크게 안될 것 같습니다. 유흥형태라는 것은.

기자 : 방에 노래방기기가 있잖아요.

관할 구청단속직원 :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기계가 있는 거 가지고 현장이 없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기자 : 여성접대부는?

관할 구청단속직원 :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접대부라는 게 어떤 동석작배를 해야 된다고요. 같이 술먹고 노래부르고.

기자 : 결국 현장을 못 잡았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구청공무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업소에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그 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이른바 유흥1번지로 알려진 강남에서 업소를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그 이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〇〇단란주점 사장 : 강남구청은 미리 전화가 나와요. 만약 돈을 준다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나간다. 그쪽 동네를. 그럼 이제 간판 끄고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돈을 안 주면 막 이런데는 리스트에 적혀 있어요.

기자 : 업주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〇〇단란주점 사장 : 단속을 안 나오는 데는 접대를 갖다가 확실하게 했겠지. 로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기자 : 로비라는 게 어떻게 하는건데?

○○단란주점 사장 : 돈을 주는 거지. 상납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

기자 : 그러면 단속이 제대로 안되겠네.

○○단란주점 사장 : 왔다갔다 하탕치는 거지.

기자 : 업주로부터 상납을 받은 공무원이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불법영업을 눈감아 준다는 애깁니다.

기자 : 그렇다면 상납액은 얼마고 또 어떻게 전달될까?

□□단란주점 사장 : 구청은 오십, 파출소는 삼십, 이런 식으로 계속 주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한 지 1년 됐는데, 10개월 동안 1천300만원 정도 나간거지.

기자 : 게다가 공무원들은 추적을 두려워하면서 상납한 내용을 절대 기록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단란주점 사장 : 이제 수표는 싫고, 현금만 달라. 왜냐하면 수표 같은 것 쓰면 추적 당하고.

기자 : 수표를 준 적은 있어요?

□□단란주점 사장 : 수표는 준 적이 없어요. 처음에 주니까 빠구 맞았어요. 장부에 기록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 거죠. 나중에 혹시라도 감사 같은 거 나오면 걸리니깐. 일부러 빼가지고 적지 말라는 거죠.

기자 : 단속공무원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상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흥주점 사장 : 그걸 못하면 술 장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청이나 경찰서라는 걸 잘 모르고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허구헌날 당하지요.

경찰관 : 영업을 하면서 돈 주는 사람이 만약에 경찰관 주면은 구청 공무원 모르게 준다고요.

기자 : 결국 업소주인과 공무원의 상납고리가 불법영업을 눈감아주고, 단속을 느슨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애깁니다.

전 유흥업소 여사장 : 노른자 모구청에 유흥업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관할에 위생과 직원들은 한달 수입이 천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기자 : 상납받는 거로만?

전 유흥업소 여사장 : 예.

기자 : 일년 하면은요?

전 유흥업소 여사장 : 집을 한 채 사는 것이죠.

기자 : 실제로 강남에서 업소를 운영하다 그만뒀다는 30대 여성은 이제 술집 운영은 지긋지긋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전 유흥업소 여사장 :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게 해 먹을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내가 손님들한테 저가를 하고 팔아서, 그걸 갖고 저걸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 떼어가고, 저 사람 떼어가고, 차라리 다른 직종이 낫지. 그렇게 부당하게 뜯기고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기자 : 그러나 관할구청 위생과에서는 오히려 업소 주인으로부터 뇌물유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관할구청 담당직원 : 저녁을 먹자, 언제 나와라 이런 경우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할 순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위생공무원이 한 두명 한 것도 아니고 많이 구속도 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 상당히 주의를 하고 많이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기자 : 취제가 끝나갈 무렵 자신을 강남구청 현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으로부터 상납에 대한 흥미로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〇〇구청 직원 : 저는 〇〇구청 직원인데요. 자기네들끼리 직접 저기니까 외부에 노출되기가 어렵죠.

기자 :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〇〇구청 직원 : 그렇죠. 수표는 단 10만원이라도 추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자 : 그렇죠.

〇〇구청 직원 : 그런 점 때문에 현찰로.

기자 : 단가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〇〇구청 직원 : 아무래도 최소 50만원은 다 저기해요?

기자 : 50만원씩 20군데면 천만원이네요?

〇〇구청 직원 : 그렇죠.

기자 : 그럼 한달에 천만원을 받는단 얘긴가요?

〇〇구청 직원 : 그렇게 봐야죠. 왜 그런고는 자기들은 그걸 내고도 훨씬 더 이익이니까.

임 기자 : 강남구청 위생과에서는 업주의 상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금품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단속업무를 민간 용업업체에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 강남구청이 업소단속을 민간업체에 맡긴 지 한달, 연간 1억3,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과연 실효성은 있는 것일까?

[사이에, 민간업체에 대하여 단속업무를 위탁하였으나, 단속업체 직원들이 별다른 권한을 가지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됨]

(강남구 보건소라는 자막 하에)

기자 : 그러나 강남구청측은 불법영업에 대한 문제는 단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법이 잘못됐다고 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강남구청 식품위생과 직원 : 못 지키는 법이 살아있단 말이야. 그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고쳐달라고 이미 올렸어요. 그건 못 지키다. 한명도 지키는 놈이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모르느냐. 안단 말입니다. 거기서 니네들 강남 가니까 다 하더라.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들 다 파면시키든지,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위생과 직원들 다 파면시켜야돼.

(방송 이틀전 강남구청이라는 자막 하에)

기자 : 그리고 취재가 끝나갈 무렵 취재내용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구청에 찾아가 취재진에게 한 담당직원은 폭언까지 퍼부었습니다.

구청 직원 : 소장실에 와 가지고, 하지마

기자 : 당신 XXX 봐. 이거.

구청 직원 : 뭐? 당신이 뭐야? 나이 몇 살 먹었어 당신?

(방송 당일 강남구청이라는 자막 하에)

기자 : 취재진은 방송 나가기 직전 강남구청에 최종 입장을 듣기 위해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하자마자 완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 카메라 건들지 마세요!

구청직원 : 들이대지 말라니까.

기자 : 그 과정에서 고가의 방송장비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 강남구청이 제출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 기자 : 취재진이 문제로 삼은 것은 여전히 업주와 유착되어 있는 일선구청의 일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본 방송이 나오기 전에 내용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진의 설명과 휴대전화 연락처까지 실려 있는 이 소식지 15만부를 발행하겠다고 방송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까지 냈습니다. 상납은 어찌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관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관행입니다. 뉴스추적은 일부공무원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지고 상식이 통하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말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의 언론장악의도에 따라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시됐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청구는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1. 9. 28.자 판결 (2001카기10823)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001년 9월 28일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다른 피해자에 관하여까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이고, 동조 제7항은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특별히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부’는 신청인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행정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이 또한 별개의 사회적 개체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정부조직법 제24조의 2 제1항에서 신청인이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정부의 대외적 공표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그칠 뿐, 바로 정부에 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부여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신청인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는 정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신속·엄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록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사회적 개체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고, 한편 정부조직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2001년 7월 4일자 제4면에 『1974년 ‘동아광고사태’ - 2001년 ‘언론세무조사’ 비교』라는 제하로 정부가 1974년 기업체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언론을 탄압하였던 사례와 2001년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를 비교하면서 정부가 언론탄압 내지 언론장악의 의도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제5면에 『방송을 정권 지지의 핵으로』라는 제하로 현 정부 출범직전 작성된 ‘새정부 언론정책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언론대책문건이 보도되었다고 하면서 그 문건과 뒤에 만들어진 일련의 언론문건에 적시된 대로 정부가 방송을 활용하여 특정신문을 억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자 신청인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1년 7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245,246)을 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1카기10823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대표자 처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전 태 구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변론종결 : 2001. 9. 14.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가. 동아일보 제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이 사건 대
상기사인 『1974년 ‘동아광고사태’ - 2001년 ‘언론세무조사’ 비교』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
고,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고,

나. 동아일보 제5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이 사건 대
상기사인 『방송을 정권지지의 핵으로』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이 위 1항 기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
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2001. 7. 4.자 동아일보 제4면에 『1974년 ‘동
아광고사태’ - 2001년 ‘언론세무조사’ 비교』를 큰 제목으로 하고, 그 아래에 『‘경제적 수
단 압력’ 공통점 : 74년 ‘자유선언’후 광고 못내게, 올초 비판보도 늘자 ‘세금철폐’』, 『다
른점 : 70년대 무차별 ... 현정권 ‘정교’』, 『전문가가 보는 세무조사 : 권력핵심 지시 가
능성 높아 ‘여론만들기’ 쉽지는 않을 듯』을 작은 제목으로 하여 정부가 1974년 기업체에
게 정부에 비판적인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언론을 탄
압하였던 사례와 2001년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를 비교하면서 정부가 언론탄압
내지 언론장악의 의도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
한 사실, 또한 같은 날짜 동아일보 제5면에 『방송을 정권 지지의 핵으로』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 출범직전 작성된 ‘새정부 언론정책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언론대책문건이 보도
되었다고 하면서 그 문건과 뒤에 만들어진 일련의 언론문건에 적시된 대로 정부가 방송
을 활용하여 특정신문을 억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동아일보에 공표된 위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

있음을 이유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정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신속·엄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록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사회적 개체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고, 한편 정부조직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반론보도심판청구도 그 성질상 이행의 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동아일보에 공표된 위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를 받았으므로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신청인이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우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다른 피해자에 관하여까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이고, 동조 제7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특별히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부’는 신청인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행정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이 또한 별개의 사회적 개체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 신청인이 ‘정부’가 피해자임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 스스로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24조의 2 제1항에서 신청인이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정부의 대외적 공표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그칠 뿐, 바로 정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부여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외에 신청인이 정부가 피해자임을 이유로 스스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보도내용과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1. 9. 28.

재판장 판사 이 공 현
판사 황 진 구
판사 성 창 호

〈별지 1 목록〉 반론보도문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 2001. 7. 3.자 제4면의 『1974년 ‘동아광고사태’ - 2001년 ‘언론세무조사’ 비교』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위 기사는 언론탄압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동아일보의 ‘74년 광고사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비교하면서, 이번의 세무조사가 언론탄압 행위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74년 광고사태는 군사정권이 정보기관을 통해 각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여 언론 기업에 광고계재를 막은 불법적인 언론탄압 행위인 반면, 이번 세무조사는 법적 근거하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또 광고탄압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사의 투쟁에 대한 탄압으로 신문사의 주요 수입원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인 반면, 현재의 세무조사는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 추정하는 것이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위 기사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동아, 조선 중앙일보가 옷로비사건, 의약분업, 대북정책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자, 김대중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여 시작되었

다고 보도되어 있으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법적용의 사각지대이었던 언론사에도 예외없이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기사는 이번 세무조사가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진행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하여, 마치 정부가 사전 음모 하에 은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적 근거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히려 위 기사가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두 사안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함으로써 이번 세무조사를 1974년의 광고탄압과 동일하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위 기사는 비판적 신문사에 밀동을 뒤흔들만한 천문학적인 추정세액이 통보됐다고 보도하여 정부가 언론사의 논조에 따라 정략적으로 추정액을 부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세무조사는 23개 언론사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으며, 동아일보사에 대한 추정세액이 많은 것은 그만큼 피청구인의 탈루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뿐, 동아일보의 논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국정홍보처장

〈별지 2 목록〉 반론보도문

국정홍보처는 2001. 7. 3.자 동아일보 제5면 『방송을 정권 지지의 핵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위 사설에는 방송을 정권지지의 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언론대책문건을 근거로 현 정부가 방송을 통해 신문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설에서 언급된 문건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정부는 방송을 이용하여 언론을 탄압하려고 시도한 바 없다. 정부는 과거 언론정책을 주관하던 공보처를 폐지하고, 정기간행물 등록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전하였으며, 방송행정업무는 독립된 방송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관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언론의 자유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위 사설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내부거래조사, 신문고시의 부활 등이 바르소리를 하는 특정신문을 옥죄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신문을 옥죄려는 정부의 의도라는 위 주장은 출처불명의 괴문서가 정부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 만큼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정부는 조세정의 실현 및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및 불공정 내부거래 조사 등을 하였으므로, 특정신문을 옥죄려는 정부의 의도 하에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였다는 동아일보의 사실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반론보도청구인 국정홍보처장



기사에서 지칭하는 사학재단이 신청인이라고 하여도 보도 내용만으로는 학교법인인 신청인 자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10. 11.자 판결 (2001카합518)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2001년 10월 11일 학교법인 청강학원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기사는 학교재단이 설립자의 친인척들에 의하여 즉별경영되고 있다는 사실, 국회의원 이사장이 교육부 관계자에게 호통치는 등 압력을 행사하여 증원·국고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 아무런 직책이 없는 이사장의 남편이 교수실을 사용하고 회의를 지켜보는 등 학교의 업무에 개입한다는 사실, 설립자의 장례비에 학교 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이 만성화돼 있고, 재단의 기본재산을 유용하기도 한다는 사실, 상속세가 없어 대물림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재단의 관계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로서 기사에서 지칭하는 사학재단이 신청인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만으로는 위 개인들과는 별개의 학교법인인 신청인 자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신청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설립자, 이사장 등에 대한 기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반론을 제기할 이익을 인정할 간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겨레신문사는 <한겨레21> 2001년 5월 15일자 제22면에 『돈을 벌려면 학교를 세워라』라

는 제하로 신청인 학교재단이 설립자의 친인척들에 의하여 족벌경영되고 있다는 사실 등의 기사를 게재하자 신청인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1년 6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171)을 하였으나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이 내려졌다.

판 결 문

사 건 : 2001카합518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천시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최 학 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 형 근

변론종결 : 2001. 9. 13.

주 문 :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 21> 제22면 상단부분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20급 활자로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주 2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신청인은 학교법인으로서 1993.경 설립되어 현재 청강문화산업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로서 주간 <한겨레21>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발행의 <한겨레21> 제359호(2001. 5. 1.자) 제22면에서 큰 제목 『돈을 벌려면

학교를 세워라』, 작은 제목 『어느 사학관계자의 생생한 고백 ... 족벌들이 자자손손 말아먹는 이 엄청난 현실』, 중간 제목 『국회의원 이사장, 오히려 호통치다』, 『감사도 없고 상속세도 없는 천국』으로 하고, 본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지난 3월 초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로 국회가 한창 씨끄러울 때 이아무개 씨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저는 30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일하다 퇴진 뒤 수도권에 소재한 한 사학재단의 사무국장 겸 전문대학 사무처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편지는 조목조목 재단의 비리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는 96년 9월부터 97년 3월까지 6개월간 이 학교에서 일하다, 더 이상 공범자가 되기 싫어 사표를 썼다고 한다.

앞서 말한 족벌경영과 함께 이 대학은 전국 전문대학 150개교 평가결과 최하위인 D급을 받았지만 학생을 200명 증원하고 수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무처장이던 이씨는 이사장이 교육부 실무과장에게 전화 걸어 호통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사장은 당시 15대 국회의원이었다. 이씨는 “왜 너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려고 안달을 하는지 곧바로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

법적으로 대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사장의 남편은 교수실 하나를 사용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출근해 학장주재의 과처장 회의를 지켜보았다. 사무처는 교수들의 교통비 몇천원을 트집잡으면서도 이사장 남편인 설립자의 장례비 수천만원을 학교 돈으로 쓰기도 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횡령들은 만성화돼 있었다.

가장 큰 부정은 기본재산 유용이다. 설립 당시 재단은 교육부에 약정한 기본재산 100억원 중 30여 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했으나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교육부에 보고한 뒤에는 재단장부에 입금기장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직원 월급을 지불할 수 없어 사무처장 개인명의로 5천만원, 직원 두 사람 명의로 1억원을 빌리기도 했고, 학교건물 공사대금이 없어 재단 계열회사 자금을 차입한 뒤 기부금으로 바꿔치기도 했다.

부채계정과 자산계정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이씨는 “기업생활 30년 동안에는 상상도 못할 부정과 비리가 너무나 손쉽게 저질러졌다”며 “돈 벌려고 마음먹으면 기업할 게 아니라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걸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기업은 최소한 부정에 가담하고 공모할 필요인원이 있지만 사학은 두 세명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공금횡령이나 유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기업의 최고상속세율이 45%인데 비해 사학은 완전 면세이므로 자자손손 세금 한푼 안 내고 대물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세무서를 통하거나 사외이사, 노조를 통해 감사·감시를 받지만, 사학은 분규가 없다면 교육부 감사도 받지 않는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사학재단 이해집단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적어도 내가 겪은 일들에 비춰볼 때 자신의 돈벌이 수단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셈”이라며 “이 일은 결코 일부 사학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2. 판단

신청인은 위 기사의 보도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으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연 신청인이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위 기사에서 지칭하는 사학재단 및 전문대학이 신청인 및 청강문화산업대학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위 기사의 재단이 신청인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사의 사학재단 전문대학이 신청인 청강문화산업대학을 지칭하는 것임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기사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기사는 학교재단이 설립자의 친인척들에 의하여 족벌경영되고 있다는 사실, 국회의원 이사장이 교육부 관계자에게 호통치는 등 압력을 행사하여 증원·국고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 아무런 직책이 없는 이사장의 남편이 교수실을 사용하고 회의를 지켜보는 등 학교의 업무에 개입한다는 사실, 설립자의 장례비에 학교 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이 만성화돼 있고, 재단의 기본재산을 유용하기도 한다는 사실, 상속세가 없어 대물림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재단의 관계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로서 위 기사에서 지칭하는 사학재단이 신청인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은 신청인의 설립자, 이사장 등 개인들에 대한 기사로 보여질 뿐이고 위 기사내용만으로는 위 개인들과는 별개의 학교법인인 신청인 자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신청인과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설립자, 이사장 등에 대한 기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반론을 제기할 이익을 인정할 간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기사로 신청인이 피해를 받은 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신청인의 주장 중 위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청강문화산업대학에 학내분류가 있는 것처럼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부분은, 신청인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 기사에 그러한 사실적 주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위 기사에 의한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기각한다.

2001. 10. 11.

재판장 판사 김 남 태

판사 박 형 순

판사 이 승 엽

〈별 지〉 반론보도문

제 목 : 학교법인 청강학원, 비리나 분규 발생사실 없다

본 문 : 〈한겨레 21〉은 2001년 5월 15일자에서 『돈벌려면 학교를 세워라』라는 제하로 학교법인 청강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청강문화산업대학을 설립하였는데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학교법인 청강학원 청강문화산업대학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은 학내 비리가 문제되어 수년째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일부 사학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부도덕한 사학재단이 결코 아니며, 그 동안 단 한차례도 학내 분규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청강문화산업대학을 그 어떤 사학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학교법인 청강학원의 설립자인 고 청강 선생은 인간사랑, 자연사랑, 문화사랑의 철학과 의지로, 건강한 사고와 경쟁력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회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국제적인 인재를 길러 냄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의 기간으로 삼고 21세기를 대비한 과학기술 인력의 육성과 지역사회 개발 및 문화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평생 사업을 하여 번 재화를 출연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을 설립한 것이다.

따라서 설립자가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세웠고 설립자의 족벌들이 자자손손 말아먹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96년 9월부터 97년 3월까지 6개월간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이 은

재직시 학교 직원이나 교원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고, 품의 결재도 없이 학교 물품을 마음대로 구매하는가 하면 업무태만과 불손하고 무례한 언동, 설립자의 장례식 때의 욕설과 폭언 등,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1997. 3.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자 학교를 떠난 뒤 청강학원을 비방해 온 자인데, 학교법인 청강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

1996년 학교법인 청강학원의 이사장이던 당시 정 의원은 야당 소속일 뿐 아니라 전국구 출신이어서 교육부 관계자에게 호통을 치거나 그 밖에 위세를 과시한 적이 없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전국 전문대학 150개교 평가결과 최하위인 D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학생증원과 국고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교육부에 압력을 넣거나 국회의원의 권세를 부린 적이 없다.

청강학원의 설립자인 회장은 교사신축이 진행되던 1995년에는 건축회의 참석차 교지를 방문하였으나 1996년 개교 후에는 투병 중이어서 학교에 나갈 수도 없었고 사무실을 설치한 적은 더욱 없었으며 이 부임한 96년 9월부터 별세 때까지는 외병 때문에 학교 방문도 불가능해서 설립자가 학사행정에까지 개입하거나 교수들을 통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립자가 1996년 11월 사망했을 때 청강학원과 (주)남양알로에가 공동으로 장례식을 주관하였는데 당시 이 은 장례추진위원이었으며, 학교측에서는 장례식 당일 학교방문 손님식대와 장례식 준비비용 등으로 약 5백만원을 부담하였다.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학교건물의 신축공사 예정가를 당초 92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공사비를 절감하여 실제 소요된 공사비가 예정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부족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지, 학교법인 청강학원이나 설립자가 일부러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상철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검찰 수사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그외 학교법인 청강학원 등에게 횡령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1997. 4. 21.까지 설립자 등으로부터 약정 출연재산 전부를 출연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로 약 30여 억원이 초과 출연되었다.

한편 학교법인 청강학원이 기본재산을 적게 출연하여 이 때문에 교직원 월급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없었으며, 교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이 이 개인명의로 5천만원, 직원 두 사람 명의로 1억원을 빌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또한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학교건물 공사대금이 없어 재단 계열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뒤 기부금으로 바꿔치기 한 사실도 없다.

96. 9. 5. (주)남양알로에가 5억원, 97. 1. 25. 한국유니베라가 2억원 97. 1. 31. 한국유니베

라가 2억4천6백만원(건축 기성금 결제). 97. 2. 10. 정 당시 이사장이 금 2억1천2백5십만원. 97. 2. 14. 한국유니베라가 금 2억원을 각 기부하므로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이를 학교 건물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였다.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의사도 표명한 바 없으며 신청한 대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다.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우리나라 의사들’이란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 개개인 또는 대한의사협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0. 25.자 판결(2001카합1884)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운하 부장판사)는 2001년 10월 25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는 전혀 없으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방송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측 앵커가 이 사건 방송 서두에서 ‘70살이 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또 어떤 주부는 열혈 간격으로 아이를 두 번 낳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입니다’라는 말로 허위의 의료보험급여청구 사례 두 가지를 언급한 후, 방송기자가 각 사례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밝혀내지 못한 보험심사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인 사실에서 ‘우리나라 의사들’이란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 개개인 또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신청인 구성원들 일부로서 이 사건 방송의 사례들에서 직접 언급된 의사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

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방송과 신청인과 사이에 어떤 직접, 간접적인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방송법 제 91조 제1항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권이라고 함은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은 반론보도청구권의 권리범위를 넘어서서 정정보도, 사과방송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신청인의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가 2001년 4월 4일 KBS 「뉴스9」 프로그램 중 ‘현장추적 - 눈뜨고도 못 잡는 엉뚱한 청구’라는 제하로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신청인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1년 5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121)을 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졌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1카합1884 반론보도방송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

대표자 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정 상 학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 권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경 국

변론종결 : 2001. 10. 11.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뉴스 9」 프로그램에서 별

지 반론보도문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호증의 2,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 전체 의사 7만여 명을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신청인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송신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KBS 뉴스 9」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방송내용

피신청인은 2001. 4. 4.에 「KBS 뉴스 9」 프로그램 중 ‘현장추적 - 눈뜨고도 못 잡는 엉뚱한 청구’라는 제목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별지 방송내용과 같다.

다. 신청인의 중재신청

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중재를 신청하여, 위 위원회가 2001. 5. 16. 중재결정을 하여, 같은 달 23. 신청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 의하여 마치 대한민국 의사들 전체가 허위로 의료보험급여를 타내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듯이 방송함으로써 위 의사들 전체의 명예를 침해하였으므로 위 의사들 전체를 회원으로 하는 신청인은 방송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먼저, 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

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호 판결 참조),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는 전혀 없으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방송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측 앵커가 이 사건 방송 서두에서 '70살이 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또 어떤 주부는 열흘 간격으로 아이를 두 번 낳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입니다.'라는 말로 허위의 의료보험급여청구 사례 두 가지를 언급한 후, 방송기자가 각 사례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밝혀내지 못한 보험심사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두 구체적 사례에서 직접 언급된 의사들 개인의 인격적 법익이 이 사건 방송내용에 의하여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이란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 개개인 또는 피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위 표현은 이 사건 방송의 구체적 사례에서 직접 언급될 의사들만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뿐 전체 의사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수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 의사들이란 집단표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의사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신청인 구성원들 일부로서 이 사건 방송과 신청인과 사이에 어떤 직접, 간접적인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방송법 제91조 제1항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방송의 주요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전체 의사들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반론보도청구권이라고 함은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은 반론보도청구권의 권리범위를 넘어서서 정정보도, 사과방송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신청인의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01. 10. 25.

재판장 판사 손 윤 하
판사 최 병 료
판사 정 석 종

〈별 지〉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4월 4일자 '현장추적 - 눈뜨고도 못 잡는 엉뚱한 청구' 제목 하의 보도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방송하면서 72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어떤 주부는 열흘 간격으로 아이를 두 번 낳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료비 청구는 전산입력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 전체가 그런 청구를 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밝히며 전체 의사들에게 사과 드립니다. 이 반론보도문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방송내용

〈현장추적〉 눈 뜨고도 못 잡는 엉뚱한 청구

◎앵커 : 70살이 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또 어떤 주부는 열흘 간격으로 아이를 두 번 낳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기네스기록감인 보험청구를 해도 보험금을 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김도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 지난해 이 병원에서 32살의 한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보험급여 청구를 했습니다. 출산일은 2000년 8월 17일, 그로부터 열흘 뒤인 8월 27일에 이 산모가 또다시 아이를 낳았다고 병원은 청구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아무 문제없이 통과돼 각각 보험급여가 지급됐습니다.

◎병원 원무과장 : 잘못 청구됐고, 그 부분이 잘못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맞아요. 인정하는 거죠.

◎기자 : 대구 시내의 다른 병원, 이 병원은 더욱 어이가 없는 청구를 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는 할머니가 이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면 보험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요양급여 명세서에 명기된 환자의 출생연도는 1929년, 올해 74살이 된 할머니가 지난해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청구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 아이를 낳으러 가셨나요?

⊙신모 할머니(72살) : 허허허 ... 누가 그래요?

⊙기자 : 그 병원에요.

⊙신모 할머니 : 미친놈들이지. 진찰하러 한 번 갔어요.

⊙기자 : 병원조차 인정하듯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상한 청구였습니다.

⊙병원장 : 누가 봐도 알지요. 그래 누가 72살에 임신하겠어요.

⊙기자 : 그러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모른 채 보험급여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의료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인 거짓조차 잡아내지 못한 심사기관은 뭘하고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최철수(심사평가원 부장)인터뷰 : 심사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심사위원 하려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기자 : 병원이 항생제를 과하게 썼는지 또는 적절한 비용을 들여 치료를 했는지는 심사해 비용 삭감을 할 수 있지만 70살을 넘긴 노파가 아이를 낳았다는 청구는 잡아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심사기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뉴스 김 입니다. □

해당기사에서 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론의 대상과 그에 대한 주장의 요지가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그와 별도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지방법원 2001. 11. 2.자 판결 (2001카기12496)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001년 11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

대,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등이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하고,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사에서 직접 언급된 시민단체인 신청인들은 그들이 검찰과 이른바 친여매체와의 공조 하에, 배후사령탑의 조종에 의해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른바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조선일보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피신청인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기사들에 보도된 반론의 내용과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게재를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표현과 길이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요지는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을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의 조종을 받아 검찰, 친여매체와 공조하여 이른바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인 사실이 없으며, 배후사령탑이나 다른 누구의 조종을 받아 돌아가면서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인 사실도 없으며, 정부지원금의 수령이나 반납은 언론개혁 요구나 이를 위한 사전정지작업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으로서, 이미 해당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론의 대상과 그에 대한 주장의 요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그와 별도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001년 7월 27일자 5면에 『검찰수사 사주 죽이기 초점 ... 시민단체 교대로 지지시위, 방송은 매일 한건씩 확대보도. “언개련·민언련도 정부지원금 받다 7월 반납” 야, 언론죽이기 비난』이라는 제하로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의 인용 기사를, 동아일보사 또한 2001년 7월 27일자 A1면과 A4면에서 『일부 시민단체 홍위병식 동원 의혹』, 『친여 방송매체서 확대 보도』라는 제하로 한나라당 기자회견 내용의 인용 기사를 게재하자 신청인들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들은 2001년 8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286, 287)을 하였으나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1카기12496 반론보도심판

신 청 인 : 1.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

대표자 상임공동대표 직권대행

2.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

대표이사

3.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

대표자 이사

4.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서울

대표자 상임공동대표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변론종결 : 2001. 10. 19.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되는 조선일보의 5면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별지 2 기사의 제목 부분 『검찰수사 社主 죽이기 초점 ... 시민단체 교대로 지지시위』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반론보도문의 본문내용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본문활자크기의 고딕체로 1 회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오백만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 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위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선일보 5면 상단부분에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2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2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3.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들은 각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각 신청인에게 매일 금 이천만(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신청인 조선일보라고 한다)는 자신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1. 7. 27.자 5면에 『검찰수사 社主 죽이기 초점 ... 시민단체 교대로 지지시위, 방송은 매일 한건씩 확대보도. “언개련·민언련도 정부지원금 받다 7월 반납” 野, 언론죽이기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과 친여(親與) 매체,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통속이 되어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신문사주의 비리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방송이 매일 한건씩 확대 보도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이를 조종하는 사령탑이 있다는 증거’, ‘국세청의 언론사주 고발 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돌아가며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이는 것도 배후사령탑에 의한 조종의혹이 짙다’, ‘지난 24일 시위를 한 참교육학부모회는 10일 시위를 한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며, 11일 시위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언개련 산하단체이고 언개련은 23일 시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참여단체라는 사실이 그 근거’,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의에 참여한 21개 단체 중 14개 단체가 올해 행자부로부터만 8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들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언개련, 민언련이 정부지원금을 받

고 있다가 7월 초 이를 반납한 것은 현재의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같다'는 등의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에서 직접 언급된 시민단체인 신청인들은 그들이 검찰과 이른바 친여 매체와의 공조 하에, 배후사령탑의 조종에 의해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른바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조선일보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신청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들이 구하는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합이 상당하고, 그 게재방법은 위 기사가 실린 위치, 활자크기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합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고, 이와 아울러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하기로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신청인 동아일보라고 한다)를 상대로 동아일보 2001. 7. 27.자 에이(A) 4면에서 『일부 시민단체 홍위병식 동원 의혹』, 『親與 방송매체서 확대 보도』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의 위 2001. 7. 26.자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2001. 7. 27.자 A1면에서 『일부 시민단체 홍위병식 동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검찰과 일부 언론매체, 시민단체간의 '3자 공조설'을 제기했다고 보도하면서, 위 기사와 관련기사인 A4면의 『親與 방송매체서 확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한나라당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동아일보는 위 A1면의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기자회견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관련 단체들은 "독자적 운영체제를 가진 단체들을 홍위병으로 몰아붙이면서 '조종' 운운하는 것은 제1당답지 않은 치졸한 행태"라고 반박했다.'라는 반론을, 위 A4면의 기사에서는 정부지원금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최 민언련 사무총장은 "정부 지원은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지, 인건비나

행정비 등 경상비 지원이 아니다”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800억원의 국고보조를 받는 한 나라당도 관변단체냐”고 반박했다. 연개련 관계자도 “독자적 체계를 갖고 있던 시민단체들이 대의를 위해 함께 뭉치는 것이나, 주도적인 단체가 여러 시위에 참여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따졌다. 민언련과 연개련측은 정부지원 사업비를 중도에 반납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담당 인력이 부족한 데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라는 반론을 각각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사들에 보도된 반론의 내용과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게재를 요구하는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표현과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표현과 요지는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을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의 조종을 받아 검찰, 친여매체와 공조하여 이른바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인 사실이 없으며, 배후사령탑이나 다른 누구의 조종을 받아 돌아가면서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인 사실도 없으며, 정부지원금의 수령이나 반납은 언론개혁 요구나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으로서, 이미 해당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론의 대상과 그에 대한 주장의 요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그와 별도로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조선일보에 대한 신청은 주문 제1, 2항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동아일보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1. 11. 2.

재판장 판사 이 공 현

판사 황 진 구

판사 성 창 호

〈별지 1〉

제 목 : 『시민단체 교대로 지지시위·野, 언론죽이기 비난』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내 용 : 조선일보는 2001. 7. 27.자 5면에서 『野, 언론죽이기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과 친여 매체,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의 조종에 의해 한통속

이 되어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이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이 돌아가며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이는 것도 배후사령탑에 의한 조종의혹이 짙다. 언개련, 민언련이 정부 지원금을 반납한 것은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같다”라는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언급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언개련은 일관되게 언론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로서, 검찰이나 이른바 친여매체와 공조하거나 배후사령탑이나 다른 누구의 조종을 받아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사실이 없다. 또한 언개련과 민언련은 정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소요경비를 지원받았을 뿐이므로 정부지원금과 언론개혁 요구나 지지시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서 정부지원금을 반납한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별지 2〉

검찰수사 社主죽이기 초점 ... 시민단체 교대로 지지시위

방송은 매일 한건씩 확대보도

“언개련·민언련도 정부지원금 받다 7월 반납”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위(위원장)와 언론말살국정조사준비특위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친여(親與) 매체,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통속이 되어 몇몇 신문사주의 구속 등 사법처리와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TV방송 3사의 메인뉴스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이 신문사주의 비리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각각 1일 1건씩 확대 보도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또 “국세청이 언론 사주들을 검찰에 고발한 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돌아가며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이는 것도 배후사령탑에 의한 조종의혹이 짙다”면서 “반대시위를 했던 사람이 또다시 다른 시위에 나타나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박위원장은 “지난 24일 시위한 참교육학부모회는 23일과 10일 각각 시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대회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며, 18일 시위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10일 시위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며, 또 11일 시위한 신문개

혁국민행동은 언개련 산하이며 언개련은 23일 시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은 이들 단체가 시위할 때마다 여과없이 보도하며 각계각층이 신문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언론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의에 참여한 21개 단체 중 14개 단체가 올해 행자부로부터만 8억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서 “이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언개련, 민언련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가 7월 초 이를 반납한 것은 현재의 언론 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같다”고 주장했다.

언론말살국조준비특위는 별도 성명을 통해 “국세청, 공정거래위를 대상으로 한 야당원들의 국정심의를 위한 조사활동을 ‘탈법적’ 행위로 모는 김 민주당 대표의 상식 이하의 망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별지 3〉

제 목 : 시민단체, 자율적 언론개혁 활동 전개

내 용 : 조선일보 2001년 7월 27일자는 제5면에서 『野, 언론죽이기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현 정권의 조종에 따라 언론개혁 지지시위나 성명을 발표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언개련과 (사)민언련,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 정권의 외곽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모아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감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온 건전한 시민단체이며, 현 정권의 “외곽단체”나, 현 정권이나 검찰 그리고 이른바 ‘친여 매체’와 ‘한통속’이 되어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인 적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몇년 전부터 언론개혁을 줄기차게, 그리고 일관되게 주창해 왔으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금년 2월경부터 진행되고 있는 “언론개혁”내지 언론사주들에 대한 탈세비리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 왔을 뿐 정권에 의해 조종받은 사실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언론개혁에 관하여 현 정부나 이른바 ‘친여 매체’와 공조하여 신문사주의 구속 등 사법처리와 이른바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가져 본 일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언

론개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되게 유도한 적이 없고, 더욱이 국민의 여론을 빙자해 언론을 탄압한 일도 없다.

언개연과 민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부처로부터 다소의 지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도는 구 정권때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정부가 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기 곤란한 사업을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일 뿐이어서 시민단체가 정부부처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단체들을 “외곽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부의 지원금과 “언론개혁”은 전혀 별개로서 관련이 없다. 언개연과 민언련이 금년 6월과 7월에 지원금을 반납한 것은 당초 예정했던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향후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반론보도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별지 4〉

제 목 : 시민단체, 현 정권의 ‘외곽단체’가 아니다

본 문 : 조선일보 2001년 7월 27일자 제1면에서 『野 “일부 시민단체 홍위병식 동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제4면에서 『언개연-민언련 정부지원금 받아』라는 제목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현 정권의 조종에 따라 언론개혁 지지시위나 성명을 발표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언개연과 (사)민언련,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 정권의 외곽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모아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감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온 건전한 시민단체이며, 현 정권의 “외곽단체”나 현 정권의 “홍위병”이 결코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현 정권이나 검찰 그리고 이른바 ‘친여 매체’와 “3자 공조”를 맺어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인 적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몇 년 전부터 언론개혁을 줄기차게, 그리고 일관되게 주창해 왔으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금년 2월경부터 진행되고 있는 “언론개혁”내지 언론사주들에 대한 탈세비리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 왔을 뿐 정권에 의해 조종받은 사실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되게 유도한 적이 없고, 더욱이 국민의 여론을 빙자해 언론을 탄압한 적도 없다.

언개연과 민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부처로부터 다소의 지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도는 구 정권때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정부가 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기 곤란한 사업을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일 뿐이어서 시민단체가 정부부처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단체들을 “외곽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부의 지원금과 “언론개혁”은 전혀 별개로서 관련이 없다. 언개연과 민언련이 금년 6월과 7월에 지원금을 반납한 것은 당초 예정했던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향후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반론보도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2002. 2. 1.자 판결 (2001카기16806)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002년 2월 1일 여 씨가 경향신문사 외 7개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대상 보도내용의 의미는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보도내용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도내용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제3자의 발언내용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반론보도청구권은 해당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에 대한 관련자의 반박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서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표현을 하였거나 전후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표현한 경우에도 그러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형식의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신문사로서는 그 반론으로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사 외 7개 신문사는 2001년 9월과 10월 두 달간에 걸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의 기업가로서 정·관계 인사나 여권 실세들과 폭넓게 교분을 유지하여 왔고, 정·관계 등에 신청인의 비호세력이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신청인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1년 10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361~376)을 하였으나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1카기16806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장 준 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병 국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김 재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3.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 중구 충정로1가 68

대표이사 김 정 국

4.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가 61

대표이사 방 우 영,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 석 영

5.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석 현, 송 필 호, 이 제 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권 태 일

6.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국, 장 명 수, 문 현 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 대 화, 한 상 혁

7.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1

대표이사 심 상 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이 준, 김 대 학

8.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조 갑 제

지배인 조 남 준

변론종결 : 2002. 1. 11.

주 문 : 1.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

내에 발행되는 <경향신문> 제4면에 별지 제1-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경향신문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1)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동아일보> 제4면에 별지 제1-2 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동아일보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2)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신동아> 220면에 별지 제1-2 나.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신동아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문화일보> 제4면에 별지 제1-3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문화일보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1)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조선일보> 제4면에 별지 제1-4 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조선일보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2)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조선> 제30면에 별지 제1-4 나.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주간조선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마.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중앙일보> 제4면에 별지 1-5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중앙일보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바.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한국일보> 제4면에 별지 1-6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한국일보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시사저널> 제26면에 별지 1-7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시사저널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아.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조선> 제168면에 별지 1-8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월간조선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각 기재하라.

2.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제1항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신청인은,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제1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가 제1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제1 라.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마.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제1 마.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바.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제1 바.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가 제1 사.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아.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가 제1 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3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

보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사이에 각 발생한 부분은 이를 각 2분하여 각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위 각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사이에 각 발생한 부분은 이를 각 5분하여 각 그 2는 신청인의, 나머지는 위 각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경향신문>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1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가.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2 가.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신동아> 220면에 별지 제2-2 나.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문화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3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가.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4 가.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고,

나.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조선> 30면에 별지 제2-4 나.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중앙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5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

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한국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6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7.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시사저널> 26면에 별지 제2-7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8.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조선> 168면에 별지 제2-8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9. 만약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제1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제2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가 제3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제4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제5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제6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가 제7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가 제8항을 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들은 각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게 각 매일 금 3천만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리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대상 보도내용의 의미는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보도내용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도내용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제3자의 발언내용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반론보도청구권은 해당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에 대한 관련자의 반박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서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표현을 하였거나 전후 사정을 밝히지 않은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표현한 경우에도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형식의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신문사로서는 그 반론으로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2001. 9.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경향신문>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가’, ‘국제피제이(PJ)과 두목급 출신’,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의 기업가’ 등으로 표시한 사실, 신청인이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교분을 유지’하여 왔다거나 ‘재력을 앞세워 여권 실세들과 상당한 교분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여(呂)씨 비호 고위층 더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정·관계 등에 신청인의 비호세력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신청인을 이 와 고교동문이라고 보도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이 로부터 검찰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여 억원을 받았거나 신청인이 검찰수사 무마용으로 로비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가 신청인이 검찰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까지 손을 쓸 수 있다며 ‘해결사’를 자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아울러 검찰이나 이 의 진술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에 대한 300억원대의 전환사채발행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검찰은 위 돈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도,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 의원이나 조

전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위 구속당시 현직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검찰이 이 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봐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대한 신청부분

(가) 일간 <동아일보> 보도내용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1. 9. 14.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동아일보>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조폭 출신 사업가’,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 사업가’, ‘국제피제이파 두목 출신’, ‘1992년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피제이파를 이끌었다’고 소개한 사실, 신청인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거나 오랫동안 정치권과 인간관계를 쌓아오면서 여권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설이 있다거나 검찰·정치권에 ‘마당발’ 인맥을 구축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신청인이 상고를 졸업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2000. 5월경 이 가 수사를 받게 되자 ‘이회장을 돕겠다’고 직접 나섰다’고 보도하였고, 또한 이 가 약속어음 40억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신청인에게 전달했으며, 신청인이 광주와 제주 등지에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인출해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한 사실, 한편 위 피신청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용하면서 신청인이 이 가 횡령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진정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액의 돈을 받아 상당부분을 가로챘고, 그 후 추가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다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하면서 ‘주가조작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또한 삼에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주간회사의 알선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도,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나 조 전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신청인은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은 더더욱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대상 기사를 반론보도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은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월간 <신동아> 보도내용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신동아> 2001. 11월호에서 ‘주먹과

권력'이라는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인이 국제피제이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은 주먹계를 움직이는 실세이거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거나 자신은 표면에 나서지 않고 두 사람을 내세워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의 담당검사인 홍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속당시 조아무개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정구영 검찰총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했고, 검찰 내에서도 신청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몇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문화일보>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광주지역 폭력조직 두목 출신 건설업자',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신청인이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 수괴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장에는 '88년 국제피제이파를 결성, 부산의 대표적인 폭력조직인 칠성과 두목 L씨 등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 야쿠자조직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평소 정치권은 물론 호남 출신 수사기관 고위간부들과 친분이 두터워 검찰 고위간부 출신 S, K, L씨의 이름은 항상 신청인과 함께 붙어 다녔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의 실세인 H의원과 정부산하기관장 J모 전 의원이 각각 면회를 온 것으로 돼있었다고 보도한 사실, '구속 당시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가 검찰 내부 인사뿐 아니라 경찰, 정치권 등지에서도 답지됐다'는 당시 수사검사인 홍준표의 말을 인용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70년대 중반 상고를 졸업하였다고 하면서 이가 신청인의 고등학교 4년 후배라고 보도한 사실, 이가 2000. 5월 긴급체포되었다가 하루만에 석방된 사실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출신인 김모 변호사가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보도하는 한편 김 전 법무부장관이 이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자리에도 신청인이 함께 있었다고 보도한 사실, 또한 신청인이 이로부터 사건처리비용, 진정취하비용, 해외전환사채발행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비롯하여 거액의 로비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신청인이 이 옹호로부터 42억4천만원의 거액을 뜯어낸 '사기꾼'에 가깝다는 것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라고 보도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제주 KAL호텔 카지노에 거액을 투자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이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부분

(가) 일간 <조선일보> 보도내용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조선일보>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의 배후’, ‘조폭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1992년 폭력조직을 이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조직 폭력과 유착된 배경에다 지역사업가로서 성장하면서 동향 출신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정치인들은 물론 당시 정권의 실세급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도한 사실, 비호 또는 연루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인사들을 거명하면서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하였고, 조 관광공사 사장이 면회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사실, 홍준표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검찰 고위직에 있는 간부 2명이 수사 당시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과 이 가 상고 선후배라고 보도한 사실, 이 가 신청인을 통하여 구명로비를 하였다거나 신청인이 이

에 대한 수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는데 이어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조로 10억4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신청인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이 의 구명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사실, 금융감독원이 이 의 주가조작혐의를 조사하면서 이 에게 보낸 질문서에 신청인의 혐의 계좌가 명시되어 있었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신청인이 1998년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검찰 내 일부 인사가 청탁성 압력을 넣어 유야무야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옥두 의원 등을 만났고, 검찰이 이 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간조선> 보도내용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2001. 9. 27. <주간조선>에서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광주 국제피제이파의 전 두목’으로 알려져 있고 1992년 당시 두목으로 기소되어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 홍준표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 검찰 간부가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호통을 쳤다고 하면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이로부터 사건무마대가로 2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격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 의원이나 조 전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위 구속당시 현직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신청인이 김 의원을 만났으며, 검찰이 이 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을 받았으며,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봐도 위 주장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국제피제이파의 배후라고 하면서 1992년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 두목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이 와 K상고 동창이라고 보도한 사실, 이 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관계자들을 상대로 신청인이 직접 구명로비를 하거나 정치권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국회의원은 물론 검·경 고위간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고 보도한 사실, 홍준표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한화갑 의원이 신청인의 위 구속당시 면회를 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이 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4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300억원대의 해외전환사채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조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사실, 검찰이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 중 17억원은 신청인이 이 를 속여 가로챘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권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검찰이 이 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2001. 9. 1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시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한국일보>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 두목급 간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폭력조직 수괴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사실, 광주지역에서는 신청인이 정치인과 검찰간부, 유력인사 등에게 향응과 돈을 제공한 뒤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다녔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왔고, 정부산하 기관장인 C 전 의원도 면회를 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이로부터 진정사건 합의 및 해외전환사채발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2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 『로비사건 뒤에 꼭 배달사고』라는 제목으로 이 용호의 핵심적인 로비창구역할을 했던 신청인도 이 등식의 예외가 아니었고, 로비자금 중 19억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사실, 『여 씨, 대리인 통해 제주 카지노 폭력인수』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제주 KAL호텔 카지노를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검찰이 이 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2001. 10. 4.자 <시사저널>에서 『검사와 주먹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인을 호남 조직폭력 국제피제이파 출신 사업가, ‘조폭 출신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1986년경 광주로 내려가 호남 조직폭력계를 장악했다고 보도한 사실, 검찰·조폭 커넥션역할의 한 축을 맡은 대표적인 조직폭력 출신 인물 중 한 사람이 신청인이라고 하면서 신청인과 일부 실세 정치인 및 검찰 간부급 인사들 사이에 오랜 기간동안 커넥션이 형성되어 왔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2001. 8월 초 김 의원은 광주에서 몰래 만났다고 보도한 사실, 광주지검에 근무하였던 검사의 말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광주, 목포지역 검찰과 안기부 광주지부, 경찰간부, 야당(평민당) 실세 정치인, 언론계 인사 등 지역 유지들과 교분을 쌓아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었고 특히 검찰과 가까워지려고 남다른 공을 들여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지검에 근무한 부장급 이상 검사치고 신청인으로부터 융숭한 접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문 것으로 알려졌고, 평소에 검사를 접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광주에 근무하던 간부 검사가 대구로 발령나니까 미리 사람을 시켜 대구에 대형아파트를 마련해준 일도 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경승주택이라는 건설업체를 차려 법원경매사업을 벌여 '아도를 치는 방법'(경매폭력의 일종)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보도한 사실, 이가 신청인을 만나 동업자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이의 사기수법과 신청인의 정·관계 로비력이 결합하였다고 하면서 함께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 또한 신청인이 이 용호로부터 삼애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 또한 신청인은 이가 소유하던 광주 프라도호텔의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절정의 로비를 펼쳤다고 하면서 위 호텔을 임차보증금 20억원에 3년간 임차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봐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01년 11월호에서 『한국 조폭의 역사와 계보』라는 제목으로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폭력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신청인을 '광주 국제피제이파 두목 출신'이라고 표현한 사실, 신청인이 동향 출신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정치인은 물론 정권의 실세 급 인사들과 오랫동안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폭넓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조 관광공사 사장이 면회를 하였고,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이 내려왔으며, 한 검찰 간부는 신청인을 옹호하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보도한 사실, 검찰의 신청인에 대한 기소내용을 인용하면서 신청인이 이로부터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 진정한 합의금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에 대한 수사를 빌미로 이 로부터 40여 억원을 뜯어낸 셈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도,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위 구속당시 현직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검찰이 이 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각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공표됨으로써 신청인은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의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기사들의 내용과 게재경위,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신청인이 반박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제2-1 내지 2-8 기재 각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1-1 내지 1-8 기재 각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합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게재방법은 이 사건 기사들의 위치, 활자 크기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중 신청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이라거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미 보도한 사실,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미 보도한 사실, 또한 조 전 의원이 신청인을 면회한 사정에 관하여 추가 보도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미 보도한 사실이 각 소명되므로, 보도를 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위 각 해당부분을 반론보도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신청인이 비록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고 하더라도 폭력조직에 관여하여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신청인이 폭력조직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진실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국제피제이파 내지 폭력조직에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이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다투나, 위 주장사실이나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현 시점에서 신청인이 반론으로 구하는 내용, 즉 신청인이 과거 국제피제이파의 두목이 아니었고, 현재는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주장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신청인이 이 과 고등학교 선후배인지 여부는 지엽말단적인 내용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상 기사들이 신청인이 이 의 후견인 내지 해결사로서 정·관계에 로비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과 이 의 관계에 관한 위 반론보도내용이 지엽말단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나. 한편,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간접강제명령을 발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2. 2. 1.

재판장 판사 이 공 현

판사 황 진 구

판사 성 창 호

〈별지1-1〉 반론보도문

『경향신문』은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삼애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여 그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2〉 반론보도문

〈동아일보〉는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본인은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한 일도 없다.

본인은 로부터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

기로 하여 그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2〉 반론보도문

〈신동아〉는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자신의 비호세력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이 1992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때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3〉 반론보도문

〈문화일보〉는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고,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관계로 면회를 온 것일 뿐이다. 또한 위 구속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도 없었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또한 2000년 5월 이 가 긴급체포되자 김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김 변호사를 통하여 당시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하게 한 것은 아니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한 일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삼애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주간사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4 가〉 반론보도문

〈조선일보〉는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여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고,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관계로 면회를 온 것이다. 또한 위 구속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도 없었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

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본인은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한 일도 없다.

본인은 로부터 삼애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여 그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 의 주가조작에 개입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본인은 1998년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검찰 고위간부를 만나거나 그로 하여금 수사진에 압력을 행사하여 구속을 면한 적이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4 나〉 반론보도문

〈주간조선〉은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검찰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도 없었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5〉 반론보도문

〈중앙일보〉는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 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한화갑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고, 위 구속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도 없었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용 호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한 일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삼애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주간사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6〉 반론보도문

〈한국일보〉는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 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

내은 관계로 면회를 온 것이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한 일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삼에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위해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7〉 반론보도문

〈시사저널〉은 2001년 10월 4일자에서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김 의원은 2001년 8월초 제주도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는데 가족들 모임이어서 혼자 식사만 했을 뿐이다.

본인이 광주, 목포 지역 검찰과 안기부 광주지부, 경찰간부, 야당(평민당) 실세 정치인, 언론계 인사 등 지역 유지들과 교분을 쌓아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었다거나 특히 검찰과 가까워지려고 남다른 공을 들여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지검에 근무한 부장급 이상 검사치고 본인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 본인이 평소에 검사를 접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광주에 근무하다가 대구로 발령 받은 간부 검사에게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본인은 경승주택이라는 건설업체를 차려 법원경매사업을 벌여 ‘아도를 치는 방법’(경매 폭력의 일종)으로 재산을 모은 사실이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삼에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이 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

본인은 월드컵을 앞두고 프라도호텔의 객실만을 임차하였을 뿐 그 호텔 내부의 룸싸롱, 한식당, 연회장, 이용원, 미용실, 샵(갤러리), 스포츠마사지실 등을 임차하지 않았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8〉 반론보도문

〈월간조선〉은 2001년 11월호에서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고,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도 없었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2-1〉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경향신문〉은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외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잘 알고 지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지난 72년 2월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이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를 속여 거액을 사기를 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2가〉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동아일보〉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이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이는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의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지난 72년 2월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용호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를 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은 더더욱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2나〉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신동아〉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외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3〉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문화일보〉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외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보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지난 72년 2월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에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4가〉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조선일보〉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외 폭력전과도 없다.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들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잘 알고 지

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지난 72년 2월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하나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를 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

본인은 98년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검찰 고위간부를 만나거나 그로 하여금 수사진에 압력을 넣어 구속을 면한 적이 없고 당시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약식기소된

것이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4나〉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주간조선〉은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와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와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와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와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와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의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으며, 김 의원은 지난 8월 초 제주도 여름휴가때 우연하게 처음 봤는데 가족들 모임이어서 혼자서 조출한 식사만 했을 뿐이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용호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를 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용호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5〉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중앙일보〉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

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와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와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와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의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도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지난 72년 2월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를 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6〉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한국일보〉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외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으며, 김 의원은 지난 8월 초 제주도 여름휴가때 우연하게 처음 봤는데 가족들 모임이어서 혼자서 조출한 식사만 했을 뿐이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용호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은 더더욱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7〉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시사저널〉은 2001년 10월 4/11일자에서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외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으며, 김 의원은 지난 8월 초 제주도 여름휴가때 우연하게 처음 봤는데 가족들 모임이어서 혼자서 조출한 식사만 했을 뿐이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업가로서 변신하며 동향 출신 검찰·경찰·국세청·등 사정기관과 정치인은 물론, 고향은 다르지만 정권의 실세급 인사들과 오랫동안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폭넓은 관계를 유지해 온 적이 없다. 호남 검사치고 여 신세 안진 사람 드물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본인이 “당시 광주·목포지역 검찰과 안기부 광주지부, 경찰 간부, 야당(평민당) 실세 정치인, 언론계 인사 등 지역 유지들과 교분을 쌓아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었다거나 특히 검찰과 가까워지려고 남다른 공을 들여 1980년 대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지검에 근무한 부장급 이상 검사치고 여씨로부터 융숭한 접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문 것으로 알려진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또 본인이 “평소에 검사를 접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광주에 근무하던 간부 검사가 대구로 발령 나니까 미리 사람을 시켜 대구에 대형 아파트를 마련해 준 일도 있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며 본인은 검사에게 아파트를 사 준 사실이 없다.

본인은 경승주택이라는 건설업체를 차려 이 회사를 발판으로 법원경매 사업을 벌여 ‘아도를 치는’ 방법(경매폭력의 일종)으로 재산을 모은 사실이 없다.

91년 당시 모 검찰 간부가 주말마다 본인과 어울려 골프를 치고 룰살롱을 드나들었다는 보도나, 당시 호남에서 근무했거나 특정지역 출신검사들 상당수가 본인과 어울려 다녔고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도, 그리고 당시 검찰 간부가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호통을 치는 등 현직 검찰 고위 간부 2명이 질책을 했으며, 또 92년 재판 당시 거물 로비스트를 동원하여 재판장에게까지 로비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보도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 회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은 내년에 있을 월드컵을 앞두고서 프라도 호텔의 객실만 임차하였을 뿐 이른바 호황업종인 룬싸롱(4층)이나 한식당(1층), 연회장(2, 3층), 이용원(2층), 미용실(3층), 샵(갤러리, 1층), 스포츠마사지(지하1층) 등은 임차하지도 않았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8〉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월간조선〉은 2001년 11월호에서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의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

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용호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

II. 손해배상청구사례

이 사건 사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서울고등법원 2001. 4. 19.자 판결 (2000나9859)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1년 4월 1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관련 수사를 위한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이 본부장 및 수사본부 소속 검사 11인이 조선일보사와 정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도 타당한 기준이 된다.”고 밝히고 “이 사건 사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그 사실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사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문제된 각 사설에서는 ‘검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원고 등 검사 개개인을 특정하여 지칭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집단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할 것이다.”라며 “당시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들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업유도 사건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독자들도 쉽게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은 각 사설이 신문에 게재되어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특정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정은은 1999년 7월 31일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하로 원고들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과정 중 진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강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불법 감청을 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일반 독자로 하여금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1천5백만원의 위자료료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295~307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0나985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이

2. 이

3. 주

4. 길
5. 윤
6. 김
7. 조
8. 최
9. 한
10. 김
11. 이
12. 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2. 정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조선일보사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변 론 종 결 : 2001. 3. 15.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77460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31.부터 2001.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2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다. 만약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나.항 기재기간 안에 위 나.항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3억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 발행하는 조선일보 '사설'란에 별지 제2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만약 피고 회사가 위 기간 안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구하는 금원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3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7. 31.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호증의 9, 14,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옥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로서 1999. 7. 20.부터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위 수사 본부에서 원고 이 는 본부장, 원고 이 은 주임 검사, 나머지 원고들은 각 수사검사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한편 피고 회사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정 은 피고 회사의 논설위원이다.

나. 전 대검찰청公安부장이던 진 는 1999. 6. 7. 기자들에게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발언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그 보도를 접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대검찰청은 그 진상조사를 위하여 위

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9. 7. 21. 위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진 와 강 의 집과 대검찰청 공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진 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고, 기타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쳤는데, 그 수사결과 위 사건은 ‘진 가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어 업적을 쌓을 목적으로 행한 1인극’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들은 1999. 7. 30. 진 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위 수사를 종결하였다.

라. 그런데, 위 수사과정에서 진 가 강 에게 전화를 하여 ‘집 전화로 통화하면 수사기관에 추적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보내겠다’고 제안한 다음 휴대전화를 강 에게 전하였고, 진 와 강 이 그 휴대전화기로 수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마. 한편, 원고 이 등은 위 수사본부에서 위 수사내용과 관련된 일문일답식의 브리핑을 가끔 하였는데, 1999. 7. 27. 오후에 진 가 강 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1999. 7. 29. 오전에는 강 의 진술임을 전제로 진 가 강 에게 “강사장, 우리 딱 한번 만난 거야 ... 알았지.”, “우리가 5월에 한번 만난 것밖에 없지.”, “당신이 나와 통화한 것은 범죄신고 차원이 아니냐.”, “구조조정은 조폐공사 스스로 한 것인데 내가 뭘 알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맞추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하였으며, 그 때 그 통화내용이 감청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위 통화내용은 감청이나 비화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강희복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청취한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바. 위 브리핑 관련 기사를 취재한 피고 회사 소속 이 기자는 ‘검찰이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위 브리핑을 하였고, 그 브리핑 전달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던 통화내용을 그 다음날에 상세히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기사가 1999. 7. 30.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

사. 피고 정 은 위 보도 기사와 기타 다른 언론보도를 참작하여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1 사설의 내용에 상응하는 사설을 쓴 다음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 또는 보고절차, 편집절차를 거쳐, 1999. 7. 30. 18:00경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1999. 7. 31.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街版)에 별지 제1 사설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어 배포하였다.

아. 그런데, 원고 이 가 위 신문을 보고 피고 회사 소속 서울지방검찰청 법조 출입 기자에게 위 사설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자, 피고 정 은 다시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절차를 거친 다음 그 사실의 제목을 『휴대폰도 도청되나』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고쳐 별지 제2 사실의 내용에 상응하는 사실을 쓴 다음 내부 편집절차를 거쳐, 1999. 7. 30. 23:00경 1999. 7. 31.자 조선일보에 별지 제2 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실을 실어 배포하였다.

2. 불법행위의 성립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정 이 피고 회사의 1999. 7. 31.자 조선일보에 원고들이 파업유도 관련 수사과정에서 강 과 진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한 의혹이 있다고 적시한 별지 제1 사실과 제2 사실을 실어 배포함으로써 그 수사를 담당한 검사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사실에서는 ‘검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원고 등 검사 개개인을 특정하여 지칭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위 각 사실의 내용은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데 그 전제된 사실이 모두 진실한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룬다.

(2) 피해자의 특정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록 기사 자체만으로는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가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언론기관이 명예훼손의 보도를 하면서 집단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건대, 별지 제1 사실과 제2 사실의 문면에 의하면, 문제된 각 감청행위의 주체로 ‘검찰’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들을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진 와 강 사이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용을 검찰이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 판단은 검찰이 파업유도 사건을 조사,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들을 전제로 한 것인 바, 당시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들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업유도 사건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독

자들도 쉽게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은 위 각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특정된다 할 것이다.

(3)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가) 판단기준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사실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도 타당한 기준이 된다.

(나) 별지 제1 사실

별지 제1 사실은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첫 문단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 와 강 간의 휴대폰 통화내역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시한 뒤,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로서, 검찰이 전달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하고, 감청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였으며,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진 와 강 이 주고 받은 대화체로 되어 있고, 한 달도 더 넘은 시점부터 약 2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눈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바, 비록 위 사실 중에는 통화내용의 공개가 이례적이라든가 감청이 아님을 강조한 점이 석연치 않고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된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적시한 부분 등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가 사실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위 사실의 제목과 앞서와 같은 사실들을 포함한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은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 사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그 사실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 사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다) 별지 제2 사실

다음으로, 별지 제2 사실은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제목 아래, 검찰에 의해 진 와 강 간의 통화내용이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대화체로 공개되었고, 통화내용이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며, 등장 인물도 강, 진씨 두 사람뿐이라고 밝혔으며, 전날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적시한 사실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고, 위 사실의 내용 중에 “일부 시민들이 ‘혹시 휴대폰도 도청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었다”거나 “검찰의 ‘감청이 아니다’라는 부연설명이 행여 일반에게 휴대폰 통화도 엿들을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표현 역시 일반 독자가 사실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위 사실의 제목과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하였다는 내용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위 사실의 내용 중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지 제2 사실에 의하여서도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별지 제1 사실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 또는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 또는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은 검찰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휴대전화 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나, 나아가 위 사실 중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하였거나 불법감청을 한 다음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그 내용의 진실함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다시, 위 사실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은 피고 회사 및 다른 언

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보도사실에 터잡아서 위 사실내용을 작성한 다음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하였고, 위 사실은 평가, 비판, 촉구 따위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한 것인데,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의 증명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진 와 강 의 대화를 감청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원고들에게 감청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원고들의 해명을 듣는 등의 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나 다른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를 사실로 잘못 알고서,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위 사실을 작성하여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적시된 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위 사실의 전체 취지가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제되는 중요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터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원고들이 별지 제1 사실이 게재된 신문이 배포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사실내용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위 사실의 신문게재 시점과 신문게재 부분, 피고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회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원고들의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긴 점, 일반 독자들에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더욱 조장한 점, 한편으로 피고들은 원고 이 로부터 신문 가판에 실

린 별지 제1 사설의 내용에 관하여 항의를 받고 나서 곧이어 별지 제2 사설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배포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 제1 사설이 실린 신문이 배포된 1999. 7. 3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제1 사설이 신문에 게재된 크기, 게재 면 수,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정정보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2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토록 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 제2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나, 게재를 명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원문보도와 의 연관성, 독자들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기재의 필요성,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낼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나.항의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회사가 위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함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하는 것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나,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그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채무명의를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명할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는 위 3. 가.항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있어서도 제1심 판결은 당원과 일부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내지 제3항을 앞서 인용하기로 한 바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19.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정 진 경
판사 권 기 훈

〈제1 정정보도문〉

조선일보는 1999. 7. 31.자 신문의 가판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 전 대검公安부장과 강 전 조폐공사 사장 사이의 휴대폰 통화를 불법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진 전 대검公安부장과 강 전 조폐공사 사장 사이의 휴대전화기 통화를 감청하였다거나 감청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일보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신문에 게재

하여 위 파업유도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제2 정정보도문〉 원고들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본 신문사에서는 지난 1999. 7. 31.자 신문 사설에서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성된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과정에서 위 사건의 당사자들인 진 전 대검公安부장과 강 전 조폐공사 사장간의 휴대폰 통화를 불법적으로 감청 또는 도청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사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위 진 전 대검公安부장과 강 전 조폐공사 사장간의 휴대폰 전화를 불법적으로 감청하거나 도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신문사에서는 위 보도로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던 특별수사본부의 검사들이 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왔던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본 신문사의 위와 같은 왜곡보도로 인하여 특별수사본부에 몸담고 있던 12명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1999. . .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본 신문사 및 위 사설을 집필하였던 본 신문사 정 은 연대하여 위 12명의 검사들에게 각 3억원씩 총 3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신문사가 1999. 7. 31.자 조선일보에 게재한 사설은 허위의 내용이었으므로 이를 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

**경찰 조사단계에서의 혐의사실을 두고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단정정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2001. 4. 25.자 판결(2000가합64132)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안영률)는 2001년 4월 25일 가수 조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 사실을 확정보도한 대한매일을 비롯한 4개 중앙일간지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언론사들에게 총 4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언론사들이 ‘가수 조 또 대마초 적발’, ‘조 씨 또 대마법 위반’ 등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가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이번에도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했다. 또한 “일부 피고 소속 기자들이 원고에 대한 소변 검사결과가 양성 반응으로 나오는 등의 수사상황의 일부를 알게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경찰이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와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발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언론사간의 경쟁에 의하여 정밀감정 결과나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도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원고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고의 집을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반응으로 나타나자, 원고를 긴급체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사를 하자 피고들은 원고의 피의사실 관련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개월 전부터 복용하여 오던 한약에 대마성분이 들어 있어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정밀검사결과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은 원고를 석방하고 검찰은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0년 7월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0서울중재207~217)을 하였으나 해당 언론사들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자 신청을 취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0가합64132 손해배상(기)

원 고 : 조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 경 현

피 고 : 1.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차 일 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금 창 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 수 근, 송 시 섭,

조 성 극, 김 두 식, 최 상 경

3.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최 학 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 정 희

4.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국, 장 명 수,

문 현 석, 김 영 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인 철

5.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1

대표이사 황 선 조, 송 병 준, 최 윤 기

지배인 이 정 재

6.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 정 환, 강 호 성, 조 면 식, 손 석 봉

변 론 종 결 : 2001. 3. 21.

주 문 :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각 금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각 금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9. 9.부터 2001. 4. 25.까지

나. 이 사건 보도 이후의 경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결과 원고의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지 않자, 양천경찰서는 원고가 조사 요청한 한의사에 대한 조사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결과, 함께 입건된 박 에 대한 소변검사결과 등으로 인하여 그 혐의사실을 확신할 수 없어, 같은 달 7. 오후에 원고를 석방하였고, 검찰은 같은 해 7. 27. 무혐의 결정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였다.

(2) 원고가 석방된 후 피고들의 보도태도를 문제삼자, 피고 문화방송사는 같은 달 8. 인터넷 뉴스에 경찰이 원고의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결과 대마 음성반응이 나와 그를 석방하였다는 기사를 게시하고, 같은 해 7. 4. 18:30 정규 뉴스시간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였으며, 피고 중앙일보사, 한국일보사, 세계일보사는 같은 달 7.에, 피고 대한매일신보사는 같은 달 8.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와 시청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사, 한국일보사, 세계일보사들이 게재한 기사들은 그 제목을 『가수 조 또 대마초 적발』(피고 대한매일신보사), 『가수 조 씨 또 대마초』(피고 중앙일보사), 『조 씨 또 대마법 위반』(피고 한겨레신문사), 『조 또 대마초』(피고 한국일보사), 『가수 조 또 대마초』(피고 세계일보사), 『가수 조 대마혐의로 5번째 적발』(피고 문화방송사)로 하여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다만 피고 문화방송사는 ‘혐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반론 보도문에서는 ‘조 또 대마초’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감뉴스에서는 위와 같은 단정적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원고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조사받고 있는데, 실형 전력을 포함한 4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번이 다섯 번째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다만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는 이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다고 하여 본문에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 독자 및 시청자들은 먼저 위 기사제목에 의하여 원고의 범행사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은 대충 읽거나 들어 넘어가기 쉽고, 더욱이 본문에 실행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력을 들추고 있어, 원고가 단순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보다는 이번에도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피고 한국일보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인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익성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의 보도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원고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여 한 위 각 범죄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실성

피고들은 보도 당시까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원고가 이번에도 대마초를 피웠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대마초를 피운 것이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각 보도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일보사는 한약을 복용해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원고의 항변 사실을 함께 보도하였으므로 그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보도라고 주장하나, 항변사실을 포

함하여 그 기사 전체를 살펴보아도 역시 원고가 대마초를 흡연한 것과 같은 전체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당성

1) 피고 한국일보사, 문화방송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양천경찰서 수사 담당 경찰관이 2000. 6. 5.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결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원고의 항변사실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원고와 함께 입건된 박 에 대한 소변검사결과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원고측도 더 이상 그 혐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원고가 동종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취재하여 한 피고들의 보도는 보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마 제2호증, 을사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 소속 기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원고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오는 등의 수사상황의 일부를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경찰이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결과와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발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함, 수사기관인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로 보려면 법령에 의한 공보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식으로 기자 기타 일반인에게 수사의 경과나 내용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한약을 복용하여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었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된 박 에 대한 소변검사결과도 음성반응이 나오고 있었던 점, 원고의 항변사실은 다음날 한의사에 대한 사실확인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보도 당시의 구속영장도 신청되지 아니한 시점인 점, 원고의 동종 전력이 4차례나 된다는 사실은 일반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므로 이를 들추어 보도하려면 더욱 더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그 보도를 함에 있어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문화방송사는 언론사는 신속한 보도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범죄보도가 공익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앞서 본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속하게 보

도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개 언론사간의 경쟁에 의하여 정밀감정결과나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도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의 보도는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른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사는 양천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그 보도기사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였으므로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만으로는 앞서 본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세계일보사는 서울시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거하고 양천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대한매일신보사는 다른 피고들의 취재경위 진술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그 보도에 상당성이 없다).

(라) 정당행위

피고 중앙일보사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공인인 원고에 대한 범죄혐의 보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나, 그 보도가 진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위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계획하고 있던 공연일정 등의 취소로 인하여 입었을 영업상의 손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문의 형식과 내용, 크기, 보도 횟수, 보도 이후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통하여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했는지 여부, 언론기관으로서의 피고들의 지위 및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한겨레신문사는 각 금 10,000,000원, 피고 중앙일보사, 한국일보사, 세계일보사, 문화방송사는 각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0. 9. 9.부터 그 이행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1. 4. 2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2001. 4. 25.

재판장 판사 안 영 료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1.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기사내용〉

제목 : 가수 조덕배 또 대마초 적발

서울양천경찰서는 5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가수 조 씨(일산 구)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지난 1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 크라운 호텔 객실에서 동료 3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등 지난 91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다.

〈2. 피고 중앙일보사 기사내용〉

제목 : 가수 조 씨 또 대마초

인기가수 조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다섯 번째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조씨가 지난 1일 부산 C호텔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1, 95, 97년에 이어 지난해 7월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으며 올해 1월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3. 피고 한겨레신문사 기사내용〉

제목 : 조 씨 또 대마법 위반

〈나의 옛날 이야기〉 〈꿈에〉 등을 부른 가수 조 (사진) 씨가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다섯 번째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조씨가 지난 1일 부산시 K호텔 객실에서 친구 등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있어 이날 조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4. 피고 한국일보사 기사내용〉

제목 : 조 또 대마초

서울양천경찰서는 5일 가수 조 일산구 동) 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1일 공연차 묵었던 부산크라운호텔 객실에서 박모 씨 등 2명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조씨는 그러나 “최근 한약을 복용해 대마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6개월 복역 후 올해 1월 21일 출소하는 등 같은 혐의로 5번째 적발됐다.

〈5. 피고 세계일보사 기사내용〉

제목 : 가수 조 또 대마초

서울양천경찰서는 5일 가수 조 씨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부산시 C호텔 객실에서 선배 3명과 함께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꿈에’를 불러 인기를 끌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1991년 이후 4차례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다.

〈6. 피고 문화방송사 방송내용〉

제목 : 가수 조 대마혐의로 5번째 적발

‘꿈에’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 조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조씨에 대해 지난 1일 부산 범일동 모호텔의 객실에서 남자동료 3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지난 91년 이후 대마초를 피웠다가 적발되긴 이번이 다섯 번째이고, 번번이 구속됐는데 작년 7월에도 정역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액검사를 해보니 양성반응 즉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조씨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1.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제목 : 가수 조 씨 대마초 무혐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가수 조 가 이틀만에 무혐의로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씨의 혈액을 보내 정밀분석한 결과 대마를 피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2. 피고 중앙일보사

제목 : 바로잡습니다

6월 6일자 23면의 ‘인기가수 조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이 그 후 조씨를 무혐의로 석방했기에 바로잡습니다. 보도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조씨의 혈액을 정밀분석한 결과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3. 피고 한국일보사

제목 : 바로잡습니다

가수 조 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서울양천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는 보도(본보 6월 6일자)에 대해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음성반응으로 판정돼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7일 밝혔습니다.

4. 피고 세계일보사

제목 : 조 씨 ‘대마초’ 무혐의

가수 조 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는 보도(본보 6월 6일자)에 대해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음성반응으로 판정돼 경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6일 밝혀왔습니다.

5. 피고 문화방송사

제목 : 가수 조 씨 대마초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지난 달 6일 문화방송은 ‘조 씨 대마초’라는 제목으로 가수 조 씨가 마치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충분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피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이 이를 보도해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국과수에 의한 정밀감정결과 대마초 음성반응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사디즘적 병리현상이라는 표현은 특정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3. 22.자 판결 (98가합14917)

서울고등법원 2001. 5. 17.자 판결 (2000나18822)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부장판사 채영수)는 2001년 5월 17일 이 월간조선 기자가 주식회사 ‘월간 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가 작성한 기사내용은 전제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디즘적 병리현상’이라는 의견의 표명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 라고 한 표현은 일반의 독자의 관점에서 보아 원고가 의학적 의미에서 가학성 변태 성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로써 쓰여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함으로써 이 교수의 글의 논지를 왜곡하여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아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사상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의견 내지 논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라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1997년 2월초부터 5월말까지 방송되었던 통일원의 통일캠페인 광고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월간조선 9월호에 게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피고 정은 '월간 말' 1998년 12월호에 『'진보인사 죽이기'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 결 문

사 건 : 98가합14917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조선일보사 출판국 월간조선부 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승 환

피 고 : 1. 주식회사 월간 말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대표이사 박 출 열

2. 정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주식회사 월간 말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변론종결 : 2000. 2. 16.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0.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5년 소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조선일보사라고만 한다) 출판국 월간조선부에 계약기자로 입사하여 현재 월간조선부에 근무하는 기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월간말(이하 월간 말이라고만 한다)은 도서잡지 출판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진보적 시사종합지를 표방하는 월간지인 '월간 말'을 발간하고 있으며, 피고 정은 피고 월간 말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에 기재경위 및 내용

(1)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광고

통일원은 1997년 2월초부터 5월말까지 사이에 MBC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통일 캠페인 광고를 하였다.

① 라디오 광고 '통일이 되면'

여성 나레이터의 대사 : "통일이 되면 달라질 세상. 어서 보고 싶으시죠? ... (중략) ... 50년 넘게 다른 나라처럼 살아왔잖아요. 닫혀진 마음을 열고 서로 화해하는 게 시작입니다. ... (중략) ...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부터 하나되는 민족공동체 통일입니다."

② 텔레비전 광고 '마음의 거리'

농구선수 우지원과 미스코리아 한성주의 대화 : "애틀랜타에서 북한 선수를 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와 다른 사람인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 같더라구요. 참 반갑고 친해지고 싶어요. 마음의 거리부터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 아닐까요.", "(중략) 알고 보면 그렇게 가까운 거린데 마음의 거리는 북극보다 멀어요. 우리 마음의 거리부터 좁혀야겠어요."

나레이터의 대사 : "마음의 거리를 좁히면 통일의 길도 멀지 않습니다."

③ 텔레비전 광고 : '우리는 하나'

가수 이선희의 노래 가사 :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면 하나가 되죠. 마음을 열어요. 생각을 나눕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닌 더 큰 하나.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 되면 통일은 어렵지 않아요."

(2) 월간조선 1997년 9월호에 실린 원고 작성의 기사

원고는 위 통일 캠페인 광고가 그 동안 북한에서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광고의 취지와 제작경위 등을 취재한 다음 이에 관한 기사

를 작성하여 월간조선 1997년 9월호에 게재하게 되었는데, 그 기사 중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피고 정 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위 통일 캠페인 광고의 내용 중에는 ‘통일이 되면 나라꽃이 바뀔 수도 있고 수도 서울이 옮겨질 수 있으며 공휴일도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② 수도와 나라꽃이 바뀔 수도 있다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연장하면 국호도 바뀔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오해하기에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③ (텔레비전 광고 ‘마음의 거리’와 관련하여)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며 문제가 있다. 즉 과거 반공교육에서 예컨대 빨갱이라고 뿔달린 도깨비 그림으로 묘사했던 것은 북한집권층을 그렇게 묘사했을 뿐 주민들은 오히려 처량하고 험박은 모습으로 그려서 그림을 보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서 빨리 통일을 해 불쌍한 동포들을 구해내자’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위 광고는 1980년대 중반부터 친북 지식인들에 의해 종래의 반공교육 비판 이론으로 사용되어 온 논리, 즉 ‘빨갱이 그림을 보고 북한 사람이 새빨간 줄 알았다’는 논리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④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 온 데 비하여 북한이 정반대로 무력 적화통일을 지향해 왔고, 남북대화도 항상 북한측이 구실을 만들어 단절해 왔으며,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전쟁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당에 남한 국민에게만 마음을 열어야 통일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통일이 지연되는데 대한 책임의 소재를 흐리고 적과 아군의 개념 없이 민족만을 강조하는 셈이 되어 문제이다.

⑤ 위 통일 캠페인 광고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교수가 집필한 <나는야, 통일1세대>라는 책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이를 참고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 책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그 인권 실상이나 굶주림의 원인, 김일성이 어떤 인물인지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북한의 국가를 그대로 소개하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가사 전문을 실고 있는 등 어린 독자들에게 그릇된 통일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내용이 많고, 그리하여 위 광고들은 통일원이 3억8천만 원을 들여 북한의 통일전략을 홍보한 셈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이 사건 제1기사

피고 정 이 취재하여 작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월간 말이 <월간 말> 1998년 1호의

제 136면부터 제145면까지 사이에 게재한 기사 중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고 한다)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큰 제목 : 『농구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 라는 월간조선 이 기자의 정신상태』

② 작은 제목 : 『문제제기 월간조선의 이상한 반공 캠페인』

“이 기자의 주장 : 권오기 장관의 계인이 찍혀 있는 통일원 통일 캠페인 광고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한다. 우지원, 한성주, 이선희의 광고 멘트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기자가 97년 6월 28일 빅 총장을 후원하는 모임의 조찬회에 참여해 월간조선 7월호에 실린 기사를 발제한 뒤 극우단체와 검찰이 마녀사냥 소동을 일으켰는데…”

③ 본문 :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제2기사

조선일보사는 1998. 10. 19. 자신이 발간하는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의 제206면 이하에 『심층취재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라는 제목으로,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소위 최장집에 대하여, 그의 저서인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에 저술된 내용 중 몇몇 표현을 인용하여 그의 6·25 전쟁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그 직후부터 위 최장집의 6·25 전쟁관, 나아가 그 사상문제까지 쟁점화되어 위 최장집의 해명과 공직으로부터의 사퇴를 요구하는 측과, 그와 같은 위 <월간조선>의 기사가 논문의 전체 취지와 문장의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발췌된 부분적인 표현에 터잡아 전체적으로 위 최장집의 의도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월간조선> 및 <조선일보>를 발간하는 조선일보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 제기는 특정인의 ‘색깔’에 대한 표적보도를 통한 이른바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정 이 취재하여 작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월간 말이 1998년 12월호 제93면부터 제97면까지 사이에 게재한 기사 중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큰 제목 : 『‘진보인사 죽이기’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

② 작은 제목 : 『병리학적 심리분석 조선일보 왜 극우반공 집착하나』

③ 본문 :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최장

집에 대한 이른바 사상검증 논쟁의 과정에서 조선일보사가 자신이 발간하는 일간지 <조선일보> 및 월간지 <월간조선>을 통하여 보인 태도에 관하여는 정신분석학을 통한 병리학적 심리분석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조선일보의 기왕의 기사나 논설 등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해방 직전까지 몰두한 친일행각에 대한 원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반공에 앞장설 수밖에 없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체제가 고착화되자 반공을 내건 독재정권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체제가 고착화되자 반공을 내건 독재정권에 적극 협력하면서 1980년 ‘광주민중화운동’을 ‘무정부상태의 폭동사태’, ‘광주시민’을 ‘난동자’로 매도하는 반면 그들을 학살하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을 ‘구국의 영도자’로 찬양하는 등 자신을 확대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여왔다고 한 다음, 『마녀사냥에 동원된 조선일보 기자들의 정신분열증』이라는 작은 제목에 이어서 그런 마조히즘적 정신분열 증세의 징후는 조선일보 이 기사가 쓴 글에서도 감지되고, 한편 이른바 최장집 사건을 불러 일으킨 월간조선 우 기자에게서는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느껴지는데, 사디즘은 타인을 확대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증세를 말하고, 사디스트는 대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쾌락의 절정을 느끼므로 ‘특정한 이론을 신봉하거나 탐닉하지 않는 탄력적인 사고의 소유자’를 사상 검증을 통해 쓰러뜨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자극적인 일이 없으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여 전제와 결론을 잘라 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는’ 과감함과 그렇듯 거두절미한 대목에 대해 논리적 비약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 해석하는 지적 횡포만 있으면 된다고 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는 월간조선 이 기자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는 1997년 ‘이 교수 죽이기’에서 우 기자의 거의 흡사한 방식을 썼다. 먼저 채택한 비법은 “전제와 결론을 잘라 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는 과감함”이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 …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는 이 교수의 글에서 앞부분만 인용해 놓고 “공산주의가 썩 괜찮은 제도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기자의 ‘말장난’에 줄지에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린 이교수는 대선을 앞둔 미묘한 상황에서 하마터면 공안당국에 구속될 뻔하기까지 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기사에서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독자를 오도할 악의적인 의도하

에 제목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표기하고 모욕적·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가) 용공분자 부분

피고 정 ○ 은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문제제기 월간조선의 이상한 반공 캠페인 농구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 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라는 월간조선 이 ○ 기자의 정신상태』라는 큰 제목을 표기함으로써 일반독자에게 원고가 “농구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 사상적 문제 부분

피고 정 ○ 은 같은 기사에서 위 큰 제목 아래 “이 ○ 기자의 주장 : 권오기 장관의 계인이 찍혀 있는 통일원 캠페인 광고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한다. 우지원, 한성주, 이선희의 광고멘트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표기한 바, 원고는 자신의 기사에서 한 번도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우지원, 한성주, 이선희의 광고멘트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다) 마녀사냥 부분

피고 정지환은 역시 큰 제목 아래 “이 ○ 기자가 97년 6월 28일 박 ○ 총장을 후원하는 모임의 조찬회에 참여해 월간조선 7월호에 실린 자신의 기사를 발제한 뒤 극우단체와 검찰이 마녀사냥 소동을 일으켰는데…”라고 적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박 ○ 총장을 후원하는 모임은 극우단체로, 대한민국 검찰을 극우단체와 함께 마녀사냥을 하는 집단으로 모욕하면서 동시에 원고가 극우단체를 배후 조정하여 마녀사냥을 하는 비이성적 인간으로 해석되게 하였다.

(2) 판단

(가) 용공분자 부분

어떤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는 그 기사 전체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특정 단어나 문장만을 따로 떼어내어 평가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기사가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사의 내용은 그 전체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통상 제목은 간략하고 단적으로 내용을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를 갖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표현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본문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거나 독자에게 단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제목만으로 그 기사내용을

파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 정 이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으로 『농구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 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라는 월간조선 이 기사의 정신상태』라고 기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먼저 위와 같은 우리 사회의 유명인사들이 용공분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황당무계한 내용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 수준의 독자라면 그 제목만을 보고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가 위 사람들이 용공분자라고 했다는 단정적인 인상을 받았을 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일반 독자로서는 위와 같은 제목을 보게 되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건 제1기사의 다른 작은 제목과 본문을 더 읽음으로써 그와 같은 제목을 단 피고 정 의 의도는 무엇이고 또 같은 피고가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비판하고자 하는 원고의 주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나아가 본문을 통하여 이 부분에 관련된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정 이 위와 같은 제목을 사용한 것은, 원고가 위 월간조선 기사에서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광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주장은 별지 제1 기재와 같이 논리의 비약과 사실의 왜곡에 터잡은 것이라고 본문에서 조목조목 논평한 결론, 즉 원고의 논리대로라면 위 사람들이 용공분자라는 셈이 되어 그러한 논리에 터잡은 원고의 위 주장은 극히 부당하다는 같은 피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비유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기사 전체의 인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제목만으로 독자들이 마치 원고가 위 사람들을 용공분자로 단정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상적 문제 부분

원고가 위 월간조선 기사에서 위 통일 캠페인 광고 중에 나온 우지원, 한성주, 이선희의 대사나 기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친북 지식인들에 의해 종래의 반공교육 비판 이론으로 사용되어 온 논리, 즉 ‘빨갱이 그림을 보고 북한 사람이 새빨간 줄 알았다’는 논리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전쟁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당에 남한 국민에게만 마음을 열어야 통일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여 통일이 지연되는 데 대한 책임의 소재를 흐리고 적과 아군의 개념 없이 민족만을 강조하는 셈이 되며, 통일원이 많은 돈을 들여 북한의 통일전략을 홍보한 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논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논평은 요컨대 위 광고 중에 나온 대

사나 가사가 통일이나 반공교육에 관하여 그 동안 북한이나 친북지식인들이 주장해 온 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되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이른바 '용공성이 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정 이 이 사건 제1기사의 작은 제목에서 '원고가 위 사람들의 광고 중의 대사나 가사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용 관행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바를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적시한 것이라고 여겨질 뿐이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녀사냥 부분

신문이나 잡지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게재한 이 부분 기사는 그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극우단체를 배후 조정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시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제2기사 중 원고에게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고 한 부분이 과연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 정 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월간조선 기사를 작성한 사실 및 위 월간조선 기사는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면서 논리를 비약하여 한 비판이라는 나름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 것으로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또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제2기사의 전체적 흐름, 사용된 허위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비유적, 은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므로, 위 기사 부분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의견 또는 논평일지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거나 의견 또는 논평임을 빙자하여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 또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관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제2기사를 보면, 사디즘(sadism)이라는 말은 이성을 학대함으

로써 성적 쾌락을 느끼게 되는 변태 성욕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표현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사상의 과장 내지 강조, 또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라고 보여져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기사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기사의 체제와 내용에 나타난 피고 정. 의 주장과 논리의 전개 방법 및 작은 제목으로 사용된 “마녀사냥에 동원된 조선일보 기자들의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과 합체되어 이를 읽는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조선일보사가 과거의 친일행각을 은폐하고자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사에 소속된 원고가 회사측의 요청, 지시 또는 사주에 의하거나 스스로 그 의도에 영합하여 앞에서 본 월간조선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은 의도나 경위로 위 월간조선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2기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그 게재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2기사의 게재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기사의 작성 및 게재에 이르게 된 경위,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 및 내용과 그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원고와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9.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3.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22.

재판장 판사 조 용 구

판사 조 양 희

판사 이 재 석

〈별 지〉

통일원의 홍보물이 연방제 연상케 한다?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독자는 우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리 지겨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 흑백논리식 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자 5분 동안 아래에 시험문제를 풀어보자.

* 지문을 읽고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① “통일이 되면 수도는 어디가 될까요? 나라꽃은 무엇이 될까요? 공휴일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② “애틀랜타에서 북한 선수를 봤어요. 어렸을 땐 우리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참 반갑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마음의 거리부터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 아닐까요?”

“(중략)알고 보면 이렇게 가까운 거린데 마음의 거리는 북극보다 멀어요. 우리 마음의 거리부터 좁혀야겠어요.”

③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면 하나가 되죠. 마음을 열어요. 생각을 나뉘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닌 더 큰 하나,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 되면 통일은 어렵지 않아요.”

1. 통일이 되면 수도는 어디가 될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평양 ④ 개성

2. 밑줄친 부분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① 북한 사람은 빨이 달리고 새빨간 사람이라는 식의 반공교육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남북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마음을 열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반공교육은 더욱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야 한다.

3. 위의 지문 전체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남한의 통일정책인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강조한 것이다.

② 북한의 통일정책인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는 이적표현물이다.

1번 문제에 독자는 어떻게 답했는가.

어떤 독자는 통일 이후 수도는 당연히 서울이어야 한다고 답했을 것이다(실제로 세계일보가 95년 2월 실시한 국민의식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그렇게 답했다). 또 어떤 독자는 서울과 평양의 중간에 있는 개성이 적합하다고 답했을 것이다(실제로 대통령자문 기구인 21세기위원회는 94년 5월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 수도의 가장 강력한 후보지는 개성을 꼽았다). 소수이긴 하지만 평양을 선택한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실제로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새 수도의 후보지로 평양을 꼽은 사람은 5.7%였다).

2번 문제와 3번 문제에 독자는 어떻게 답했는가.

아마도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독자라면 모두 ①번을 선택했을 것이다. 물론 ②번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원적 견해의 상호 존중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다. 판단의 준거가 시대적 조류와 상식에 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1번 문제의 답은 반드시 ①번이어야 하며 2번 문제와 3번 문제의 답은 반드시 ②번이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그는 나아가 자기와 다른 답을 선택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까지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독자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다. 월간조선 97년 7월호에 『문제제기/통일원의 이상한 통일 캠페인 -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라는 기사를 쓴 이 기자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이 기자는 자신의 기사에서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고 대한민국의 국기와 정통성을 뒤흔들고 있다”고 단정했다. 사실 위의 지문은 통일원이 97년 2월초부터 5월 말까지 MBC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광고한 통일 캠페인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지문①은 라디오 광고 「통일이 되면」 중 여성 나레이터의 대사였으며 지문 ②는 텔레비전 광고 「우리는 하나」 중 가수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의 가사였다.

이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용공·이적표현물을 제작한 셈이 된다. 권오기 통일원장관이 용공·이적표현물 제작의 총지휘자이고 농구선수 우지원 씨, 미스코리아 한성주 씨, 가수 이선희 씨가 용공·이적표현물 유포자라고

주장하는 월간조선 이 기자, 그의 정신상태를 검증해 보자.

기자의 편견이 비약과 궤변의 뿌리

이 기자가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을 용공·이적표현물이라도 되는 듯이 주장한 근거는 세 가지,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① “‘통일이 되면 나라꽃이 바뀔 수 있고 수도 서울이 옮겨질 수 있으며 공휴일도 바뀔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삽입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게 아니냐.”(96쪽)

② “‘어렸을 땐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더라’는 대목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며 (사상적으로)문제가 있다.”(98쪽)

③ “‘마음을 열자’고 하는 것은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당에 남한 국민들에게만 적과 아군의 개념이 없이 민족만을 강조하는 셈이다.”(100쪽)

이 기자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그가 제시한 근거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여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의 주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궤변에 불과하다. 즉 논리의 비약과 사실의 왜곡에 바탕한 주관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의 첫 번째 주장부터 보자.

독자는 우선 캠페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자가 문제삼은 광고의 원래 내용은 “수도는 어디가 될까요? 나라꽃은 무엇이 될까요? 공휴일은 어떻게 바뀔까요?”라고 의견을 묻는 의문형 문장이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의문부호가 세 개나 등장하는 이 문장을 “나라꽃이 바뀔 수도 있고 수도 서울이 옮겨질 수 있으며 공휴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단정적인 서술형 문장으로 아주 손쉽게 둔갑시켜 버렸다. 그는 한술 더 떠 통일원이 마치 북한 중심으로 수도와 나라꽃과 공휴일을 바꾸자고 한 것처럼 몰아갔다. 그가 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증거다.

“수도가 바뀌어야 한다면 북이 중심이 된 통일의 경우만 수도 서울이 평양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무궁화가 통일 후에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연장하면 대한민국이란 국호도 통일 이후에는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의 ‘해방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들의 주장대로 ‘친일파들에 의해 미제 앞잡이와 손잡고 세운 괴뢰정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통일원은 수도와 나라꽃과 공휴일이 바뀌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모든 것이 북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다. 특히 통일원은 월간조선 97년 7월호에 게재된

답변서를 통해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광고기법”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는 스스로 고백한 바 처럼 극단적인 논리를 전개했다. 결국 그는 상상력을 동원해 주관적인 해석을 시도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상상력은 시인이나 소설가의 영역이다. 물론 기자라고 해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상상력의 발휘가 어떤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을 통해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 기자는 기사를 쓰기 전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기자들은 취재원의 답변을 이해 못할 수도 있다. 또 답변내용을 부정확하게 기록할지도 모른다. 또는 발언의 전체적 배경과 맥락을 모를 수도 있다. 기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방해할 경우도 있다.”(브라이언 S. 브룩스 공저, 한국언론연구원 편역, 〈취재와 보도〉 40쪽)

이 기자는 논리의 비약과 함께 사실을 왜곡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그는 기사 첫머리에서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쓴 바 있다. 물론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7월 8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이 자민련 의원은 “대한민국의 통일원은 국민의 혈세인 3억8천만원을 들여 북한의 통일전략을 홍보한 셈”이라고 발언했다. 7월 17일 통일대비포럼도 조선일보 5면에 “통일원 해체하고 통일원장관 물러나라”는 5단 광고를 실었다. 다음날인 7월 18일에는 민족안보구국통일연합회가 기관지 신문고를 통해 통일원장관의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기자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일이다(참고로 월간조선 7월호는 6월 20일경 발행된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는 이 기자 자신이었던 것이다.

“반공에만 매달리는 것은 공허하고 시대착오적”

더욱이 그는 6월 28일 통일대비포럼이 세종호텔에서 주최한 박 총장 후원회 조찬모임에 참석하여 월간조선 7월호에 실린 문제의 기사를 발제했다. 이날 조찬회에는 오 씨, 이 씨, 이 의원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찬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인사인 김 북한문제연구소장의 증언을 들어보자.

“난 이 기사를 그날 처음 봤는데 젊은이가 좀 보수적이더군. 그 사람이 월간조선 기사를 발표했어요, 그걸 듣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마다 한마디씩 다 해서 무슨 성토대회처럼 됐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되다고. 그런 걸 모아서 광고를 내기로 하고

그 일은 의장단에 맡기자고 했어요.”(길 97년 9월호 84쪽)

따라서 이 기자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쓰기보다는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거나 “내가 논란을 조장할 것이다”라고 솔직하게 밝혔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야 한다.

이 기자가 들이댄 잣대는 반공이었다. 그런 그였기에 “(북한 사람들이) 어렸을 땐 우리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더라구요”라는 농구선수 우지원 씨의 말도 예사롭지 않게 들린 모양이다. 이 기자는 우선수의 발언을 “납득할 수 없으며 문제가 있는 내용”(98쪽)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통일원 통일교육원 홍보부의 정 과장에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정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빨갱이라고 묘사하고 빨 달린 도깨비로 그려진 그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훗날 북한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고는 놀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꾸 북한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면 통일에 장애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 기자는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이런 시각이야말로 ‘친북 지식인들의 논리’라고 규정해 버렸다. 그는 21세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보수 논객들조차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일까.

“한국 보수주의는 반공주의에 안주하고 있을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남북간에는 아직도 냉전이 지속되고 있고 반공주의는 그 타당성을 아직 잃고 있지는 않으나 보수주의가 반공을 국제적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던 냉전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이제 반공 이상의 더 높고 깊은 보수주의 본연의 가치관과 원리를 되찾아야 할 때에 처해 있다. 만약에 보수주의가 종전대로 반공에만 매달려 있으면 보수주의는 급속도로 공허하고 시대착오적인 사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박근 저,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 머리말)

이 기자는 통일 캠페인 내용 중에서 “마음을 열자”는 대목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남한 국민에게만 마음을 열자고 하는 것은 적과 아군의 개념을 모호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연다는 대목에서조차 용공의 혐의를 느낀다는 이 기자. 그렇다면 그는 남북한 국민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일까. 참으로 딱한 일이다. 통일원의 답변을 들어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마음을 열자는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보다 본격적으로 주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나 체제를 용인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북한 동포를 이끌어 나가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가 통일원만 문제삼은 것은 아니다. 도리어 주공격의 대상은 이 외국어 대 교수였다. 그것은 기자의 분량에서도 그대로 증명된다. 7월호 기자의 분량은 총 13쪽. 그런데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캠페인』이란 기자의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교수와 관련된 분량이 무려 8쪽에 이르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과 조선일보도 사상으로 수상?

이 기자는 통일원 실무자와 광고회사 직원에게 취재망을 이어가던 중에 이 교수의 저서가 끼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아마도 이교수와 그의 저서가 ‘용공 광고’의 진원지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는 기자의 후반부에서 그가 이 책의 ‘용공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책을 통일원 ‘용공 광고’의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이 책은 수많은 참고자료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통일원의 답변을 들어보자.

“이 책이 ‘통일 홍보 캠페인의 주요 자료가 되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무 차원에서 공익광고 문안 작성자에게 제공된 여러 참고자료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의 <나는야, 통일 1세대>는 과연 어떤 책인가. 이 책은 2년 전인 95년 10월 중고생 참고서 전문 출판사인 천재교육에 의해 발간됐다.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도리어 조선일보(95년 11월 24일자)와 민주평통(95년 12월 7일자) 등 보수적인 언론매체가 신간안내를 통해 좋은 책으로 소개했을 정도다. 표지에 ‘어린이를 위한 통일 이야기①’라는 부제가 적혀있는 이 책은 「이 책을 펼친 어른들에게」 「이 책을 읽을 어린이에게」 등 2개의 머릿말과 의문형으로 된 27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소제목들은 다시 어린이들이 쓴 글 2편. 그 글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교수가 직접 집필한 부분). 북한 이야기(편집부에서 내외통신, 조선일보 등을 이용해 흥미있게 작성한 부분) 등 세 부분으로 짜여져 있다. 목차에 소개된 소제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나라 이름은 무엇으로 바꿀까』, 『민주주의가 될까 공산주의가 될까』, 『수도는 어디에』, 『금강산에 수학여행 갈 수 있을까』, 『통일되면 북한에도 미니스커트가 유행할까』 ….

이 기자가 제일 먼저 의혹을 제기한 것은 통일원 캠페인 광고에서도 부분적으로 차용한 바 있는 바로 이 부분, 그러나 이교수는 이 책 속에서 통일 이후의 수도 선정과 관련해 “최선의 방법은 서울은 수도로 그냥두는 것이고 옮기더라도 지역상 한반도의 중심이자 한강을 끼고 있는 용수량이 풍부한 한반도의 허리부분이 될 것”(28-29쪽)이라고 밝혔다. 공휴일과 관련해서도 “통일이 되면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명절에서 빠질 것”(83쪽)이라고 기술했다. 애초 이 부분을 문제삼은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이 기자가 이 교수가 직접 쓴 글 중에서 용공협외가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두 가지, 다음은 첫 번째 부분이다.

① “우리는 남북한이 어떠한 통일과정을 밟아 나가느냐에 따라 통일 뒤의 사회가 크게 바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식이나 북한식이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어떤 체제가 되든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기자는 특히 “남한식이나 북한식이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그는 이것을 “남한식도 아니고 북한식도 아닌 통일”(105쪽)로 확대 해석하고 연방제를 주장한 것이 아니냐는 투로 추궁했다. 그러나 한번 따져 보자. 남한식도 아니고 북한식도 아닌 통일이 왜 연방제인가. ‘북한식’ 통일이야말로 바로 연방제 아닌가, 또한 이 책 어디에도 연방제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도리어 이교수는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기는 체제를 강조했다.

사실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94년 광복절 경축사)라고 먼저 밝힌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더욱이 김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조선일보는 칭송을 아끼지 않은 바 있다. 조선일보는 94년 8월 16일자 사설에서 “남북관계를 타결하려는 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통일에 접근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은 것도 종래와는 다른 시대적 소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이 기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일보도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내가 하면 알 권리, 남이 하면 이적행위?

다음은 이 기자가 시비를 건 두 번째 부분이다.

“공산주의는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자본주의는 누구든지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체제는 지난 역사에서 보면 큰 단점이 드러났어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거든요….”

물론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자본주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주의가 소멸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현실을 서술하는 이 교수의 논리에서 도입부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교수의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

주의 체제는 결국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도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되는 것은 처음엔 어려움이 좀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는 시치미를 뚝 떼 채 이교수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과연 이기자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이 기자는 천재교육 편집부가 따로 묶어 각 항목 뒤에 배치한 「북한 이야기」의 일부 내용까지 비판했다. 이 책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가사 전문이 비판 없이 그대로 소개돼 있으며, 북한의 어린이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을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운다고 소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상식을 소개한 것조차 용공으로 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관인 것은 이 책이 발간될 무렵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기획을 연재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선일보 95년 5월 23일자 『얼마나 아십니까 - 북한상식』 62편에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일부와 「애국가」전문이 소개되어 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책에서 소개하면 이적 행위이고 조선일보가 소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란 말인가.

트집잡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이 기자는 <나는야, 통일 1세대>가 북한의 나쁜 점은 감추고 좋은 점만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북한을 공짜로 병도 고쳐주고 생필품과 집도 공짜로 나눠주는 나라로 묘사하는 등 객관성이란 미명 아래 북한이 살만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분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이 책의 곳곳에서 북한의 문제점과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북한에서의 기차의 상습적인 연착과 기차 안에서 소매치기의 활개”(66쪽), “양력설에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을 참배하고 김정일의 새해 연설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일”(84쪽), “청바지가 한달 월급의 5배나 될 정도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점”(90쪽),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96쪽), “텔레비전의 절대적 부족”(102쪽), “김정일은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에 귀순하든지 아니면 동독의 호네커처럼 망명하게 될 것”(155쪽), “의료시설과 약의 부족으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156쪽) 등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의도적인 인용과 생략으로 빚어낸 왜곡보도

이 기자는 97년 9월호에 『추적/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참고도서에 글을 쓴 두 어린

이가 말하는 왜곡·변형의 사례 -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기사를 읽고 다시 이 교수를 공격했다. 그는 이번에는 ‘도덕성’을 물고 늘어졌다. 54건의 어린이 원고 중 16건의 원고를 입수해 면밀히 대조한 결과 두 어린이의 원문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 이 기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 어린이의 원문 중에서 “북한 주민에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못된 마음을 알려 주어야 하겠다. 그러면 북한 국가를 애국가로 쓰자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애국가는 그대로 쓰고 …”라는 대목이 삭제됐다. 그런데 이 교수는 전문가의 답변에서 “통일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바뀔 것이 많겠네요. 나라 이름, 국기, 나라꽃, 애국가뿐만 아니라 …”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② 한 어린이의 원문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유지시켜 준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선 항상 전쟁준비에 자유란 언어도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대목이 “공산주의 국가에선 항상 전쟁 준비를 한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변형됐다. 그런데 이 교수는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 공산주의는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능력 없는 사람까지 같이 먹여 살리자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자는 좋은 뜻이 좋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매우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지요”라고 상반된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 책의 편집 책임자였던 천재교육의 김 씨는 “어린이 글의 첨삭은 편집과정에서 글의 내용이 1쪽을 넘을 경우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집기술상 한 것이지 결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만약 분량이 넘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 그 원고의 맨 뒤에 있던 세 문장을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1쪽이 넘지 않는 다른 원고의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편집자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교수는 어린이 글의 편집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기자는 이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저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따졌다. 기사에서 “자신의 글에 방해가 되는 어린이의 글은 삭제한 채”(93쪽)라는 단정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그러나 논리 전개과정에서 이 기자는 큰 실수를 범했다.

먼저 이 기자의 주장 ①을 보자. 그는 이 교수가 “애국가는 그대로 쓰고”라는 한 어린이의 글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글이 실려 있는 「나라 이름은 무엇으로 바꿀까」라는 항목에는 다른 어린이의 글이 또 하나 실려 있다(각 항목에는 두 어린이의 글이 실려 있다. 이 교수는 이 두 개의 글을 읽은 뒤 전문가의 답변을 썼다). 이 어린

이의 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덧붙여져 있다. “애국가는 요즘 유행하는 서태지나 김건모의 랩송으로? 아니면 북한 노래로? 나는 애국가가 은은한 느낌을 주는 가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교수의 답변은 바로 이 글을 읽은 뒤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가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자가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다. 결국 이기자는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껀변만 늘어놓은 셈이다.

이 기자의 주장 ②도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이 교수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한 글에서 의도적으로 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마치 이교수가 공산주의를 찬양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교수의 글에는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는 등의 대목이 있다. 이 기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이 부분을 애써 무시해 버린 것이다.

원고 내용이 침삭·변형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선정적인 기사 제목과는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 기자는 총 54편에 이르는 어린이 글 중에서 2편만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의도적인 침삭은 없었다는 반증이다. 만약 저자나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침삭하려 했다면 다른 원고에서도 삭제·변형 사례가 당연히 발견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문제의 원고를 쓴 한 어린이는 이책을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당사자가 이의를 달지 않은 것은 침삭 부분이 글 전체의 맥락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서 한 가지 꼭 지적할 것이 있다. 이 기자는 명백하게 출판사의 편집권을 침해했다. 한 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라. 월간조선은 항상 독자투고나 청탁원고를 줄이거나 다듬지 않고 그대로 싣는가. 편집기술상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제3자가 나서 월간조선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삭제·변형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한다면 어쩔 것인가. 92년 대선에서 국민당이 편파·왜곡보도를 규탄하며 불매운동을 벌이자 언론탄압이라며 즉각 응전했던 조선일보가 아닌가.

이 기자에게 보내는 시험문제

월간조선은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이 기자의 기사에 대한 이 교수의 반론 보도문을 두 차례나 연속적으로 실어야 했다. 또한 이 기자와 극우단체의 선동에 놀아난 검찰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결국 이기자의 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이 기자는 아직 젊다. 그런 그가 시대착오적인 50년대식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

혀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매우 선정적인 제목의 두 기사를 통해 진정으로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이번 파문의 배경에 대한 이 교수의 진단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이교수는 “치열한 보도경쟁에서 시선을 끌어 보려는 보수언론의 저속한 상업주의와 옛 영화를 꿈꾸는 극우인사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글을 마치며 이 기자에게 시험문제를 보낸다. 다음과 같은 글을 읽으면 이기자는 여전히 연방제를 연상하는가. 남북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어야 한다고 믿는가.

“코리아 팀의 이분희 누나가 나는 참 좋았다. 경기할 때 표정도 그렇고, 얼굴도 복실복실한 것이 꼭 우리 누나 같았다. 결승전 때 덩야핑이란 두꺼비같이 생긴 중국 선수에게 지는 것을 보고 나는 눈물이 났다. 그런데 이분희 누나는 울지 않았다. 그런 누나를 보면서, 북한은 이분희 누나 같이 생긴 여자가 사는 곳이구나 생각했다.”(〈우리교육〉 91년 6월호 『아이들 소리』 중에서)

2심 판결문

사 건 : 2000나1882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이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조선일보사 출판국 월간조선부 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승 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월간 말
대표이사 이 명 순
2. 정
피고 1, 2의 주소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4의 10 4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갑 수

변 론 종 결 : 2001. 3. 29.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3. 22. 선고 98가합14917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나.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이하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1)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먼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여야 하고,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기사가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기사 중 원고에게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고 한 부분이 과연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

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제2기사에서의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 라고 한 표현은 일반의 독자의 관점에서 보아 원고가 의학적 의미에서 가학성 변태성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로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피고 정 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 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함으로써 이 교수의 글의 논지를 왜곡하여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아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기사에서의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 라고 한 표현은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 내고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그 본래의 뜻을 왜곡함으로써 이 교수를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았다는 것이 그 전제 사실이라 할 것이고, 기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상대의 글의 의미를 왜곡하여 학자를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았다면 이는 그 기자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 정 은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언론매체에 게재함으로써 위와 같은 전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위법성에 관한 판단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공익성

이 사건 제2기사는 원고가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광고가 그 동안 북한에서 주장하여 온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하여 월간조선 1997년 7월호에 『문제제기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 캠페인: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라는 제목의 글을, 월간조선 1997년 9월호에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각 게재하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통일에 관하여 쓴 글에 대해 이 교수가 해설을 단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책의 이적성을 비판하였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여 이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등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원고가 작성한 위 기사들이 매우 편협한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도 이 교수를 비판하기 위하여 그 글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적성을 문제삼은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진실성

이 사건 제2기사에서의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 라고 한 표현은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그 본래의 뜻을 왜곡함으로써 이 교수를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았다는 것이 그 전제 사실이고 피고 정은 “공산주의는 인간이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 ...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는 이 교수의 글에서 앞부분만 인용해 놓고 “공산주의가 썩 괜찮은 제도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과연 피고 정 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와 같은 비판이 원래의 글의 의미를 왜곡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나오는 이 교수의 위 부분에 해당하는 글은 통일이 되면 민주주의가 될까, 공산주의가 될까 라는 의문에 대하여 공산주의는 싫다고 하는 내용과, 중립국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2편의 초등학교생의 글을 읽고 북한과 남한을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로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달았다(위 책 22-23면).

“공산주의는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는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능력없는 사람까지 같이 먹여 살리자는 거예요. 다같이 잘 사는 뜻이 좋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매우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지요.

자본주의는 누구든지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체제는 지난 역사에서 보면 큰 단점이 드러났어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거든요.

그러나 오랫동안 자본주의 나라들과 힘을 겨루던 사회주의 나라들은 지금 거의 무너져
담니다. 몇 년 전부터 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로 바뀌었지
요.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직장과 집을 정부가 다 구해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대충대충 하
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본주의 체제
를 공산주의 체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
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도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되는 것은 처음엔 어려움이 좀 있
을지 몰라도 역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원고는 월간조선 1997년 9월호에 게재한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제목 하의 글에서 위 부분의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후 비판하고 있
다(위 책 95면).

“〈공산주의는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
니다.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는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능력없는 사람까지 같이
먹여 살리자는 거예요. 다같이 잘 사는 뜻이 좋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매우 착하
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지요〉(22쪽) … 공산주의가 썩 괜찮은 제도처럼 어린이들에게
보일 소지가 있다.”

원고는 공산주의 사회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말한 부분만을 끊어서 인용
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가 매우 좋은 제도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술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이러한 문제제기로 발간되었을 때 조선일보가 스스로 신간안내를 통해 좋은
책으로 소개하였고 그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되던 이 교수의 위 책이 그 이적
성이 사회문제화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 교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으로 기소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2001. 2. 23. 선고 97고단10828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서 위 책이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소멸과 남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
을 역사의 추세라고 규정하여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이 교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 이 작성한 위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정 의 위 사디즘적 병리현상이라는 의견의

표명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표현이 사상검증의 와중에서 나온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따로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정 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5. 17.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정 진 경

판사 권 기 훈



원고가 개설한 무료혈액센터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단속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2001. 5. 23.자 판결 (2000가합21104)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1년 5월 23일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탈법적인 무료혈액투석센터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원고도 이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무료혈액투

석센터는 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② 심지어는 술집에서 호객행위를 하듯 소위 ‘삐끼’를 두고 환자 1명을 소개하면 현금으로 5~8만원의 돈을 주고, 일정수 이상을 채우면 평생동안 무료로 혈액투석을 해준다고 피어 환자를 유치하며, ③ 이러한 환자유치를 통하여 환자가 많아지자 한번 투석에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2시간만 투석하고 인근 불법기관에 다시 보내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일반 독자가 위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제목의 크기와 내용,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개설한 무료혈액투석센터도 위와 같은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단속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①부분의 사실적시와 의견표명, ②, ③부분의 사실적시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 개설의 무료혈액투석센터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환자들에게 식사 및 지하철 승차권을 제공하며,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를 하는 등 위법한 환자 유치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인 영리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결국 보험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전문가인 의사들로 이루어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피고의 이 사건 기사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해 “의견표명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는데, 피고 주장의 사유들은 위 ②, ③부분의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정정보도 게재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자신이 발행하는 의협신보 2000년 3월 6일자 제11면에 『탈법 ‘무료혈액투석센터’ 기승』이라는 제하로 원고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환자 유치행위 등 불법을 일삼는 탈법적인 무료혈액투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0년 3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0서울중재98)을 하여 같은 해 3월 27일자 의협신보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바 있고, 피고가 3월 27일자에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자 또다시 중재신청(2000서울중재112)을 하여 의협신보 4월 13일자에 새로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0가합21104 손해배상(기)

원 고 :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4 층정타워 6층

대표자 이사장 김 상 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고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302-75

대표자 이사 김 두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현 희

변론종결 : 2001. 4. 4.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6.부터 2001. 5.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송달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 <의협신보> 제1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문 부분은 고딕체 20호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3. 만약 피고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주 금 2천만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 3, 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11, 12호증, 증인 오윤수(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을제9, 13호증, 증인 오 의 일부 증언

가. 원고 개설 의원의 무료혈액투석

(1) 원고는 1991. 9. 6. 장기이식사업필요자의 실태조사사업, 헌혈사업에 대한 계도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다가,

만성신부전환자는 1주일에 2~3회 혈액투석을 해야 하고, 그 비용이 1회당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1999. 3.경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정관에 '불우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투석사업'을 사업에 추가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위 무렵부터 서울과 인천에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원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환자의 재산상태와 투석연수 등을 고려한 환자의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환자들로부터는 본인부담금(혈액투석의 경우 치료비용의 20%는 환자 본인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을 받지 아니하고 혈액투석을 시행하고, 원고가 펼치는 만성신부전환자의 투석비 마련을 위한 '사랑의 고리운동'을 통하여 모은 돈으로 위 치료비 및 사업비용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혈액투석비용의 보험자부담금(치료비용의 80%)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나.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

(1) 피고는 국민보건의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의학 발전 및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목적 하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일주일에 2회씩 의협신보를 발행하여 오고 있다.

(2) 원고가 위와 같은 무료혈액투석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장애인이나 해고근로자, 실직자, 노인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사례가 있음을 파악한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의사회는 1998. 3.경에 주무부서에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주무부서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에서 내원하는 환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부설 의료기관에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진료한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시를 한 바 있다.

(3) 일부 언론은 1999. 9.경 노인들을 무료로 진료해준다는 복지법인 부설 병원이 전국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 병원들은 노인 환자들을 동원하여 무료진료를 하고 지역의료보험으로부터 보험자부담금으로 진료비의 70%를 받아내는 방법 등으로 지역의료보험재정을 잠먹고 있음을 지적하고, 위와 같이 병, 의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하고 환자를 유치

한 경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4) 또한 피고 협회에는 내과 의사가 아닌 흉부외과 의사 또는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인공투석을 하는 사례 등 탈법사례가 많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무료혈액투석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인공신장실을 갖춘 병·의원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의 면제를 요구받는 사례까지 생기는 등 기존의 의료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5) 그러던 차에 피고는 2000. 3. 6. 발행의 의협신보 제11면에 별지 제1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6) 의협신보는 발행부수가 약 40,000부 정도인데, 회원인 의사들에게 약 35,000부 발송되고, 나머지는 대학병원 등에 배포된다.

다. 이 사건 기사 게재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기사를 접한 원고는 위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반론보도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3. 27.자 의협신보에 원고의 반론보도문(별지 제2기사)을 게재하였으나 바로 그 기사 옆에 별지 제3기사를 게재하였다.

(2) 원고는 다시 위 27.자 기사(별지 제3기사)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다시 같은 해 4. 13.자에 별지 4기사와 같은 원고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과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탈법적인 무료혈액투석센터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원고도 이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무료혈액투석센터는 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② 심지어는 술집에서 호객행위를 하듯 소위 ‘빼끼’를 두고 환자 1명을 소개하면 현금으로 5~8만원의 돈을 주고, 일정수 이상을 채우면 평생동안 무료로 혈액투석을 해준다고 피어 환자를 유치하며, ③

“이러한 환자유치를 통하여 환자가 많아지자 한번 투석에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2시간만 투석하고 인근 불법기관에 다시 보내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일반 독자가 위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제목의 크기와 내용,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개설한 무료혈액센터도 위와 같은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단속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①부분의 사실적시와 의견표명, ②, ③부분의 사실적시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 등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과다한 환자유치로 인한 부실진료 또는 과잉진료의 위험성이 있음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진실성

이 사건 기사 중 ①부분은 원고 개설의 무료혈액투석센터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는 환자유치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이라는 의견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개설의 혈액투석센터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 일반 병·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환자유치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으며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 등은 법상 금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불법으로 논평한 위 ①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원고 개설의 무료혈액투석센터가 이 사건 기사의 ②, ③부분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상당성

피고는, 원고 개설의 무료혈액투석센터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환자들에게 식사 및 지하철 승차권을 제공하며,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를 하는 등 위법한 환자 유치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인 영리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결국 보험제정의 악화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전문가인 의사들로 이루어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피고의 이 사건 기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견표명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들은 위 ②, ③부분의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그간 일간신문 및 방송 등에 보도된 자료들을 종합하고 자체 접수된 회원들의 제보 및 자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는 상당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어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②, ③부분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4) 그밖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과실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기사가 원고를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 및 내용, 특히 오로지 원고만이 무료혈액투석센터의 개설주체로 명시적으로 거론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었다거나 원고를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가. 손해배상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②, ③부분으로 인하여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예, 신용을 침해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위 기사의 게재경위와 내용,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기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기사가 주는 인상의 강도, 피고가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의협신보의 발행부수와 그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반론보도문을 두차례(별지 제2, 4기사) 게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이미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별지 제2기사)를 게재하면서 같은 면에 다시 별지 제3 기사를 게재하여 별지 제4 기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된 경과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반론보도가 있었다 하여 원고의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정보도 등

원고는 나아가, 위와 같은 위자료의 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이를 불이행 경우의 간접강제를 구하나, 이 사건 기사에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외에 별도의 정정보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명예훼손 기사 게재일인 2000.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1. 5. 2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2001. 5. 23.

재판장 판사 안 영 름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제1 기사〉

脫法 ‘무료혈액투석센터’ 기승

본인 부담금 안받고 환자 유치 발 벗고 나서

의료체계 치명타 ... 임상병리사가 과잉진료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까지 잇따라 개설

국민건강 차원 불법기관 대대적 단속 시급

최근 몇년새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탈법적 의료행위에 이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무료혈액투석센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기존 의료체계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무료투석센터는 서울을 비롯 부산·대전·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으며, 특히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도 이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의원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인공신장실을 도입, 혈액투석을 시행해 온 A원장이 인근에 무료투석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개업 10년만에 문을 닫았다고 주변 동료가 本紙에 알려왔다.

무료투석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과 마찬가지로 형태로 의원을 개설한 다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않고, 환자 유치행위 등 각종 불법을 일삼고 있다.

특히 경기도 부천의 G의원과 H의원의 실제 개설자는 '임상병리사'로 알려지면서 과잉진료까지 일삼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회원들의 전화 제보에 따르면 이들 불법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술집에서 호객행위를 하듯 소위 '빠끼'를 두고 환자 1명을 소개하면 현금으로 5~8만원을 주고, 일정수 이상을 채우면 평생동안 무료로 혈액투석을 해준다고 꾀고 있다는 것이다.

혈액투석환자 중 위급하고 중환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한번 투석에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도 2시간만 투석하고 인근 불법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도 환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알려옴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불법 투석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나 보험자단체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만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다.

무료혈액투석센터는 현재 서울을 비롯, 대전 5곳 논산 2곳 등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도 부산·대구·강릉에 개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2 기사〉 반론보도문

타의 모범되는 사랑의 인공신장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인공신장실에서는 영세한 환자들에게 무료투석치료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의료보호환자도 부담하는 조혈제 등 모든 약값도 받지 않고 식사도 무료 제공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본부에서는 무료로 투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99. 3. 10)을 얻었으며,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 환자들을 선별하고 있다.

한편 더 많은 환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작년 12월 서울시 각 구청마다 영세한 환자들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도와주고 있어서 다른 병원과는 대조적이다.

경제한파로 인해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그 횟수를 줄이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요청으로 문을 연 '사랑의 인공신장실'은 내집처럼 편안한 환경을 갖추 다른 병원과 차별화를 시도, 육체적인 진료와 아울러 정신적인 치료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환자들을 위해 본부는 서울과 인천에 이어 부산, 대구에서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다.

〈제3 기사〉

무료 투석 적극 대처를...

장기기증본부 부산·대구에도 무료 인공신장실 개설키로

치료비·약값 안받고 식사까지 제공 의료계 타격 불보듯

서울과 인천에서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부산과 대구에 똑같은 형태의 무료 인공신장실을 개설할 방침이어서, 의료계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투석치료비는 물론 조혈제 등 약값도 받지 않고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인공신장실을 전국에 걸쳐 개설할 경우 기존 의료체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신장학회 한 관계자는 “장기기증본부측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의 1인당 적정 환자수가 70~80명인 점을 감안할 때 관리의사 한사람이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학회는 “특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신장질환 뿐 아니라 내과계의 여러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드시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환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들어 일부 회원이나 일반인이 무료혈액투석센터를 개설한 다음 의료보험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심한 경우 환자유치 행위까지 일삼는 등 의료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전국회원의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정부 당국에 법적인 제재조치와 함께 면밀한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4 기사〉 반론보도문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랑의 인공신장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본지 3월 27일자 10면 『무료투석 적극 대처를...』 제목의 기사와 관련, 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운동본부는 91년 설립 이후 장기기증 운동을 벌여 왔으며,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일주일에 3번씩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나 월 수십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혈액투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정관을 변경, '불우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투석사업'을 사업에 추가하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서울과 인천에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원,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영세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한 무료혈액투석 사업을 하고 있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과 일반시민들이 후원하는 '사랑의 고리운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어떤 불법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별 지〉 정정보도문

제 목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인공신장실 운영 적법 확인돼

본 문 : 사단법인 한국 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협신보>는 2000년 3월 6일자 제11면에서 『脫法 무료혈액투석센터 기승』이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무료투석센터가 탈법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환자 유치행위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졌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991년 설립 이후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위한 장기기증운동을 벌여왔는데,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일주일에 3번씩 평생토록 혈액투석(인공 신장에 강제로 피를 걸러주어야 하는 것)을 받아야 하나 월 50~8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혈액투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돕기 위하여 1999년 3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정관을 변경하여 '불우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투석사

업'을 사업에 추가하고(제4조 제7호), 또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제5조)'고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9. 3. 1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4 층정타워 지하 1층과 인천 중구 전동 소재에 각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원하여 영세한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한 무료 혈액투석사업을 하고 있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과 일반 시민들이 후원하는 '사랑의 고리운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면서 탈법적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소위 '빠끼'를 두거나 또는 그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거나 그에게 소개의 대가로 현금으로 준 사실도 전혀 없으며 그외 어떠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사단법인 한국의사협회는 <의협신보>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00년 월 일 본 협회는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금 1억원을 배상하고 본 정정보도문을 공고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을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린다.

정정보도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개인의 진술을 수많은 독자에게 확대 배포하는
전파자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와는 별도의 명예훼손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1. 5. 31.자 판결 (2000나11081)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0년 5월 31일 유명 방송인 백씨가 PC통신에 게재된 자신에 관한 소문을 기사화한 스포츠투데이 기사를 상대로 제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일간 연예신문에 보도하고 또한 그 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제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명예와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방송인으로서 위와 같은 소문이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되는 반면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에 불과하여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적 진술을 단순히 전파하는 것이 원진술과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또한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예훼손 책임은 인정되나 사소한 효과밖에 없는 개인의 진술을 수많은 독자에게 확대 배포하는 전파자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와는 별도의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는 PC통신과 인터넷에서 비롯한 ‘소문’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을 전국에 판매되는 일간지에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284~295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0나1108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 윤 영, 오 양 호, 박 성 규

피고, 항소인 : 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빌딩 국민일보 스포츠투데이 5층 편집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황 상 현

변 론 종 결 : 2001. 4. 12.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112 판결

주 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의 증언, 당심에서의 원,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기자 및 앵커우먼(anchorwoman)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프리랜서(자유 계약직)로 방송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는 연예, 스포츠 기사를 주로 다루는 일간지 <스포츠 투데이> 신문을 발행하는 넥스트미디어신문 주식회사(변경전 회사명; 스포츠투데이신문 주식회사, 이하 스포츠투데이라 한다)의 연예부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 내용

1) 피고는 1999. 7. 16.자 <스포츠 투데이> 신문 제1판의 1면에 광고를 제외한 거의 전지면(약 2/3지면)에 걸쳐, 우측에는 원고의 얼굴 사진을 커다랗게 싣고, 좌측에는 큰 글씨로 『사이버 테러, 모함』, 중간 글씨로 『이혼 배경 헛소문에 운다』라고 제목을, 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인터넷 신문 보도”라고 기재하고 그 옆과 위 사진 사이에 “미주 통일 신문사(KOREA UNITY PRESS U.S.A) [앵커]의 남편은 왜 침묵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통 이해”라는 기제가 있는 배 의 홈페이지의 사진 영상을, 그 아래에 『고통의 ‘白夜’ ... 본보에 최초 고백』이라고 부제목을 각 붙이고 그 아래에 별지 ‘제1판(초판) 신문’ 기재 기사(이하 초판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이는 1999. 7.

15. 오후와 7. 16. 아침 전국으로 발행, 배포되었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초판 기사에 대하여 항의하자 원고의 얼굴 사진 크기를 약간 줄이고 위 홈페이지의 영상 부분을 삭제하고 전체 지면 할당량을 1/5 정도 줄인 후 원고의 사진 좌측에 큰 글씨로 『모함』, 중간글씨로 『이혼배경관련 사이버 테러』, 『인터넷에 헛소문 난무 … ‘용서 못해’』라는 제목을, 그 아래에 『고통의 ‘白夜’ … 본보와 전화통화』라는 부제목을 붙이고 기사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별지 ‘제6판(수정판) 신문 기사’ 기재 기사를 다시 작성하였고(밑줄친 부분은 초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수정한 부분임, 이하 수정판 기사라 한다), 이는 1999. 7. 16. 아침에 전국으로 발행, 배포되었다(이하 초판 기사와 수정판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기사, 그에 대한 보도를 이 사건 보도라 한다).

3) 피고는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이 근무하는 스포츠투데이의 취재에 응하여 원고가 위 신문 보도 전에 수 차례 전화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고 보도 시점까지 논의했으며 “스포츠투데이 16일자 초판 신문이 나간 후 15일 오후 6시께 MBC 근처 커피숍에서 기자와 만난 백씨는 신문을 펼쳐놓고 제목과 기사내용 중에 몇몇 어휘 수정을 요구했다. 가능하면 요구대로 고쳐주겠다고 하자 내일 아침판을 기대하겠다고만 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자리에서 백씨는 “사진은 예쁜 것을 써주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일문일답 형식보다는 기자의 멘트로 ‘잘 나가는 여자를 못 봐 주는 사회풍토에 대해 따끔한 얘기를 덧붙여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특히 헤어지기 전에 “행여 나중에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요?”라고 묻자 백씨는 “저도 양심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말까지 하며 위 기사작성에 적극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1999. 7. 22자 스포츠투데이에 그와 같은 기사가 『MC 본보 연예기자 소송』, 『5억 내라』는 제목 하에 게재되었고(이하 이 사건 소송 기사라 한다), 같은 날 SBS 방송의 「한밤의 TV 연예」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며 같은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SBS 인터뷰라 한다).

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

1) 원고가 1999. 1. 27. 위자료나 양육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아이를 자신이 키우는 조건으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자 호사가들 사이에서 그 이혼배경을 둘러싸고 구구한 소문이 나돌다가 1999. 7. 10. ‘미주 통일 신문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라 자칭하는 배 이 국내 PC 통신업체와 ‘미주 통일 신문사’라는 이름을 내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ty.co.kr>)에 『여성 앵커를 울린 남자는…』, 『모 여성 앵커 이혼 이유가…?』 등의 제목으로 “근래 이혼한 유명 여성 앵커가 낳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상대는 모 방송사 고위 간부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주로 국내 PC 통신업체를 통

하여 사용자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 여성 앵커가 원고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2) 위 기사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회에 떠도는 소문을 과장, 윤색하여 사실인 것처럼 유포시키던 위 배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인 근거나 확인절차 없이 국내 PC 통신업체와 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내용도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이었음에도 원고는 그를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에 오히려 소문을 확산시켜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형사고소를 망설이고 있었다(그 후 이 사건 보도를 계기로 한 원고의 고소로 개시된 배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고가 낳은 아이는 전남편의 친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소문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00. 3.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3) 피고는 1999. 3.경 원고가 소속 방송사에 사표를 낼 무렵부터 주로 전화를 통하여 원고의 근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위와 같은 소문이 PC 통신에 게시되어 조회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는 1999. 7. 1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원고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위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 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원고는 통화를 할 때마다 피고에게 배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나 통화내용을 기사로 만들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1999. 7. 15. 10: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그동안의 전화 통화내용을 인터뷰한 것으로 보고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터뷰도 없이 무슨 기사를 쓰냐”,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고 장래에 아이까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화하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소문을 기사로 쓰지 말 것을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초판 기사를 게재하였다.

5) 원고가 같은 날 14:00~15:00경 초판 신문이 발행, 배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1999. 7. 16. 아침에 배포될 신문에는 위 기사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8:10경 원고를 찾아온 피고를 만나 MBC 방송국 근처의 커피숍에서 초판 기사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발행된 신문은 어쩔 수 없으니 다음날 아침판에서라도 원고에 대한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분량을 줄이고 다소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판 기사를 게재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나온 직후인 1999. 7. 16. 배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어서 1999. 7. 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포츠투데이의 취재에 응하여 이 사건 소송

기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고 SBS 전화인터뷰를 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초판 기사와 수정판 기사)

1)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초판 기사와 수정판 기사는 원고 개인의 이혼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정보이고 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공개한 것은 일응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초판 기사와 수정판 기사는 앞 부분에 적시된 원고에 관한 소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소문에 대한 원고의 생각과 해명, 앞으로의 대응에 관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아 이 기사는 위 소문에 관하여 벌어지고 있던 당시의 사회적 사정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보도일 뿐 원고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는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백에 대한 모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혼배경과 관련한 사이버 테러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는 헛소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원고의 이혼과 관련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의 승낙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보도를 승낙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간 신문의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인터뷰의 경우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자신이 일간 연예 신문사 소속 기자임을 밝히면서 수 차례에 걸쳐 원고의 이혼사유 및 배경과 관련한 소문의 진위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뉴스 앵커 및 기자로서 다년간의 근무경험이 있던 원고가 전화취재에 응하여 충실하게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전화내용을 기사로 사용하는 데 대한 승낙을 하였거나 적어도 보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이라고 항변한다.

인격권은 개인적인 권리이므로 그 주체가 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따라서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라도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원고가 피고의 전화에 응대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공의 이해와의 관련 여부

피고는 원고가 공인으로서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도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원고는 오랜 동안의 방송활동을 통하여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서 공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혼사유와 그 배경과 같은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일반 사인과는 달리 그 보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도한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공인이라고 하여 항상 그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도로 인하여 공중이 얻게 되는 정보의 이익이 피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을 능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이 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국민의 정보욕구 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있어서는 그 정보가 사인에 비하여 폭넓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사적인 영역도 유형화가 가능하고 가족관계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공인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공개가 가능하나 남녀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서 침해되는 영역이 외계 내지 공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침해 이익의 보호가 두터워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보도의 내용이 원고의 이혼사유 및

그 배경에 관한 것으로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그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자녀라는 소문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남녀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에 관한 것에 비하여는 보호의 정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원고는 명예와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방송인으로서 위와 같은 소문이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되는 반면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에 불과하여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초판 기사와 수정판 기사 중 배의 글 보도 부분과 이 사건 소송 기사 및 SBS 인터뷰 부분)

1) 배의 글 보도 부분

(가) 보도의 내용

이 사건 초판 신문 기사 중 『미주 통일 신문사(KOREA UNITY PRESS U.S.A) [앵커]의 남편은 왜 침묵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통 이해』라는 제목이 붙은 배부전의 홈페이지 사진을 싣고, 기사의 본문에서 “앵커우먼에서 토크쇼 MC로 변신한 백이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BAE’이란 통신 ID로 미주통일신문사 발행 겸 편집인이 한 앵커우먼의 이혼에 얽힌 소문의 글을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모든 PC통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모 유명 여성앵커가 이혼한 배경에는 낳은 아이가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의 주인공을 ‘백’이라고 지목한 뒤 연일 갑론을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라고 기재한 부분과, 배의 홈페이지 사진을 생략한 수정판 신문 기사 중 본문에서 “앵커우먼에서 지금은 MBC 「백의」를 진행하며 토크쇼 MC로 변신한 백

이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BAE’이란 통신 ID로 미주통일신문사 발행·편집인이 한 앵커우먼의 이혼에 얽힌 소문의 글을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모든 PC 통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모 유명 여성앵커가 이혼한 배경에는 그녀의 아이가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미뤄 짐작해 소문의 주인공을 ‘백’이라고

지목. 연일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나) 전파와 명예훼손

먼저 명예훼손적인 진술을 단순히 전파하는 것이 원진술과 독립한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또한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전파도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파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언론매체에 의한 전파는 오히려 원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주고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개인이 유통시키는 정보에 비하여 정부기관이나 공인된 언론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오류가 적다고 믿고 PC 통신이나 인터넷에서 개인이 유통시키는 정보에 비하여 보다 쉽게 그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독자층을 두루 갖추어 판매망이 전국에 이르는 일간지를 통하여 확산되는 정보는 아직까지는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에 비하여 그 속도와 범위에서 월등히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보통의 경우 개인이 홈페이지나 PC 통신을 통하여 퍼뜨린 정보는 다른 설득력 있는 정보의 뒷받침이 없으면 머지 않아 이용자들의 관심은 식어 버리고 정보로서 가치를 상실한 채 사라져버려 공인되지 않은 ‘소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생명을 다한다. 그러나 만일 그 ‘소문’이 공신력이 있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그것도 전국적인 판매·유통망을 가진 일간지에 그 내용이 게재되어 퍼진다면, 그 ‘소문’의 피해는 PC 통신의 게시판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하여 더욱 확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 책임은 인정되나 사소한 효과밖에 없는 개인의 진술을 수많은 독자에게 확대 배포하는 전파자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와는 별도의 명예훼손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명예훼손책임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배 이 홈페이지와 PC 통신에 올린 글의 내용은 원고가 혼인 생활 중 포태한 아이가 남편 이외의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위법성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인에 대한 소문은 그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부분이라도 그 진위 여

부를 떠나 공인의 부정행위나 도덕성, 윤리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므로 일반인들이 그 사람의 사회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로 삼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도 합치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배 이 홈페이지와 PC 통신에 게재한 글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홈페이지와 PC 통신에 오른 배 의 글을 보도함에 있어 위 '미주 통일 신문사'가 실제로 있는지, 배 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글을 다루는지, 과연 그가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인지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배 의 글을 보도한 것으로서 피고 스스로도 위 배부전의 글이 사실이라고는 믿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공익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송 기사, SBS 인터뷰와 명예훼손

(가) 내용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자신이 근무하는 스포츠투데이의 취재에 응하여 원고가 위 보도에 대하여 사전에 승낙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초판 기사가 나간 후에도 피고를 만나 기사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수정을 요구하고 사진에 관하여는 만족한다는 말까지 해놓고도 마치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원고와의 인터뷰 없이 보도를 한 것처럼 피고와 소속 신문사를 비난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1999. 7. 22. 스포츠투데이에 그러한 내용의 이 사건 소송 기사가 게재되기에 이르렀고, 같은 날 SBS 방송의 「한밤의 TV 연예」에서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판단

사회적으로 유명한 여성 방송인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의 기사화에 동의하고서도 그 후 태도를 바꾸어 일체의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기자가 원고의 동의나 인터뷰 없이 보도한 것으로 비난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위법성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기사와 방송 인터뷰 내용은 그 내용이 진실하고 원고의 허위주장에 맞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피고와 인터뷰를 하고 그 보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일간 연예신문에 보도하고 또한 그 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제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 피고의 확인 노력의 정도, 위 기사의 내용, 기사가 신문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보도 후 피고가 취한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는 1억원이 적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의 넥스트미디어신문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5. 31.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정 진 경
판사 권 기 훈

〈제1판(초판) 신문〉

〈제목 부분〉

사이버 테러

모함

이혼 배경 헛소문에 운다

인터넷 신문 보도(그림)

고통의 ‘白夜’ ... 본보에 최초 고백

〈기사내용〉

앵커우먼에서 토크쇼 MC로 변신한 백 이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BAE 이란 통신 ID로 미주통일신문사 발행 겸 편집인 이 한 앵커우먼의 이혼에 얽힌 소문의 글을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모든 PC통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모 유명 여성앵커가 이혼한 배경에는 낳은 아이가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의 주인공을 '백 이'라고 지목한 뒤 연일 갑론을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

'아'가 '어'로 와전되는 말로는 100% 진실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사코 인터뷰를 피해온 그녀가 기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15일 새벽 전화통화로 이뤄진 백 이와의 일문일답이다.

- PC 통신에 오른 글을 보았는가.

▲ 통신에 오른 글을 보고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 바로 알았다. 이런 말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는지.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 그렇다면 진실을 얘기해 달라.

▲ 소문은 120% 조작된 것이다. 조금도 거리낄 이유는 없다. 나는 당당하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뭘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아이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이의 장래가 걸린 문제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사실이 아니라면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맞선다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게 없다고 여겨졌다. 주변에서도 소송을 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 조 변호사에게 일임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처음 생각과 달리해 통신에 오른 글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아직도 법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 우문이지만 이같은 소문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 글썸, 아마도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으로서 더 대우받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것만큼의 대우는 받고 싶다.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걷는

여자의 뒷 배경에는 꼭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류가 너무나 섭섭하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매장해 버리는 분위기가 없어졌으면 한다. 최대의 피해자는 당연히 나겠지만 이러한 사회풍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극이다. PC통신 게시판의 역기능이 극에 달한 지금 잘못된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제6판(수정판) 신문〉

〈제목 부분〉

모함

이혼 배경 관련 사이버 테러

인터넷에 헛소문 난무 ... “용서 못해”

고통의 ‘白夜’ ... 본보와 전화통화

〈기사내용〉

앵커우먼에서 지금은 MBC 「백 의 」를 진행하며 토크쇼 MC로 변신한 백

이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BAE ’이란 통신 ID로 미주통일신문사 배 발행·편집인인 앵커우먼의 이혼에 얽힌 소문의 글을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모든 PC 통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모 유명 여성앵커가 이혼한 배경에는 그녀의 아이가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미뤄 짐작해 소문의 주인공을 ‘백 ’이라고 지목. 연일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아’가 ‘어’로 와전되는 말로는 100% 진실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사코 인터뷰를 피해온 그녀가 기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평소의 그녀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그대로였던 백 과 15일 새벽 전화통화로 이뤄진 일문일답이다.

- PC 통신에 오른 글을 보았는가.

▲ 통신에 오른 글을 보고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 바로 알았다. 이런 말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는지.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 그렇다면 진실을 얘기해 달라.’는 질문내용 삭제함) 소문은 120% 조작된 것이다. 조금도 거리낄 게 없다. 나는 당당하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도 통탄스럽다. 나 개인에 대한 얘기라면 참고 넘기겠지만 아이까지 연관시키는 것은 아이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이의 장래

가 걸린 문제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그렇다면 허위조작에 대해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맞대응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또 글을 올린 사람이 예전에도 떠도는 루머를 함부로 올렸던 장본인으로, 미국 시민권자임을 악용하고 있다.

-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물론 그렇다. 변호사에게 일임해 놓은 상태다. 법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 이 같은 소문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 글썄, 아마도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대우받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것만큼의 대우는 받고 싶다.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걷는 여자의 배경에는 꼭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류가 너무나 안타깝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매도하는 분위기가 없어졌으면 한다. 최대의 피해자는 당연히 나이겠지만 이러한 사회풍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극이다. PC통신 게시판의 역기능이 극에 달한 지금 잘못된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남의 소중한 아이까지 연관시켜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는 상식과 건전한 이성이 존재하는 사회라고 믿고 싶다. □

‘대전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대전지역 검사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6. 22.자 판결 (99가합5683)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2001년 6월 22일 현직 검사

들인 원고 김 ○ 외 20인이 문화방송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 이 ○, 정 ○, 김 ○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히고 “1999. 6. 17. 기준으로 검사의 현 인원이 1,151명이 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25명,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6명인 바, 이 사건 각 방송 당시인 1999. 1. 7.경부터 1999. 2. 7.경까지 사이의 검사의 현 인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및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위와 비슷한 정도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이러한 집단의 크기, 위에서 본 그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들’ 또는 ‘검사’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전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고 한달 여에 걸친 관련 방송보도 등 당시의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므로,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인 대전지역 검사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중 일부인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김 ○은 ‘대전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해 각각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문화방송이 1999년 1월 7일부터 2월 7일까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대전 이 ○ 변호사 수임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 변호사의 불법로비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현직 검사인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99가합5683 손해배상(기)

원 고 : 1. 김

2. 김

3. 최

4. 이

5. 김

6. 김

7. 허

8. 이

9. 정

10. 한

11. 정

12. 하

13. 이

14. 이

15. 강

16. 김

17. 전

18. 강

19. 김

20. 김

21. 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2. 서

대전 중구 선화1동 381-171 대전문화방송(주)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형 태, 진 선 미, 도 재 형, 이 석 태, 이 정 희

변론종결 : 2001. 5. 11.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24.부터 2001.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가. 최초로 방송되는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상단에 두 줄로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대전 변호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나. 위 가항 방송 다음날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시작 후 두 번째 순서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만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제2항 기재 각 기간 안에 위 제2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위 기간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각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 줄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

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1 정정보도문을,

나. 위 가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2 정정보도문을,

다. 위 나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3 정정보도문을,

라. 위 다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4 정정보도문을,

마. 위 라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5 정정보도문을,

바. 위 마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6 정정보도문을,

각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크기로) 각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만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제2항 기재 각 기간 안에 위 제2항 각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각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의 1, 2,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2호증의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을 제11호증의 15와 같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의 지위

피고들의 아래 각 방송 및 보도시,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심 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나머지 원고들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등 소속 검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소 제기시에도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경력은 별지 '원고들의 경력'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다.

(2)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함)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1999. 1. 7.경부터 1999. 2. 7.경까지 「MBC 뉴스데스크(이하 뉴스데스크라 한다)」라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MBC TV에서 매일 21:00경 방송되고, 피고 문화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 시청률도 높은 프로그램이다)을 통하여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방송 보도를 하였고, 피고 서 은 소외 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 소속 기자로서 그 중 일부 내용을 취재, 보도하였다.

나. 피고들의 보도내용

(1) 피고들은 1999. 1. 7. 21:00경 방영된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른바 '대전 변호사 수임장부 폭로'를 처음 보도한 이래 같은 해 2. 7.경까지 세칭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피고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한 구체적인 보도 내용의 표제를 일자별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99. 1. 7.

고질적 비리였다

- 1999. 1. 8.

판검사도 사건 알선, 사건 무마 기도, 법조비리 본격 조사, 전관예우 고질병

- 1999. 1. 9.

이것이 비밀장부, 판·검사만 30명, 한번 떡값 천만원, 말았다 하면 승소, 벌써 축소, 철저한 수사 약속

- 1999. 1. 10.
331명이 알선, 대검차장 직접 지휘, 변호사간 거래도, 소개비만 3천만원?
- 1999. 1. 11.
잠적 자수, 소개인은 379명, 우선 경위서 내라, 거명 인사 펄쩍, MBC가 숨겼다고?, 왜곡보도 시인, 투명하게 수사하라
- 1999. 1. 12.
오늘 중 영장청구, 내일 평검사 소환, 탈세의혹 질다, 수시로 말 바꾸기, 국민에게 사과, 법조계 새 물결, 험난한 단독개업, 변호사는 철옹성?
- 1999. 1. 13.
 변호사 구속, 검사가 검사 조사, 대검 침통, 삭제파일 복구, 미리 입 맞췄다, 수뇌부의 고민, 사실상 브로커
- 1999. 1. 14.
파렴치한 사건 수임, 본격 소환, 조사 제대로 하나?, 사건 주고받고, 심경 토로, 법조비리 규탄대회, 대규모 세무조사, 문제는 제도다
- 1999. 1. 15.
원하시는 대로, 디스켓을 찾아라, 검찰 이랬다, 저랬다, 향응협이 잡았다, 검사 조사 난항, 고무줄 수입료, 못말리는 불성실 변호, 수입제한 논란
- 1999. 1. 16.
소개비 받았다, 수사직원이 소개도..., 검사장급 소환, 처벌의지 있나?
- 1999. 1. 17.
조사는 했지만..., 대전검찰청 감사, -세무서 고소, 비리온상 성공보수, 법사위도 한통속, 법조계 5형제
- 1999. 1. 18.
판사들 곧 소환, 인사개혁 하겠다, 수입부터 투명하게
- 1999. 1. 19.
판검사 돈 받았다, 문제검사 안 봐 준다, 초호화 변호인단, 보수 자유화
- 1999. 1. 20.
법조비리 첫구속, 판검사 처벌 고심, 과감한 비리척결, 전문변호사 시대, 곱지 않은 국민 시선
- 1999. 1. 21.

검찰직원 2명 구속, 사무장 출입금지, 줄줄이 옷 벗는다, 법률회사가 해결사
 - 1999. 1. 22.

사법처리 마무리, 더 이상 구속 없다.
 - 1999. 1. 24.

실망 ... 분노, 판검사는 봐주나?
 - 1999. 1. 25.

문제검사 재소환, 변호사 명부 비치하자
 - 1999. 1. 26.

향응 받고 비리 수사, 여론에 귀 막고
 - 1999. 1. 27.

검찰총장 물러나라, 하극상 폭탄발언, 6명 구속 기소
 - 1999. 1. 28.

보직 박탈, 겉으로는 평온해도, 수사는 원칙대로, 전면개혁 촉구
 - 1999. 1. 29.

검찰 곧 대폭 인사, 출근 투쟁, 사표 제출 오늘 마감 - 수사발표 준비, 구속 기소
 - 1999. 1. 30.

비리조사처 신설, 출근 투쟁 계속
 - 1999. 1. 31.

검사 6~7명 사표, 은근슬쩍 넘어가나?, 알맹이 있나?, 판검사 2등 신랑감
 - 1999. 2. 1.

판검사 30명 조치, 드러난 떡값 수수, 판사들은 어찌되나, 눈물 흘린 총장, 옷 벗으면 변호사, 수사발표 반박, 인사로 조직 안정, 개혁안 내일 발표, 미흡하다, 국민의 검찰로 서길
 - 1999. 2. 2.

터놓고 얘기합시다, 집단행동 안 돼, 전관예우 없앤다, 누구 말이 맞나?, 전별금 없어지려나?, 변호사 너무 멀다
 - 1999. 2. 3.

심 고검장 면직, 검찰파동 일단 진정, 검찰중립엔 공감대, 총장 거취는..., 이번에 판사 반발, 검찰의 언론관, 개혁부터 하세요, 수임료가 으뜸 불만
 - 1999. 2. 4.

정상 출근, 법원도 술렁, 한숨 돌렸네, 고시촌에도 파장

- 1999. 2. 5.

정치검사 때문이다, 부인의 항변

- 1999. 2. 7.

연고주의 없앤다, 순수한 전별금 있나?, 닥터Q

(2) 피고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1999. 1. 8. 별지 '제1방송' (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 별지 '제2방송' (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9. 별지 '제3방송' (이하 이 사건 제3방송이라 한다), 별지 '제4방송' (이하 이 사건 제4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1. 별지 '제5방송' (이하 이 사건 제5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3. 별지 '제6방송' (이하 이 사건 제6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4. 별지 '제7방송' (이하 이 사건 제7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5. 별지 '제8방송' (이하 이 사건 제8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7. 별지 '제9방송' (이하 이 사건 제9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8. 별지 '제10방송' (이하 이 사건 제10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9. 별지 '제11방송' (이하 이 사건 제11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24. 별지 '제12방송' (이하 이 사건 제12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31. 별지 '제13방송' (이하 이 사건 제13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2. 3. 별지 '제14방송' (이하 이 사건 제14방송이라 한다), 별지 '제15방송' (이하 이 사건 제15방송이라고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2. 4. 별지 '제16방송' (이하 이 사건 제16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7. 별지 '제17방송' (이하 이 사건 제17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박재동의 TV만평'이라는 기사를, 1999. 2. 7. 별지 '제18방송' (이하 이 사건 제18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각 방송하였다.

(3) 피고 서 은 그 중 이 사건 제1, 4, 11, 12방송의 각 해당 내용을 기자로서 취재, 보도하였다.

다. 피고들의 보도경위

피고 서 은 이 변호사의 사무장이던 김 으로부터 이 변호사의 수입장부(컴퓨터 파일을 인쇄 또는 복사한 것임)를 넘겨받았는데, 그 당시 위 김 의 설명을 들었고, 위 수입장부에 소개인으로 기재된 검찰, 법원 등 직원들의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는 취재원들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취재하였다.

소외 고 기자는 위 김 의 사촌 형인 소외 복 등을 통해서 위 수입장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소의 박 기자는 제보를 해 온 취재원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피고 문화방송은 위 기자들의 위와 같은 자료 및 취재, 그리고 그 소속 기자들의 취재,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방송을 보도하였다.

한편, 피고 서 을 비롯한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들이 이 사건 각 방송을 위하여 이 변호사 및 대전지역 검사들을 상대로 취재한 적은 없었다.

라. 수임장부의 내용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 변호사의 수임장부는 피고들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632매와 이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던 김 의 집에서 압수한 122매 등 총 754매(필사 메모지 1매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비용’과 ‘소개인’ 항목이 기재된 문건은 100매이고, ‘소개인’ 항목은 기재되어 있으나, ‘비용’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제사건현황표와 민사사건목록이 653매이다.

‘소개인’ 항목이 기재된 인원은 총 379명, 사건은 총 1,137건이고, 그 중 ‘비용’ 항목이 기재된 인원은 122명, 사건은 279건이며, ‘비용’ 항목의 총 합계는 1억 6,630만원이다.

‘소개인’ 항목이 기재된 379명과 ‘비용’ 항목까지 기재된 122명의 직역은 다음 표와 같다.

	검사장	검사	판사	검찰 일반직	법원 일반직	경찰관	교도관	변호사	일반인
소 개 인 항목기재	5명	23명	6명	71명	13명	30명	5명	11명	215명
비 용 항목기재	·	·	·	46명	11명	21명	4명	·	40명

(일반인 중에는 전직 검찰 직원이 22명, 전직 법원 직원이 4명, 전직 경찰관이 5명 포함되어 있음)

마. 검찰 수사결과

(1) 검찰의 1999. 1. 10.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MBC 제출 장부 및 추가 입수 장부의 분석내용, 사무장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 검찰에서 이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결과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MBC 제출 장부는 대체로 자신이 컴퓨터로 작성하고 디스켓으로 관리해 오다가 오래 전에 파기하여 현재 보관된 것은 없고, MBC 제출 장부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분량이 적고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장부 중 수임비 내역표로 보도된 자료는 자신이 미수금현황표로 작성, 관리해 오던 것이고, 미수금현

항표 중 문제된 '비용' 항목은 김현 사무장에게 활동비를 매월 수회에 걸쳐 지급하고, 사무장이 수입에 관여한 사건 실수령액의 15%-20%를 활동비로 인정하여 비용으로 기재한 것으로 자신은 소개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소개비를 직접 지급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검찰의 1999. 1. 11.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 결과 판검사들의 경우 직접 전화로 의뢰인을 알려 주거나 의뢰인들이 판검사들의 소개를 받고 왔다고 하여 기재한 것이고,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검사들은 아는 사람이지만 돈을 준 적은 전혀 없으며 일부 판사는 자신과 사적인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검찰의 1999. 1. 12.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사무장의 자수 및 철야 조사내용과 이 변호사 재소환 철야 조사, 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재압수수색, 압수 컴퓨터의 삭제 파일 복구작업, 현 사무장 김 소환 조사, 소득세 신고자료 입수분석, 이 변호사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 중이라는 내용, 김 사무장을 조사한 결과 공갈협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자수하면서 사전 대비한 듯 철저히 부인하였다는 내용, 그 날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검찰의 1999. 1. 13.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이 변호사가 1994. 1 - 1997. 7. 까지 검찰 직원 등 107명으로부터 225회 사건을 알선받고, 사건 소개비 1억2,950만원을 교부하였고, 수사 사건 취급 경찰관 31명으로부터 44회 사건을 알선받고 직무에 관하여 2,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그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 김 사무장도 폭력행위의 점 및 업무상 횡령의 점과 1994. 1. - 1997. 7. 사이에 검찰직원 등 107명으로부터 225회 사건을 알선받고, 사건 소개비 1억2,950만원을 교부하였고, 수사 사건 취급 경찰관 31명으로부터 44회 사건을 알선받고 직무에 관하여 2,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그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 압수 컴퓨터의 삭제 파일 복구작업, 이변호사, 가족, 사무원, 김 사무장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발부,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입수, 분석 등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검찰의 1999. 1. 14.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이, 김 에 대한 구속집행 사실과 함께 압수 컴퓨터 4대의 삭제 파일을 완전히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1993. - 1997. 사건 수입명세서(36매)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한 수입금액 내역이 적혀 있고, 사건내역, 진행사항, 수입금액만 적혀 있을 뿐 문제 장부와 같이 '소개인', '비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복구된 파일은 모두 업무용 파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그 외에 관련자 본적 소

한 조사 준비, 그 날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검찰의 1999. 1. 16.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검찰 직원 등 관련자 39명을 소환조사하였다는 등 전날의 수사상황과 아울러 그 날의 수사계획, 그 다음날의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대검찰청의 1999. 2. 1.자 '대전 변호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판검사의 사건소개 부분 수사결과' 항목에 '판사, 검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 친지, 동향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소개해 준 것으로 밝혀졌음. 판사 검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는 내용이(위 항목의 '소개 유형'란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소개 - 소개비를 받지 않았으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경우 2명 - 검사장 1명, 고검 검사1명'이라는 내용이 있음) '판검사 금품수수사건 수사결과' 항목에, '이 변호사가 개업한 1992. 8. 이후 발표 당시까지 대전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 25명이 이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검찰의 조직과 검사

검찰청법에 검찰의 조직과 검사의 권한 및 지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전국의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유기적 조직체이고, 또 한편으로 검사는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립관청이며, 또한 검사는 수사권 및 공소권의 주체로서 일반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1999. 6. 17. 기준으로, 검사의 정원은 1,284명, 현 인원은 1,151명이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29명, 현 인원은 25명,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8명, 현 인원은 6명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고 문화방송의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1999. 1. 7. 21:00경 이른바 '대전 이 변호사 수임장부 폭로'를 처음 보도한 이래 위와 같이 1999. 2. 7.경까지 세칭 '대전 이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특히 이 사건 제1방송 내지 제18방송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방송 내지 제18방송이 검사 직업군을 포함한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법조인들의 자정을 촉구한 것일 뿐이고, 그 구성원인 검사 개개

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다룬다.

나.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

(1) 방송보도 행위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고,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보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시청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하며, 그 지칭대상은 당해 보도내용과 취지, 그 이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가) 이 사건 제1방송은 검사들 중 ‘지청장을 거쳤던 L씨, 전직 부장검사인 K씨, 현직 검사인 J씨’를 지칭하고 있고, 그 방송 중 ‘검사’, ‘검사들’이라는 표현도 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제5방송은 전현직 판검사 33명을 지칭하고 있는데, ‘지청장을 거쳤던 L씨, 전직 부장검사인 K씨, 현직 검사인 J씨’와 전현직 검사 33명이 원고들로 특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방송이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8방송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지칭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지칭하였다고 하여 바로 검사들 개개인에 대한 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고, 검찰총장이 전체 검사를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또한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9, 10, 13, 14, 15, 16, 17방송은, ‘검사들’ 또는 ‘검사’를 지칭하고 있고, 이 사건 제3, 4, 6, 7, 8, 11, 12방송은, 아래 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고 있거나, 위 각 방송 이전에 이미 「뉴스테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대전’, ‘이 변호사’ 등의 표현과 ‘검사’, ‘검찰’, ‘검사들’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고 있다.

(3) 그러므로 나아가, ‘검사들’ 또는 ‘검사’, ‘대전지역 검사들’이라는 집단의 표시로 그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나) 1999. 6. 17. 기준으로, 검사의 현 인원은 6명임(따라서 대전지역 검사는 31명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각 방송 당시인 1999. 1. 7.경부터 1999. 2. 7.경까지 사이의 검사의 현 인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및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대전 지역검사)의 현 인원은 위와 비슷한 정도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다) 이러한 집단의 크기, 위에서 본 그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들’ 또는 ‘검사’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전 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관련 방송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인 대전지역 검사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중 일부인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김 은 ‘대전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해 각각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1) 방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방송보도가 그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인정된다.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제3, 4, 6, 7, 8, 11, 12방송을 보도(이하 이를 합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라 한다)함으로써, 피고 서 은 그 중 이 사건 제4, 11, 12방송의 각 해당 부분을 보도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가) 이 사건 제3방송

‘한번 떡값 천만원’이라는 표제로 ‘이 변호사가 명절 때 검찰과 교도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린 떡값 명세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아래부터 위까지 저인망식으로 로비를 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차례의 떡값, 그것도 주로 검찰 하위직원에게 건네진 떡값이 1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이 변호사가 사건수임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 사무장을 통해 중·하위직 직원들에게 건네진 떡값의 규모가 이 정도라고 할 때 고위직 인사들에게 전달된 떡값의 규모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을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의 불법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떡값 명목으로 한번에 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나) 이 사건 제4방송

‘말았다 하면 승소’라는 표제로 ‘이렇게 아래위로 로비를 한 덕분에 이 변호사는 말은 사건을 의뢰인의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었고...’, 라는 부분과 피고 서의 ‘상습도박혐의로 입건된 김씨는 자신이 원한대로 검찰에서 석방됐습니다. 사기혐의로 내사를 받던 차모 씨는 검찰에서 내사가 종결됐습니다. 사기혐의의 이모 씨와 건축법위반 혐의의 조모 씨도 이변호사의 도움으로 내사종결 등으로 풀려났습니다, ... 실제로 이변호사는 개업한지 열 달만에 형사사건을 무려 332건이나 수임했고 90%가 넘는 사건을 제 뜻대로 요리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전지역의 검사 ... 들이 이변호사와 어떤 형태로든 뒷거래를 했거나, 전관예우를 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라는 보도 부분을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와 뒷거래를 한 후 이 변호사의 불법 로비와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다) 이 사건 제6방송

‘사실상 브로커’라는 표제로 대전지방검찰청을 배경으로 ‘이번 수임비리 사건은 전현직 판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경찰 직원들까지 개입했습니다. 모두가 공무원의 신분이면 서로 업무상 알게된 피의자들을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등 이변호사의 실질적인 브로커 역할을 해왔습니다’라고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담당 사건을 이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음으로써 이종기 변호사의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라) 이 사건 제7방송

‘사건 주고받고’라는 표제로 ‘이 변호사의 비밀장부를 살펴보면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판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그 사건을 직접 수사했거나 재판을 맡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창을 들고는 상대에게 방패를 구해준 격이니 이런데서 과연 공정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사건을 부당하게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일부 검사들이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이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준 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마) 이 사건 제8방송

‘원하시는 대로’라는 표제로 ‘대전 범조비리 사건의 이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의 희망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었다는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 수사 종결, 보석, 의뢰인들이 이렇게 원하면 이변호사는 전관예우의 풍토에다가 학맥을 동원한 집요한 청탁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부정수표 피의자 서모 씨는 불구속 수사를 희망했고 이변호사는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최모 씨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수사가 아예 종결되었고 불구속 제의를 요청한 다른 피의자들 역시 희망사항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개업한 이변호사는 확실한 전관예우를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변호사가 자신과 같은 출신 학교의 판검사들을 상대로 다른 변호사보다 더욱 집요한 청탁을 한다는 사실은 의뢰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김모 씨(의뢰인) : 사무장이 이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있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했다. 작업해야 되니까 돈 부쳐라 검사 판사에게 작업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천만원 줬다’, ‘실제로 이 변호사와 과거에 같이 일했던 선후배 검사들은 피의자 수사단계에서 이변호사가 노골적인 청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변호사에게 패소했던 사람들은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아예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제보자) : 검찰이 정상적으로 잘 조사하다가 이변호사가 뭐라 그러니까 사건 종결시켰다’라고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변호사에 대하여 전관예우를 하거나 또는 학맥 또는 돈을 통한 청탁을 받고는 사건을 이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부당하게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바) 이 사건 제11방송

‘판검사 돈 받았다’라는 표제로 피고 서의 ‘이변호사의 네 다섯개 예금계좌 가운데 1개 계좌에서 매달 수천만원씩 인출돼 판검사들에게 송금되었거나 떡값 명목 등으로 건네졌습니다. … 이변호사가 대전지검 검사들에게 유명화가인 김모 씨의 미술작품을 선물했다는 의혹…’이라는 보도 부분을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씩 받고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선물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사) 이 사건 제12방송

‘실망 … 분노’라는 표제로 피고 서○의 ‘대가없이 떡값이나 향응으로 수백만원이 오고 갔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검찰이 과연 이변호사와만 검은 거래를 했겠느냐며 반론하고 이번 사건도 결국 한 차례 떠들썩한 소동으로 끝날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라는 보도 부분을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고, 다른 변호사들과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라. 주장의 당부

그러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뉴스테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제3, 4, 6, 7, 8, 11, 12방송을 보도함으로써, 피고 서○은 그 중 이 사건 제4, 11, 12방송의 각 해당 부분을 보도함으로써, 위 각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대전지역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는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에 따라 결국 원고 최○, 원고 이○, 원고 정○, 원고 김○의 검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원고 최○, 원고 이○, 원고 정○, 원고 김○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 및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 및 피고들의 다툼은 각 이유 없다.

마. 피고들의 항변

(1)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방송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진실성 여부

(가) 이 사건 제3방송

피고들은 이 방송보도의 내용이 이○ 변호사가 교도소와 검찰 안내실에 각 90만원과 60만원을, 검찰 기사실에는 150만원을, 수십명의 여직원들에게도 각각 5만원씩을, 지방과 고검의 하위직 공무원 54명에게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떡값을 지급하는 등 떡값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모두 합쳐 1천1백만원이 넘으며 아울러 검찰 고위직 인사들에게 전달된 떡값의 규모는 미루어 짐작된다는 것으로,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이○ 변호사가 개업한 1992. 8. 이후 발표 당시까지 대전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 25명이 이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위 방송은 진실을 보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방송에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의 불법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떡값 명목으로 한번에 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사실 적시도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가)항} 본 바와 같고, 그 부분이 지엽 말단적인 부분이나 사소한 부분이라 할 수는 없으며, 위 방송보도의 중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도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4방송

피고들은, 담당 기자인 피고 서 이 대검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과거 대전지역 검사들이 명절 떡값 등으로 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변호사와 검사의 연관성으로 문제삼아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다소 표현이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자로서 능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에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와 뒷거래를 한 후 이 변호사의 불법 로비와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나)항} 본 바와 같은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6방송

피고들은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이 변호사는 사무장 김 과 공모하여 1994. 2.부터 1997. 9.까지 검찰,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 100여 명으로부터 모두 20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함께 금 1억1,1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고, 검사 28명, 전직 검사 3명이 사건을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표시된 사실의 세부에 있어 다소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면 그 전부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불일치하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곧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에 대전지역 검사들이 담당 사건을 이 변호사에게 소개하여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음으로써 이 변호사의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 적시가 포함되

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다)항} 본 바와 같고, 이러한 부분이 세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7방송

피고들은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소개비를 받지 않았으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경우가 2명(검사장 1명, 고검검사 1명)이 있어 자신이 맡던 사건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 보도내용에 다소의 차이는 있다 할 지라도 진실의 범위에서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의 중요 내용은 대전지역 검사들이 사건을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일부 검사들이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이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준 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임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라)항} 본 바와 같은데, 일반적으로 검사장이나 고검검사가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바,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도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제8방송

피고들은 이 부분 보도는 모두 취재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사실대로 보도한 것으로 진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재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2의 마의 (3)항} 보기로 한다].

(바) 이 사건 제11방송

피고들은,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대검 수사결과 일부 검사가 많게는 1천만원 상당까지 여러 명목으로 이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위 보도는 전문적인 수사관이 아닌 기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취재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에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씩 받고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선물받았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바)항}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보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사실을 토대로 한 다소 과장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 보도가 진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

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제12방송

피고들은,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구속기소 6명, 불구속기소 4명, 약식기소 1명으로 모두 11명을 형사 입건하고, 34명을 경고 등 징계조치하였고, 검사의 경우 딱깃 수 수액수에 따라 징계조치하기로 했다는 것인바, 검사 등에 대한 형사입건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 문화방송이 검찰이 검사들에 대해 자체 징계로 끝내려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에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고, 다른 변호사들과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 (사)항} 본 바와 같은데, 이를 진실한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힌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의무와 확인절차를 모두 거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 서 이 소외 김 으로부터 위 이 변호사의 수임장부를 넘겨 받았는데, 그 당시 위 김 의 설명을 들었고, 위 수임장부에 소개인으로 기재된 검찰, 법원 등 직원들의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는 취재원들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취재하였고, 소외 고 기자가 위 김 의 사촌 형인 소외 복 등을 통해서 위 수임장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소외 박 기자는 제보를 해 온 취재원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 기자들의 위와 같은 자료 및 취재, 그리고 그 소속 기자들의 취재,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를 한 사실은 위에서 (1의 다항) 인정한 바와 같으나, 오히려 피고 서 을 비롯한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들이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 전에 이 변호사 및 대전지역 검사들을 상대로 취재한 적은 없었음에도 위에서(1의 다항)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결국 피고들이 보도내용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의무와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방송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김 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보도행위로 위 원고들이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의 횟수, 이 사건 명예훼손 보도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회사가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뉴스 데스크」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영향력, 위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위 원고들의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긴 점, 일반 시청자들에게 검사라는 국가기관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및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조장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 정정보도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 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문화방송에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방송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가 보도된 횟수 및 비중,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정정보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문화방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상단에 두 줄로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대전 변호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위 방송 후 그 다음날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시작 후 두 번째 순서로, 위와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함이 상당하다.

나.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문화방송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나항의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

고 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 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문화방송이 위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김 에게 위 나항의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김 에게 위자료로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로서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 중 마지막인 이 사건 제12방송이 보도된 1999. 1. 24.부터(원고들은 1999. 1. 7.부터의 지연손해배상금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 전체를 감안하여 위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총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명예훼손이 끝난 때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6.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22.

재판장 판사 강 현

판사 박 종 욱

판사 유 영 선

〈별 지〉 정정보도문

문화방송은 지난 1999년 1월 7일경부터 1999년 2월 8일경까지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바 ‘대전 변호사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 중 1999년 1월 9일,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3일, 같은 달 14일, 같은 달 15일, 같은 달 19일, 같은 달 24일, 각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7회에 걸쳐, ‘대전지역

검사들'이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소개하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로비를 받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지역 검사들'이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 주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소개하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로비를 받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문화방송과 대전 문화방송 서 기자는,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방송을 보도함으로써 당시 대전에서 근무하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별 지〉 기재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인 한 확정적인 사실보도와 더불어 언론기관의 속성상 당연히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2001. 7. 25.자 판결 (2000가합51563)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1년 7월 25일 한양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엄 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이 취재를 통하여 보도를 함에 있어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하지만 수집한 자료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에 언론기관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함께 보도함으로써 의혹 내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인 한 확정적인 사실보도와 더불어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민주적 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관

의 속성상 당연히 그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언론기관에 대하여 의혹 내지 의문제기를 제한하고 확정적인 사실보도만을 요구한다면 극단적으로는 어떤 사안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가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아무런 보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므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진실하여야 하고,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함께 보도하여야 하며, 또한 언론기관으로서 그 상반되는 자료가 피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 정당한 의혹 내지 의문제기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돈을 성금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경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경비 외의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피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주장을 함께 보도하였고, 그 상반되는 주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그 상반되는 주장이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의문제기 보도는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화방송이 2000년 1월 6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웃돈 3,000만원’이라는 제하로 원고가 절박한 상태의 환자 부모들에게 정해진 치료비 외에 다른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웃돈을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0년 1월 2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0서울중재24, 25)을 하여 중재결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은 중재불성립결정이 내려졌으나 반론보도청구사건은 합의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0가합51563 손해배상(기)

원 고 : 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주 형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예 교

변론종결 : 2001. 6. 2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범수의 증언,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정황

(1) 원고는 1989.경부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위 대학교 부속병원 성형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고,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 수술, 치료 분야에 있어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2) 구순구개열은 선천적인 장애로서 그 환자들은 보통 생후 몇개월 내에 1차 수술을 받고 이후 성장하면서 2, 3회 정도의 수술을 더 받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원고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수술 전에 벌어진 잇몸을 조여주는 고정장치인 라쌈(Latham)을 부착하는 시술을 하여 왔다(이 시술은 원고가 미국에서 습득하여 온 것으로서 1992.경부터 직접 위 장치를 제작, 사용하였다).

(3) 원고는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위 성형외과 소속의 전공의(레지던트)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부모들로부터 병원에 수납하는 치료비 외에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하였는데, 처음에는 그 금액을 3-40만원으로 정하였다가 1996. 초부터는 7-80만원으로 하였다. 원고가 1996. 초부터 1999. 12.경까지 라쌈을 이용하여 치료한 구순구개열 환자는 41명 정도이다.

(4) 전공의들은 환자 부모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요구함에 있어 그 명목에 관하여 일부 부모들에게는 '원고가 개발한 라쌈의 제작비 등 비용으로 위 금액이 드는데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른 일부 부모들에게는 '불우환자를 돕는 민들레회 활동에 사용하려고 하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위 두 가지 취지를 모두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전공의들을 통하여 받은 돈을 조흥은행 계좌(예금주 :)에 입금하고 전공의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다.

(6) 한편, 원고는 1994.경부터 구순구개열 환자들 및 의료진 사이의 정보교환, 상담, 불우환자 돕기 등을 목적으로 한 '민들레회'를 조직하고, 그 회지를 발행하거나, 캠프, 송년모임 개최 등의 활동을 하여 왔다.

나. 수사경위 및 결과

(1) 경찰(수서경찰서)은, 1999. 12.경 원고가 직접 환자 부모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원고를 사기 혐의(1996. 2.경부터 1999. 12.경까지 사이에 위 라쌈이 의료보험이 되는데도 되지 않는다고 환자 부모들을 기망하여 원고에게 몇 차례 계속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환자의 부모 41명으로부터 함께 28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 및 이에 부수하여 수수한 돈의 사용처)로 수사한 후 2000. 2.경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 경찰에서 조사한 환자 부모들(3명)은, 전공의들이 라쌈의 제작비 등 비용으로 7-80만원이 드는데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위 금액을 요구하여 병원수납 창구가 아닌 전공의들에게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검찰의 조사에서는 위 환자 부모 3명이 불우환자를 돕는 민들레회를 위한 성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소 번복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 환자 부모 41명에게 보내어 답신을 받은 설문조사서(돈을 준 명목이 민들레회 활동을 위한 성금인지 보험이 안되는 치료비 명목인지 여부 등을 질의하는 형식)에서 그 중 31명이 성금 명목으로 7-80만원을 주었고(금액이 2-30, 52만원이라고 답한 경우도 있었음), 5명은 형편이 어려워 돈을 내지 못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성금 명목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주었다는 답신을 보내온 사람도 1명 있었다.

(4) 이에 검찰은 2000. 6. 23.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 라쌈의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보험이 되나 그 제작비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환자 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민들레회의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취재경위

(1) 피고 소속의 박 기자(당시 경찰서 출입기자, 이하 '위 기자'라 한다)는 1999.

12. 중순경 한양대학교 동문회 관계자로부터 ‘원고가 수년간 라쌌 시술을 해 주면서 환자 부모들로부터 병원에 내는 치료비 외에 별도로 많은 돈을 받아왔는데,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세계일보에 보도되었다’는 제보와 함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출신의 개업의 중심으로 구성된 ‘한미회’에서 경찰에 원고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며 제출한 진정서, 환자 부모들의 명단·주소록, 원고에 대한 위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2) 위 제보 이전에 1999. 12. 10.자 세계일보는 ‘모대학병원 A교수 등이 언청이 무료수술비 명목으로 모금한 성금 일부를 착복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언청이 치료에 사용되는 치아교정기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15,490원인데도 환자들에게 특수교정기라고 속여 개당 7-80만원을 받아 온 혐의도 받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실어 보도하였다.

(3) 위 제보에 따라 위 기자는 담당 상사인 송 차장과 협의하고 그로부터 정식으로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위 한미회의 총무인 홍 (원고의 과거 제자로서 현재는 개업의), 환자 부모들(2명), 수사경찰서의 담당자, 세계일보 기자 등에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였다.

(4) 위 홍 은 위 기자와의 인터뷰 당시 ‘과거 원고의 지시에 따라 환자 부모들에게 라쌌의 제작비가 40 또는 80만원 정도 드는데 그걸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환자가 사춘기 때까지 최소한 3-4번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안냈을 경우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 기형아니까 병원비에 그 정도는 내야 된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낸다’, ‘환자가 한 달에 한두 명 정도고 돈을 받은 지 10년쯤 되었으니 적어도 5,0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위 기자가 통화를 한 환자 부모(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환자 부모 중 1명의 처)도 ‘전공의들이 라쌌을 직접 재료상에 가서 사와야 되고 자기들이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해서 비싸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하자고 했다’고 말하였다.

(6) 위 기자는 수사경찰서에 찾아가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그에 편철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통장 등을 카메라로 찍어 두었다.

(7) 한편, 위 기자는 2000. 1. 6. 카메라 기사를 대동하고 위 병원 원고의 교수연구실로 찾아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환자 부모들에게 일종의 성금조로 민들레회 행사하는데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내도 좋다고 이야기했으며, 그 돈을 민들레회 활동에 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3-40만원 정도 받아서 민들레회 활동하는데 너무나 부족해서 부모들에게 비용을 조금 더 내라고 했다’라고 주장하였다.

라. 이 사건 보도

피고는 위와 같은 취재를 종합, 편집하여 2000. 1. 6. 피고가 운영하는 MBC TV방송의 밤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별지 보도내용과 같이 뉴스를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2. 명예훼손의 성립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웃돈 3,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사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마치 치료비 외의 부정한 돈으로 3,000만원을 한꺼번에 수수하였다는 인상을 주었고, 구체적인 보도내용에서도 악의적인 편집과 표현으로 원고가 환자 부모들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강제로 돈을 뺏어낸 악덕의사로 비취지게 하였으며, 그 돈의 수수 명목에 관하여 민들레회 경비를 위한 자발적인 성금 명목이 아니라 보험이 안되는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앞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장애아의 부모들은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표현하여 결국 원고가 환자 부모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해진 치료비 외에 다른 치료비의 명목으로 거액의 웃돈을 받아 이를 유용한 부도덕하고 악질적인 의사라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원고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인터뷰 장면의 촬영에 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구순구개열 치료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대학병원의 저명한 의사인 원고가 절박한 상태의 환자 부모들에게 제자(전공의)들을 통하여 정해진 치료비 외에 치료할 때마다 4-70만원, 4년간 합계 3,000만원을 요구하여 받았고, 이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기형 상태의 구순구개열 환자의 입부근의 사진, 범죄일람표, 통장을 찍은 사진, 원고의 과거 제자인 위 홍 의 인터뷰 장면 등을 함께 방영하고, 처음부터 원고가 받은 돈을 ‘웃돈’이라고 표현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도 ‘장애아의 부모들은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저명한 의사인 원고가 구순구개열 환자를 둔 부모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정해진 치료비 외에 상당한 금액의 정당하지 못한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한편 보도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한꺼번에 3,000만원을 받았거나 강제로 돈을 뺏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위 돈의 수수 명목에 관하여 민들레회의 경비

를 위한 성금이라는 원고의 반론과 함께 성금이 아니라 보험이 안되는 치료비의 명목이라는 환자 부모의 주장을 인용,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금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 경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치료비(라팜 재료구입, 제작비용 등) 명목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 경비 외의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암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재경위 및 보도내용에 의하면 위 기자가 당시에 여러 자료들을 확인하여 경찰에서 조사 중인 위 돈의 수수 명목 및 그 사용처에 관하여는 결론을 유보한 채 수수 명목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있다는 점을 이 사건 보도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위와 같은 수수 명목 및 사용처에 대한 의문제기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환자 부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바로 원고가 성금이 아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민들레회 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내용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암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의과대학 교수로서 대학병원의 의사인 원고의 사회적 평판과 신용 등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금품수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의 사실보도에 기초한 수수 명목 사용처에 관한 위와 같은 의문제기 역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는,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하여 피고와 이 사건 보도에 관한 모든 분쟁에 관하여 화해하였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위 화해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재화해조서(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화해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제기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반론보도청구 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이하에서 차례로 살핀다.

가.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와 그 한계

언론기관이 취재를 통하여 보도를 함에 있어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하지만 수집한 자료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예를 들어 관련

자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될 때 등) 언론기관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함께 보도함으로써 의혹 내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인 한 확정적인 사실 보도와 더불어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민주적 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관의 속성상 당연히 그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언론기관에 대하여 의혹 내지 의문제기를 제한하고 확정적인 사실보도만을 요구한다면 극단적으로는 어떤 사안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가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에는(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이러한 경우가 더 많다) 아무런 보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가 민주국가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언론기관의 보도가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형법 제310조에 근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명예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한 위와 같은 가치형량의 전형적인 한 예시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므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진실하여야 하고,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함께 보도하여야 하며(그렇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만 취사선택하여 강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 된다), 또한 언론기관으로서 그 상반되는 자료가 피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 정당한 의혹 내지 의문제기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리 및 표현의 자유 보장과 명예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한 가치형량에 비추어 타당하다(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그 내용에 있어 진실하거나

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 및 환자 부모들과 위 홍 등 사이에서 원고가 수수한 돈의 명목 및 사용처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이 있었고, 위 기자가 취재 당시에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상반되는 여러 자료들(경찰에 출두했던 환자 부모들 3명은 성금이 아닌 라쌌 제작비 등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홍은 원고가 민들레회 설립 이전부터 돈을 받아왔다고 주장하였다)을 확인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 위 돈의 수수 명목 및 사용처에 관하여는 결론을 유보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환자 부모의 주장을 동일한 비중으로 인용, 전달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간접적, 암묵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위 돈을 성금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 경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 경비 외의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피고가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주장을 함께 보도하였고, 그 상반되는 주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그 상반되는 주장이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의문제기 보도는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 보도 및 정당한 의문제기 보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1. 7. 25.

재판장 판사 안 영 름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보도 내용〉

제 목 : ‘웃돈 3천만원’

[구순구개열 환자의 입 부분, 라쌌, 돈다발의 사진 아래 ‘웃돈 3천만원’이라는 자막이 있는 화면을 배경으로]

〈뉴스 진행자 김은혜 앵커〉

대학병원의 저명한 의사가 입술이 갈라진 채 태어난 아기들을 치료하면서 규정된 진료비 외에 웃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기자입니다.

[차례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전면, 라쌌장치, 수사기록에 편철된 범죄일람표 일부, 라쌌명의 통장을 찍은 각 화면]

〈박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엄모 교수, 입술이 갈라진 채 태어난 장애아들을 치료하는데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교수는 입천장을 모아주는 ‘라쌌’이라는 특수치료를 통해 장애를 겪고 있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치료할 때마다 규정된 치료비 외에 별도로 40 내지 70만원의 웃돈을 아기들의 부모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엄교수는 자신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지난 4년간 제자를 통해 3,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웃돈을 요구받은 부모들은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순순히 돈을 내줬다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엄모 교수 제자와의 인터뷰 장면 아래 그 제자의 말을 자막으로 처리]

〈엄모 교수 제자〉

기형아니까 병원비에 그 정도를 내야 한다고 그러면 보호자들이 대부분 돈을 낸다.

[‘대한 두개안면 성형외과학회’ 실 표지 화면]

〈박 기자〉

엄교수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장애아 모임인 민들레회의 경비로 쓰기 위해 성금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엄모 교수의 신체 중 얼굴 아래 부분만 나오는 화면 아래 엄모 교수의 말을 자막으로 처리]

〈엄모 교수〉

민들레회 활동에서 돈이 너무나 부족했다. 할 수 없이 (부모들에게)돈을 조금 더 내시라고 말했다.

[수서경찰서 정문을 배경으로 박 기자의 전면 화면]

〈박범수 기자〉

하지만 경찰에 출두한 부모들의 말은 다릅니다. 성금 형식이 아니라 보험이 안되는 치료

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환자 부모와의 전화 인터뷰 통화 장면 옆에 환자 부모의 말을 자막으로 처리]

〈환자 부모〉

자기네가 직접 재료상에 가서 사와야 하고,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입술이 갈라진 구순구개열 환자아이 입부근 화면]

〈박 기자〉

임교수에게 앞으로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장애아의 부모들은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 입니다. □

**보도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자와 언론사는 필요한
취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4. 28.자 판결 (99가합2207)

서울고등법원 2001. 7. 26.자 판결 (2000나25745)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1년 7월 26일 전직 검사가 조 씨가 문화방송과 소속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청률이 높고 공신력 있는 공중파 TV방송의 정규뉴스는 특히 그 영향력이 지대하며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또는 그 주변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도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자와 언론사는 필요한 취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도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며 이 사건 방송의 표현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다소 지나친 것이기는 하나 공인의 공적인 활동영역에 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6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문화방송이 1999년 3월 6일과 3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과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검사인 원고가 전과조회만 하였던다면 조모 씨가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전과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처벌받아 형이 확정된 소외 조모 씨를 또다시 기소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중기소는 명백히 검사인 원고가 잘못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조모 씨가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검찰이 사과를 커녕 오히려 조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하였다는 내용 등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문

사 건 : 99가합2207 손해배상(기)

원 고 :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호 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정 익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2. 이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사회부 기자실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 병 직, 박 성 민, 송 두 환, 김 응 조, 백 승 현, 조 광 희, 안 식,
윤 복 남, 김 희 제

변론종결 : 2000. 4. 7.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3. 21.부터 2000.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3.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3. 서울지검 검사로 초임발령을 받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재직하고 있던 검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BC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이 는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나. 소외 박 은 1994. 10. 13. 소외 조 을 '사기죄'로 성남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의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경찰보다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 28. 성남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두 사건은 병합되지 아니한 채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되다가 경찰고소사건도 성남지청에 송치되었고, 성남지청의 담당검사는 위 박 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94년 말경 위 두 사건에 대하여 각 참고인증지결정을 하였다. 그 후 위 박 의 소재가 발견되자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은 1996. 12.경 제기되어 위 조 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불구속 구공판되었고, 위 법원은 1997. 3. 21.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박 은 1998. 9. 3. 참고인증지 되어있던 경찰고소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성남지청에 제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의 주임검사가 된 원고는 같은 달 24. 이 조 을 소환하여 위 박 과 대질신문까지 하였으나, 위 조 은 조사를

받는 동안 원고나 참여계장에게 자신이 같은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조 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범죄 후 5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동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동인을 일단 긴급체포한 후 청내 경찰관실에 1시간 가량 대기시켰다가 다시 소환하여 조사를 마쳤는데, 위 조 이 합의기간을 달라며 호소하자 원고는 추석명절을 앞둔 시기인 점을 참작하여 합의기간을 부여하고 귀가조치하였다.

마. 그러나 그 후 위 조 이 약정한 기간까지 위 박 과 합의도 하지 않고 소환에도 불응하자, 원고는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기록상의 범죄경력조회 외에 따로 위 사건이 참고인증지결정된 이후 위 조 에게 새로운 전과사실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등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98. 10. 23. 위 조 을 성남지원에 불구속 구공판하였다.

바. 한편 위 조 은 1999. 3. 2. 피고 회사 성남지국 사무실로 피고 이 를 찾아가 이 중기소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원고나 참여계장에게 동일 사건으로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웃더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 이 는 동인을 취재한 다음, 같은 달 3. 원고를 찾아가 위 조 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확정판결문까지 제시하며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변소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불법구금하였다가 그래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자 이중으로 기소하였는데 사실이냐며 물었고, 이에 원고가 '위 조 이 동일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채 피의사실을 단순히 자백하고 합의기간을 달라고 호소하여 주임검사로써 업무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이며 정확한 업무착오원인은 사건기록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피고 이 는 참여계장과 고소인과의 결탁가능성을 언급하며 위 해명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성남지청 형사1부장실을 방문하였다가 형사1부장 검사로부터 다시 한번 진상에 관한 설명과 함께 오해에 기한 성급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받고도 원고와의 약 40여 분간에 걸친 대화내용을 원고 모르게 카메라와 녹음기에 담아 이를 편집한 후 별지 제1목록 방송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보도국으로 보냈고, 보도국이 위 기사를 방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9. 3. 6.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위 방송내용 기재와 같이 위 조 의 허위주장은 선명하게 그대로 내보내고, 조 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해설을 첨가한 후 원고의 이중기소 경위에 대한 약 40분간에 걸친 해명은 방영하지 않은 채 조 의 허위주장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는 일부 진술만을 방송(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고 한다) 하였다.

사. 위 보도가 나가자 성남지청 소속 양 검사는 1999. 3. 12. 위와 같은 보도의 제보자인 위 조 을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긴급체포하였고, 위 조 으로부터 1998. 9. 24. 조사 당시 검사나 계장에게 같은 사건으로 이미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낸 후 같은 달 13. 성남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아. 그러자 피고 이 는 별지 제2목록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1999. 3. 21. 피고 회사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위 방송내용 기재와 같이 방송(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한편 위 조 은 횡령죄로 이중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인 1999. 2. 5.경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같은 사안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위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해 3. 12. 성남지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같은 해 5.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후 결국 1999. 8. 31.경 검사직을 사직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23 내지 26,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1내지 1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각 증언,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우선,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 바, 피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는 비록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존재사실을 암시함으로써 독자 또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인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방송보도의

제목, 배경화면과 자막,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사건이 참고인증거되었다가 재기된 이후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주임검사인 원고가 위 조 의 범죄경력조회를 새롭게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인이 이미 같은 사건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동인을 이중기소하였고, 또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하여 특히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를 직무로 하는 검사가 경합범, 누범, 상습범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결격사유 등의 전제가 되는 전과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조 의 변소를 묵살하고 고의로 이중기소를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더구나 위 조 은 사기로 고소당하였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원고가 범죄경력조회를 다시 하였다 하더라도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과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위 조 이 이미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 한 원고로서는 범죄경력조회를 새로 해보는 것만으로는 같은 사건으로 위 조 이 처벌받았는지 알 수 없고, 더 나아가 그에 관한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조사해 보아야 이미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는지 알 수 있다), 위 조

을 긴급체포하였다가 석방한 것 역시 불법구금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방송이 나간 후 위 조 을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로 구속수사한 것이 보복수사라고 할 수 없음에도(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하는 것은 직무상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방송에서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아래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두 사람(검사와 계장)이 웃더라구요...”라는 위 조 과의 인터뷰내용을 영상과 함께 방영하면서, ‘검찰이 위 조 을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하였다가 동인으로부터 횡령한 돈을 갚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풀어주었고, 한달이 지나도 위 조 이 약속한 돈을 갚지 않자 검찰은 동인을 횡령혐의로 이중기소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중기소는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다시 이 사건 제2방송에서는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위 조 과의 인터뷰내용을 다시 방영하고, “다분히 수사기관의 감정이 개입된 그런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죠”라는 소외 차 과의 인터뷰내용을 방영하면서 검찰이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명예훼손혐의로 구속하여 보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던 바, 위 각 방송보도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중기소한 검사가 원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 조 을 조사한 검사가 동인을 이중기소하였다는 표현만으로도 원고가 피해자임을 특정하기에 충분하며, 아울러 위 방송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제1방송을 편성하면서 제목에서 '한심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수사검사인 원고가 피의자의 정당한 항변도 묵살하는 수준 이하의 검사라는 인상을 단정적으로 심어주었고, 사실 원고가 위 조 을 제기소한 것은 위 조 이 같은 사건으로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새로이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위 조 을 조사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피의자의 항변을 웃으면서 고의로 묵살한 것처럼 위 조 과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방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내용 전체의 흐름, 제목, 경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마치 피해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가형벌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구금을 하였으며, 사법사상 최초로 이중기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방송에 대하여 보복감정으로 위 조 을 상대로 검사로서의 수사권을 남용한 것처럼 표현을 하여, 원고가 검사로서 가지는 자긍심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이 와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각자 이 사건 각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법성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므로, 이 사건 각 방송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방송보도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방송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구성과 배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방송의 일부 내용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피해자인 원고가 고의로 이중기소를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나아가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보복수사를 하여 제보자를 구속시켰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시청자를 기망오도하고,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방송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방송내용은 일부 허

위의 사실이 포함되었고,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시 피고들은, 원고는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공인으로서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언론의 자유에 입각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책임이 경감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인이라 할지라도 방송보도에 의하여 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목적의 공익성과 보도내용의 공공성, 보도매체의 성격과 보도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시청률이 매우 높고 영향력이 큰 공중파 TV의 정규 뉴스시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보도를 한 점,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이 피해자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이해관계 있는 일방당사자이므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동인의 일방적 진술을 인용하여 보도내용이 편집방영된 점, 보도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한다기보다는 이중기소의 경위, 보복수사인지 여부 등을 좀 더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치밀하게 취재하여 정확한 보도를 하였어야 할 내용인 점, 보도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공정한 취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표현방법에 있어 일반 시청자가 원고를 수준 이하의 편파적이고 불성실한 검사라고 단정지을 정도로 보도의 관점이 명확하게 표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검사라는 직책을 가진 공인이고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도를 방영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책임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속한 보도는 정확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고, 오보, 허위보도, 엉터리보도, 왜곡보도는 신속할수록 그 폐해가 커진다. 더구나 시청률이 높고 공신력을 자부하는 공중파 TV 정규뉴스의 경우 일반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방송사가 언론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상으로 클 수 있다. 신문·잡지의 독자층과 일반 TV의 시청자들이 그 보도나 기사를 수용하는 태도, 경향, 수준 등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는 현실에서 방송뉴스의 일회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TV 시청자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하여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는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언론기관으로서의 보도에 앞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내용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내용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방송의 제목과 내용 및 방송 시점, 방영 시간, 피고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밖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신분, 원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 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공직을 사직한 점, 이 사건 방송이 법집행자로서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원고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사, 나아가 검찰이 부당한 법집행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여 왜곡된 법집행을 하기도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우리 사회에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한 점, 피고 회사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텔레비전 방송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방송일인 1999. 3.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0. 4.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각 기각한다.

2000. 4. 28.

재판장 판사 박 찬

판사 이 승 연

판사 김 국 현

〈1. 1999. 3. 6.자 뉴스데스크 보도〉

제 목 : ‘한심한 검찰’

내 용 : ▷박 앵커 : 형사소송법에는 한 번 처벌을 받은 사람을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미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해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이 기자 : 성남시 동에 사는 조모 씨는 지난 97년 3월,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반이 지난 지난해 9월, 조씨는 같은 검찰청의 또 다른 검사에게 다시 소환돼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조모씨 :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두 사람(검사와 계장)이 웃더라구요….

▷이 기자 :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겠다고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검찰은 조씨가 이미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했습니다.

▷이 기자 : 전과조회는 기본인데, 컴퓨터로 확인했지요?

▷계장 : 아니요, 안했어요.

▷이 기자 : 결국 조씨는 횡령한 돈을 갖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조씨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자 검찰은 조씨를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담당검사는 당시 사건이 고소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씨가 이미 처벌을 받은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담당검사 : 이 정도 경미한 것으로 무슨 잘못을 할 수 있겠나. 잘못 됐으면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날 것 아닌가….

▷이 기자 : 한 번 형이 확정된 조씨는 사법사상 처음 같은 사건으로 또 한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 입니다.

〈2. 1999. 3. 21.자 뉴스데스크 보도〉

제 목 : ‘보복수사 논란’

내 용 : ▷권 앵커 : 지난 6일 뉴스데스크는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 검찰의 잘못으로 또 한 번의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뒤에 검찰은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명예훼손혐의로 구속을 해서 보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 기자입니다.

▷이 기자 : 성남시 동에 사는 조모 씨는 지난 97년 3월,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9월 조씨는 같은 검찰청의 또 다른 검사에게 다시 소환돼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씨는 결국 성남지청 조 검사에 의해 이중기소돼 또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돼 검찰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씨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유는 조씨가 본사와 인터뷰한 다음 내용입니다.

▷조모 씨 인터뷰 :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두 사람(검사와 계장)이 웃더라.

▷이용마 기자 : 검찰은 조씨가 조사과정에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면서 검찰을 비방하기 위해서 문화방송 측에 허위제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중 기소라는 검찰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조씨가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조씨의 표현을 문제삼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차 : 다분히 수사기관의 감정이 개입된 그런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이 기자 : 검찰의 명예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만 확보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 입니다.

2심 판 결 문

사 건 : 2000나2574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조

소송대리인 범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강 호 성, 손 석 봉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 중 배

2. 01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 병 직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류 용 현

판 결 : 2001. 5. 24.

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4. 28. 선고 99가합2207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천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21.부터 2001.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한 1999. 3.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향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23 내지 26,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피고 이 ○○○○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3. 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초임발령을 받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방송보도 후인 1999. 8. 31.경 사직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BC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이 는 이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내용

(1) 피고 회사는 1999. 3. 6.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하에 조 에 대한 검찰의 이중기소 사실을 보도하였다. 당시 앵커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한 후 피고 이 가 조 (이 사건 방송에서는 성남시 동에 사는 조모 씨로 익명보도 됨)이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 반이 지난 1998. 9. 또다시 같은 혐의로 재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두 사람이 웃더라구요...”라고 하는 조 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후 피고 이 기자가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겠다고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검찰은 조씨가 이미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기본적인 전과조회를 실시하였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검찰 참여계장의 부정적인 답변을 방송하였다. 다음 피고 이 기자는 조 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풀려났다가 한 달이 지나도 변제하지 못하자 검찰이 그를 횡령죄로 이중기소하였다고 설명한 후 담당검사는 사건이 고소인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있었기에 조 이 이미 처벌을 받은 줄 몰랐다고 말한다면 “이 정도 경미한 것으로 무슨 잘못을 할 수 있겠나. 잘못 났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날 것 아닌가”라는 내용의 원고의 해명을 보도하고, 위 이 기자가 “한 번 형이 확정된 조씨는 사법사상 처음 같은 사건으로 또 한 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도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1999. 3. 21.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명예훼손혐의로 조남환을 구속한 검찰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당시에 앵커가 검찰의 이중기소에 대한 이 사건 제1방송 보도가 나간 이후 검찰이 사과는 커녕 조 을 명예훼손혐의로 구속하여 보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한 후 피고 이 기자가 조 이 성남지청 조 검사에 의해 이중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사건 제1방송 보도가 나간 이후 일주일도 안되어 검찰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 을 출판

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는 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문제가 된 이 사건 제1방송에서의 조 과의 인터뷰 부분을 보도한 후 피고 이 기자가 검찰은 조 이 조사과정에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면서 검찰을 비방하기 위해서 문화방송측에 허위제보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중기소라는 검찰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조씨가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조씨의 표현을 문제삼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논평한 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후, “검찰의 명에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만 확보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설명으로 보도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

다. 방송의 경위

(1) 박 은 1994. 10. 13. 조 과 김 이 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 권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자 이를 할인한 후 그 돈을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조 과 김 을 성남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의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경찰보다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 28. 성남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두 사건은 병합되지 아니한 채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되다가 경찰고소사건도 성남지청에 송치되었고, 성남지청의 담당 검사는 위 박 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94년 말경 위 두 사건에 대하여 각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 그 후 박 의 소재가 발견되자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은 1996. 12.경 재기되어 조 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고, 위 법원은 1997. 3. 21. 위 조 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2) 한편, 박 은 1998. 9. 3.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있던 경찰고소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성남지청에 재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의 주임검사가 된 원고는 같은 달 24. 조 을 소환하여 박 과 대질신문까지 하였으나, 위 조 은 조사를 받는 동안 합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줄 것을 호소하였을 뿐 원고나 참여계장에게 자신이 같은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조 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범죄 후 5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동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던 중 점심시간이 되어 동인을 일단 긴급체포한 후 청내 경찰관실에 1시간 가량 대기시켰다가 다시 소환하여 조사를 마쳤는데, 위 조 이 합의기간을 달라고 간청하자 원고는 추석명절을 앞둔

시기인 점을 참작하여 합의기간을 부여하고 긴급체포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조 을 귀가조치하였다.

(4) 그러나 그 후 조 이 약정한 기간까지 박 과 합의도 하지 않고 소환에도 불응하자, 원고는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기록상의 범죄경력조회 외에 따로 제2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이후 위 조 에게 새로운 전과사실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등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98. 10. 23. 위 조 을 횡령죄로 성남지원에 불구속 구공판하였고, 조 은 그 공판기일인 1999. 2. 5.경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같은 사안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합의를 위한 시간만을 요청하여 다음 공판기일이 1999. 3. 12.로 지정되었다.

(5) 한편 조 은 1999. 3. 2. 피고 회사 성남지국 사무실로 피고 이 를 찾아가 제2사건으로 인하여 이중기소되었다고 제보하면서 원고나 참여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일 사건으로 이미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웃더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6) 피고 이 는 조 을 취제한 다음, 1999. 3. 3. 원고를 찾아가 위 조 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확정판결문까지 제시하며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변소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불법구금하였다가 그래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자 이중으로 기소하였다는데 사실이나고 물었고, 이에 원고가 “조 이 동일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채 피의사실을 단순히 자백하고 합의기간을 달라고 호소하여 주임검사로서 업무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이며 검사로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이중기소를 할 검사는 없고 그러한 일은 검사로서는 자살행위이다. 오해로 인한 왜곡보도를 삼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이 는 참여계장과 고소인과의 결탁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 해명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성남지청 형사 1부장실을 방문하였는데 형사 1부장검사로부터도 다시한 번 진상에 관한 설명과 함께 오해에 기한 성급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으나 원고와의 약 40여 분간에 걸친 대화내용을 담은 카메라와 녹음기의 내용을 편집한 후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1목록 방송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보도국으로 보냈고, 보도국은 1999. 3. 6.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를 방송하였다.

(7) 위 보도가 나가자 제2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1999. 3. 12. 성남지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성남지청 소속 양 검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방송의

제보자인 조 을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로 긴급체포하여 조 으로부터 1998. 9. 24. 조사 당시 검사나 참여계장에게 같은 사건으로 이미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낸 후 1999. 3. 31. 조 을 성남지원에 구속 기소하였고, 성남지원은 조 에 대하여 1999. 5. 2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여 그 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그러자 피고 이 는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2목록 방송내용 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1999. 3. 21. 피고 회사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를 방송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방송에 있어서는 비록 원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중기소된 조 의 주소를 적시하였고 보도와 함께 나간 화면으로 성남지청 건물을 보여 주어 원고가 성남지청의 검사임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이기 는 하나 원고가 집무하는 검사실의 앞에 걸린 검사실의 호실과 검사명 표시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원고의 해명을 방송한다면서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여, 원고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상당수의 일반인도 조 을 이중기소한 검사가 원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임을 특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제2방송의 보도에 있어서는 “성남지청 조 검사”라고 특정하여 원고의 실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2) 책임의 성부

이 사건 제1방송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한 번 처벌을 받은 사람은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검사인 원고가 전과조회만 하였더라면 조 이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위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전과조회를 아니하여 이미 처벌받아 형이 확정까지 된 조

을 또다시 기소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2방송의 내용은 이중기소는 명백히 검사인 원고가 잘못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조 을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검찰이 사과는 커녕 오히려 조 을 명예훼손혐의로 구속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은 이러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정하고도 사려 깊게 수사 및 기소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검사인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들이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1) 공공성

이 사건 보도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검사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원고에 대한 악의가 엿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진실성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과는 달리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방송에 있어서의 각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제1방송 중 이 기자의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겠다고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검찰은 조씨가 이미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했습니다”라는 설명 부분 위 표현 중에서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검찰이 조씨가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이고, 검찰이 조남환을 구금하면서도 경찰에서 기록을 송부받을 당시에 첨부되어 있던 약 4년이 경과한 범죄경력조회서와 조 본인의 형식적인 진술에 의하여 전과를 확인한 외에 경찰에서의 범죄경력조회 이후에 새로운 전과사실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전과조회를 하고 의문이 드는 전과기록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 을 신문하거나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 이 이미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음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임이 인정된다.

한편,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겠다고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조 을 구속하겠다고 구금하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 이 이미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을 진술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긴급체포의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여 조 을 긴급체포하여 구금한 것을 불법감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이 가 이 사건 제1방송에서 불법감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한 번 처벌을 받은 사람을 이중으로 기소할 수 없음에도 검사가 전과확인을 게을리하여 조 이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구금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그 구금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법조인이 아닌 기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전제사실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방송 중 이 기자의 “한 번 형이 확정된 조씨는 사법사상 처음 같은 사건으로 또 한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설명 부분

이 부분 중 조 이 동일한 범죄행위로 이미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것과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이중기소가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표현도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중기소가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원고가 전과확인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인하여 조 을 이중기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부당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전제사실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1방송 중 조 과의 인터뷰 방영부분

언론기관이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방영하는 경우에 그것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발언내용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만일 인터뷰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언론기관의 명예훼손책임은 부정될 것이나 적어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은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첫째, 조 ○○ 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이 사건 제1방송의 전체 문맥으로 보아 조 ○○ 이 검사에게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아 그 판결문이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검사나 검찰 참여계장이 이를 묵살하였다는 취지로서, 조 ○○ 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채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합의기간을 달라고 호소하여 업무착오를 일으켰다는 원고의 해명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며, 검사로서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원고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방영하였고, 둘째, 이 사건에 대한 취재시에 담당 검사인 원고나 검찰 참여계장이 조 ○○ 의 위 진술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음에도 제1방송에서 방영된 조 ○○ 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대응하는 원고나 참여계장의 진술부분은 조 ○○ 의 진술에 대한 해명이라기 보다는 기자의 설명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부분만을 편집하여 방영하였으며, 셋째, 방송의 제목으로 뽑은 ‘한심한 검찰’ 과 중간에 덧붙인 조 ○○ 을 “불법적으로 구금”하였다는 설명, 끝에 부가한 조 ○○ 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중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설명 등과 앞서 본 원고나 참여계장 진술부분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위 조 ○○ 에 대한 인터뷰 부분은 피고들의 방송 의도에 부합하여 의도적으로 방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 ○○ 에 대한 인터뷰 부분에 대한 방영은 조 ○○ 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들이 위 인터뷰 내용을 방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 ○○ 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조 ○○ 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처벌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그 변소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소하였다는 사실은 실수로 조 ○○ 의 전과조회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중기소하게 되었다는 사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명예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이라는 점, 피고 이 ○○ 가 원고에 대하여 취재할 당시에 원고가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 ○○ 의 변소를 묵살하고 이중기소를 하는 경우 조 ○○ 이 법정에서 제1사건으로 인한 판결문을 제출하기만 하면 즉각 변소판결이 선고될 터인데 검사가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면서 다시 기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조 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합의를 볼 시간만을 간청하였을 뿐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여 제1사건으로 인한 판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조 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 있던 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그의 전력이나 범죄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기자에게 조 의 진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던 점, 조 이 검사 등에게 자신이 이미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부당하게 묵살당하고 이중 기소되었다면 기사를 찾아가 그 부당함을 호소할 정도로 적극적이며 이미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조 으로서는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그 사실을 진술하거나 판결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알리려 하였을 것이고, 이는 조 과 함께 공판 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조 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와 검찰 참여계장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 의 일방적 진술을 믿고 그대로 방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 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었음에 관하여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제1방송 중 나머지 부분

이 사건 제1방송 중 앞서 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설명한 앵커의 설명부분과 조 이 같은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풀려났다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검찰이 조 을 횡령혐의로 다시 기소하였다는 부분, 담당 검사가 조 이 이미 처벌을 받은 줄 몰랐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컴퓨터 전과조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계장의 부정적인 답변과 전과조회를 하지 아니한 것이 경미한 잘못이고 잘못되었다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날 것이라는 원고의 진술을 방송한 부분도 그것이 비록 전체 진술 중에서 방송의 의도에 필요한 부분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한 것이라 하여도 그 내용은 당사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제2방송 부분

이 사건 제2방송 부분 중 조 이 원고에 의해 이중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사건 제1방송 보도가 나간 이후 일주일도 안되어 검찰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 을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로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제1방송에서 방송된 조 의 인터뷰 부분을 다시 방송한 부분은 그 전후의 문맥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제1방송에서와는 달리 시청자에게 조 이 진술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제1방송에서 방송된 조 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조 을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 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복수사 논란”이나 “이중기소라는 검찰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조씨가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조씨의 표현을 문제삼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검찰의 명예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만 확보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라는 부분은 모두 피고들의 의견의 표명이며, 보복수사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한 변호사의 논평을 보도한 부분은 전후의 문맥에 비추어 그 변호사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피고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두 전제되는 사실, 즉 조 이 원고에 의해 이중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방송이 나간 후 얼마 안되어 검찰이 조 을 구속하였다는 사실의 진실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이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가) 그렇다면 피고들이 방영한 이 사건 제1, 2방송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이 사건 제1방송 중 조 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 2방송 중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전제사실이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의견의 표명 자체가 전제사실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잘못된 의견이라면 면책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조 에 대한 이중기소에 관하여 “불법감금”,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을 동원하여 “한심한 검찰”이라고 단정한 것과, 검찰이 조 의 제1방송에서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구속한 것을 “보복수사”라고 표현한 것에 관하여 보면, 이러한 표현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실수를 빌미로 지나치게 과도한 비난을 가한 것으로서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잘못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논평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은, 원고는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공인으로서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언론의 자유에 입각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행위는 원고가 피고들의 현실적인 악의에 대하여 입

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책임이 경감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의 공적인 관심 영역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판단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의미와 관련하여 볼 때 사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널리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나아가 원고가 공인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제한되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상호 비교형량함이 없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방송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거나 책임이 경감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청률이 높고 공신력이 있는 공중파 TV 방송의 정규뉴스는 특히 그 영향력이 지대하며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도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자와 언론사는 필요한 취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및 방송 시점, 방영 시간, 피고 회사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텔레비전 방송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밖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신분,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 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공직을 사직한 점, 이 사건 방송이 법집행자로서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원고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검찰이 피의자의 변소마저 목살하고 피의자를 이중기소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한 듯한 인상을 주어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한 점을 한편으로 고려하고, 원고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조 에 대한 전과확인을 게을리 하여 조 을 이중기소하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며 이 사건 방송의 표현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다소 지나친 것이

기는 하나 공인의 공적인 활동영역에 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6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6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방송일인 1999. 3. 2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7. 26.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정 진 경

판사 권 기 훈

〈별 지〉 (방송내용은 1심 판결문 〈별지〉 방송내용 참조 - 편집자 주)



**언론기관의 보도가 그 목적이거나 내용에 있어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을
비방 내지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라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 8. 22.자 판결 (98가합107982)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1년 8월 22일 현직 교수인 임

씨가 서울방송과 소속 프로듀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언론기관의 보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리는, 언론기관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그에 관한 건전한 여론을 형성, 전달, 집약함에 따라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언론기관의 보도가 그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을 비방 내지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실제적인 보도내용은 원고 개인을 보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인물로 몰아가고 있을 뿐 원고를 둘러싼 학내분쟁의 경위,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점 등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아 보도내용이 대학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반드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사회(대학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을 비방 내지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방송은 1998년 11월 25일 「TV 돋보기, 우리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그러진 대학, 대학교수’라는 제하로 원고가 대학원생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대리심사하도록 시키고, 학생들의 번역 리포트를 모아 그대로 책으로 출판했으며, 강의내용도 수준 이하였다는 등 교수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98가합107982 손해배상(기)

원 고 : 임

소송대리인 청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재 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 성 민

피 고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대표이사 윤 세 영

2. 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주)에스비에스

3. 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주) 에스비에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혜 리, 문 선 영, 강 훈

변론종결 : 2001. 7. 4.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5.부터 2001.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 사실

[근거 : 갑 제1~5, 7, 9, 15, 17, 22, 23, 24, 2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를 둘러싼 학내분쟁의 경위(이 사건 보도 이전)

(1) 원고는 1968.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의 유학을 거쳐 1978.부터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과 교수로 재직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1998. 6. 5.경 실시한 위 대학교 중어중문과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최 의 논문 지도교수로서 그가 제출한 논문을 심사하였는데, 당시 최 는 원고가 위 논문을 그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일에게 검토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심사하였다면서 항의하자, 원고는 1998. 6. 19.경 최 가 자신에게 폭언과 함께 항의 전화를 하였다면서 위 대학교에 최 의 학적말소를 요청하게 되었다(이에 위 대학교 본부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1998. 11. 9.경 최 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3) 한편, 원고에 대하여 교수로서의 논문실적, 종교문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기재된 익명의 민원이 교육부에 제출되었다가 1998. 6. 10.경 위 민원이 위 대학교로 이송되었고, 위 대학교 본부에서 원고에게 먼저 알리지 않은 채 위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위 대학교 본부측 및 위 중어중문과 학과장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4) 또한, 1998. 7. 말경부터 위 중어중문과에 논문대리심사, 종교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퇴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부착되었고, 1998. 10. 16.경에는 위 일이 '원고의 지시로 학위논문을 대신 평가하였고, 원고가 학생들의 번역 리포트를 모아 그대로 책으로 출판하였으며, 원고의 아들을 과외교습하였다'는 등 원고의 교수로서의 자질, 도덕성 문제 등을 거론하는 내용으로 소위 양심선언을 하였다. 이에 1998. 10. 22.경 위 중어중문과 대학원생들은 원고에 대하여 수업거부를 결의하였고, 위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도 원고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5) 이 과정에서 원고는 위 대학원 총학생회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원고가 관련된 종교단체에서도 위 대학교 총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1998. 10. 29.경 위 대학교 본부에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1998. 11. 3.경 위 대학교 인문사회과대학 소속 각 교수들의 연구실에 '나에 대한 모함을 해명합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였는데, 그날 밤 위 대학교 본부측에서 각 교수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문건을 회수하였다. 이에 위 대학교 교수평의회에서는 1998. 11. 19.경 위 문건회수 및 원고에 대한 민원조사 등과 관련하여 위 대학교 총장을 면담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7) 위 대학교 본부는 1998. 11. 6.경 원고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1998. 11. 11.경부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8) 1998. 11. 13. 내지 14.에는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에서 '원고가 박사과정 학생으로 하여금 논문심사를 대신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리포트를 그대로 책으로 출판하였으며 수업시간에 특정종교를 언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중어중문과 대학원생들이 원고의 사퇴를 요구하고 위 대학교측이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기사를 실어 보도하였다.

나. 이 사건 보도

(1)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운영하는 SBS TV 방송의 「TV 돌보기, 우리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1998. 10.경부터 원고를 둘러싼 위 대학교의 학내분쟁을 위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로 하고, 제작을 위한 취재에 들어가 위 대학교 본부측 인사, 위 중어

중문과 학과장 및 대학원생들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2) 이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서는 1998. 11. 25. 20:40경부터 10분간에 걸쳐 ‘일그러진 대학, 대학교수’라는 제목으로 별지 내용과 같은 보도를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3) 피고 유 는 위 프로그램의 제작을 책임지고 담당 프로듀서(PD)이고, 피고 안 은 SBS TV 방송국에서 뉴스를 제외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재권한(전결권한)을 가진 TV 본부장이다(피고 유 는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상급자인 부장과 보도내용을 상의하고 피고 안국정에게도 보도내용의 요지를 보고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 후의 사정

(1) 원고는 이 사건 보도 이후 그 보도내용 등과 관련하여 위 유 , 안 , 대학원생인 일, 최 , 위 대학교 총장, 위 중어중문학과 학과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2) 한편,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위 대학교는 원고에 대하여 1999. 2. 8. 징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1999. 5. 28. ‘징계의결 요구 전에 사전조사가 없었고 의결요구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징이 되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위 대학교가 1999. 8. 23. 학위논문 대리심사를 사유로 하여(위 최 의 논문 포함) 다시 견책처분을 하자 위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1999. 11. 26. ‘ 일이 학위논문을 읽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논문들을 추후 검토한 점에서 논문심사를 대신시켰다거나 논문심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견책처분도 취소하였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위 중어중문과 학과장, 위 일 등 대학원생들(위 중어중문과 대학원 수료, 졸업생 포함)과의 인터뷰 내용 및 아나운서의 멘트 등을 통하여 원고가 대학원생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대리심사하도록 시켰다는 것, 대학원생들이 원고에 대한 분노로 수업거부를 결의하였다는 것, 원고가 학생들의 번역 리포트를 모아서 그대로 책으로 출판하였다는 것, 지난 15년 동안 단 두편의 논문만을 발표할 정도로 연구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 자주 지각과 휴강을 하였고 강의내용도 수준 이하였다는 것, 한자도 잘못 읽는 경우가 셀 수 없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학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제자를 ‘개는 돈 애예요, 정신병자예요’라고 표현하고, 제자에게 아들의 과외를 강요하거나 기사 노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도덕성이 의심된다는 것, 사태가 심

각해지자 무책임하게 출근을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행적을 감춘 채 출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러한 원고에 대한 문제는 1, 2년 사이의 일이 아니라 십수년간 방치되어 온 것이라는 것 등의 내용을 방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교수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이를 접한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교수로서의 자질이 없고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의 직업적, 사회적 평판 등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설사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공익성에 관하여 살핀다.

가. 공익성의 여부

(1)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함은 민주주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나, 표현의 자유가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언론기관의 보도가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언론기관의 보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리는, 언론기관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그에 관한 건전한 여론을 형성, 전달, 집약함에 따라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언론기관의 보도가 그 목적이거나 내용에 있어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을 비방 내지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의 경우 ① 보도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님에도 보도 당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채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비난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들만의 인터뷰 내용 및 그에 동조하는 아나운서의 멘트를 방영함으로써 원고측의 주장이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동료교수 또는 교수평의회 입장도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② 이에 따라 보도내용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단정적인 표현들(아나운서의 멘트 중 ‘원고는 대학원생에게 박사논문을 대리 심사시킨 것을 완강하게 부정했지만 이것은 원고 밑에 있던 대학원생의 입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원고의 연구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강의내용도 수준 이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원고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불신을 느껴야 했습니다’, ‘제자에게 아들의 과외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등)이나 원고의 자질 및 인격과 관련된 부정적이고 과도한 표현들(아나운서의 멘트 중 ‘대학교수로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교수’, ‘굶을 대로 굶은 교수의 추한 모습을 십수년 동안 그대로 방치’, 박사과정의 졸업생들의 인터뷰 내용 중 ‘한자도 잘못 읽는 경우는 셀 수 없을 정도’, ‘저희 과의 분위기는 어떠하냐하면 선생님께서 죽으라면 죽는 ... 교수님 앞에 석사생이라는 것은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아파트 경비의 인터뷰 내용 중 ‘행방불명이 됐다’ 등)을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교수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고,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극단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극단적인 인물로 묘사된 이 사건 보도가 방영됨으로써 20여 년의 교수생활을 통하여 쌓아온 업적과 평판이 완전히 무시되고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타격을 입게 된 점, ④ 보도의 도입부와 결론 부분에서 우리 나라 대학사회의 본연의 모습 상실과 그 회복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보도내용은 원고 개인을 보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인물로 몰아가고 있을 뿐 원고를 둘러싼 학내분쟁의 경위, 우리 나라 대학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점 등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아 위와 같은 보도내용이 대학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반

드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사회(대학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을 비방 내지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공익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진실성 내지 상당성의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손해배상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되는 이상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SBS TV 방송의 운영자로서, 피고 안 , 유 는 이 사건 보도제작의 최종 결재권자 및 담당 프로듀서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수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먼저 이 사건 보도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학내분쟁의 와중에 다수의 대학원생들, 위 대학교 본부측으로부터 교수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가 방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가 적시하는 주요한 내용들(특히 원고가 대학원생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대리심사하도록 시켰다는 것, 강의내용이 수준 이하였다는 것, 한자도 잘못 읽는 경우가 셀 수 없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것, 제자에게 아들의 과외를 강요하거나 기사 노릇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원고에 대한 문제는 1, 2년 사이의 일이 아니라 십수년간 방치되어 온 것이라는 것 등)은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가 신속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측의 주장을 취재하거나 보도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를 비난하는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방영한 점, 언뜻 보아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에 관하여 단정적이고 과도한 표현을 자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 보도의 경위, 보도의 적시내용과 표현방법, 보도내용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SBS TV 방송의 영향력과 이 사건 보도의 시간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여부 등 보도 후의 정황,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의 방영일(1998. 1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2001. 8.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2001. 8. 22.

재판장 판사 안 영 름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보도내용〉

= TV돌보기, 우리는 지금 =

◎ 박 아나운서

우리는 흔히 대학을 일컬어서 상아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대학은 학문과 진리를 향해서 한 길을 가야 한다는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이 살아 숨쉬어야 할 대학이 언제부터인가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 학교에서 일어난 어느 한 교수와 관련된 사건은 또다시 우리 대학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그러진 대학, 대학교수]

(성균관 대학교 전경)

명문사립대로 불리는 이 대학에서 최근 중문학을 가르치는 여교수 문제로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교수 / 성균관대 중문과 학과장

지금 문제의 본질은 학생들이 논문 심사를 대리로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크

다. 임교수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대학원생을 시켜서 대리심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1, 2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를 이야기 하기도 전에 찢겨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교수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 박 아나운서

문제의 임교수는 대학원생에게 박사논문을 대리심사 시킨 것을 완강하게 부정했지만 이것은 임교수 밑에 있던 대학원생의 입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 최○○ / 성균관 대학 중문과 박사과정 수료

내가 지적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그냥 넘겨줘 가지고 고쳐오라는 식으로 그럼 내가 고치라고 한 것 밖에 안되니까 학생들이 계속 감정이 쌓여왔던 거예요.

◎ 박 아나운서

그럼 몇 년동안 몇 편의 논문을 (대리심사 했나)?

◎ 최○○ / 성균관 대학 중문과 박사과정 수료

지금까지 본 거는 정확하게 수는 세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석사과정에 있으면서도 박사논문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40, 50편 되죠. 여태까지 성대에 나온 논문, 하여튼 임교수가 지도한 문헌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90%까지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 아나운서

박사학위 논문을 대리심사 시킨 것 외에도 학생들의 불만의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의 분노는 급기야 수업거부를 결의할 정도였습니다. 또 학생들이 제출한 번역 리포터를 모아 책을 펴낸 것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대가 30년대 평론’ ‘중국어 음학 연구’ 화면)

◎ 김○○ / 강사·성대 중문과 박사과정 졸업

완전히, 그것도 기밀리에 학생들은 모릅니다. 사실 이거는요. 기밀리에 학생 리포터를 모아가지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그제서야 교정을 맡겨 가지고 교정조차 또 학생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없는 거죠, 전혀.

(‘대학원생 번역 리포터’ ‘임교수 번역서’ 화면)

◎ 박 아나운서

대학원생들의 번역리포터와 임교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은 서문에서로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임교수는 대학교수로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 / 강사·성대중문과 박사과정 졸업

교수님께서 뭐 논문을 발표한다거나 제가 여기 입학한 지가 지금 학교를 10년 넘게 다니는데요, 무슨 논문을 발표한다거나 그런 걸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박 아나운서

지난 15년 동안 임교수는 단 두편의 논문만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대학교수 한 명이 십년 동안 보통 15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하고 일년에 서너 편을 내는 교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임교수의 연구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임교수는 특하면 지각과 휴강을 한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강의내용도 수준 이하였습니다.

◎ 천○○ / 성균 중문과 박사과정 졸업

문학사 수업이 뭐냐면, 책을 강독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한자(漢字)도 잘못 읽는 경우는 뭐 셀 수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답을 못해 주세요. 상식적인 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질문을 못해 주시고, 몇 번 그게 반복되니까 ‘임선생님께 질문은 고문이다.’라는 게 학생들한테 농담처럼 돌면서 질문이란 건 전혀 없는, 그냥 강독이 됐고….

◎ 박 아나운서

제자들이 임교수를 불신하는 이유는 비단 학문적인 자질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은 임교수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림자도 밝지 못할 만큼 권위 있고 또 그만큼 존경 받아야 할 스승에게서 제자들은 엄청난 불신만 느껴야 했습니다.

학문의 깊이와 수준은 접어 두고라도 임교수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사제지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 이○○ 교수 / 성균 중문과 학과장

임○○라는 학생이 있는데, 강사인데 ‘임○○는 뭐 논문 대리심사 건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던데요.’라고 했더니 ‘개는 돈 애예요. 정신병자예요.’

◎ 박 아나운서

제자들 보고?

◎ 이○○ 교수 / 성균 중문과 학과장

예, 그런데 임교수 말투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 겪고나서는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설득(안될까)? 이렇게 대화가 안될까.

◎ 박 아나운서

고동안 학생들은 임교수 문제를 알면서도 쉬쉬 했습니다. 행여나 스승에게 누가 되지나 않을까 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임교수는 심지어 제자에게 아들의 과외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 최○○ / 성균 중문과 박사과정 졸업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내가 손을 봤으니까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긴 세월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심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웠지만, 그래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또 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이니까.

◎ 천○○ / 강사·성균 중문과 박사과정 졸업

우리집 기사가 요즘 몸이 아파서, 그만뒀서, 누가 우리집 기사를 좀 해 줬으면, 이런 식의 발언을 이런 식의 요구를 학생들한테 하세요. 저희 과의 분위기는 어떠냐하면 선생님께서 죽으라면 죽는, 그게 당연한, 선생님, 교수님 앞에 석사생이라는 것은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솔직히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것이고.

◎ 박 아나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임교수는 아예 학교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학부생 강의는 강사들이 어떻게든 대신한다지만 무책임한 교수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강의는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징계위원회도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임교수는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임교수에게 징계위원회는 또다시 출두요구서를 보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쳐서 진상을 파악해야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교수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임○○ 교수 아파트 경비

한 2주째 지금 나가 가지고 지금 뭐, 행방불명이 됐다. 친척집이고 어디고 다 수배해 봐도 찾을 길이 없다.

◎ 박 아나운서

당사자하고 어떻게든 연락이 닿아야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교수의 자택으로 전화통화 시도 - 임교수 부재, 자동 응답기 작동)

학생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꿈을 대로 꿈은 교수의 추한 모습을 십수년동안 그대로

방치한 대학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 성균관대 중문과 대학원생

저는 학교측이 임교수님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일이 1, 2년 사이의 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선배들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방관한다는 자세가 교육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김○○ / 강사·성균 중문과 박사과정 졸업

반드시 교단을 떠나셔야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대학을 위한 길이고 또 본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제 희망이라면 앞으로 대학원 내에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 아나운서

이번 사건은 단지 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닐 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학 사회의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뿌리 깊고 오래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대학교 학생들과 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대다수 많은 교수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땅에 떨어진 스승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고 대학도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锵

**사회적 범죄의 원인이 교회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1. 9. 26.자 판결 (2001가합11180)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1년 9월 2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교회가 문화방송과 소속 프로듀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사

건 프로그램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고,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공정한 논평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는 언론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 교회를 포함한 교회들이 담임목사직 세습으로 찬반 양론의 논쟁에 휩싸이고, 심지어는 그로 인하여 담임목사에 대한 폭력사태가 발생한 교회가 있으며, 재정운영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교회재산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회현상을 지적하여 비판하면서 동시에 교계 내부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교회가 진정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회가 그가 속한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문제라고 할 것이나, 사회적 범죄의 원인이 위와 같은 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서 국민들이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의 약 1/4이 기독교인이라 알려져 있고, 원고 교회가 국내 교계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교회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방영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교회가 기본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임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기준만으로 교회의 내부 운영을 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재정운영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논평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공정한 논평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방송은 2000년 12월 19일 「PD수첩」 프로그램에서 ‘2000년 한국의 대형교회’라는 제하로 원고 교회의 후임자 선정과정에 합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며, 원고 교회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결산이 소수 인사들이 소속된 기획위원회에 위임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수입규모나 지출내역 같은 기본적인 사항마저 공개되지 않아 교회의 근본목적과는 달리 사용될 의심을 낳게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1년 1월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8)을 하였으나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이 내려졌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합11180 손해배상(기)

원 고 :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교회

서울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나 종 태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국 「PD수첩」 피디)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 정 환, 강 호 성, 조 면 식, 손 석 봉

변 론 종 결 : 2001. 8. 29.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교회는 등록 교인 약 8만5천명인 세계 최대의 단일 감리교회로 알려져 있고, 그 대표자인 김 목사는 약 30년간 원고 교회를 이끌어오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사라 한다)은 텔레비전 방송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최 는 2000. 12. 29. 22:55부터 23:55까지 방영된 피고 문화방송사의 시사교발프로그램인 「PD수첩」(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담당 피디이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및 방송경위

(1) 2000. 1.경 유명 교회에서 일어난 이른바 목사직 세습(아버지 목사가 담임하던 교회를 아들 목사가 뒤이어 담임하는 것, 이하 ‘세습’이라고만 표현한다)에 불만을 품은 장로

(또는 교인)들이 사주하여 그 담임목사를 테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4.경 세계 최대의 단일 감리교회로 알려진 원고 교회가 김 목사의 후임으로 그 아들인 석 목사를 선임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기독교계 안팎에서 세습의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 찬반양론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같은 해 9. 5.에는 교계 안팎의 인사들이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교회의 일부 신도들이 세습이라는 용어의 사용 등에 반발하며 포럼을 무산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2) 신도수 70만명 이상으로 알려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회사랑모임 장로들은 같은 달 22.경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위 교회가 담임목사의 아들인 조 운영의 회사를 위하여 교회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폭로하였고, 위 교회는 그 무렵 위 장로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3) 피고 최 는 위와 같이 대형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담임목사에게 그 권한이 집중된 데서 파생된다는 인식 하에 대형교회의 문제점(목사직 세습의 문제, 재정운영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계 내부의 자성과 비판의 흐름 및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는 교회들을 소개하여 한국 기독교의 변화가능성을 짚어 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후 담당 피디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에 참여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사는 ‘한국의 대형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를 제작, 방영하였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및 전체적 구조

(1) 피고 문화방송사가 방영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 교회와 관련된 내용(방영시간 약 14분 35초간)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 ① 시작부분 :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포럼 방해장면
- ② 원고 교회와 관련된 부분(C교회 포함)
- ③ 순복음교회의 재정문제와 관련한 부분(약 6분 20초간 방영)
- ④ 동안교회, 서울영동교회, 분당샘물교회와 관련된 부분 : 담임목사의 권한 분산부분, 사회봉사부분, 재정집행부분 등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약 4분 10여 초간 방영)
- ⑤ 끝부분 :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온 종교가 사회의 질병을 치유해 주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주기를 염원하면서 끝맺는 부분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가. 명예훼손의 성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

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존재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독자 또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영상매체의 방영내용은 진행자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발언내용 이외에도 일반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프로그램의 제목, 배경 화면과 자막, 내용의 전체 흐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 그밖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종합하여, 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 교회와 관련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적시와 논평을 하고 있다(원고 교회 소속 목사, 장로와의 인터뷰 내용을 중간 중간에 삽입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원고 교회측의 입장도 방영하고 있다).

①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담임목사직 세습문제에 대한 포럼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를 무산시켰다(원고는 이를 보도 초반부에 방영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폭도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감리교 교단법에 의하면, 교회 각 기관의 대표와 목사, 장로 등으로 구성된 구역인사위원회에서 목회자 인사결정을 하고, 위 구역인사위원회에 인사의 당사자는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김선도牧사는 이전에 교회 예배시간과 피고 문화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담임목사를 세습시키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원고 교회는 인사 당사자인 김 목사가 참석한 채로 구역위원회(105인으로 구성)를 개최하여 그를 김 목사의 후임자로 선임하고, 광고 시간에 후임자 선임사실을 발표하였는데, 후임을 정하는 사실은 일부 관련된 자들 이외에는 모르고 있었다.

③ 원고 교회에는 위 후임결정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반발하는 신도들이 있고, 이들이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자 다른 신도들이 이를 저지하였으며, 출입을 저지당한 신도들은 교회 밖에서 따로 모여 예배를 보고 있으며(약 7, 8명의 교인들이 따로 예배를 보고 있는 화면이 보인다), 광림사랑 평신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한 반대운동도 하고 있다. 또 원고 교회의 한 부목사도 위와 같은 선임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가 사퇴권유를 받아 원고 교회를 떠났다.

④ 감리교 교단법에 의하면, 예산과 결산을 확정하는 기관은 상당수 신도로 구성된 구역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 교회의 경우에는 소수 인사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로 위임하여 재정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교회의 특성상 기획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예, 결산 결과는 전 신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교인 수가 만명 이하의 중, 소형 교회의 경우 93.7%가 재정결산서를 교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인데도, 원고 교회는 예산집행의 편의만을 들어 전체 신도들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⑤ 대형교회에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적인 부와 명예와 안정을 물려주는 세습의 문제는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⑥ 대형교회에서도 수입규모나 지출내역 같은 기본적 사항은 신도들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소수가 재정을 장악해 교회의 근본목적과는 달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여러 사실적시(① 내지 ④)와 논평(⑤, ⑥)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교회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또한, 논평 또는 의견표명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의견 또는 논평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1) 공익성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 교회를 포함한 교회들이 담임목사직 세습으로 찬반양론의 논쟁에 휩싸이고, 심지어는 그로 인하여 담임목사에 대한 폭력사태가 발생한 교회가 있으며, 재정운영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교회재산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회현상을 지적하여 비판하면서 동시에 교계 내부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교회가 진정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회가 그가 속한 교단 나름대

로의 기준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문제라고 할 것이나, 사회적 범죄의 원인이 위와 같은 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서 국민들이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의 약 1/4이 기독교인이라 알려져 있고, 원고 교회가 국내 교계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교회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방영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 교회 전체 교인 중 극소수로 구성된 ‘평신도연합’의 제보에 근거하여 방송의 상당부분을 이들의 주장에 할애하였으며, ‘평신도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평신도들이 위 연합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평신도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위 단체의 구성원수와 그 성격 등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여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마치 위 단체가 평신도를 대표한다고 믿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평신도연합’이라는 이름은 세속에 반대하는 신도들이 만든 단체의 이름이고, 피고들이 그 소속 신도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하면서 그 신원을 밝히는 차원에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원고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이를 환영하고 있고 지금 사기가 더 등천해 있다는 취지의 한영휘 장로의 발언내용을 소개하면서 원고 교회측의 반론을 소개하고 있는 점, 원고측 교인들로부터 교회출입이 저지되어 따로 예배를 보던 교인들의 수가 7, 8명 정도인 화면을 방영한 점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 및 기획의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면, ‘평신도연합’의 성격 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의 공익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방송의 상당부분을 이들 주장에 할애하여 편파보도를 하였다는 주장도, 원고 교회 소속 목사(박)와 장로들(한 , 진)의 주장내용이 함께 방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피고들이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여 방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실성

앞서 적시된 여러 사실(① 내지 ④)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모두 그 진실성이 인정되는 사실들이다(다만, ④에서 인용한 재정결산서의 공개비율은 중, 소형 교회를 상대로 하여 조사한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원고 교회와 같은 대형교회에서도 예, 결산 결과를 모든 신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요구되는 진실성은 중요 부분에 있어 진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만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위법성 조각의 법리에 따라, 이 부분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또, 앞서 본 논평 ⑤, ⑥은 위와 같이 진실인 사실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논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석 목사가 적법절차를 거쳐 후임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후임자 선출에 있어 무리하게 석 목사를 선출한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프로그램 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은 교회법적으로 후임자 선정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교단의 공식적인 판정을 기다려 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후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부가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왜곡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위 의견표시도 공정한 의견표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⑥의 논평과 관련하여, 교회가 기본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임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기준만으로 교회의 내부운동을 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재정운영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논평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공정한 논평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고,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공정한 논평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는 언론자유와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1. 9. 26.

재판장 판사 안 영 료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보도내용〉

PD수첩 2000 한국의 대형교회

방송인 : 후임 목회자 결정과 재정운영을 두고 한국교회가 시끄럽다.

최 (담당 피디, 이하 같다) : 지난 9월 5일 기독교윤리실천 등 기독교단체가 공동으로 대형교회의 이른바 담임목사직 세습문제에 대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돌발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남자(광림교회 교인) : 세습이라는 말때문에, 이 세습이라는 말때문에 왜 선동을 합니까? 안쓰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자(광림교회 교인) : 광림교회 잘못된 거 내놔.

남자(포럼주최측 인사) : 광림교회가 깡패야?

방송인 : ‘세습이 아니냐’는 외부의 지적에 해당 교회 신도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한 채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피디) :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김 입니다.

최 : 최 입니다. 2000년에는 유난히도 대형교회들을 둘러싼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 동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붐을 이루면서 사회적으로 봉사해 온 대형교회들이 가진 고민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대형교회가 가진 고민 중에 하나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회의 성장을 이끈 지도자의 은퇴로 야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해결방법 중에 하나로 나타난 것이 소위 목회자 세습입니다. 등록 교인 8만5천명, 세계 최대의 단일 감리교회인 광림교회. 이 교회를 오늘날의 대형교회로 성장시킨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지난 30년간 광림교회를 이끌어온 김 목사입니다.

박 (광림교회 기획담당목사, 이하 같다) :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런 교회들

도 아직 다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그 분들의 지도력의 결과라고 봐지고요, 오늘 광림교회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그 중심에 김선도 목사님의 지도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평신도연합(광림교회, 이하 같다) : 그 분은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또 사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한국감리교단을 명실상부하게 이끌어오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최 : 후배 목사와 신도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김 목사. 내년이면 정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임 목사로 결정된 사람은 바로 김 목사의 아들인 석 목사라고 합니다.

평신도연합 : 어느 날 갑자기 4월 30일로 기억되지만, 광고시간에 아드님이신 석 목사님을 인사구역회에서 만장일치로 후임으로 정하셨다는 발표를 느닷없이 하셔서 저희들은 아주 황당해 했습니다.

최 :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기독교 단체는 이를 세습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 : 재벌도 사실은 계승이 돼서는 안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 교회에 자기 아들에게 세습적인 부와 명예와 안정, 이것을 물려주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 :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고, 청년기독교단체들의 시위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나 광림교회측은 대다수 신도들이 흔들림없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광림교회 장로, 이하 같다) : 우리가 전부들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지금 사기가 더 등천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 : 개신교의 대표적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측에서도 이를 세습으로 규정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총무) : 아들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격도 안갖췄는데, 아들이라는 이유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너 해라’ 그런다면 그건 안되죠,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는 교인들이 원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 :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직을 아들에게 되물림하는 문제에 대해 기독교계는 찬반양론으로 뚜렷이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의 초점은 주로 선출절차의 정

당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교인들이 원하면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대형교회의 경우 강력한 권위를 가진 담임목사가 사실상 결정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 목사 후임으로 아들 석 목사를 선출한 광림교회는 어떤 절차를 밟았을까.

진(광림교회 장로, 이하 같다) : 제가 듣기에는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이다, 생김새도 더 잘생겼다, 설교말씀도 또 좋다 하는 것을 저는 수 차 많이 들어봅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출할 수 밖에 없다 하고 그 결정을 지었습니다.

최 : 김 목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장로들이 추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신도들은 이를 몰랐다고 합니다.

평신도연합 : 후임을 정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히 관련된 소수 외에는.

최 :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네요.

평신도연합 : 글썄 뭐,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죠.

최 : 그런데 감리교교단법에 의하면, 목회자의 인사결정은 교회 각 기관의 대표와 목사, 장로 등으로 구성된 구역인사위원회가 하는데 광림교회의 경우 105명이라고 합니다. 광림교회에서는 지난 4월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목사를 결정했습니다.

평신도연합 : 이 결의는 원천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원인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언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김 담임목사님과 석 당사자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 인사구역위원회에 결의되실 그 시점에 그 당시에 계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최 : 교단법에서도 인사의 당사자가 구역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김목사 참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 : 많은 수의 장로님들이, 이미 과반수 이상의 장로님들이 그것을 합의하는 그런 이미 소위원까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라, 그래서 일단 구역인사위원이 다 참석한 후에 그 다음에 감리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서 자리에 착석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 : 구역인사위원회결정의 합법성 여부는 교단의 공식적인 판정을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설사 교회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김선도 목사가 그

동안 되물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다고 합니다.

평신도연합 : 주일날 예배때 석 목사님이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광림교회로 부목사로 부임해서 부임인사하면서 소개할 때, ‘ 석 목사는 세습하려고 데려온 거는 아닙니다.’하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누차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 : 김 목사는 지난 92년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러한 철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 저는 결코 무슨 제가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안한 목회를 하도록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도 내가 교회에 내가 성실한 목회자로서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무슨 혜택을 입었거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 : 되물림하지 않겠다고 누차 선언했던 김 목사, 그런데 광림교회는 왜 이같은 결정을 바꿨을까.

박 : 보면, 전임자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결과 전임자가 30년, 40년 걸려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교회도 후임자와의 갈등문제로 인해서 1년이 가기 전에 이렇게 분열이 되는 교회들도 있고, 어려움 당하고, 또 후임자가 전임자를 뭐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들도 참 창피한 얘기지만, 많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최 : 되물림은 전임 목사가 아들을 통해 은퇴 후에도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임자와 후임자가 서로 갈등을 일으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성장을 주도해 온 담임목사의 퇴임을 앞둔 한국 대형교회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의 하나인 C교회, 등록교인 3만5천을 헤아리던 대형교회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큰 공로를 세운 전임 담임목사.

[C교회의 목사직 세습문제와 관련된 분쟁부분 생략]

최 : 교회측은 PD수첩의 거듭되는 취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기독교신문이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목회자의 45%가 되물림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신학생이거나 목사인 아버지 목사들의 경우 찬성률이 60%로 나와 15%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앞으로 한국 교회에 되물림 현상이 폭넓게 자리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담임목사들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교회 내의 반대의견이 제대로 표출돼 수렴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광림교회 앞, 예배를 보러 들어가던 한 신도가 문 앞에서 다른 신도들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남자 : 왜 밀치고 그래요? 도대체.

최 : 저지하던 신도들은 교회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남자 : 왜 또 왔어? 왜? 교회를 얼마나 더 깨트려 먹어야 되겠어?

남자 : 물리적으로 막으시는 건 온당하지 못합니다

남자 : 아냐, 아냐 당연한거야.

남자 : 당신이 판단하는 건 온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테니까는 걱정하지 말아.

남자 : 세습을 반대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남자 : 반대를 하려면 다른데 가서 해, 다른데 가서

최 : 되물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림교회 신도들은 교회 밖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약 7, 8명의 예배보는 모습 방영).

(찬송가 부르는 소리)

최 : 이들은 광림사랑평신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평신도연합 :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교회측의 저지와 말하자면은 저 뿐만이 아닙니다. 제 가족이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가족하고. 처음에는 성가대에 서지말아라. 그 다음에는 또 뭐 속회 보지 말아라. 선교회에 나가지 말아라. 하나 하나 교회에서 제가 활동했던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끊더니 나중에는 제 집사람까지도 못나가게 하고.

한 : 교인 중에는 거기에 대한 분개를 갖는 사람. 뭐 전도사나 장로나 일반 신도있죠.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제재도 해 봤다든지 오히려 물리적으로 하는 걸 우리 장로회에서 특히 제가 예배위원장은 그걸 말립니다. 오히려.

최 : 광림교회의 한 부목사도 공개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송 (광림교회 전 부목사) : 정면으로 내가 마주서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가는 내 목회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일종의 목회자로서 저는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거예요. 내가 과연 목사로서 이 일을 피해야 될 것인가, 피해간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신 임지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선한 신앙의 길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최 : 송목사는 교회측으로부터 사퇴를 권유받아 결국 광림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신도들이나 교회측의 반대자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는 거꾸로 이들이 담임목사에게 보내는 신뢰와 애정을 말해 줍니다.

여자(광림교회 교인) : 우리 김 목사님같은 분이 가슴아파하는 거 보면 죽어, 죽어.

우리가 죽어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의 웃음소리)

손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 어느 정도의 좀 신비로운 카리스마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룩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 목사가 세운 교회고, 그 목사가 성장시킨 교회고, 따라서 그 모든 공로는 그 목사에게 돌아간다. 그런 분위기가 지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행사하는 권위는 대단하죠.

최 : 광림교회, 그러나 이 교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김 감독 기념 교회가 그것입니다. 광림교회의 성장에 김 목사의 카리스마는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카리스마가 민주적인 교회구조의 장애물로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권위는 신도들을 소외시켜 재정운동을 불투명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평신도연합 : 일반 교인들은 말하자면 교회 예산이 얼마고 그것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래도 목사님의 인격을 믿고 말하자면은 그렇게 재정이 잘 투명하게 집행됐으리라, 이렇게 보통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 : 전교인이 모인 상태에서 예, 결산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진 : 장로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웬만한 교회는 다 기획위원회에다가 위임사항입니다.

최 : 감리교단법에 의하면, 결산과 예산을 확정하는 기관은 상당수 신도로 구성된 구역회지만, 광림교회의 경우 소수 인사들이 소속한 기획위원회로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연합 : ‘재정위원회로 일임시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아닙니다. 밝힙시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와서 보여주시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곤란하니까.

최 : 위임은 위임이더라도 총액 자체를 밝히지를 않는거죠?

평신도연합 : 예, 예, 그렇습니다.

최 : 설사 구역회의 구성원이 너무 많아서 기획위원회에 위임하더라도 예, 결산 결과는 전신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합니다.

정 (서울중앙교회 목사) : 저희는 전부 다 그게 제정할 때부터 공개하고 집행 다 끝난 다음에 결산보고하고 다 해서 다 교인들이 알죠, 그렇게 돼 있죠.

진 : 전체에다가 알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 알릴 필요가 없습니까? 예, 결산을.

진 : 일단 예, 결산은 아웃라인은 간단하게는 다 알게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우리가 얘기한거로서,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다 듣다보면은 우리가 1년 내에 1년을 집행을 못합니다.

최 : 교인 수 만명 이하의 중소형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소형 교회의 경우 93.7%가 재정결산서를 교인들에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중소형 교회는 매주 한 번씩 발행하는 주보를 통해 현금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 : 소형 교회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큰 교회에서는 그걸 못합니다. 교회 전체에다가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결국은 댁에나 다른 분이 또 문의할 겁니다. 그렇죠? 그거 감당못했습니다. 기획위원은, 기획위원도 장로님들도 우리 교인들이 선출해 준 겁니다.

최 : 물론 대형교회의 경우 신도의 수가 많으니 만큼 여러가지 일을 위임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규모나 지출내역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 신도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규모의 크기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만에 하나 소수가 재정을 장악해 교회의 근본목적과는 달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최대요,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시 재정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鏞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일방적, 극단적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정당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 9. 26.자 판결(97가합68721)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1년 9월 26일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와 이 교수가 조선일보사 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평론 또는 의견표명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으려면, 그에 포함되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은 우리나라의 남북분단과 관련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 그로 인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의 존재와 국민정서, 정치상황 등에 비추어 자칫 상대방의 사상성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방향으로 흘러 그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결론에 이를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평론 또는 의견표명은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포함하여 적시하고 있는 사실에 위와 같은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없다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춘 정당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기사 등은 통일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상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일방적, 극단적 사실을 주장, 적시하고 있어 그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못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이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는 피고들이 월간조선과 한국논단 등에서 이 교수가 저술한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제목의 책자가 이적표현물이고, 원고들이 친공, 친북세력이라는 취지의 기사와 유인물을 게재, 배포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해당 언론사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97가합68721 손해배상(기)

원 고 : 1.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

서울

대표자 이사 강 만 길

2.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우 영, 방 상 훈

2. 이

3. 우

피고 1,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피고 1, 2, 3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4. 이

5. 김

6. 박

피고 4, 5, 6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진 우

변 론 종 결 : 2001. 9. 12.

주 문 : 1. 가. 원고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에게, 피고 이 , 김 은 각 10,000,000 원,

나. 원고 이 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50,000,000원,

(2) 피고 이 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0,000원,

(3) 피고 우 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

(4) 피고 이 은 10,000,000원,

(5) 피고 김 은 15,000,000원,

(6) 피고 이 , 박 은 각자 5,000,000원,

(7) 피고 김 , 박 은 각자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9. 2.부터 2001.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가. 원고들에게,

피고 이 은 각 100,000,000원, 피고 김정철은 각 50,000,000원,

나. 원고 이 에게,

-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이 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우 은 연대하여 30,000,000원,
- (3)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50,000,000원,
- (4) 피고 김 은 100,000,000원,
- (5) 피고 이 , 박 은 연대하여 50,000,000원,
- (6) 피고 김 , 박 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9. 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가. 피고들은 별지12 금지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책 및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성명서 등 유인물, 광고지 기타 출판물 등의 인쇄물을 각 편집, 제작, 발행, 발매, 반포하거나 이를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만약 피고들이 위 가.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각 위반한 행위 1건당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 사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 23~2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이하 ‘원고 경실련 통일협회’라 한다)는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운동, 조사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4. 2. 28. 설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의 단체이고, 원고 이 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원고 경실련 통일협회의 이사 및 정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여 왔다.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 및 월간잡지인 <월간조선>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이 , 우 은 피고 조선일보사 소속으로서 <월간조선>의 취재기자이다.

(3) 피고 이 은 월간 <한국논단>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피고 김 은 월간 <신문고>의 발행인이며, 피고 박 은 피고 이 과 더불어 ‘통일대비포럼’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여 왔다.

나.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제작경위

(1) 출판사인 주식회사 천재교육에서는 1994. 4. 내지 5.경 당시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진행되어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통일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실은 교양도서를 출판하기로 하고, 그 준비작업으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통일이 된

후에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항목들 중 일부를 주제로 선별, 그에 상응하는 질문을 작성한 후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을 받기로 하였다.

(2) 1995. 2.경부터는 위 출판사의 직원인 김 가 위 책자의 발간작업을 전담하게 되었는데, 김 는 27개 항목의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별로 질문(1쪽), 초등학생 글 2건(각 1쪽), 전문가 논평(2쪽), 북한이야기(1쪽)의 순서로 책자의 편성체계를 결정한 다음 위 출판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친분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주제 및 설명자료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글을 받아 오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집된 초등학생들의 글들 중 위 책자의 기획방침에 부합하는 것들을 선별하였다.

(3) 또한 김 는 초등학생들의 글에 대한 주제별 전문가 논평을 집필할 저자를 섭외함에 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간사 김 의 소개로 원고 이 를 선정하기로 하고, 1995. 6. 하순경 위 원고를 만나 집필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4) 당시 원고 이 는 김 로부터 위 책자 중 '전문가 논평' 및 '북한이야기' 부분의 집필을 부탁받았으나 시간 사정을 이유로 '북한이야기' 부분은 김 가 작성한 후 위 원고가 검토하기로 하고, 김 에게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 등을 알려주었으며, 김 로부터 전달받은 초등학생들의 글 원본이 읽기가 곤란하다고 되돌려 주고 며칠 뒤 컴퓨터 워드로 친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기초로 '전문가 논평'을 집필하게 되었다.

(5) 이에 따라 김 는 원고 이 로부터 그가 집필한 '전문가 논평' 부분의 글을 받았고, 조선일보의 북한상식란, 내외통신 발행의 북한조감, 통일원 북한자료센터 등에서 입수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북한이야기' 부분을 작성하였으며, 위 출판사 직원인 우(필명 호)로부터 위 책자에 넣을 삽화를 건네받은 후 위 책자 내용을 편집함에 있어 초등학생들의 글이 1쪽 분량을 넘거나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는 등의 경우 이를 1쪽 분량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제 또는 수정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가) 안산 경일초등학교 권 의 글 중 “북한 주민에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못된 마음을 알려 주어야 하겠다. 그러면 북한 국가를 애국가로 쓰자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애국가는 그대로 쓰고…”라는 부분 삭제

(나) 서울 공덕초등학교 임 의 글 중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유지시켜 준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전쟁준비에 자유란 언어도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방위세는 무지하게 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

은 의식주 생활을 하지 못하여 굶주림에 처하게 되고 그러다 언젠간 나라도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였을 좋겠다."라는 부분 삭제, 그대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추가

(다) 서울 신정초등학교 김 의 글 첫부분 "지금 우리나라는 튼튼한 기둥인 정부가 자리잡고 있으며 지방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 삭제, 끝부분에서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북한 사람들이 민주주의 정신과 행동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수정

(라) 서울 구룡초등학교 님 의 글 중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김정일과 우리가 손잡아 하루빨리 평화통일 이룩하는데 힘써 두나라가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김정일과 우리가 손잡아 빨리 두나라가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고"라고 수정

(6) 위 출판사는 위와 같은 편집과정 후 원고 이 로부터 최종 교정 및 출판 승낙을 받아 1995. 10. 20.경 저자를 원고 이 로 한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제목의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한다)를 제작, 발행하였다(이 사건 책자는 기획 당시 총 2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인권탄압, 우상숭배, 전범처리 문제 등은 제2권에서 실을 예정이었으나 예상 외로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제2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의 기사게재 등

(1) 통일원은 1997. 2.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MBC 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통일이 되면', '마음의 거리'라는 제목의 공익광고를 방영하였는데, 이를 접하게 된 피고 이 은 위 공익광고 중 통일이 되면 수도, 나라꽃, 공휴일이 바뀔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문제삼기로 하고, 위 공익광고의 제작경위 및 위 공익광고를 참고자료로 이용된 이 사건 책자의 발간경위 등을 취재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이 은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제1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조선일보사는 이를 <월간조선> 1997년 7월호에 게재하였다. 그후 제1 기사를 계기로 원고들 측과 피고들 측 사이에 이 사건 책자의 이적성 및 원고들의 사상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게재되거나 유인물 등이 배포되게 되었다.

(3) 피고 이 은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제2기사'라 한다)를, 피고 우

나. 판단의 전제

(1)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평론 또는 의견표명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됨은 자명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하고 상호 토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것이 합리적인 토론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한편, 평론 또는 의견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의견 개진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거나 예시하는 등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면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의하여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3) 이러한 경우 평론 또는 의견표명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으려면, 그에 포함되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은 우리나라의 남북분단과 관련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 그로 인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의 존재와 국민 정서, 정치 상황 등에 비추어 자칫 상대방의 사상성(이른바 ‘색깔’)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방향으로 흘러 그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결론에 이를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평론 또는 의견표명은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포함하여 적시하고 있는 사실에 위와 같은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없다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춘 정당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4) 이하에서는, 제1기사 내지 제11유인물이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정당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기사 내지 제11유인물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이 사건 책자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평론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이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

하여는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한편,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 개별적 판단

(1) 제1기사

제1기사의 내용은, 『통일이 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라는 제목 하에 통일원의 위 공익광고 내용 중 통일이 되면 수도, 나라꽃 및 공휴일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연상케 하는데 위 공익광고의 참고자료로 원고 이 저술의 이 사건 책자가 이용되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책자의 내용 중 통일이 되면 나라 이름, 국기, 나라꽃, 애국가 등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교 설명 부분, 북한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시절에 관하여 배운다는 부분 및 북한 여교사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시절!’이란 글씨가 쓰여진 칠판 앞에 웃고 있는 삽화가 실린 부분, 북한의 애국가 및 김일성 장군의 노래의 가사를 실은 부분, 북한에서는 의료, 생활 필수품, 집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부분 등을 거론하면서, 원고 이

가 이 사건 책자에서 공산주의에 관하여 그 체제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게으름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만 설명할 뿐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평등의 이면에 숨겨진 계급사회나 반인권적 폐해,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주도한 전범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나아가, 피고 이 과 통일원의 과장, 원고 이 와의 인터뷰 내용을 적시하면서 이 사건 책자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실상이나 굶주림의 원인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북한을 살 만한 나라 혹은 국가로서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라고 가르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위 공익광고와 관련하여 휴전선 부근에서 근무하는 육군 대대장의 ‘3억8천만원을 들여 북한의 연방제 통일 전략을 도와준 셈, 북한 당국의 적화통일에 이로운 광고’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는 ‘일부 공무원과 정부 자문교수들 … 의 그릇된 판단이 대한민국의 국기와 정통성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제1기사는 원고 이 가 이 사건 책자를 통하여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전제로 한 설명 내지 북한 체제나 실상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 등을 함으로써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제2기사

제2기사의 내용을 보면, 소제목으로 ‘충격’, ‘왜곡’, ‘상처’, ‘북한이란 주제 앞에서 양심

도 뒤틀리는 지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책자가 어린이들의 글의 일부를 왜곡시킨 채 저자인 원고 이의 의도대로 이용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고는 그 근거로 위 권의 글 및 임두리의 글 일부가 삭제 또는 수정된 사례를 제시하였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책자와 관련하여 제1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같은 취지로 다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원고 이에 대하여 '반공의식이 결여된 사람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북한 입장을 오히려 두둔하는 것처럼 썼습니다'라는 현직 교감의 말, '이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라는 아동문학가의 말 및 '... 지성들이 유독 북한이란 주제만 만나면 이상하게 뒤틀리고 변형되고 심지어 양심마저도 마비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제대로 배운 바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서울대 교수의 말 등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2기사는 원고 이가 이 사건 책자를 통하여 북한에 동조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초등학생들의 글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왜곡시켰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제3기사

제3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교수가 쓴 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찰에 공식 의뢰해 ... 저는 현행법 위반이란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는 이건개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이 교수의 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관심 밖이 돼 버렸다'라는 등으로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따라서, 제3기사는 원고 이 저서의 이 사건 책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표현물이란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제4사설

제4사설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들의 통일에 관한 글이 누구에 의해선지 일부 침삭되는 등 변형한 사실이 드러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먼저 이교수가 이 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어린이들의 글을 특정한 시각에서 취사선택한 일은 없는지, 그리고 자신의 시각에 맞게 몇줄씩 뺀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지식인의 소신으로 말해야 한다', '이교수가 혹시라도 어린이들의 글을 재편집함으로써 그들의 본래의 생각을 변형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일부 논자들도 이 건에 대해 자초지종의 진상을 캐보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정치적인 편싸움의 관점에서 대하려는 유혹을 잘 물리쳐 주었으면 한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본래의 글이 왜 중간중간 빠졌는지 그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일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4사설은 이 사건 책자에 포함된 초등학생들의 글이 누군가에 의해 일부 첨삭되는 등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제2기사와 같이 원고 이장희가 초등학생들의 글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왜곡시켰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초등학생들의 글이 변형된 것과 관련하여 저자인 원고 이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그 변형의 경위에 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선일보’ 편집진의 의견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4사설은 전체적으로 보아 언론사의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원고 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일부 전제되어 있는 사실 즉 초등학생들의 글이 누군가에 의해 일부 첨삭되는 등 변형되었다는 것이 바로 원고 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글 일부가 삭제 또는 수정된 사실은 진실한 것이기도 하다).

(5) 제5논단

제5논단의 내용을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리나』라는 제목 하에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참여연대 … 등등 … 그대들은 표면에 내걸은 가면의 간판을 벗고 제 모습을 만천 하에 드러내 보여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산하에 통일협회라는 것이 있고, 그 우두머리에 외국어 대학의 이 교수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하 이 단체는 단순한 … 정의 실천이 목적이 아니구나”하고 깨달았다’, ‘… 이 책은 은연중에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을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원고 이)는 공산주의 환상 속에서 백일몽을 꾸고 있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고 남한의 어린이들을 의식화하고 세뇌하려 한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 그같은 공산주의 찬양서’, ‘경실련 통일협회는 어떤 통일을 지향하며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가 … 그 정체를 밝히길 바란다’, ‘… 만약 이에 불응한다면 그대들은 … 친공, 친북세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으며…’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제5논단은 이 사건 책자가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고, 원고들이 친공, 친북세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6) 제9논단

제9논단의 내용도, 통일원의 위 공익광고 및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을 문제삼으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망치는 통일교육은 누구의 지령인가’, ‘통일원이 일으킨 이번 용공홍보 사건은 … 통일원 홍보국에 잠입 또는 영향력을 주는 문화공작 고정간첩의 농간에 걸려 … 놀아났거나 아니면 직접 음모공작을 지휘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의 전통을 완

전혀 무시하는 반국가적 선전'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책자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이고, 원고 이가 친공, 친북인사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7) 제6광고, 제7, 8, 10, 11유인물

위 광고 및 유인물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을 문제삼으면서 원고 이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있고, '북한의 통일전략 홍보'(제6광고), '용공도서', '불온도서', '이 교수는 용공주의자가 분명하다'(제7유인물), '좌경세력', '북한체제 미화'(제8유인물), '이 사건 책자는 ... 반국가적 이적물이다'(제10유인물), '북한을 찬양한 이',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이'(제11유인물)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책자가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고, 원고 이가 친공, 친북인사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11유인물은 원고 이가 어린이들의 글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사실도 적시하고 있다.

한편, 제10, 11유인물은 원고 경실련 통일협회에 대하여도 원고 이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반공주의 공격하는 경실련 통일협회 실체를 밝혀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친북단체인가'(제10유인물), '경실련 통일협회는 극좌단체가 분명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 경실련 통일협회도 친공, 친북단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제4사설을 제외한 제1기사 내지 제11유인물(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기사 등'이라 한다)은, 원고 이가 이 사건 책자를 통하여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전제로 한 설명 내지 북한체제나 실상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 등을 함으로써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초등학생들의 글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왜곡시켰다는 사실, 또는 이 사건 책자가 이적표현물이고, 원고들이 친공, 친북세력이라는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즉 남북분단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국민 정서, 이 사건 기사 등의 게재, 배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사회적 평판 등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등은 피고들의 이 사건 책자 등과 관련한 순수한 평론 또는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아울러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을 작성, 게재 또는 배포하여 원고 이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이, 김은 제5논단, 제10, 11유인물을 작성, 게재 또는 배포하여 원고 경실련 통일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만 제4사설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 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이 장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기사 등의 위법성 여부

가. 이 사건 기사 등의 공익성 여부

이 사건 기사 등은 대학교수인 원고 이 저서의 이 사건 책자의 이적성, 원고 이 및 유력한 시민단체의 산하단체인 원고 경실련 통일협회의 친공, 친북성향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분단현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자체로 보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 등의 게재 또는 배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

(1) 이 사건 책자의 이적성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등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책자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등 이적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책자가 그러한 이적성을 띠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이 사건 책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책자는 ‘나라이름은 무엇으로 바꿀까’라는 항목에서 통일이 되면 나라이름, 국기, 나라꽃, 애국가 등이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을 담고 있으나, 이것이 북한 중심의 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위 설명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고, 원고 이 는 통일 후의 체제와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어떤 체제가 되든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라고 밝힘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점(이 사건 책자 16, 17쪽), ‘수도는 어디에’라는 항목에서 통일 후의 수도와 관련하여 지리적 위치상 중심지역인 개성이나 서울지역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설명은 찾아볼 수 없고(28, 29쪽), ‘공휴일도 바꿀까’라는 항목에서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은 지금 북한에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하지만 남한으로서는 명절로 꼽을 수 없는 날이지요. 이 날들은 통일 뒤 어떻게 될까요. … 아마 통일이 되면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명절에서 빠질 거예요’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82, 83쪽), ‘민주주의가 될까, 공산주의가 될까’라는 항목에서 ‘공산주의는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공산주의는 … 다 같이 잘 살자는 뜻이 좋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매우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지요. 자본주의는 … 지난 역사에서 보면 큰 단점이 드러났어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거든요’라고 체제 비교

설명을 하고 있으나, 바로 이어지는 설명에서 ‘그러나 오랫동안 자본주의 나라들과 힘을 겨루던 사회주의 나라들은 지금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는 결국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지요. … 이렇게 본다면 북한도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되는 것은 처음엔 어려움이 좀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여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소멸과 남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역사의 추세라고 결론짓고 있는 점(22, 23쪽), ‘북한이야기 어린이1’(18쪽)란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시절’을 배운다고 설명하면서 하단부에 북한 여교사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시절!’이란 글씨가 쓰여진 칠판 앞에 웃고 있는 삽화를 싣고 있고, ‘북한이야기 애국가’(30쪽)란에서 북한의 애국가 및 김일성 장군의 노래의 가사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으며, 다른 ‘북한이야기’란들(24, 156, 174쪽)에서도 북한에서는 의료 서비스, 생활 필수품, 집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내용이 실려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책자의 기획방침에 따라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책자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위 내용이 바로 김일성이나 김정일 또는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북한의 애국가 및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가사가 이 사건 기사 등의 게재 이전인 1995. 5. 23.자 조선일보, 1994. 2. 28.자 한국일보에도 실린 적이 있다), 그 외에도 ‘사실 대부분의 북한 사람에겐 김일성 교조주의가 마치 종교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100쪽), ‘북한에서는 그동안 김일성 집안을 중심으로 국사의 내용을 바꿔버린 것이 많습니다. 김일성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 등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역사를 왜곡시킨 것이지요. 이런 잘못된 통일이 되면 두말 할 것도 없이 고쳐질 것입니다’(130, 131쪽)라는 등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고 있고, 북한의 경제, 사회 현실에 관하여도 불편하고 번잡한 기차여행(66쪽), 청바지 값이 노동자 월급의 네다섯 배나 되어 당간부 자식 등이나 입을 수 있다는 내용(90쪽), 여행의 자유가 없고 뇌물을 주고 여행증명서를 받기도 한다는 내용(96쪽), 병원 시설과 약이 부족해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156쪽) 등을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이 북한을 찬양, 선전하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띤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초등학생들의 글 왜곡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기사 및 제11유인물은 원고 이가 초등학생들의 글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왜곡시켰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가 이 사건 책자의 교정 차원에서 글 전체의 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제 또는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원고 이가 이 사건 책자의 저자로서 위와 같은 삭제 또는 수정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책자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이 친공, 친북세력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5논단 내지 제11유인물은 원고들이 친공, 친북세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책자를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더하여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는 ‘남북한 자유왕래 접촉시 제기되는 기본적인 법적 문제’라는 논문을 통하여 북한체제를 비판하면서 북한 형법규정과 노동당규약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이가 친공, 친북인사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 경실련 통일협회가 앞서 본 ‘사상 논쟁’의 과정에서 원고 이의 입장을 옹호하였다고 하여 바로 친공, 친북단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이 친공, 친북세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책자가 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이적성이 없음이 분명해 보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책자의 내용 중 위와 같이 이적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는 부분은 소개하지 않은 채(특히 이 사건 기사 등의 계기가 된 제1기사에서는 이 사건 책자 중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체제의 비교 설명 부분을 인용하면서 북한 공산주의체제의 소멸과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역사의 추세라고 결론지은 부분을 뺀 채 그 앞 부분만을 소개하고 있다) 일부 내용만을 문제삼으면서 북한의 반인권적 폐해, 독재, 세습체제, 전쟁도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책자에 이적성이 있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잘못된 편견을 전제로 원고 이가 초등학생들의 글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왜곡시켰다거나 원고들이 친공, 친북세력이라는 성급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등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기사 등은 통일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상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일방적, 극단적 사실을 주장, 적시하고 있어 그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못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들의 책임범위

가. 손해배상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같은 기사 등에 관련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기사 등의 작성, 게재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도 본 바와 같이 통일문제 및 그에 관한 사상성에 대한 비판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즉 국가보안법의 존재, 국민 정서, 정치 상황 등에 비추어 비판의 상대방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성급하게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한 점, 특히 제1기사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사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원고 이 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게 한 계기가 된 점, 제5논단 내지 제11유인물도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들을 공격한 점, 이 사건 기사 등의 각 작성, 게재 또는 배포경위, 각 기사 등의 영향력, 각 적시내용과 표현방법,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여부 등 보도 후의 정황,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다음과 같은 액수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이 에 대하여, 피고 조선일보사는 제1, 2, 3기사와 관련하여 그 발행사로서 50,000,000원, 피고 이 은 피고 조선일보사와 각자 제1, 2기사와 관련하여 그 작성자로서 위 금원 중 40,000,000원, 피고 우 은 피고 조선일보사와 각자 제3기사와 관련하여 그 작성자로서 위 50,000,000원 중 10,000,000원, 피고 이 은 제5논단과 관련하여 그 작성자 겸 발행인으로서 10,000,000원, 피고 김 은 제9논단, 제7, 10, 11유인물과 관련하여 그 작성자 겸 발행인 또는 참여자로서 15,000,000원, 피고 이 , 박 은 각자 제6광고와 관련하여 그 참여자들로서 5,000,000원, 피고 김 , 박 은 각자 제8유인물과 관련하여 그 참여자들로서 5,000,000원을, 원고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에 대하여, 피고 이 은 제5논단과 관련하여 10,000,000원, 피고 김 은 제10, 11유인물과 관련하여 10,000,000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별지12 금지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의 편집, 제작, 발행, 발매, 반포, 그 내용의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에의 게시를 금지할 것을 구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 이 에 대하여 이미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것이 조선일보 등 언론에도 보도된 점,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점, 이 사건 기사 등의 게재 또는 배포의 전후경위 및 현재의 상황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금지청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각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기사 등 중 최후인 제11유인물의 배포일(1997. 9. 2.)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2001. 9.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2001. 9. 26.

재판장 판사 안 영 룰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별 지〉 기재내용 생략 - 편집자 주

鏞

**이 사건 보도가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 10. 10.자 판결(2001가합1961)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룰 부장판사)는 2001년 10월 10일 조 씨와 그

의 가족 3인이 한국방송공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피의사실 공표 및 보도와 초상권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여권사기, 밀매라는 중요 범죄의 피의자가 검거되지 아니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 조 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소재탐지 또한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을 고려할 때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수배가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정도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할 것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적극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제작협조를 요청하여 이러한 위험을 내포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여 방송하는 이상 이 사건 보도가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의 발표를 극화하여 방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자로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공개수배방송을 할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더욱 면밀한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가 중요 범죄의 피의자 검거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피고 대한민국의 수사결과만을 믿고 더 이상의 사실확인 없이 원고 조 를 범죄자로 묘사, 공개수배하고 위 원고의 사진을 방영한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등 부산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2000년 10월 28일 「공개수배 사건25시」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여권사기, 밀매의 범행을 모의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와 함께 원고를 전국에 공개수배하자 원고는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0년 11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0서울중재355)을 하

여 중재결과 합의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합1961 손해배상(기)

원 고 : 1. 조

2. 이

3. 조

4. 조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조 , 모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주 교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 권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최 경 원

소송수행자 이 지 수

변 론 종 결 : 2001. 9. 5.

주 문 : 1. 피고들은 원고 조 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이 에게 각 4,000,000원, 원고 조 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조 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1. 1. 19.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2001. 1. 18.부터 2001.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 에게 70,000,000원, 원고 이 에게 20,000,000원, 원고 조 , 조 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4, 16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15, 17~31, 33, 34, 37~44, 46~53, 56~69, 7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영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나 제16호증의 기재는 을나 제3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조 는 함맥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이 은 원고 조 의 처, 원고 조 , 조 은 원고 조 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조 등에 대한 수사(이 사건 보도 전)

(1) 부산지방경찰청은 2000. 5. 23. 부산 사상구 에 있는 KNC무역주식회사(이하 KNC라 한다)의 대표, 전무 등이 생활정보지에 회사원 모집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30여 명에게 무역을 하려면 여권이 있어야 된다고 여권을 제출하게 하여 여권 30여 장을 편취하여 잠적하였다는 제보를 접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2)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담당경찰관들은 수사를 통해 위 회사의 대표는 주 (가명 백), 전무는 권 (가명 권), 중국에 파견된 공범은 남 이고, KNC의 사무실 전화는 원고 조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며, 주 , 권 등은 위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여권을 편취하여 대한민국과 중국을 왕래하며 편취한 여권을 밀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하는 자들임을 확인하였다.

(3) 위 경찰청 소속 담당경찰관들은 원고 조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하여 2000. 8. 9. 원고 조 의 주소지인 서울 화곡7동 ○○○-○○ ○○○○○빌라 주변 수사를 통해 위 원고의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다른 공범들과의 연락 및 도주의 우려로 인하여 직접 위 원고를 만나 조사하지는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담당경찰관들은 2000. 9. 27. 강원 평창군에서 남 를 긴급체포하고, 권 의 체포를 위해 강릉시에 있는 권 의 전처의 거주지를 급습하였으나 권 찾을 수 없었다.

(5) 원고 조 등의 지명수배

부산지방경찰청은 2000. 10. 4. 검거되지 않은 용의자 주 , 권 , 원고 조 에 대한 최종소재 수사결과 다음과 같이 각 소재불명이므로 지명수배를 하고 다음날 기소중지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가) 주 은 최후 주소 진주시 하대2동 ○○○-○○에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

이고, 남 의 진술에 따르면 2000. 4. 4. 남 의 여권을 위조하여 국내 입국한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 등지에서 체류 중이라는 것으로서 소재불명이었다.

(나) 권 은 최후주소 인천 연수구 연수동 〇〇〇-〇에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이고, 전처의 거주지에 범행 전 잠시 거주하였으나 범행 후에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소재불명이었다.

(다) 담당경찰관들은 원고 조 가 2000. 9. 23.자로 이전 주소지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〇〇〇-〇〇〇 〇〇통 〇반 〇〇연립 〇〇〇호로 주소 이전한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주소지의 통장과 반장에게 전화하여 조 가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한 바, 위 통장과 반장은 위 주소지에는 약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신들과 잘 아는 사람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 조 가 거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하므로 원고 조 또한 소재불명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경위

(1) 「공개수배 사건25시」 프로그램은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경찰청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소재 제공 등 제작협조 요청을 하여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검거되지 아니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그 피의사실을 극화하여 방송하면서 피의자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여 수배하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이다.

(2) 이 사건 취재요청 및 제작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위 프로그램 제작팀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여권밀매(이 사건 범행)사범검거를 위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00. 10. 7.경 위 경찰청에 프로그램의 제작협조를 요청하였다.

위 프로그램 제작팀은 2000. 10. 13. 위 경찰청을 방문하여 담당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개요를 듣고, 경찰수사기록 등을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같은 달 23.부터 25.까지 제작에 필요한 촬영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보도 전 권 의 자수

권 은 자신이 위 프로그램에 의해 공개수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방영 하루 전인 2000. 10. 27. 18:00경 부산경찰청에 전화하여 자수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13:00경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자수할 것임을 밝히면서 위 프로그램 방영시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한 후 인천지방경찰청 연수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마. 이 사건 보도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0. 10. 28. 22:00 위 프로그램을 별지 보도내용 기재와 같이 방영, 보도하였다(권 〇의 자수에 따라 권 〇은 가명으로 방송).

바. 이 사건 보도 후의 정황

(1) 원고 조 〇는 위 프로그램을 보고서야 자신이 그러한 혐의를 받고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보도 직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연수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2) 이후 밝혀진 권 〇과 원고 조 〇의 관계 및 위 원고 명의의 전화가입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권 〇과 원고 조 〇는 1998.경 알게되어 동업으로 1998. 10. 27. ‘조권하우징건설’을 설립한 후, 1999. 4. 22. 함맥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 조 〇는 1999. 3.경 권 〇에게 위 건설회사의 강릉지사 설립 업무를 위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권 〇에게 건네 주었고, 권영현은 위 주민등록증을 위 업무상 사용한 후 위 원고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었다.

(다) 원고 조 〇 또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업무상 권 〇에게 준 사실을 잊고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여 1999. 3. 30.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았다.

(라) 권 〇은 원고 조 〇로부터 사업 경비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1999. 7. 경 이후 위 건설회사 사무실에 나가지 아니하고 원고 조 〇와 연락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 조 〇는 1999. 10. 5. 권 〇을 위 건설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바) 권 〇은 2000. 4. 경 위 KNC의 설립시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고 기소중지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전화가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조 〇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원고 명의로 위 KNC 사무실의 전화가입을 하였다.

(3) 원고 조 〇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도용당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권 〇 또한 원고 조 〇는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신이 위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였을 뿐이며 아직 검거되지 아니한 주 〇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부산지방경찰청은 주 〇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권 〇, 원고 조 〇의 범행 가담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2000. 11. 22. 권 〇, 원고 조 〇에 대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4) 반론보도

원고 조 〇가 피고 한국방송공사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함에 따라, 위 피고는 언론중재위

원회의 중재를 거쳐 2000. 12. 9. 「공개수배 사건25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조 에 대한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

(1) 원고 조 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의 부산지방경찰청이 피고 한국방송공사에게 원고 조 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나아가 피고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원고 조 를 전국에 공개수배한다는 이 사건 보도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보도를 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원고 조 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 들은 원고 조 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조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 조 의 사진을 위 원고의 허락도 없이 방영함으로써 위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가 형사재판을 통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으며(헌법 제27항 제4항),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공판청구 전에는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형법 제126조)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산지방경찰청의 담당경찰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 조 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고 한국방송공사 위 프로그램 제작팀의 이 사건 보도를 위한 협조요청을 받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을 설명하고 수사기록을 열람시키고 위 원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위 원고의 공개수배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위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창희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원고 조 가 주 , 권 등과 함께 이 사

건 범행을 모의하고 위 범행에 있어 바람잡이, 알선책 등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단정적으로 극화하여 보도하면서, 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원고의 실명, 나이, 사진을 방영하여 위 원고를 전국에 공개수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위 원고를 여권사기, 밀매범으로 묘사함으로써 위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 조 는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의 각각의 불법행위(피고 대한민국의 피의사실공표와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여권사기, 밀매라는 중대범죄의 피의자 검거를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이를 공개수배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 조 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것은 진실한 것이므로, 위 원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공개수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의사실 공표목적의 공익성,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참조).

(나) 먼저,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이 사건 담당경찰관들이 원고 조 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고 적시한 사실은 위 1.의 바.(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진실한 것이 아니므로, 나아가 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죄추정의 원칙,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 공표된 사실이 진실할 것으로 강하게 신뢰하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조 ○○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할 때까지 작성된 수사기록인 을나 제1~6, 8, 10~12호증, 을나 제13호증의 1, 을나 제40, 46~48, 58~63, 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NC 사무실의 전화가 원고 조 ○○ 명의로 가입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 위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사무실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안 ○○은 주 ○○, 권 ○○은 본 적이 있으나 위 원고는 본 적이 없고, 검거된 남 ○○도 원고 조 ○○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여권사기, 밀매라는 중요범죄의 피의자가 검거되지 아니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원고 조 ○○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 원고에 대한 소재탐지 또한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주소지의 통장과 반장과의 전화통화만으로 위 원고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원고의 가족들의 주소지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위 원고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을 고려할 때 피고 대한민국이 위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 각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보도는 여권사기, 밀매범의 검거라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 조 ○○가 이미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원고의 피의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수배가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정도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할 것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적극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제작협조를 요청하여 이러한 위험을 내포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여 방송하는 이상 이 사건 보도가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의 발표를 극화하여 방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자로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공개수배방송을 할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더욱 면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가 중요범죄의 피의자 검거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피고 대한민국의 수사결과만을 믿고 더 이상의 사실확인 없이 원고 조창희를 범죄자로 묘사, 공개수배하고 위 원고의 사진을 방영한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원고 이 , 조 , 조 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 의하여 원고 조 가 여권밀매범으로 공표, 보도되어 그 명예가 훼손된 이상 그로 인하여 그 처인 원고 이 , 자녀인 조 , 조 은 범죄자의 가족으로 낙인찍혀 주위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이 사건 피의사실 공표 및 보도와 초상권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 및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의 구체성, 피고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력 및 이 사건 보도의 시간대, 이 사건 보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 조 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이 에게 각 4,000,000원, 원고 조 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조 에게 각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자료로서 원고 조 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이 에게 각 4,000,000원, 원고 조 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조 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1. 1. 19.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2001. 1. 1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1. 10.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2001. 10. 10.

재판장 판사 안 영 름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별지1〉 보도내용

앵커 :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남의 여권을 위조하여 팔아먹는 사람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취업을 미끼로 사람을 끌어 모은 뒤에 구직자들로부터 여권을 챙겨서 중국으로 달아난 여권전문 사기단의 이야기입니다.

화면 : 조 의 대형사진이 앵커의 배경화면으로 사용됨

화면 : 주 이 이 에게 여권으로 돈을 벌자고 제의하는 내용과 극화 장면

자막 : 위조여권, 황금알을 낳는 거위 - 부산여권사기사건

앵커 : 지난 7월 24일 오스트리아 공항 경찰은 의문의 한국 여권 1매를 습득합니다.

자막 : 지난 7월 24일 오스트리아 공항 경찰은 한국 여권 1매를 습득해 한국 대사관에 인계

앵커 : 때마침 김 씨의 눈에 띈 것은 해외 운송요원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화면 : 피해자 김 가 생활정보지를 통해 해외취업을 시켜 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인들이 개설한 사무실로 찾아가 여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위를 극화한 장면, 그 과정에서 조 가 공범들과 함께 몰려 다니면서 범행에 적극·가담하는 내용을 극화함.

자막 : 조 의 역할의 하는 연기자의 얼굴 밑에 “조 (41세, 대역) 용의자”로 자막

으로 표시함

앵커 : 구직에 목말랐던 김 씨, 해외취업에 대한 꿈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앵커 : 뜻밖에도 피해자들이 텅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앵커 :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취업을 미끼로 사람을 끌어 모은 뒤에 취업신청자들의 여권을 챙겨 달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권 전문 사기단의 수법이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용의자들이 생활광고지에 낸 광고대 입금표를 통해서 용의자 이 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어 회사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추적한 끝에 또 다른 용의자 남 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 남 이 검거되는 장면

자막 : 지난 9월 27일 남 검거

화면 : 남 (대역 가명)에 대한 공범 조사 과정

자막 : 이 형사 부산지방경찰서 외사과

자막 : 권 형사 부산지방경찰서 외사과

화면 : 남 이 교도소에서 이수동을 만나게 된 경위

자막 : 이 사기, 횡령 등 전과 8범 자막

화면 : 주 사건

자막 : 주 (34, 용의자 대역)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전과 8범

화면 : 주 , 이 및 조 가 술집에서 만나 주 의 제의로 여권사기 범행을 모의하는 장면

앵커 : 이처럼 교도소에서 만난 용의자들은 출소 후에 또 다른 범행을 모의합니다.

자막 : 수형생활을 통해 알게 된 용의자들은 출소 후 서로 연락해 또 다른 범행을 모의

화면 : 주 사진

자막 : 용의자 주 (34) 부산지방검찰청 외사과

화면 : 조 사진

자막 : 조 (41) 부산지방검찰청 외사과

화면 : 이 이 남 을 찾아가 범행에 끌어들임

자막 : 2000년 4월 4일 인천항

앵커 : 중국지역에 여권을 밀거래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이 , 감방에서 알게된 남 에게 중국 지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의해 여권을 만들게 합니다. 이 위조여권을 가지고

사실상 여권판매 총책인 주 이 중국을 오가며 본격적인 사기에 들어갑니다.

자막 : 이 은 중국지사장을 제외하며 남 을 끌어들임

자막 : 무역업자 행세를 하던 용의자 주 은 남 의 여권을 위조해 국내로 잠입

화면 :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을 얻는 경위

앵커 : 주 은 백 이라는 가명으로 무역업자 행세를 하며 사무실 물색에 나섭니다.

자막 : 용의자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두 가명을 사용함.

앵커 : 의외로 쉽게 사무실을 빌린 용의자들은 케엔시 무역주식회사라는 유명회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사기행각에 나섭니다.

앵커 : 케이엔시 무역주식회사에 대표이사직을 내건 주 은 사실은 여권 전문사기단의 두목입니다.

자막 : 용의자 주 (34·대역) 대표이사 및 여권판매 담당

앵커 : 전무직 외 용의자 이 , 취업을 미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막 : 용의자 이 (대역 가명) 전무 국내여권 모집책

앵커 : 또다른 용의자 조 이른바 바람잡이입니다.

자막 : 용의자 조 (41·대역) 팀장 사원모집 및 알선책

앵커 : 이렇게 무역업체로 위장한 이들은 해외 운송요원 모집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해외취업을 꿈꾸는 구직자들을 유혹하였습니다.

화면 : 피해자와 대담 내용

화면 : 주 사진

자막 : 용의자 주 (34)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화면 : 조 사진

자막 : 조 (41)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앵커 : 이들의 덫에 걸려든 피해자만도 32명,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의 여권을 챙겨서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화면 : 주 의 출국 장면

앵커 : 용의자 주 은 여권 밀매를 위해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앵커 : 또다른 용의자 조 는 국내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막 : 용의자 조 는 국내 은거 중으로 추정

화면 : 최 반장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앵커 : 사기용의자 주 을 공개수배합니다 올해 나이 34살 키 165cm. 얼굴은 둥글고

하얀 편이며 앞니가 빠진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 말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 계신 분들은 주의 깊히 봐 주십시오. 이 방송은 위성을 통해서 중국에도 방송됩니다.

자막 : 주 의 사진과 165cm 얼굴이 둥글고 하얀 편 앞니가 1 2개 빠짐 서울 말씨 중국 도주 추정

앵커 : 또다른 사기 용의자 조 를 공개 수배합니다. 올해 나이 41살 보통키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눈 여겨 봐 주십시오.

자막 : 조 41세 보통 키 안경 착용 평범한 스타일

앵커 : 사기 용의자 주 , 조 를 보셨거나 아시는 분은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051-851-5905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국가번호 86에 지역번호 10652-6532-6771에서 6번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화면 : 주 과 조창 사건을 화면 전체로 보도함

앵커 : 생방송 공개수배 사건 25시, 지역번호 02 번으로도 제보해 주십시오.

앵커 : 우리 나라 여권은 사진만 바꾸면 위조와 변조가 쉽기 때문에 외국 여권 밀매조직의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여권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밀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IMF 기간 중에 잠시 주춤했던 여권 위조와 변조사범이 요즘 큰 폭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취업을 원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론보도문

제목 : 10월 28일 ‘ 여권 사기사건 ’방송관련 조 씨 반론내용

- 본 문 -

지난 10월 28일 본 방송을 통해 방송된 ‘ 여권 사기사건 ’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로 수배한 조 씨는 이 방송이 나간 후 자신은 위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 씨의 반론내용입니다.

1. 조 씨는 자신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사용된 것일 뿐, 자신은 여권사기사건에 전혀 가담을 한 적이 없으며,

2. 범행장소로 사용된 사무실의 전화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개설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따라서 자신이 여권 사기사건의 공범인 것처럼 방송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鏑

주가등락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1. 10. 25.자 판결(2001나8495)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1년 10월 25일 최 씨 등 2인이 로이터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 및 그 정정보도가 나간 후 원고들이 대신증권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의 대신증권 주가등락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보도 후 정정보도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잠시 회복되었다가 다시 하락하여 상당기간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보유주식을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보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하락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로이터코리아의 오보로 말미암아 보도 직전 1만8천2백원에 거래되던 대신증권 주식이 11분만에 8.8% 11%나 급락하자 보유하고 있던 대신증권의 주식을 급락된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피고는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한 기업의 자금사정에 관한 부정적 보도를 사실확인작업을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

판결집 제8집 372 377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1나849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최

2.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 순 명

피고, 항소인 : 로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대표이사 싱가포르국인 다니엘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상 호, 주 한 일, 정 진 영, 박 찬 문, 홍 용 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 경 직)

변 론 종 결 : 2001. 9. 6.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1. 1. 10. 선고 2000가합9265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 에게 금 154,922,500원, 원고 유 에게 금 5,085,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제4호증, 을 제1,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 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대신증권 주식회사 하계동지점장, 대우증권 주식회사 잠실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오보 및 정정보도 경위

(1) 피고는 정보제공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소속 취재기자들로부터 송고받은 국내외 금융시장 관련 기사를 여러 증권회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증권회사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객장의 모니터 및 고객들이 보유한 컴퓨터와 연결된 증권시황 정보화면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2) 피고 소속 취재기자인 김 ○은 1999. 10. 25. 11:30경 대신그룹 양 회장의 장남이 운영하는 송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송천건설’이라 한다)가 부도를 내었고,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 한다)가 송천건설의 채무 중 약 2,000억원을 지급보증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확인을 위하여 대신증권의 홍보실장과 접촉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대신증권의 성명불상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동인으로부터 “송천건설이 부도를 낸 것은 아니고 부도 직전에 화의신청을 하였다. 대신증권의 지급보증액은 1,600억원 정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의 사실확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동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화하여 피고 본사에 송고하였다.

(3) 피고는 김 ○으로부터 기사를 송고받은 직후인 같은 날 11:49경 김 ○이 송고한 내용에 따라, “대신그룹 양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송천건설이 부도 직전 화의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수 800선 붕괴 등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최근 송천건설이 부도 직전에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면서 ‘대신 계열사들이 회사채 등 지급보증한 금액이 약 1,6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증시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신그룹의 지급보증 부담 등을 감안,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한때 지수 8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이하 위 보도내용을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이를 증권회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4) 그런데, 김 ○은 같은 날 12:30경 대신증권의 홍보실장으로부터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항의전화를 받고 나서, 송천건설의 자금담당부장, 송천건설의 주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결과 위 보도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 본사에 송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3:18경과 13:53경 및 다음날 11:11경과 14:08경에 각 “이 사건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송천건설의 자금사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의를 신청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정정기사를 보도하여 증권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대신증권 주식의 주가 변동

대신증권의 주식 중 (1) 보통주의 주가는 이 사건 보도 당일인 1999. 10. 25. 09:00경 19,350원이었는데, 이후 2시간 동안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1:00경 19,400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보도 시점인 11:49경에는 18,200원이었고, 이후 11:59경 하한가인 16,600원(직전 거래일의 종가 19,500원의 85%, 백원 미만 반올림)까지 급락하였다가 다음날까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였고, (2) 우선주의 주가는 이 사건 보도 당일인 1999. 10. 25. 09:00경 11,850원이었는데, 이후 2시간 동안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1:04경 11,800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보도 시점인 11:49경에는 11,350원이었고, 이후 11:59경 하한가인 10,100원(직전 거래일의 종가 11,850원의 85%, 백원 미만 반올림)까지 급락하였다가 다음날까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였다.

다. 원고들의 대신증권 주식 매도

(1) 이 사건 보도 당시 대신증권 보통주 5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 최 ○ 는 위 보도 다음날인 1999. 10. 26. 10:49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그 중 14,350주를 16,300원에, 15,650주를 16,350원에, 12,950주를 16,400원에, 1,500주를 16,450원에, 5,550주를 16,800원에 각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보도 당시 대신증권 우선주 4,53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 유 ○ 은 위 보도 당일인 1999. 10. 25. 11:43경 그 중 400주를 11,200원에, 1,000주를 11,250원에, 같은 날 13:39경 3,130주를 10,500원에 각 매도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보도가 주식시장의 주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보도 전에 대신증권 홍보실에 문의하는 등으로 최소한의 사실확인작업을 거쳤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 보도는 최소한의 사전 확인작업만으로도 쉽게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하여 대신증권의 주가가 급락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신증권의 주식을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급락한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보도는 대신증권의 재무구조에 대한 것으로서 그 대상은 대신증권이므로 위 보도로 인하여 대신증권의 주식을 보유한 원고들이 입었다고 주장

하는 손해는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고, ② 대신증권의 주가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하락하고 있었고, 정정보도가 나간 직후 그 주가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하락하였으며,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물론 대부분의 금융주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당일 대신증권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이 사건 보도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하락세 및 대신그룹의 실제 재무상황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도와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며, ③ 주식투자자들이 매매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도 및 정정보도에 대하여도 주식투자자인 원고들이 스스로 분석, 평가하여 주식을 매도한 것이어서 대신증권의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그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보도를 한 피고에게 그 보도로 인하여 대신증권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주주인 원고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에 관하여 동인들의 이익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보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주의의무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행위자의 행동의 자유와 피해자의 법익보호를 비교형량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교량함에 있어서는 그 위험행위의 사회적 유용성, 그 위험행위로 야기되는 손해발생의 개연성, 손해의 정도 및 범위,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수준, 개별적인 예견가능성, 피해자의 과실, 기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사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상대방은 증권회사 등이고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이 사건 보도는 송천건설과 대신증권의 재무상황에 관한 내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증권회사 등에 이 사건 보도 기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신증권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비록 증권회사 등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내용을 다시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접한 투자자들에 의하여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보유한 대신증권의 주식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보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사상적 기초는 무엇보다도 정당한 손실전보 및 일정한 손해위험의 공평한 분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개연성에 국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가해행위가 사회에 주는 위험성의 크기, 어떤 손해를 누구에게 분배시키는 것이 손해방지에 도움이 되며 효율적인가 등을 감안한 손해배상의 경제적 공정성이라는 이념을 함께 고려대상에 넣어야 하고, 가해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불측의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보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송천건설과 대신증권의 재무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위 보도내용의 직접적 대상이 아닌 대신증권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주가는 해당 회사의 재무상황뿐만 아니라 영업실적과 장래의 발전가능성, 경영진의 구성 및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 기타 전반적인 경제동향을 비롯하여 주가등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모든 요인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 및 한편으로 앞서 본 대신증권의 주가 변동상황에 의하면, 대신증권의 주가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이전인 위 보도 당일 11:00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가 나간 뒤 잠시 주가를 회복하여 보통주는 18,400원(13:35경), 우선주는 11,200원(13:32경)으로 이 사건 보도 당시의 주가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앞서 본 제1심 법원의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다시 하락하여 그 다음날까지 소폭 등락을 계속하면서 주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및 그 정정보도가 나간 후 원고들이 대신증권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의 대신증권 주가등락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보도 후 정정보도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잠시 회복되었다가 다시 하락하여 상당기간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보유 주식을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원고 유 이 보유하고 있던 대신증권의 우선주 중 이 사건 보도 당일 11:43경 매도한 1,400주는 위 보도 이전에 매매된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보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하락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0. 25.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정 진 경

판사 권 기 훈

鏞

**언론사들이 검사의 공식발표에 기하여 피의사실을 보도한 이상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건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1. 11. 7.자 판결(2000가합68769)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1년 11월 7일 통조림 제조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서 씨 외 2인이 대한민국과 경향신문사를 비롯 8개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

하고, 나머지 피고 언론사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 공표된 사실이 진실할 것으로 강하게 신뢰하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표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 언론사들이 이 사건 각 보도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서 신속성을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취재원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한 부장검사인데다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더욱이 원고에 대한 직접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던 점,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의 취재관행에 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언론사들이 검사의 공식 발표에 기하여 피의사실을 보도한 이상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언론사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지검 형사2부가 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피고 언론사들을 포함한 각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미리 제작한 ‘유해식품 단속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화학적 합성품인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공급하여 이득을 취하고 자가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각 언론사들은 원고들이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 등을 제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통조림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되자 대한민국과 각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0가합68769 손해배상(기)

- 원 1. 서
2. 한샘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진 흥
3. 효성농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상 천

원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안 상 운

피 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최 경 원
소송수행자
송 길 룡, 조 성 래, 안 경 희

2.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장 준 봉

3.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차 일 석

4.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오 명

5.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1

대표이사 송 병 준

피고 2 내지 5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훈

6.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우 영,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7.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금 창 태

8.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최 학 래

9.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국 , 장 명 수, 문 현 석, 김 영 열

피고 7 내지 9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훈

변 론 종 결 : 2001. 10. 10.

주 문 :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서 에게 50,000,000원, 원고 한샘식품 주식 회사에게 150,000,000원, 원고 효성농산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7. 8.부터 2001.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8.부터,

2.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원고 서 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한샘식품 주식회사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효성농산 주식회사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7. 9.부터,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서 에게 80,000,000원, 원고 한샘식품 주식회사, 효성농산주식회사에게 각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7. 8.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호증, 갑 제11호증의 6 10, 49, 88, 89, 갑 제12호증의 98, 갑 제13, 26호증, 갑 제66호증의 32, 33, 갑 제68호증, 을가 제1 호증, 을나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 양 , 신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서 은 1997. 8. 경부터 통조림 임가공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우리농산(대표 이 , 이하 우리농산이라 한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 한샘식품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샘식품이라 한다)는 우리농산과 사이에 골뱅이, 번데기, 마늘장아찌통조림 임가공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원료를 주식회사 품림무역을 통하여 구매하여 우리농산에 공급하고 우리농산으로부터 제품화된 통조림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 효성농산 주식회사(이하 원고 효성농산이라 한다)는 남일종합식품산업사(대표 이길성, 이하 남일식품이라 한다)와 사이에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그 원료를 구매하여 남일식품에 공급하고 남일식품으로부터 제품화된 효성번데기통조림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이하 피고 경향신문사라 한다)는 일간지 <경향신문>, 피고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이하 피고 대한매일신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대한매일신문(서울신문은 대한매일신문의 전신이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동아일보>,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이하 피고 세계일보라 한다)는 일간지 <세계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중앙일보>,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한겨레신문이라 한다)는 일간지 <한겨레신문>,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피고 한국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한국일보>를 각 발행하는 언론사들이다.

나. 이 사건 발표 및 각 보도 전의 검찰수사

(1)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1998. 5. 26.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식용번데기가 국내에서 제조, 판매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내에서 판매 중인 8종의 번데기 통조림을 제조사별로 임의 수거하여 그 성분분석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다.

(2) 위 연구원은 검사결과, 우리농산에서 제조하여 원고 한샘식품에서 판매하는 한샘번데

기가미통조림에서 0.19mg/kg, 남일식품에서 제조하여 원고 효성농산에서 판매하는 효성번데기가미통조림에서 0.02mg/kg, 대진산업사에서 제조한 물개표번데기가미통조림에서 0.05mg/kg의 포르말린(Formalin)이 각 검출(나머지 5개 제조사의 통조림에서는 포르말린이 검출되지 아니함)되었다고 서울지방검찰청에 회신하였다.

(3) 이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의 이 사건 담당검사는 1998. 6. 18.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우리농산 사무실에서 통조림과 장부일체를 압수하였다.

(4) 이 사건 담당검사는 원고 서 이 우리농산에서 제조한 번데기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나온 것은 수입 원료에 포르말린이 들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우리농산에서 압수한 한샘배꼽골뱅이가미통조림(140g×9, 1998. 5. 23. 제조), 한샘마늘장아찌통조림(140g×9, 1998. 6. 8. 제조), 단팔죽통조림(230g×6, 1998. 6. 11. 제조), 호박죽통조림(230g×6, 1998. 6. 11. 제조), 번데기(3.1kg, 통조림 원료로서 주식회사 풍림무역이 1998. 1. 21. 수입한 태국산)와 남일식품에서 수거한 번데기(1kg, 통조림 원료로서 1998. 5. 9.경 수입한 중국산), 대진산업사에서 수거한 번데기(3kg, 통조림 원료로서 1998. 3. 10.경 수입한 중국산)에 대하여 다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다.

(5) 위 연구원은 1998. 6. 29. 각 검사결과 한샘배꼽골뱅이가미통조림에서 0.03mg/kg, 한샘마늘장아찌통조림에서 0.15mg/kg, 단팔죽통조림에서 0.05mg/kg, 호박죽통조림에서 0.14mg/kg, 주식회사 풍림무역이 수입한 태국산 번데기에서 0.01mg/kg, 남일식품의 중국산 번데기에서 0.02mg/kg, 대진산업사의 중국산 번데기에서 0.03mg/kg의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고 서울지방검찰청에 회신하였다.

(6) 검찰 조사시 우리농산의 대표 이 , 원고 서 , 원고 한샘식품의 대표이사 김 , 남일식품의 이 , 원고 효성농산의 대표이사 김 은 위 각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고의로 포르말린을 첨가한 사실은 없으며 포르말린이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이 포르말린이 검출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1)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의 부장검사는 1998. 7. 7. 위 검찰청의 기자실에서 직접 피고 언론사들을 포함한 각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미리 제작한 ‘유해식품사범 단속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사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표라 한다).

(2) 위 검사는 이 사건 발표를 통하여, 피의자별 범죄사실에 대하여, 우리농산의 대표 이

과 공장장인 원고 서 은 공모하여 1997. 8. 초순경부터 1998. 6. 말까지 사이에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여 사용이 금지된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통조림 약 41만캔(제품 1kg당 0.19mg), 골뱅이통조림 74만캔(제품 1kg당 0.03mg), 마늘장아찌 15만캔(제품 1kg당 0.15mg), 호박죽통조림 1만6천캔(제품 1kg당 0.14mg), 단팔죽통조림 3만캔(제품 1kg당 0.05mg), 시가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대진산업사 대표 노 는 포르말린(제품 1kg당 0.05mg)이 함유된 번데기통조림 약 41만캔 시가 140,0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남일식품 대표인 이 은 포르말린(제품 1kg당 0.02mg)이 함유된 번데기통조림 약 37만캔 시가 150,000,000원 상당을 제조한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포르말린의 성질과 유해성, 식품제조업체의 안전불감증, 제조식품검사제도의 미비, 수입원료에 대한 실질적 검역제도 미비 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유해식품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3) 다만, 위 검사는 위와 같이 발표를 하면서 이 순, 원고 서 , 노 , 이 을 1998. 7. 8. 기소할 예정이니 기소 이후 보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1998. 7. 8.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포르말린이 함유된 시가 1,002,007,420원 상당의 통조림을 제조·공급하여 이득을 취하고(이후 1998. 11. 11. 시가 36,567,440원 상당의 통조림을 제조·공급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 자가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종순과 원고 서기복을 구속기소하고, 노 , 이 을 각 이 사건 발표와 같은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도

피고 언론사들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소 이후인 1998. 7. 9. 각 일간지에 별지 보도내용과 같이 보도(이하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발표 및 각 보도 이후의 정황

(1) 서울지방법원은 1999. 1. 22. 이 과 원고 서 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상고가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2000. 5. 18. 항소기각, 2001. 3. 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우리농산에서 생산된 번데기가미, 골뱅이가미, 마늘장아찌, 호박죽, 단팔죽 각 통조림에서 검출된 것은 포르말린이 아니라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이다(포르말린은 포름알데하이드를 물과 메탄올에 혼합한 수용액이다). 포름알데하이드는 자연상태의 많은 식품 중에 천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하이드가 그

원료인 번데기, 골뱅이, 마늘, 팔, 호박 또는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첨가되는 물, 양념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 원고 서 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보존료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식품원료에 화학적 합성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통조림을 제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2) 또한, 서울지방법원은 1999. 4. 1. 이 에 대하여서도 그가 통조림을 제조하면서 번데기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통조림을 제조하였다거나 또는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상고가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2000. 5. 18. 항소기각, 2000. 9. 26.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 경향신문사, 대한매일신보사, 동아일보사,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사는 이 , 원고 서 과 이 의 무죄선고 이후 각 발행하는 일간지에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1)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담당검사는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가 형사재판을 통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헌법 제27조 제4항)됨에도 불구하고, 원고 서 과 이 , 이 이 모두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들의 피의사실을 피고 언론사들 기자들에게 발표하여 피고 언론사들의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원고 서 을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만드는 사람으로, 원고 한샘식품, 효성농산을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회사들로 알려지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검사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소 이후의 보도를 전제로 기자회견을 하여 이 사건 각 기소 이후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공표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언론사들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언론사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그 제목을 ‘통조림에 발암물질’(피고 경향신문사), ‘통조림에 포르말린’(피고 대한매일신보사), ‘포르말린 통조림’(피고 동아일보사), ‘발암 통조림’(피고 세계일보), ‘골뱅이-번데기에 포르말린 섞어’(피고 조선일보사), ‘식탁에 독극물?’(피고 조선일보사 사설), ‘번데기 통조림에 포르말린’(피고 중앙일보사), ‘통조림에 포르말린 ‘범벅’’(피고 한겨레신문), ‘포르말린 통조림’(피고 한국일보사)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목과 각 보도의 본문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는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 서 이 단순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기 보다는 위 원고가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었고, 원고 한샘식품과 효성농산은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통조림을 판매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언론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피고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그 보도 중 사설에는 사실의 적시가 없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서 을 아는 사람이면 ‘우리농산 대표 이 씨 등 2명’이라는 표현으로 나머지 한 명이 원고 서 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원고 한샘식품, 효성농산의 상품명을 기재한 이상 위 보도에서 원고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며, 위 사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표명으로서 원고들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발표 및 각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익성

이 사건 발표 및 각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진실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발표 및 각 보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피고 언론사들은 담당검사의 이 사건 발표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서 이 그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도가 전체적으로 위 원고가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었고, 원고 한샘식품과 효성농산은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통조림을 판매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입

증이 없는 이상 위 각 보도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다 할 것이다).

(4) 상당성

(가)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 공표된 사실이 진실할 것으로 강하게 신뢰하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표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발표 당시까지 작성된 수사기록인 갑 제13호증의 1~59와 갑 제66호증의 32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이 , 원고 서 , 이 은 검찰에서의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각 제조 통조림에 포르말린과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몰랐으며 이를 첨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원고 한샘식품의 대표 김 과 원고 효성농산의 대표 김 , 우리농산의 직원들 또한 통조림에 그러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 바, 결국, 이 , 원고 서 , 이 에 대한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이 사건 각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실제로는 포름알데하이드)이 검출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할 것인데, 그 검출량 또한 극히 소량인데다 우리농산에서 제조된 통조림도 종류에 따라 그 검출량이 일정치 못하였으며, 번데기통조림 이외에는 우리농산에서 제조한 통조림에 대해서만 성분분석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발표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담당검사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발표될 경우 원고들이 음식물에 포르말린이라는 유해한 물질을 넣은 극악한 사람, 회사라고 판단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발표내용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 이 사건 발표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언론사들의 경우

피고 언론사들이 이 사건 각 보도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서 신속성을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취재원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한 부장검사인데다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더욱이 원고 서

은 구속되어 있어 위 원고에 대한 직접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던 점,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의 취재 관행에 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언론사들이 검사의 공식발표에 기하여 이 , 원고 서 과 이 등에 대한 피의 사실을 보도한 이상(검찰의 보도자료와 이 사건 각 보도를 비교해 보면 위 각 보도가 보도 자료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윤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언론사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만이 이 사건 발표와 이에 따른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발표와 이에 따른 보도에 의하여 우리농산이 부도에 이르러 원고 서 은 직장을 잃게 되었고, 원고 한샘식품과 효성농산은 판매부진과 통조림 폐기 등으로 인하여 부도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 서 에게 1998. 7. 8.부터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시인 2001. 3. 9.까지의 임금 상당인 80,000,000원, 원고 한샘식품과 효성농산에게는 위 같은 기간 동안의 영업상 순손실과 통조림 완제품 폐기, 덤핑처분 등에 따른 손해 중 일부 청구로서 각 3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4, 15, 20, 24, 27, 32, 41, 42, 62, 65, 6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 양 , 신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표와 이에 따른 보도를 전후하여 우리농산과 원고 한샘식품, 효성농산의 통조림 판매가 부진하였고, 일부 통조림을 폐기하기도 하였으며, 우리농산은 대표인 이 과 공장장인 원고 서 이 구속기소되어 그 무렵부터 영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 한샘식품은 1998. 8.경, 원고 효성농산은 2000. 3.경에 이르러 거의 도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표 및 이에 따른 보도와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과 원고 서 의 구속, 이 사건 각 기소 및 당시의 경제상황 등이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신적 손해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발표 및 이에 따른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피의사실 공표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따라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가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느 정도 재산상 손해를 입게된 점, 이 사건보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자료로서 원고 서에게 50,000,000원, 원고 한샘식품에게 150,000,000원, 원고 효성농산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8. 7.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1.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언론사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2001. 11. 7.

재 판 장 판 사 안 영 룰

판 사 김 경 환

판 사 오 석 훈

보도내용

1. 피고 경향신문사 : 경향신문 1998. 7. 9.자

통조림에 발암물질

서울지검 형사2부(高 부장검사)는 8일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으로 통조림을 방부처리해 제조한 (주)우리농산 대표 이 씨(50)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진산업 대표 노 씨(43)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중국서 수입한 번데기 등을 포르말린으로 방부처리한 뒤 「한샘번데

기가미」, 「한샘골뱅이가미」, 「한샘마늘장아찌」 등 통조림 1백34만 캔(시가 10억여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2.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 서울신문 1998. 7. 9.자

통조림에 ‘포르말린’

번데기·골뱅이에 섞어 10억대 유통

식품에 넣어서는 안되는 방부제 ‘포르말린’을 사용, 통조림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제조업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高 부장검사)는 8일 우리농산 대표 李 씨(50)와 공장장 徐 씨(43)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진산업 대표 盧 씨(43)와 남일종합식품 대표 李 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우리농산 대표 李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전북 완주군 공장에서 중국과 태국에서 수입한 골뱅이, 번데기, 마늘 등에 포르말린이 뿌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통조림 가공과정에서 다시 포르말린을 첨가, 통조림 134만 캔 10억여 원 어치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산 호박과 단팔으로 만든 통조림에도 포르말린을 섞었다.

대진산업 대표 盧씨와 남일종합식품 李씨도 중국 등지에서 포르말린으로 방부처리된 번데기를 수입해 ‘물개표 번데기가미’, ‘고단백영양간식 번데기’, ‘효성 번데기가미’ 등 통조림 78만 캔 2억9,000여 만원 어치를 만들어 팔았다.

포르말린은 실험용 사체 등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유해물질로, 복용하면 복통, 구토 등을 일으키는 데다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독성이 강한 방부제다.

3. 피고 동아일보사 : 동아일보 1998. 7. 9.자

포르말린 통조림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는 8일 통조림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 방부제 포르말린을 사용해 통조림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주)우리농산 대표 이 50) 씨와 공장장 서 43) 씨를 구속기소하고 대진산업 대표 노 43) 씨와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 53)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우리농산 대표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군 공장에서 중국과 태국산 번데기 등 수입식품 원료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한 뒤 ‘한샘’ 상표로 번데기와 골뱅이, 마늘장아찌, 호박죽, 단팔죽 등의 통조림 1백34만개(10억원 상당)를 만들어 팔아온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노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각각 ‘물개표 번데기가미’와 ‘효성 번데기가미’ 등의 상표로 통조림 41만개(1억4천만원 상당)와 37만개(1억5천만원 상당)를 만들어 판 혐의다.

이들 통조림에는 kg당 0.02~0.19mg의 포르말린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포르말린은 다량 섭취할 경우 심장쇠약과 사망에 이를 정도로 독성이 강해 식품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4. 피고 세계일보 : 세계일보 1998. 7. 9.자

「發癌 통조림」 10억대 유통

번데기-골뱅이 등 포르말린 방부처리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 高)는 8일 (주)우리농산 대표 李 50), 공장장 徐 43) 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진산업 대표 盧 43) 씨와 남일종합식품 대표 李 53) 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우리농산의 李씨와 徐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중국-태국산 번데기와 골뱅이, 국산 호박과 마늘 등을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으로 방부처리한 뒤 통조림 1백34만 개(10억원 어치)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포르말린은 생물의 부패를 막는 약품으로 복용때 복통이나 구토-설사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숨질 수도 있어 식품제조에 쓰지 못하게 돼있다.

검찰은 중국-태국산 번데기와 골뱅이에는 대부분 kg당 포르말린 0.01-0.02mg이 들어있는데, 李씨 등이 보관과정에서 썩는 것을 막기 위해 포르말린을 추가로 넣어 이 회사 제품에는 포르말린이 kg당 0.03-0.19mg씩 검출됐다고 밝혔다.

◇포르말린 검출 통조림 △우리농산=한샘번데기가미, 한샘골뱅이가미, 한샘마늘장아찌, 호박죽, 단팔죽 △대진산업사=물개표번데기가미, 고단백영양간식번데기통조림 △남일종합식품=효성번데기가미

5. 피고 조선일보사

가. 조선일보 1998. 7. 9.자

골뱅이 - 번데기에 포르말린 섞어

우리농산 대표 등 구속

「방부제 통조림」 10억 어치 팔아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 高)는 8일 일반인들이 술안주로 애용하는 번데기와 골뱅이 통조림에 인체에 해로운 포르말린을 넣은 혐의로 (주)우리농산 대표 이

5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진산업 대표 노 43),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

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포르말린이 함유된 중국과 태국산 번데기를 수입, 포르말린을 첨가해 방부처리한 번데기와 골뱅이 통조림 등 1백34만여 캔, 시가 10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리농산이 제조한 「한샘번데기가미」, 「한샘골뱅이가미」, 「한샘마늘장아찌」, 「호박죽」, 「단팔죽」통조림에서 1kg당 0.03-0.19mg의 포르말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대진산업의 「물개표번데기가미」, 「고단백영양간식번데기」와 남일종합식품의 「효성번데기가미」통조림에서도 포르말린이 0.05mg과 0.02mg이 각각 검출됐다.

다량 흡수될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유독성 물질인 포르말린은 실험용 사체의 부패방지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있다.

나. 조선일보 1998. 7. 10.자

식탁에 독극물?

사체 부패방지에 사용되는 유독성 물질 포르말린을 첨가해 방부처리한 골뱅이, 번데기 등 통조림을 1백34만여 캔이나 제조·판매한 행위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자주 식탁에 오르는 상추, 깻잎 등 채소에 기준치의 수백배를 넘는 농약이 묻어있는 데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컵라면 용기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안전성 여부 논란 또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이런 유해물질들은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특히 환경호르몬은 정자를 감소시켜 생식기능을 떨어뜨리고 성장장애나 기형을 초래한다니 공포는 극에 달한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7호선 9개역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돼 먹고 숨쉬는 일조차 곤욕스러운 지경이 돼 버렸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업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방부제를 뿌린 중국산, 태국산 수입원료를 들여다가 다시 포르말린을 섞은 골뱅이, 번데기, 마늘장아찌, 호박죽 통조림 10억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한다. 아무리 약삭빠른 상훈이라지만 먹는 음식에 독극물을 넣는다는 것은 간접 살인행위나 다를 게 없다.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하는 각종 농수산물도 방부제를 뿌리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국은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과 위생감시를 했어야 함에도 문제의 골뱅이 등은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니 무사안일, 무책임 식품보건행정이 결국은 소비자들 몸에 독극물을 축적하게 만들었다. 컵라면 용기만 해도 당국의 대처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대학 연구기관에서 컵라면 용기, 유아용 젖병, 장난감 등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뒤늦게 컵라면 용기의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용출을 인정했을 뿐, 젖병 등은 구구한 이유를 들어 조사를

미루고 있다. 컵라면은 지금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만큼 당국이 하루속히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줄 의무가 있고, 유아 성장과 직결되는 젖병 역시 외국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안전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상추, 깻잎, 오이, 파 등 채소류에 마구 뿌리는 살충제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가 나온 이상 당국은 잔류농약 검사를 의무화하고 오염을 발견하면 판매금지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식품에 유해물질을 섞는 악덕업자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이제는 업자 처벌로 그칠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만 유사사건의 재발을 줄일 수 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정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방부제, 살충제 등 유해물질 단속과 함께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호르몬 방제와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6. 피고 중앙일보사 : 중앙일보 1998. 7. 9.자

번데기 통조림에 포르말린

부패 막으려 ... ‘우리농산’ 대표 등 둘 구속

호박죽·마늘장아찌 등에도 뿌려 복통 등 유발

서울지검 형사2부(高 부장검사)는 8일 부패를 막기 위해 포르말린을 첨가한 번데기·골뱅이 통조림을 제조,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우리농산’ 대표 이 50) 씨와 이 회사 공장장 서 43) 씨를 구속하고 대진산업 대표 노 43) 씨와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 53)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李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중국·태국 등에서 수입한 번데기·골뱅이와 국내산 호박 등에 포르말린을 첨가해 ‘한샘번데기가미’, ‘한샘골뱅이가미’, ‘한샘마늘장아찌’, ‘호박죽’, ‘단팔죽’ 등 통조림 1백34만개(시가 10억원 상당)를 제조, 판매해 온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통조림에는 kg당 최하 0.03mg에서 0.19mg에 이르는 포르말린 성분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진산업의 ‘물개표번데기가미’, ‘고단백영양간식번데기’와 남일종합식품의 ‘효성번데기가미’ 통조림에서도 0.02~0.05mg의 포르말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포르말린을 먹으면 복통·구토·설사를 동반하며 다량 복용시에는 심장 쇠약과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식품에는 일절 첨가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 중인 번데기 통조림 9종을 모두 검사한 결과 이들 3개사 제품에서만 포르말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7. 피고 한겨레신문 : 한겨레 1998. 7. 9.자

통조림에 포르말린 ‘범벅’

인체에 치명적인 포르말린을 통조림 제품에 방부제로 넣어온 식품회사 대표들이 검찰에 적

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고 부장검사)는 8일 번데기, 골뱅이, 마늘, 호박, 팔 따위를 원료로 한 통조림 제품을 만들면서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쓴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등 위반)로 (주)우리농산 대표 이 씨와 이 회사 공장장 서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진산업 대표 노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포르말린이 든 번데기 통조림 41만여 개 등 모두 130여 만개(시가 10억원 어치)를 만들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씨 등 2명도 포르말린이 든 번데기 통조림 78만여 개(시가 2억9,000여만원 어치)를 만들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이 유통시킨 식품은 한샘번데기가미, 한샘골뱅이가미, 한샘마늘장아찌, 우리농산 호박죽·단팔죽, 물개표번데기가미, 고단백영양간식번데기통조림, 효성번데기가미 등이다.

8. 피고 한국일보사 : 한국일보 1998. 7. 9.자

‘포르말린 통조림’

유통기한 늘리려 번데기 등에 살포

캔 제조·판매 3개社 적발

국내에 유통 중인 번데기 통조림 가운데 3개사 제품에서 실험용 사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독물질 「포르말린」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2부(고 부장검사)는 8일 (주)우리농산 대표 이 씨와 공장장 서 43) 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진산업 대표 노 43) 씨와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 53) 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전북 완주군 공장에서 부패방지용 포르말린을 섞어 한샘번데기가미, 한샘골뱅이가미, 한샘마늘장아찌, 호박죽, 단팔죽 등의 통조림 134만 캔 시가 10억원 어치를 제조, 판매한 혐의다. 노씨 등은 물개표번데기가미와 고단백영양간식번데기 41만 캔, 효성번데기가미 통조림 37만 캔 등의 포르말린 함유 통조림을 제조한 혐의다. 이들 통조림에선 1kg당 0.02-0.19mg의 포르말린이 검출됐다.

검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포르말린이 함유된 수입 번데기에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물에 희석한 포르말린을 다시 뿌려 통조림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은 특히 국산 호박과 팔 원료에도 포르말린을 사용했다.

포르말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곤충의 형상을 유지시키고 실험용 사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며 다량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독성이 강해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끝. 鰐

변호사인 원고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로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 18.자 판결 (99가합19514)

서울고등법원 2001. 11. 29.자 판결 (2001나11989)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1년 11월 29일 변호사인 신 씨가 문화방송과 소속 기자 및 앵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변호사 사무실 간판의 영상을 방영함으로써 ‘못 믿을 변호사’가 원고임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변호사인 원고가 중요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불이익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고의에 가까운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은 이러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변호사인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화방송이 1999년 9월 19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못 믿을 변호사’라는 제하로 변호사인 원고가 수임료를 받고도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을 패소하게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1심 재판부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가 변호사로서 가지는 자긍심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문

사 건 : 99가합19514 손해배상(기)

원 고 :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승 연, 윤 영 근, 이 창 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항 용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2. 강

3. 권

피고 2, 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주)문화방송 보도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 석 태, 김 기 중, 도 재 형, 진 선 미, 이 정 희

변론종결 : 2000. 12. 21.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일요일 오후 9시 뉴스방송 중 [별지]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9. 19.부터 1999.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2. 말경 근 20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1993. 3. 3.부터 변호사로서의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강 , 권 은 피고 문화방송의 피용자들이다(피고 강 : 기자, 피고 권 : 뉴스진행자).

나. 조 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경과

(1) 서울 중구 1에 있는 아파트는 그 1층 부분이 위 토지상에 세워졌으나, 2층 이상 부분이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된 양쪽 2개의 도로 상공으로 약 2m씩 4m 돌출되는 외에 5층부터 8층까지 부분이 그 돌출부위로부터 다시 발코니가 더 돌출되

어 있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각 2층 이상 돌출부분 과 ‘ 발코니 돌출부분 ’이라 한다)를 점용하고 있고, 그 지하에는 지하상가, 변전실 및 그 지하상가로 통하는 통행로가 있다.

(2) 위 청계지하상가 점포 16개 및 변전실부분(양수 후 점포로 구조변경)의 소유자인 조 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993. 9. 24. 청계상가 지하도 통행로인 같은 동 156의 1도로 65.8㎡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지하부분 중 434.9㎡를 1988. 9. 1.부터 1993. 8. 31.까지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98,476,000원의 부과처분을, 1993. 12. 14. 위 지하부분 중 280.4㎡를 1993.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와 같이 무단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10,582,29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1994. 1. 17. 도로점용면적 중 그 점용료를 면제받은 ‘ 2층 이상 돌출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12.6㎡에 관하여 부당이득과 그에 대한 가산금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각 105,931,430원과 8,432,670원으로 감액하는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1994. 2.경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원고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94구8928호로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조 은 1996. 10. 2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지하통행로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승소하였으나, 나머지 점용부분에 관하여는 그 소송에서 제출된 갑11호증의 1[그 3쪽이 누락된 채 제출되었으나 그 3쪽에는 돌출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관하여 “ 사유지 자기대지(환지에 의하여)돌출부분까지는 자기 소유 대지를 기부채납 받은 대지로서 시유화하더라도 점용료를 면제보장코저 함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2(위 누락된 쪽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의 각 기재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2층 이상 돌출부분에 관한 도로점용료만을 면제받았음을 인정한 후 나머지 부분인 발코니 돌출부분 및 변전실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가 위 8필지 도로 전체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였다거나 또는 그 중 발코니 돌출부분의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였고 그밖에 지하 변전실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다시 원고에게 상고심 소송을 위임하여 대법원 95누8928호로 상고하였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도 지하통행로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996. 10. 25. “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는 (도로점용료) 면제의 범위를 2층 이상 돌출부분에 제한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또한 그렇게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찾기

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은 지하통행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지하통행로를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가 도로를 점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4) 조 ○은 파기 후 환송사건인 서울고등법원 96구43298호의 소송계속 중인 1998. 2. 5.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계를 원고와의 사전 합의 없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1998. 9. 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대법원의 위 환송판결과 같은 취지로 발코니 돌출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지만 통행로 및 변전실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다시 대법원 98두16897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5.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환송 후 고등법원판결이 확정되자, 민간단체에 원고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에 의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을 계속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94구8928호 사건에서 조 ○이 원고에게 건네준 판례신문기사 내용과 같은 취지의 판결문을 증거(갑7호증의 1, 2, 3)로 제출하였고, 누락된 위 갑11호증의 1 중 3쪽을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 ○에 의해 해임된 원고는 본인소송을 하겠다는 조 ○의 요구에 따라 환송 후 담당재판부 앞으로 ‘자신의 소송수행과정에서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변론과 증거제출이 있었다면 이는 원고의 불찰에 기한 것이니 소송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강 ○은 민간단체로부터 조 ○의 진정제출 소식을 들은 후 조 ○을 인터뷰한 다음 원고로부터 ‘의뢰인이 가져다 준 증거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한 쪽이 누락된 채 제출된 바가 있고, 그 제출 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그것이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 불필요한지와 불이익한지는 법원이 판단한 문제일 뿐이다’는 취지의 취재를 한 후, [별지] 방송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1999. 9. 19. 일요일 오후 9시 정규 뉴스 시간에 [별지] 방송내용 기재와 같이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면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변호사 사무실 간판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방영하였다.

[인정증거] 갑1의 1, 2 갑8의 1, 2(각 판결문), 을1의 1내지5, 을3의 19, 을3의 20, 24, 27, 37, 을4의 15, 16, 17, 을5,

2. 판단

가. 정정보도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그 ‘못 믿을 변호사’가 원고임을 특정하였고, 아울러 위 방송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위 소송수행을 하여 조 〇에 대한 합계 금 114,364,100원의 부과처분 중 38,439,770원 부분이 취소되게 함으로써 변론 및 증거제출에서 변호사로서 성실히 소송수행을 하였고, 조 〇이 원고에게 제시한 증거는 모두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갑제11호증의 1 중 복사된 1장이 누락되었으나, 그 누락부분의 증거가치는 중요한 것이 아닌 데다가 다른 증거서류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조 〇이 위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은 조종학의 도로점용 사실에 따른 사건 자체의 내용으로 인한 것일 뿐 원고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원고가 불성실하게 소송수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패소한 것처럼 보도한 점에서 이 사건 방송은 허위라 할 것이고, 피고 강 〇은 기자로서 원고와 조 〇 양측의 주장을 공평하게 취재, 편집하여야 함에도, 경솔하게 원고를 비난하는 조 〇의 주장에 치우쳐 변호사인 원고를 비난, 매도하는 방향으로 취재함과 아울러 원고와의 대담 중 일부분만을 편집하여 원고가 조 〇의 주장과 같은 잘못을 한 것처럼 취재하고, 피고 권 〇은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불성실함이 극히 한심하여 변호사이기 이전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여 논평 내지 평가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모욕적인 논평을 함으로써, 피고들이 공통으로 원고가 변호사로서 가지는 자긍심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분으로서 피고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일요일 오후 9시 뉴스 중 [별지]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문화방송, 강 〇, 권 〇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법성 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고,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강 〇, 권 〇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그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방송은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지적한 것으로서 변호사들의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 이 사건 방송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구성과 배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의 일부 내용은 관계자의 진술을 내세워 피해자인 원고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데 방송의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과연, 피고 문화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들고, 마치 원고가 소송수행 과정에서 증거제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의뢰인에게 패소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를 인정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일부 허위인 점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이 긴급성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 강명일이 최소한 이미 확정된 위 관련 판결문 내용만이라도 정확히 확인하여 보았다면 그 허위성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내용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방송의 제목과 내용 및 방송시점, 방영시간, 위 피고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에 원고의 나이, 원고의 이름을 특정하여 방송한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변호사로서의 사건수임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변호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도 소송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 의뢰인을 패소하게까지 한다는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 점, 피고 문화방송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동불법행위일인 1999.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1999.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

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 18.

재판장 판사 임 종 윤
판사 정 재 오
판사 윤 홍 렬

〈별 지〉 방송내용

제 목 : 못 믿을 변호사

◎ 권 앵커 : 여러분 이번에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비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은 모두 법조인들입니다. 먼저 김 기자가 아침이슬 같은 두 시골 판사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중략〉

◎ 권 앵커 : 이런 순백의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 곧 이어질 어느 변호사의 얘기는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집니다. 돈을 주고 소송을 의뢰한 사람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든 변호사가 있습니다.

◎ 강 기자 : 증거 일부가 누락된 채 법원에 제출되거나 바뀌어 제출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일부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고,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증거는 제출하였으며... 어느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게 써준 진술서입니다. 서울 청계천 상가 지하에 자그마한 점포 16개를 갖고 있는 조 씨. 조씨는 지난 93년 도로점용료 2억원을 내라는 구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씨는 30년 전 서울시장 김 씨가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서류를 갖고 있어 자신있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갈수록 불리하게만 진행됐습니다. 알고 보니 변호사에게 맡긴 82년 판례 기사도, 서울시장의 공문서도 재판기록에 없었습니다.

◎ 조 (피해자) : 프린트, 복사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이렇게 미안하다,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느냐, 이걸 소송 서류의 기본으로 갖다 주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

◎ 신 변호사 : 왜 증거 제출 전에 확인 안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 강 기자 : 변호사에 의한 피해는 이들 한 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500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열에 아홉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불만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같은 불만속에도 변호사협회나 국회는 마치 내 일이 아니라는 듯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사법 개혁이 몇 년 전부터 논의되고 추진돼 왔습니다만은 법조계의 말하자면 집단이기주의, 거기에 근거한 저항, 반발, 이것 때문에 되지를 앓고 있습니다.

◎ 강 기자 : 법조계의 집단이기주의,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끝.

〈별 지〉 정정보도문

피고 문화방송은 1999. 9. 19. 오후 9시 뉴스에서 ‘못 믿을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소송수행을 수임한 변호사인 원고가 그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증거를 누락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거나 불이익한 증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 의뢰인이 불리한 재판을 받게 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으나, 원고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증거제출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그로 인하여 그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

2심 판 결 문

사 건 : 2001나11989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승 연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 중 배

2. 강

3. 권

피고 2, 3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주식회사 문화방송 보도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예 교

변 론 종 결 : 2001. 10. 25.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 18. 선고 99가합19514 판결

주 문 :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일요일 21:00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1999. 9. 19.부터 2001.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나.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일요일 오후 9시 뉴스방송 중 [별지 3]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9. 1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부대항소로써 금액청구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3. 2. 말경 약 20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1993. 3. 3.부터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 문화방송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강명일, 권재홍은 피고 문화방송의 피용자들로서 피고 강 은 1997. 12. 피고 문화방송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보도 당시에 보도국 사회부 소속 기자였고 피고 권 은 피고 문화방송의 뉴스진행자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내용

피고 문화방송은 1999. 9. 19. 오후 9시에 방송된 MBC TV 「뉴스데스크」 시간에 약 3분에 걸쳐 법조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하였다. 당시 뉴스 진행자인 피고 권 이 “이번에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비된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은 모두 법조인들입니다. 먼저 김 기자가 아침이슬 같은 두 시골 판사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한 후 김 기자가 ‘시골로 간 판사’라는 제목 하에 용인시 법원의 판사로 임용된 전 변호사와 양산시 법원의 판사로 임용된 신 판사에 관하여 그 인터뷰 내용과 함께 매우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한 후 이어서 ‘못 믿을 변호사’라는 제하의 원고에 대한 보도를 시작하였다. 먼저 진행자인 피고 권 은 “이런 순백의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 곧 이어질 어느 변호사의 얘기는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 집니다. 돈을 주고 소송을 의뢰한 사람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후 피고 강 이 “증거 일부가 누락된 채 법원에 제출되거나 바뀌어 제출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일부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 하고,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증거는 제출되었으며… 어느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게 써준 진술서입니다. 서울 청계천 상가 지하에 자그마한 점포 16개를 갖고 있는 조 씨. 조씨는 지난 93년 도로점용료 2억원을 내라는 구청의 통보를 받았습시다. 조씨는 30년 전 서울시장 김 씨가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서류를 갖고 있어 자신 있게 소송을 냈습시다. 그러나 재판은 갈수록 불리하게만 진행됐습시다. 알고 보니 변호사에게 맡긴 81년 판례 기사도, 서울시장의 공문서도 재판기록에 없었습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변호사가 복사과정에서 증거서류를 빠뜨려서 미안하다고 하여 어떻게 무책임하게 가장 중요한 소송서류를 빠뜨릴 수 있느냐며 힐난하는 피해자 조 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하고 이어서 이에 대비하여 “왜 증거 제출 전에 확인 안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원고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 다음 피고 강 이 “변호사에 의한 피해는 이 들 한 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500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열에 아홉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불만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불만 속에도 변호사협회나 국회는 마치 내 일이 아니라는 듯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사법개혁이 법조계의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회의원 조 의 인터뷰 내용을 삽입한 후 피고 강 이 “법조계의 집단이기주의,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도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방송내용과 같다).

다. 방송의 경위

(1) 서울 중구 1에 있는 아파트는 그 1층 부분이 위 토지 상에 세워졌으나, 2층 이상 부분이 서울특별시에서 기부채납된 양쪽 2개의 도로 상공으로 약 2m씩 4m 돌출되는 외에 5층부터 8층까지 부분이 그 돌출부위로부터 다시 발코니가 더 돌출되어 설치되어 있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각 2층 이상 돌출부분과 발코니 돌출부분이라 한다)를 점용하고 있고, 그 지하에는 지하상가, 변전실 및 그 지하상가로 통하는 통행로가 있다.

(2) 위 청계지하 상가 점포 16개 및 변전실부분(양수 후 점포로 구조변경)의 소유자인 조은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993. 9. 24. 청계상가 지하도 통행로인 같은 동 156의 1 도로 65.8㎡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지하부분 중 434.9㎡를 1988. 9. 1.부터 1993. 8. 31.까지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98,476,000원의 부과처분을, 1993. 12. 14. 위 지하부분 중 280.4㎡를 1993.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와 같이 무단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10,582,29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1994. 1. 17. 도로점용면적 중 그 점용료를 면제받은 2층 이상 돌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12.6㎡에 관하여 부당이득과 그에 대한 가산금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각 105,931,430원과 8,432,670원으로 감액하는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1994. 2.경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3) 원고는 위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1994. 2. 2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94구598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1994. 6. 16.의 1차 변론기일부터 1995. 4. 13.의 10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약 1년간 10차의 변론기일에 3회의 준비서면과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3호증의 1 내지 24까지의 81건의 증거를 제출하고 1회의 증인신문과 1회의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을 신청하였으며 감정보완신청을 하는 등의 주장과 입증을 하였다.

(4) 당시 원고는 전문직업인인 변호사로서 조은이 건네 준 서류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는 바 조종학이 제출을 요구한 관련사건에 관한 신문기사는 보다 직접적인 서증인 판결문을 갑 제7호증의 1, 2로 제출하였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은으로부터 교부받은 그에 대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는

계쟁부분이 조 과 무관하게 윤 이나 배 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조 은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9호증과 갑 제31호증으로 제출하였다. 다만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인 1994. 11. 3. 10:00에 갑 제11호증의 1부터 갑 제33호증의 1 내지 24까지 38건의 방대한 문건과 24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서류복사 및 편철과정에서 갑 제11호증의 1 중 3쪽이 누락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증거를 제출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은 1995. 5. 18. 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도로지하부분 212.6㎡ 중 지하통행로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나머지 점용부분 95.0㎡에 관하여는 그 소송에서 제출된 위 갑11호증의 1{1969. 8. 1.자 세운상가 아파트 부지 지적정리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로서 누락된 3쪽에는 건의사항으로 돌출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관하여 “사유지 자기대지(환지에 의하여) 돌출부분까지는 자기 소유 대지를 기부채납 받은 대지로서 시유화하더라도 점용료를 면제보장코저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면의 하단에는 64, 64-1, 64-3, 64-4의 순으로 쪽수가 기재되어 있어 3쪽인 64-2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서울시 도시계획국 건축 1과에서 작성한 세운상가부지지적정리심의안으로서 돌출부분의 점용료에 관하여는 점용료 부과를 고집할 시 사유지의 채납불응으로 지적정리가 불능이므로 기한부 점용료 면제의 의견을 내고 도로부지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삼풍, 세운, 청계에 한하여는 돌출(보도) 부분 점용료를 면제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3{1969. 12. 4. 09:30에 개최된 상가 부지처리위원회의 회의록으로서 서울시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획관리관, 내무국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산업국장, 보건사회국장을 위원으로 하여 개최된 위 위원회에서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점용료를 약 백여 년간 면제하는 안이 이의없이 가결되었다}의 각 기재를 증거로 열거하면서 2층 이상 돌출부분에 관한 도로점용료만을 면제받았음을 인정한 후 나머지 부분인 발코니 돌출부분 및 변전실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가 위 8필지 도로 전체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였거나 또는 그 중 발코니 돌출부분의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였고 그밖에 지하 변전실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3. 9. 24.자 금 105,931,430원의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중 금 46,869,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3. 12. 14.자 금 8,432,670원의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중 금 3,764,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6) 위 판결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원고는 조 으로부터 상고심 소송을 위임받아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는 물론 8회에 걸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

였을 뿐 아니라 갑 제11호증의 1의 누락된 3쪽도 보완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은 1996. 10. 25. 선고된 96누892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에서 원심에서 조 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지하통행로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은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이 사건 지하상가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갑 제11호증의 1, 2, 3에는 도로점용료 면제의 범위를 2층 이상 돌출부분에 제한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또한 그렇게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7)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 원고는 조 으로부터 아무런 추가보수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환송 후 사건에서도 조 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환송 후 1997. 2. 4.의 11차 변론기일부터 1998. 2. 17.의 21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서 7회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부터 갑 제64호증의 1 내지 4에 이르기까지 조 이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2인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주장과 입증을 하였다.

(8) 조 은 1998. 2. 25. 일방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후 1998. 6. 9.의 24차 변론기일까지 소송을 자신이 직접 진행하면서 13회에 걸쳐 준비서면 및 준비서면보충서를 제출하고 갑 제65호증의 1, 2부터 갑 제95호증까지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1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주장과 입증을 하였다.

(9) 조 은 한편으로는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를 찾아와 환송 전 고등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갑 제11호증의 1의 3쪽이 누락되었던 사실 및 환송 후 고등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갑 제63호증의 4에 일부 관련없는 문서가 첨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조 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기왕에 한 주장 등이 사건 본인인 조 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밝혀 조 본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원고는 그러한 사유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인정하며, 앞으로의 소송진행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의에 따라 변론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거듭되는 조 의 수정요구에 따라 5회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진술서라는 제목 하에 잘못된 서증제출이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변론과 증거제출은 변호사인 원고가 변론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정된 문서를 작성하여 조 에게 주었다.

(10) 이와 같이 조 은 원고를 해임한 후 준비서면 및 각종 서증을 직접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진술서를 받아 1998. 3. 27. 법원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서울고등법원은 1998. 9. 8. 선고된 환송 후 판결인 96구43289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의 환송판결과 같은 취지로 발코니 돌출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인 조 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점용료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통행로 및 변전실부분에 관하여는 조 이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3. 9. 24. 자 금 97,184,800원의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중 금 62,052,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3. 12. 14. 자 금 8,031,120원의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중 금 5,125,14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94. 1. 17. 자 가산금 9,148,180원의 징수처분 중 금 5,840,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환송 전 판결에 비하여도 조 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11) 이에 대하여 조 은 재차 불복하여 대법원 98두16897호로 상고한 후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법무법인은 41면에 이르는 상고이유서 및 5회에 걸친 상고이유보충서와 상고이유정정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 5. 28.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환송 후 고등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

(12) 그 후 조 은 원고를 찾아와 수임료의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수임료를 반환받고도 민간단체에 원고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에 의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을 제출하였고, 피고 강 은 민간단체로부터 조종학의 진정제출 소식을 들은 후 조 을 인터뷰한 다음, 원고로부터 의뢰인이 가져다 준 증거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한 쪽이 누락된 채 제출된 바가 있고, 그 제출 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그것이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 불필요한지와 불이 익한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일 뿐이다 라는 취지의 취재를 한 후, [별지 1] 방송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1999. 9. 19. 일요일 오후 9시 정규 뉴스 시간에 [별지 1] 방송내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변호사 사무실 간판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방영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조 의 증언, 당심에서의 피고 강 본인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

2.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정정보도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변호사 사무실 간판의 영상을 방영함으로써 ‘못 믿을 변호사’가 원고임이 특정되었다 할 것

이고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변호사인 원고가 중요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불이익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고의에 가까운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은 이러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변호사인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고,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강 , 권 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1) 공공성

이 사건 방송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변호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잘못을 비판하면서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지적하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다소 거칠긴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2) 진실성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과는 달리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방송에 있어서의 각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가) 피고 권 의 설명부분

① 피고 권 의 “여러분 이번에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비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은 모두 법조인들입니다."라는 설명과 “이런 순백의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 곧 이어질 어느 변호사의 얘기는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집니다. 돈을 주고 소송을 의뢰한 사람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설명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설명부분 중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이런 순백의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 곧 이어질 어느 변호사의 얘기는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집니다.”라는 부분은 그 뒤에 이어지는 “돈을 주고 소송을 의뢰한 사람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부분과 함께 고찰하면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도 지극히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며, 그 전제사실은 이어지는 피고 강 의 조 의 소송에 관한 설명부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진실성은 피고 강 의 설명부분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② 또한 권 의 설명부분 중 “돈을 주고 소송을 의뢰한 사람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이어지는 피고 강 의 설명부분과 함께 살펴보면 사실의 적시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 강 의 설명부분을 간단히 표현한 것으로서 그 진실성은 역시 피고 강 의 설명부분의 진실성과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

(나) 피고 강 의 조 의 소송에 관한 설명부분

① 피고 강 의 위 설명부분 중 먼저 “서울 청계천 상가 지하에 자그마한 점포 16개를 갖고 있는 조 씨. 조씨는 지난 93년 도로점용료 2억원을 내라는 구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씨는 30년 전 서울시장 김 씨가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서류를 갖고 있어 자신있게 소송을 냈습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

② 다음으로 피고 강 의 위 설명부분 중 “증거 일부가 누락된 채 법원에 제출되거나 바뀌어 제출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일부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고,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증거는 제출하였으며 … 어느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게 써준 진술서입니다.”라는 부분과 “그러나 재판을 갈수록 불리하게만 진행됐습니다. 알고 보니 변호사에게 맡긴 81년 판례 기사도, 서울시장의 공문서도 재판기록에 없었습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방송이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어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강 의 위 설명부분 중 원고가 조 에게 써준 진술서에 증거 일부가 누락된 채 법원에 제출되거나 바뀌어 제출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일부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고,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증거는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부분은 설사 진술서에 의뢰인에게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증거는 의뢰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라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고 원고가 법원에 제출할 문서로서 작성하여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 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 설명에 앞서 언급된 피고 권 의 “돈을 주고 소송을 의뢰한 사람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설명과 뒷부분에 언급되는 피고 강 자신의 “그러나 재판은 갈수록 불리하게만 진행됐습니다. 알고 보니 변호사에게 맡긴 81년 판례 기사도, 서울시장의 공문서도 재판기록에 없었습니다.”라는 설명부분,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변호사가 어떻게 무책임하게 가장 중요한 소송 서류를 빠뜨릴 수 있느냐며 비난하는 피해자 조 의 인터뷰 내용과 증거 제출 전에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원고의 인터뷰 내용을 고려하고, 이 사건 방송의 전반부에 보도된 ‘아침이슬 같은 두 시골 판사의 이야기’와 대비하여 원고에 대한 이야기를 ‘못 믿을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피고 강 의 위 부분 설명은 원고가 작성하여 준 진술서에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의미로 파악하기보다는 “그러나 재판은 갈수록 불리하게만 진행됐습니다. 알고 보니 변호사에게 맡긴 81년 판례 기사도, 서울시장의 공문서도 재판기록에 없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변호사인 원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고의에 가까운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는 배신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예시로서 중요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불이익한 증거를 제출한 것을 든 것이고 그것이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줄 정도로 근거가 명백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③ 그런데 원고가 환송 전 원심에서 조 이 넘겨준 서류 중 복사 및 편철과정에서 갑 제11호증의 1의 3쪽을 누락한 채 제출하였으나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결재문서에 불과한 것인데 상가부지처리위원회에서 도로점용료의 면제를 결의한 내용의 회의록으로서 그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갑 제11호증의 3이 함께 제출됨으로써 위와 같이 갑 제11호증의 1의 3쪽이 누락된 것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외의 서류의 제출과정에 있어서의 사소한 실수는 판결의 결론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더구나

조 이 제출을 원하는 서류나 제출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서류는 그 후 상고심 및 환송후의 원심에서 전부 조 의 희망에 따라 제출됨으로써 환송 후의 판결에는 모두 반영된 사실, 환송 전의 원심판결에 비하여 조 이 원하는 서류가 모두 제출 내지는 보정되고 나아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후 조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음에도 환송 전의 판결에 비하여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재차 상고를 제기하면서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최선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상고가 기각되어 환송 후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강 이 적시한 원고가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이 사건 방송은 그 보도의 내용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당사자가 건네준 결정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현저히 그 직무를 해태하여 돈을 주고 소송을 의뢰한 당사자에게 패소판결이 선고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 문화방송 뉴스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원고가 변호사로서 가지는 자긍심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게 된 반면에 그 보도가 긴급한 것이 아니어서 그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 강 과의 인터뷰에서 갑 제11호증의 1의 3쪽이 환송 전 원심의 제출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되었음을 자인하였을 뿐 위 누락된 부분은 상고심에서 보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소송의 승패에는 영향이 없고 불성실한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피고 강 은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후에 선임하였다는 변호사를 만나 보는 등의 방법으로 조 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조 종학의 진술에 근거한 기사를 작성한 점, 특히 조 이 제기하였던 소송은 5년 이상에 걸쳐 대법원을 오가는 등 소송이 복잡하게 진행되어 조 이 원하는 판결을 얻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률전문가인 법조인이나 선배 법조출입기자의 조언조차 얻지 아니한 채 조 의 일방적인 진술에 오로지 갑 제11호증의 1의 3쪽이 환송 전 원심의 제출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되었음을 자인한 원고의 진술을 보태어 원고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조 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단정짓고 기사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음에 관하여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내용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방송의 제목과 내용, 논평을 위하여 사용된 어구 및 방송시점, 방영시간, 위 피고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밖에 원고의 나이와 경력, 원고의 이름을 특정하여 방송한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변호사로서의 사건수임에 미치는 영향, 피고 문화방송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9. 9. 19.부터 피고들이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1.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보도할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및 방송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일요일 오후 9시 뉴스방송 중 [별지 2] 정정보도문을 방송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지급청구 및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1. 29.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정 진 경
판사 권 기 훈

〈별지 1〉 방송내용

1심 판결문 중 〈별지〉방송내용 참조

〈별지 2〉 정정보도문

문화방송은 1999. 9. 19. 오후 9시 뉴스에서 ‘못 믿을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소송사건을 수임한 신 변호사가 중요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불이익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으나, 신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신 변호사의 증거제출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그로 인하여 그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법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보도하여 신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방송합니다. 끝.

〈별지 3〉 정정보도문

문화방송은 지난 9월 19일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에서 “변호사 신 씨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의뢰인에게 필요한 일부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고,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증거는 제출하였으며’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주었다”는 내용과 “알고 보니 변호사에게 맡긴 81년 판례 기사도, 서울시장의 공문서도 재판기록에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변호사가 위 보도내용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의뢰인에게 써 준 바 없고, 또한 81년 판례 기사는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되었고, 의뢰인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맡긴 서울시장의 공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보도에서 진행자가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어느 변호사의 얘기는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집니다.”라고 말한 것은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서 공정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끝. 鏞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언론보도라도 그 보도내용은 진실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지방법원 2001. 12. 19.자 판결 (2001가합8399)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1년 12월 19일 인기 연예인 신 씨와 그의 예비신부로 소개된 윤 씨가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이십일과 소속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신 씨에게 1천만원, 원고 윤 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일 때에는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물론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언론보도라도 그 보도내용은 진실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보도로서 언론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 본인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보도를 승낙하는 경우에도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원고 신

씨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는 해당하나 그것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원고 윤 씨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실명의 게재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를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 윤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며, 원고 신 씨가 유명 인기 연예인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공개될 것을 묵인 내지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까지 공표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승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가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공적 인물도 아닌 원고 윤 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윤 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서울은 2001년 1월 20일자에 『신 ‘신부’ 공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들의 사진을 게재하고 원고들이 조만간 결혼할 사이라고 보도하자 원고들은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합8399 손해배상(기)

원 고 : 1. 신

2. 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전 성 우

피 고 : 1.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이십일

대표이사 윤 흥 열

2. 조

피고들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 면 식, 손 석 봉

변 론 종 결 : 2001. 12. 5.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신 에게 10,000,000원, 원고 윤 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 20.부터 2001.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이십일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

료되지 않은 일간 <스포츠서울> 신문의 1면 하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그 아래 부분에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 사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신 은, 19 .생으로 1988. 12. MBC 대학가요제에서 그룹 ‘무한궤도’에 보컬로 참여하여 대상을 수상하면서 가요계에 입문한 후 1990. MBC 10대 가수, 1990. 및 1991. KBS 올해의 가수상 등에 선정되었고, 1989. ‘무한궤도’ 앨범을 발표한 이래 1992. 그룹 ‘N.E.X.T’, 1999. 그룹 ‘모노크롬’, 2000. 그룹 ‘비트겐슈타인’을 각 결성하고 여러 차례 앨범을 발표하여 왔으며, 라디오 가요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여러 대학에서 대중문화에 관한 초빙특강을 하는 등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기있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여 왔다.

(2) 원고 윤 는, 19 .생인 재일교포 2세로서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0. 4.부터 같은 해 12.까지 골드만삭스 일본지사의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1996.에는 미스코리아 본선대회에 뉴욕 진으로 참가한 적도 있었다.

(3)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이십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일간신문 <스포츠서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조 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이전 상황

(1) 원고들은 1999. 말경 미국 뉴욕에서 아는 사람을 통하여 소개받은 후 여러 차례 만나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 왔다.

(2) 원고 신 은 2001. 1. 11.경 케이블 TV(m·net)와의 인터뷰에서 ‘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라고 답한 바 있으며, 2001. 1. 13.자 <스포츠투데이> 신문에는 위 원고가 8살 연하로서 일본계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여자와 열애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보도

(1) 피고 조 은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1. 1. 20.자 <스포츠서울> 1면 우측에 『신 ‘신부’ 공개』라는 제목 아래 원고들의 사진을 싣고, 36면에 원고들의 사진과 더불어(원고 윤 의 사진 바로 밑에는 ‘예비신부 윤 씨’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 올봄 결혼』이라는 제목과 『미스코리아

뉴욕 진 출신 9살 연하 윤 씨와』라는 소제목 아래에 이 사건 기사를 실어 보도하였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기사 및 사진 게재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원고 윤 씨의 사진은 위 원고의 대학졸업 앨범에 실렸던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들이 조만간 결혼을 할 사이이고 그 결혼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지은 부분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데도, 피고들은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

(2) 이 사건 기사와 더불어 실린 원고 윤 씨의 사진은 대학졸업 앨범에 실렸던 것인데, 피고들이 공적 인물도 아닌 위 원고의 동의없이 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기사는 피고 조 씨가 원고 윤 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김모 PD로부터 원고들이 결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통하여 작성, 보도한 것으로서, 원고 신 씨의 케이블 TV와의 위 인터뷰 내용, 스포츠투데이의 위 보도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과실이 없는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연예인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일반인의 알권리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연예인으로서의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어느 정도 묵인 내지 예상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음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만남과 장래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연예인으로서의 인기유지에도 실제 별다른 타격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는 공적 인물인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 내지 원고 윤 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책임은 면책되거나 상당히 제한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및 그 한계

헌법 제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는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제4항은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 즉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언론보도로 인하여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침해에 대한 제재는 필연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는데, 이 때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을 가치형량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언론기관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일 때에는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물론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언론보라도 그 보도내용은 진실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보도로서 언론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 본인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보도를 승낙하는 경우에도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신 올봄 결혼』이라는 제목과 『미스코리아 뉴욕 진 출신 9살 연하 윤 씨와』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들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면서 “가수 신 이 천생배필을 만났다. 1년 넘게 국제적으로 사랑을 나뉘온 미모의 아가씨와 결혼 초임기에 들어간 것이다”, “신 은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앨범작업을 준비하는 틈틈이 윤 씨를 만나 사랑을 가꿔왔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해 온 윤 씨는 최근 골드먼삭스사에 사표를 제출한 뒤 지난 연말 아버지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윤씨가 귀국한

이유는 바로 신 과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들의 측근은 '신 이 윤 씨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으며, 이미 양가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01년의 첫날을 신 의 부모 집에 머물며 예비 며느리의 역할을 담당했다", "양쪽 가족은 조만간 상견례를 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 3-4월께 화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실명을 특정하면서 원고들이 양가의 허락 하에 곧 결혼할 것이라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있다(이 사건 기사는 그 외에도 원고들의 교제경위, 원고 윤 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문제삼고 있는 위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프라이버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이상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 조각 여부

(1)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

(가) 원고 신 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신 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볼 것인데,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공적 인물의 활동이나 그 평가와 전혀 무관한 극히 내밀한 영역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에 노출되어서는 안될 사적인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일부 사람의 호기심 위주의 관심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기사의 경우, 결혼 적령기에 있는 유명 인기 연예인인 원고 신 의 결혼 예정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 그 내용이 일반인들로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기사가 그 외에 위 원고의 다른 내밀한 영역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에 노출되어서는 안될 사적인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사내용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이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연예문화의 현황과 그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일부 사람의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리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다.

(나) 원고 윤 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윤 가 1996. 미스코리아 대회에 뉴욕 진으로 참가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원고 윤 를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원고 신 과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공적 인물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들로서는 원고 신 의 결혼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윤 의 실명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되고, 달리 원고 신 이 결혼할 상대가 바로 원고 윤 라는 것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기사내용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한편, 원고들이 양가의 허락 하에 곧 결혼할 것이라는 이 사건 기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보건대, 그것이 진실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999. 말경 미국 뉴욕에서 아는 사람을 통하여 소개 받은 후 여러 차례 만나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 왔고, 원고 신 은 2001. 1. 11.경 케이블 TV와의 인터뷰에서 ‘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라고 답한 바 있으며, 2001. 1. 13.자 ‘스포츠투데이’에는 위 원고가 8살 연하로서 일본계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여자와 열애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반면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 조 이 이 사건 기사 보도 이전에 원고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작성, 보도한 점에 비추어, 설사 피고들의 주장처럼 김모 PD의 제보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원고 신 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나 그것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원고 윤 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실명의 게재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를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피고들이 그 보도 이전에 원고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윤 는

공적 인물도 아니며, 원고 신 이 유명 인기 연예인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사생활 이 어느 정도 공개될 것을 묵인 내지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까지 공표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승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가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설사 이 사건 기사내용이 원고들의 만남과 장래를 축복하는 내용이고, 실제 연예인으로서의 인기유지에도 별다른 타격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윤 의 초상권 침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공적 인물도 아닌 원고 윤 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윤 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실명 게재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진 게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들의 책임범위

가. 손해배상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스포츠서울>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조 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자로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 및 원고 윤 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그 위법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이 양가의 허락 하에 곧 결혼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인물도 아닌 원고 윤 의 실명 및 사진까지 게재하고 있으나, 반면 그 내용에 원고들의 다른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이나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들의 지위 및 경력, <스포츠서울>의 영향력, 적시내용과 표현방법, 보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신 에 대하여는 10,000,000원, 원고 윤 에 대하여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아울러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점,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보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정정보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위자료로서 원고 신 ○○에게 10,000,000원, 원고 윤 ○○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의 보도일(2001. 1. 20.)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때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2001. 12. 19.

재판장 판사 안 영 료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별지1〉 기사 내용

신 ○○ 올봄 결혼

미스코리아 뉴욕진 출신 9살 연하 윤 ○○ 씨와

가수 신 ○○ (33)이 천생배필을 만났다. 1년 넘게 국제적으로 사랑을 나눠온 미모의 아가씨와 결혼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가요계의 카리스마’ 신 ○○ 을 사로잡은 여인은 아홉살 연하의 윤 ○○ 씨(24). 96년 미스코리아대회에 뉴욕 진으로 참가해 15명이 겨루는 본선에 오른 재미교포 아가씨다. 영어 이름으로 ‘○○○’을 사용한다.

윤씨는 미국 뉴욕의 명문 ○○ ○○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최근까지 세계적인 금융회사 골드먼삭스의 일본지사에 재직했다. 일본과 미국에서 성장한 터라 일어와 영어에 능통한 윤씨는 173cm의 훗칠한 키에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눈에 반할 만큼 단아한 외모와 지성미를 지니고 있다.

신 ○○ 과 윤 ○○ 씨는 1년여 전 신 ○○ 이 음악작업을 위해 미국 뉴욕에 갔을 때 지인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졌다. 신 ○○ 은 똑똑하고 화통한 성격의 윤씨에게 첫눈에 반했으며 윤씨 역시 자유분방하지만 음악에 대한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는 신 ○○ 에게 호감을 가졌다.

4년 전부터 국내에서 앨범과 콘서트 활동을 벌이지 않는 시기에는 외국에 체류해 온 신

은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앨범작업을 준비하는 틈틈이 윤 씨를 만나 사랑을 가꿔 왔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해 온 윤 씨는 최근 골드먼삭스사에 사표를 제출한 뒤 지난 연말 아버지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윤씨가 귀국한 이유는 바로 신 과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들의 측근은 “신 이 윤 씨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으며, 이미 양가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01년의 첫날을 신 의 부모 집에 머물며 예비 며느리의 역할을 담당했다.

두 사람의 결혼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양쪽 가족은 조만간 상견례를 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 3-4월께 화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 해체 이후 4년 만에 록밴드 ‘비트겐슈타인’을 결성해 가요계로 돌아온 신 은 지난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고요한 밤 & 광란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비트겐슈타인의 첫 콘서트를 성대하게 열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조재원 기자>

〈별 지2〉 정정보도문

본지 2001. 1. 20.자에 게재된 『신 올봄 결혼, 미스코리아 뉴욕 진 출신 9살 연하 윤 씨와』라는 제목의 기사로 인하여 본지가 피해자들인 가수 신 씨와 윤 씨에게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위 기사의 본문내용 중 ‘가수 신 (33)이 윤 씨와 결혼 초임기에 들어갔다’는 부분,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해온 윤 씨는 최근 골드먼삭스사에 사표를 제출한 뒤 지난 연말 아버지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윤씨가 귀국한 이유는 바로 신 과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다’라는 부분, ‘이들의 측근은 “신 이 윤 씨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으며 이미 양가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01년의 첫날을 신해철의 부모집에 머물며 예비 며느리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부분, ‘양쪽 가족은 조만간 상견례를 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 3~4월께 화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 등 가수 신 씨와 윤 씨가 조만간 결혼할 사이이고 위 두 사람의 결혼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지어 보도한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의 허위보도로 본지는 신 씨와 윤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위 두 사람에게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재판과정에서 신 씨와 윤 씨는 ‘ 두 사람이 1999년 말 뉴욕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으나, 그 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고, 윤 씨가 2000. 12.경 일본에 있는 골드삭스먼사를 퇴사한 후 2000. 12. 29.부터 서울에 있으면서 신 씨와는 몇 차례 만남이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현재 서로가 결혼할 사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윤 씨가 귀국한 이유도 해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지낼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지 신 씨와는 전혀 무관하고, 윤 씨가 2001년 첫날을 원고 신 의 부모님 집에 머물거나, 양쪽 가족이 상견례를 한 사실도 없고, 올 3~4월께 결혼식을 올릴 예정은 더더욱 없다 ’고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鏞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서울고등법원 2000. 6. 15.자 판결 [99나3282, 99나3299(병합)]

대법원 2002. 1. 22.자 판결 [2000다37524, 2000다37531(병합)]

사실개요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002년 1월 22일 민변 외 8개 단체가 주식회사 한국논단과 발행인,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민노총,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 인권운동사랑방에 손해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단체들에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민노총에 대한 판단 중 “공산계릴라식 빨치산 전투”라고 표현하여 모욕한 부분만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해서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심 재판부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하다거나 피고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의 공공성은 인정되나 <한국논단>은 월간지로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매체보다 사실확인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각 기사의 근거로 든 수사기관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기 위한 친북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각 기

사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305 321면 참조).

주식회사 한국노단이 월간 <한국노동> 1997년 2월호, 3월호, 8월호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제하로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노총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 운동을 전개하는 사회주의적 노동당 지향의 단체이고,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은 공산주의자들을 미화하는 단체로, 원고 현대·대우·기아노조는 조합장들에게 과도한 판공비, 기밀비, 의전활동비를 지급하여 노조간부들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고, 원고 연노련은 97년 노동계 총파업 당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묵살하고 민노총의 발표만을 보도하도록 산하 노조에 지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자 원고들은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판 결 문

사 건 : 99나3282 손해배상(기)

99나3299(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대표자 회장

2.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서울

대표자 상임의장

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대표

4. 인권운동사랑방

서울

대표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

대표자 위원장

6.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울산

대표자 위원장

7. 대우조선노동조합

장승포시

대표자 위원장

8. 기아자동차노동조합

광명시

대표자 위원장

9.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서울

대표자 위원장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결

담당변호사 조 광 희, 이 상 희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한국논단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의 38

대표이사 이 도 형

2. 이

3. 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의 38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해 진, 김 신 희, 임 광 규

변 론 종 결 : 2000. 5. 4.

제1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1998. 11. 25. 선고 97가합70274, 97가합70281(병합)

주 문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대우조선노동조합,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게 각 금 20,000,000원,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게 금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 이 은 연대하여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에게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하여는 1997. 8. 1.부터,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대우조선노동조합,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 대하여는 1997. 3. 1. 부터 각 2000. 6. 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월간 <한국논단>의 본문 제1쪽 상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그 아래 부분에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라.

다.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의 피고 전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 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에 각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금 100,000,000원, 원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대우조선노동조합,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 각 금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한국논단 25쪽에 제1심 판결문 별지 2 기재 보도문을, 64쪽에 제1심 판결문 별지 3 기재 보도문을 각 제목은 고딕체 특호활자로, 각 내용은 5호 활자로 하여 게재하라.

항 소 취 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들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다른 권리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이 사건 각 기사에 대

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여론 형성과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어 어떤 개인이 국가권력 또는 타인에 의하여 부당히 인격권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하다거나 피고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음은 제1심 판결 이유란에서 살펴 본 바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과 같은 법률전문가단체, 사회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 노동조합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체제에서 용인되는 적법성, 업무집행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그 존립의 중요한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기사로 원고들이 마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이적단체 또는 불법단체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여 이후 일반 언론의 지지 및 원고들의 각 구성원들의 활

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점, 우리나라 현실에서 언론을 통해 “이적단체”, “공산당”, “친북단체” 등으로 지명되면 그 진실판단 여부 이전에 사회행동의 제약 등 현실의 피해가 생기는 점, <한국논단>의 발행 부수 및 사회적 영향력, <한국논단>의 지하철 및 일간신문을 통한 광고방법의 전파성,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과 크기, 피고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원고들의 구성원 수 및 단체로서 지명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무형의 손해는 아래와 같이 성함이 상당하다.

가. 피고들

(1)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 언노련 : 각 금 20,000,000원

(2) 원고 민주노총 : 금 30,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 이

원고 인권운동사랑방 : 금 10,000,000원

4.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크기, 게재 면수,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국논단>의 본문 제1쪽 상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아래 부분에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 언노련에게 각 금 20,000,000원, 원고 민주노총에게 금 30,000,000원, 피고 회사, 이

은 연대하여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에게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하여는 <한국논단> 1997년 2, 3, 8월호 발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1997. 8. 1.부터, 원고 민주노총,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 언노련에 대하여는 <한국논단> 1997년 3월호 발행일인 1997. 3. 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0. 6.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의 피고 회사, 이 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의 피고 전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 이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15.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박 상 훈
판사 한 양 석

〈정정보도문〉

본지 1997년 2월호에 게재된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같은 해 3월호에 게재된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 같은 해 8월호에 게재된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들로 인하여 본지가 피해자들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각 5천만원,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대우조선노동조합,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 각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공고합니다.(이하 각 ‘민변’ * 전국연합 * 참여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민주노총 * 현대노조 * 대우노조 * 기아노조 * 언론련’이라 합니다)

본지는 1997년 2월호 21쪽부터 25쪽까지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3월호 26쪽부터 31쪽까지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 8월호 20쪽부터 23쪽까지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는 바, 위 기사들의 본문내용 중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이 마치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계급투쟁을 옹호하고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단체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 인권운동사랑방이 마치 공산주의자들을 비화하는 단체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 현대노조가 조합원들

로부터 받은 조합비 중 일부를 한총련에 체제파괴를 위한 공작비로서 지급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가 노조 조합장들에게 과다한 판공비, 기밀비, 의전활동비를 지급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이 그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부분, 언노련이 1997년 초 노동계 총파업 당시 정부·여당의 입장이나 발표는 묵살하고 민주노총의 발표만을 보도하도록 산하노조에 지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이러한 내용의 허위보도로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 언노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이 3천만원,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 언노련에 각 2천만원, 인권운동사랑방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판 결 문

사 전 : 2000다37524, 37531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 광 희 외 10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한국논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광 규 외 1인)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2000. 6. 15. 선고 99나3282, 3299 판결

주 문 : 원심판결 중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원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원고 대우조선노동조합, 원고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원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원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하고, 피고 이 은 월간 한국논단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한국논단 1997년 2월호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라는 기사를, 한국논단 1997년 8월호에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기사를 썼고, 피고 전 은 피고 회사의 기자로서

한국노동 3월호에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라는 기사를 썼다.

(2) 한국노동 1997년 2월호에 게재된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라는 기사는 『노동 ‘勞’자와도 관계없는 친북 투쟁』, 『자본가 대 노동자, 계급투쟁이 기본구도』, 『정당한 노동행위 아닌 빨치산 수법』이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과 ‘범대위(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 및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이라고 한다), 원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라고 한다) 등을 공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한국노동 1997년 3월호에 게재된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라는 기사는 『1천억 넘는 무노동·유임금, 노조 각출금 체제파괴 공작비에』라는 부제와 『극소수 노동자가 ‘혁명의 주력군’이다』, 『연간 수십억원을 거둬 쓰는 민노총』, 『노조가 판공, 기밀비에 ‘의전활동비’까지』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 민노총, 원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하 ‘현대노조’라고 한다), 원고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하 ‘대우노조’라고 한다), 원고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하 ‘기아노조’라고 한다),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하 ‘언노련’이라고 한다)을 공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한국노동 1997년 8월호에 게재된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기사는 『대한민국 공화국인가?, 조선인민공화국인가?』라는 부제와 『북한산 술 팔아 자금마련』이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 전국연합과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을 공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위 한국노동 기사들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원고별로 보면,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노총은 계급투쟁으로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는 활동을 하여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하는 단체이고, 특히 원고 민노총은 범민련과 함께 행동을 시작한 민족해방(NL) 운동권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한국노총에 파업 압력을 가하고 연간 수십억원을 대기업 노조 간부들로부터 거둬들여 호화생활을 하여 노동귀족으로 되었으며, 원고 전국연합은 19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의 전위대로서 각종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친북 이적활동을 하고, 원고 현대노조는 ‘한총련’에 1억2,240만원을 지급하고, 조합비를 대한민국의 체제파괴활동과 공작비로 쓰며, 원고 대우노조, 기아노조는 노조간부가 판공비, 기밀, 의전활동비를 거둬들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며, 원고 언노련은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공정보도를 내세워 정부, 여당의 견해나 발표는 묵살하고 민노총의 발표만 보도하도록 각 산하 언론노조에 지령하였고,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은 출소 공산주의자인 소외 1을 평생 조국을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공산주의자들을 애국자로 미화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중략) 해방 이후 좌우의 이념 대립과 한국전쟁, 휴전 후 남북이 대치하며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감안하여 볼 때, 특정단체가 대법원판결로써 이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단된 ‘북한’, 이적단체로 판단된 ‘한총련’, ‘범민련’과 관련이 있고, ‘노동당운동’, ‘좌익불법단체’,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 투쟁’,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 ‘대한민국의 체제 파괴활동’, ‘친북 이적활동’,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명되는 경우 그 단체는 불법단체로서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국가, 반사회 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비유나 비판적 의견의 제시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원심은 한국노동당의 위 기사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에 관하여

1) 원고 민노총이 친북좌익단체인 범민련과 함께 행동을 시작한 민족해방계 운동권 출신 소외 2명 등 10여 명을 중심으로 위장 취업, 노사분규조성 등을 일삼다가 설립된 단체라거나, 공산계릴라식 빨치산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노총이 1995년 4월에 결성된 범대위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계급투쟁으로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 하여 정부를 전복하는 활동을 하여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도 없다.

(나)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기사에 관하여

1)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노총이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 민노총이 한국노동총에 파업 압력을 가하였다거나 연간 수십억원을 노동귀족화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간부들로부터 거둬들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원고 현대노조의 1995. 9. 1.부터 1996. 2. 29.까지 예산액 항목 중 기밀비가 2,000만원, 직무판공비가 7,000만원이고, 그 중 기밀비 10,400,000원, 직무판공비 21,170,430원을 집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 현대노조의 노조간부들이 위 기밀비와 직무판공비를 직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 현대노조 예산편성 중 의전활동비라는 항목이 있다거나 한층련에 1억2,24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달리 위 기밀비나 직무판공비를 포함한 조합비를 대한민국의 체제파괴활동과 그 공작비로 썼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원고 대우노조가 1996. 11. 10. 결산한 바에 따르면 기밀비 11,400,000원, 직무수당 18,550,000원, 직책수당 1,450,000원, 직무판공비 9,685,81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 기아노조에서 1995. 9. 24.부터 1996. 9. 30.까지 기밀비 9,600,000원, 직무판공비 34,500,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기밀비로 9,500,000원 직무판공비로 34,478,660원을 집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 대우노조, 기아노조의 노조간부들이 위 기밀비와 직무판공비를 직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도 없으며, 별도의 의전활동비 항목이 있다고 볼 증거 또한 없다.

5) 원고 연노련이 공정보도를 내세워 정부, 여당의 견해나 발표는 묵살하고 민노총의 발표만을 보도하도록 각 산하 언론노조에 지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기사에 관하여

1) 원고 전국연합이 공산당이라거나 19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라는 단체가 실재한다거나, 위 원고가 그 단체의 전위대로서 친북 이적활동을 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이 월간 말지 1997년 6월호에 소외 1에 관한 기사를 쓴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애국자로 미화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원고가 출소 공산주의자인 소외 1을 ‘평생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였다.’고 표현하였거나 ‘공산당’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3) 또한, 원심은 피고들이 그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한국노동당은 월간지이므로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언론매체보다 신중한 사실 확인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기사의 근거로 든 모 수사기관의 정보도 그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명칭, 취재경위,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된 해당 수사자료를 피고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라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친북활동을 한

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여론 형성과 전달을 주된기능으로 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어 어떤 개인이 국가권력 또는 타인에 의하여 부당히 인격권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각 기사가 진실하다거나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그 입증이 없다.”

2. 당원의 판단

가. 일반론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

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판결 각 참조).

그리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2)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유의 보장은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여러 견해의 자유로운 개진과 공개된 토론을 허용하고 이로써 보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의 내용으로 명예를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되며, 이에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한계 설정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이를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 기준을 채택하였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었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3)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참조).

(4)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5)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별 판단

이제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원고별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 민노총

(가) 다음의 사실은 을 제106호증의 1 내지 6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공지의 사실 또는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원고 민노총은 재야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1995. 11. 11. 창립행사를 갖고 공식출범한 단체로서 창립 당시부터 노동자 중심의 사회개혁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하였고, 1996. 12. 26. 06:00경 국회가 당시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안기부법개정안과 노동관계법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자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정부는 원고 민노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민노총은 법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부는 원고 민노총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수차례 법질서 수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으며, 검찰은 원고 민노총의 지도부와 산별노조 위원장 등 20여 명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경찰은 원고 민노총의 핵심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한 전담반을 편성하였다.

1997. 1. 15.에는 원고 민노총과 소외 한국노총이 공동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시위대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가두시위를 벌여 도심에서 극심한 혼란이 있었다. 1997. 1. 16.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원고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앞 부분 생략) ‘한국노총 과 법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은 지난 해 12월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

단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농성, 폭력시위와 도로점거 및 투석 등 불법행동을 4주째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파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중략) 최근 북한은 평양방송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문민정부를 폭파하자’는 등 연일 현 정권 타도를 집중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집단농성을 벌이고 있는 명동성당 현장에서는 ‘자본가 정권은 선거를 통해 몰아낼 수 없다.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손에 의해 타도되고 그 자리에 노동자의 권력이 들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유인물이 나돌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간부는 ‘이번 투쟁이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중략) 검찰은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노동계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이미 민주노총 지도부 등 20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중략)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불법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보다는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하 생략)’라는 발표문을 발표하였다(을 제106호증의 2, 기록 1021면).

또한, 원고 민노총은 1997. 1. 22.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파업을 하는 ‘수요총파업’에 돌입하고 같은 해 2월 22일부터는 4단계 총파업을 강행하였다.

(나) 한국노동 1997년 2월호의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1997년 3월호의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라는 공격적 기사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나온 것이다.

한국노동 1997년 2월호 기사의 요지는, 원고 민노총 등의 총파업이 좌경, 친북, 체제전복 투쟁으로 치닫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에 단호한 법집행을 주문하는 한편, 기업들도 그들의 투쟁에 명분을 주지 않도록 부를 분배하고 재벌은 해체되어야 하며, 정부도 민중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자, 기업, 정부 다 함께 국운을 개척해 나가자는 것이고, 1997년 3월호 기사의 내용은, 원고 민노총을 포함한 일부 노동운동세력의 좌경화를 지적하고, 원고 민노총을 지원하는 대기업 노조의 방만한 조합비 운용실태 및 일부 기업의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위에서 인정한 당시의 사회적 배경 하에서 볼 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을 위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볼 때 허용되는 사소한 상위나 과장된 표현의 범위를 넘어 원고 민노총에 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하에서 항목별로 살펴본다.

(다) 한국노동 1997년 2월호 기사 중 원고 민노총의 투쟁노선과 관련하여 원심이 명예

훼손으로 인정한 부분의 내용은, “더구나 왜 하필이면 국가기간산업이며 이제 겨우 수출주력산업으로 부상하려는 자동차, 조선, 중공업, 전자, 통신 종사자들이 걸핏하면 총파업인가? 이걸 급여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행위가 아니라, 체제와 국가전복을 궁극목적으로 한 공산계릴라식 빨치산 전투가 아닌가? 붉은 띠에 쓰인 ‘김영삼 정권 퇴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불법단체인 소위 ‘민노총’은 ‘노동악법 저지투쟁’이 목표라고 했지만, 실은 ‘정권타도투쟁’이 그 저의에 깔려 있음을 현명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정부는 단호하고도 일관된 법의 집행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다스려야 함에도 오히려 ‘노동운동’을 내건 불법, 불순세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들의 기본구도는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계급투쟁으로 되도록 과격한 행동을 지향,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 하여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다.

먼저, 위 기사 중 원고 민노총을 “불법단체”, “불법, 불순세력”이라고 칭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표현은 그 자체로서 명예훼손적 의견 표현에 해당하나, 위에서 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원고 민노총은 정부에 의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법외단체에 머물러 있었고, 정부가 원고 민노총의 정치투쟁 및 총파업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원고 민노총의 투쟁 과정에 폭력행위가 수반되었으므로 위 의견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공적 단체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기사 중 원고 민노총의 투쟁을 “정권타도투쟁”이라고 칭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 민노총의 투쟁방법과 투쟁구호를 기초로 한 피고들의 평가를 표현한 의견에 해당하는 바, 위 기사는 이러한 의견의 근거되는 사실이 원고 민노총의 투쟁과정에서 나온 ‘김영삼 정권 퇴진’이라는 과격한 구호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의견 표현은 위와 같은 과격한 구호에 대한 수사적 표현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또한, 위 기사 중 원고 민노총의 투쟁이 ‘체제와 국가전복을 궁극목적으로 한 공산계릴라식 빨치산전투’라거나, 그 정치투쟁의 기본구도를 ‘자본가와 노동가의 계급투쟁’으로 보고, 그 노동운동을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으로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체제와 국가전복’이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우

리 나라의 체제를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부분은 바로 원고 민노총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이다. 그런데 위 을 제106호증의 2(대검발표문), 3(서울신문 기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 민노총의 간부는 총파업 투쟁이 단순한 노동법무효화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퇴진운동”, “깍대기 민주주의를 청소하고 민중 중심의 실질 민주주의 건설이 목표”라고 공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07호증의 1 내지 6은 모두 원고 민노총의 집단농성이나 시위현장에서 수집된 유인물이라며 제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여 원고 민노총의 파업투쟁을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투쟁, 체제전복투쟁으로 강화해 나가자는 것인바, 그 유인물이 바로 원고 민노총이 공식적으로 제작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위 대검공안부장의 발표문(을 제106호증의 2)이나 당시의 서울신문 논평기사(을 제106호증의 3)에서도 같은 내용의 유인물이 그들의 시위현장에서 수집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유인물은 원고 민노총의 시위, 농성현장에서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또한 원고 민노총이나 그 구성원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대검 공안부장의 발표문이나 서울신문 논평기사에서도 원고 민노총 간부의 위 공언과 위 유인물의 내용을 들어 그들의 투쟁이 체제부정적이고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 민노총의 강령 등에 나타난 공식적인 이념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체적 정황과 원고 민노총이 벌인 총파업투쟁의 양태 및 강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체제를 유지 수호하려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원고 민노총의 현실투쟁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의 체제를 존중·유지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 민노총이 공적인 존재로서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원고 민노총이 노동운동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정치투쟁에 뛰어 들으로써 정치적 논평을 자초한 점 등을 앞에서 본 일반론에 비추어 고려하면 원고 민노총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사는 단순한 의혹의 제기 차원을 넘어 단정적인 표현을 하였던 바, 피고들이 제시한 을 제106, 107호증 등의 자료만으로 곧 그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하였던 바, 피고들이 제시한 을 제106, 107호증 등의 자료만으로 곧 그와 같이 단정까지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 할 것이고,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 민노총의 그와 같은 노동운동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익되게 하는 운동이

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노동당운동’에 비유한 과장표현이라 할 것인바, 앞에서 전제 한 바와 같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공개와 토론이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제시된 정황 및 현실투쟁의 강도와 양태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도의 과장표현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민노총의 투쟁방법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록 그 표현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원고 민노총의 투쟁방법을 그에 비유한 평가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전투’라 함은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적의 배후에서 파괴와 살상 등으로 기습, 교란하는 비정규부대의 유격전투를 뜻하는 표현으로서, 원고 민노총의 투쟁방법, 투쟁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구호 등을 참작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그 비유가 지나치고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여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 한국노동 1997년 2월호 기사 중 원고 민노총의 출범과정과 관련하여 원심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부분의 내용은, “이들은 88년 6월 노동운동의 계급투쟁화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을 목적으로 친북좌익단체인 ‘범민련’과 함께 행동을 시작한 NL(민족해방)계 운동권 출신 소외 2등 10여 명을 중심으로 위장취업, 노사분규조성 등을 일삼다가 95년 11월 소위 ‘조선노협’, ‘영남지역노조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민주노총을 설립했다. 이후 이들은 국민연합 등 체제부정세력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대선자금공개’, ‘5·18 학살자 처벌’ 등등 노동의 ‘노’자도 관계없는 대중정치투쟁을 전개해왔다.”라는 것이다.

첫째, 위 기사 중 소외 2는 소외 3의 착오 기재임을 피고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 그 한자 이름의 형태적 유사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측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이름의 착오기재가 명예훼손으로 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명예훼손으로 되지는 않는다.

둘째, 위 표현 중 “친북좌익단체”라고 칭한 부분은 범민련에 관한 것이고, “노동운동의 계급투쟁화”, “NL(민족해방)”, “위장취업” 등의 표현은 소외 3에 관한 것이며, “체제부정세력”이라고 칭한 부분은 국민연합에 관한 부분이므로 원고 민노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어떤 단체에 관계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그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원고 민노총의 주장은 위 기사가 원고 민노총의 결성과정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범민련을 함께 언급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 민노총과 범민련이 조직적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원고 민노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위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원고 민노총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된다는 것인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을 보면 위 기사가 범민련을 언급한 것은 소외 3의 사상적 편향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고 범민련이 원고 민노총과 어떠한 조직적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 암시적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또한, 을 제106호증의 4(신문기사)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민노총 출범 무렵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의장이었던 소외 3이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경찰은 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가 원고 민노총의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기사에서 언급된 소외 3 등이 원고 민노총의 결성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 부분은 원고 민노총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마) 원심은, 한국노동 1997년 3월호 기사내용 중 “죽은 김일성과 그 ‘유혼’에만 충실한 것은 우리 사회 1천2백만 근로계층의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소수의 혁명주도분자들이다. 김일성의 ‘교시’와 ‘유혼’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뒤집어엎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우선 작년 12월 28일 결성된 노동법 범대위(공동대표 등) 참가단체들이 그 주축이다. 이들은 ‘전국연합’을 비롯, (중략) 참여연대, (중략) 등 45개 단체인데 그 대부분이 좌익이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김 (민교협), 신 (범민련), 천 (전국연합), 오 (지식인연대), 최 (민변), 문 (정사단), 최 (전불련), 김 (참여연대) 등이다. 이들은 범대위 대표자회의를 통해 노동계의 정치투쟁을 전개토록 유도하며, 파업수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과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좌익노동단체가 민노총이다.”라는 부분을 원고 민노총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면서, 위 기사가 “원고 민노총을 김일성의 교시와 유혼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하는 단체”로 표현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를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 읽어보면, 위 기사가 김일성의 교시와 유혼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하는 단체라고 비난한 단체는 원고 민노총이 아니라,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의 단체임을 알 수 있고, 원고 민노총에 관하여 “이들과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좌익노동단체”라고 지칭한 것만으로 원고 민노총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비난을 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이어서 위 기사가 원고 민노총을 “좌익노동단체”라고 칭한 표현이 명예훼손으로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원고 민노총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판단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민노총을 ‘좌익’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표현은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바) 원심이, 한국노동 1997년 3월호 기사 중 원고 민노총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또 다른 부분은, “민노총은 노동귀족화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간부들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원심은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라는 제목과, 『연간 수십 억원을 거둬 쓰는 민노총』이라는 소제목과 연결하여 위 기사가 원고 민노총은 연간 수십 억원을 대기업 노조 간부들로부터 거둬들여 호화생활을 하여 노동귀족으로 되었다고 비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사는 원고 현대노조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노동귀족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취지와 자동차노조, 택시노조, 화학노련 등 일부 노조 간부가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위 기사 어디에서도 원고 민노총이 호화생활을 하여 노동귀족화되었다고 비난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위 기사는 원고 민노총이 원고 현대노조 등으로부터 모인 돈을 “대한민국의 체제 파괴활동과 공작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원고 민노총의 활동을 “대한민국의 체제 파괴활동”으로 표현한 부분이 불법행위로 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사) 결국 한국노동 1997년 2월호 기사 중 원고 민노총의 투쟁방법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 전투”라고 표현하여 모욕한 부분만이 원고 민노총에 대한 불법행위로 되고, 그 나머지 기사와 1997년 3월호 기사는 원고 민노총에 대한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위 을 제106, 107호증 등의 증거들을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위에서 본 기사 전부가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원고 민노총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한편 정정보도를 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2)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가) 한국노동 1997년 2월호 기사내용 중 범대위(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회 및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라고 한다)의 활동과 관련하여 원심이 위 원고

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부분은, “재작년(95년 4월)에 이르러서는 소위 ‘노동법개정투쟁’을 내걸고 25개 단체들로 ‘범대위(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회 및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 동시다발 ‘평화대행진’ 전개와 함께 민노총의 총파업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범대위는 ‘전국연합’, ‘한총련’,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30개 단체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함께 파업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 이들의 기본구도는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계급투쟁으로 되도록 과격한 행동을 지향,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 하여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부분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6. 12. 26. 06:00경 국회가 당시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안기부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자 원고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회의결절차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그 개정법률의 무효화를 위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고, 정부가 그 총파업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절차에 돌입하자 원고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폭력시위로 맞섬으로써 정치적 혼란상태에 빠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가 참여한 범대위가 국회의 위 개정법률안의결절차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그 무효화를 위한 정치투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기사가 위 원고들의 정치투쟁을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계급투쟁”, “정부 전복투쟁”,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 등으로 표현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러한 평가를 정당화할 만한 기초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과격하고 불법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였거나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우회적,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기사는 위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국노동 1997년 3월호 기사내용 중 범대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원심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부분은, “죽은 김일성과 그 ‘유혼’에만 충실한 것은 우리 사회 1천2백만 근로계층의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소수의 혁명주도분자들이다. 김일성의 ‘교시’와 ‘유혼’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뒤집어엎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우선 작년 12월 28일 결성된 노동법 범대위(공동대표

등) 참가단체들이 그 주축이다. 이들은 ‘전국연합’을 비롯, (중략) 참여연대, (중략) 등 45개 단체인데 그 대부분이 좌익이며 사회주의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김 (민교협), 신 (범민련), 천 (전국연합), 오 (지식인연대), 최 (민변), 문 (정사단), 최 (전불련), 김 (참여연대) 등이다. 이들은 범대위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노동계에 정치투쟁을 전개토록 유도하며, 파업수위를 조절하는 등의 파업으로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다.

먼저, 위 기사 앞 부분 즉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본다. 위 기사는 첫머리에서 1997. 1. 9. 오후 서울 종로 앞과 명동성당 근처에 뿌려진 ‘왜 혁명적 당이 필요한가’라는 유인물 중 “마르크스에 따르면 혁명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노동자 계급이다”라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무엇보다도 우선 (남조선) 혁명의 주력군을 공고히 굳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명의 주력군이란 혁명에 동원할 수 있는 기본계급과 그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의미합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의 지도 아래 사회의 기본계급인 노동자·농민이 동원됨으로써 비로소 혁명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1964년의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총회’에서의 김일성이 한 연설과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위 기사 내용 중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은 김일성의 계급혁명론에 따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뒤집어엎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왜 혁명적 당이 필요한가’라는 유인물이 위 원고들과 관련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러한 평가를 정당화할 만한 기초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과격하고 불법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였거나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기사는 위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다) 한국노동 1997년 8월호 기사 중 원심이 원고 전국연합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부분은, “특히 전국연합은 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의 전위대로서, 각종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친북 이적활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라는 것이다.

위 기사 중 원고 전국연합이 “각종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적시 부분은 기사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원고 전국연합이 북역 중인 미전향 공산주의자의 출소를 위하여 각종 탄원서를 작성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 전국연합이 북한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의 전위대라거나(북한이 위와 같은 조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최소한 진실일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조차도 없다) 복역 중인 미전향 공산주의자의 출소를 위하여 각종 탄원서를 작성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기사는 원고 전국연합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라)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위 각 기사를 위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7년 3월호 기사내용 중 위 원고들의 조합비 사용과 관련하여 원심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부분은, “민주노총은 노동귀족화되고 있는 대기업 노조간부들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 첫째, 조합원 3만4천명을 거느린 현대자동차에서는 1인당 월급여의 1%씩을 또박또박 공제하여 월 2억5천만원, 연간 30억원을 뜯어내고 있는데, 그 중 8천만원을 민노총에 상납하고 있다. 그렇게 모인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노조간부 사무실의 인건비, 사업비, 유지비 등에 22억4천만원, 임투 등 쟁의기금에 2억5천만원, 민노총 등 상급단체 납부에 2억4천만원을 각각 쓰며, 그 중에서도 한총련에 1억2천2백40만원, 민노총에 8천1백60만원이 지급되었다. 1996년 한 해 동안 현대자동차노조 한군데에서 모인 돈들이 대한민국 체제파괴활동과 공작비로 쓰인 것이다. 그 밖에도 기업 내 노동조합 간부의 소위 판공비가 2천4백만원, 기밀비와 의전활동비라는 것이 9천6백만원이나 된다니 이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조인가, 아니면 정치단체 또는 정보기관이란 말인가? 열린 입이 닫히질 않는다.”라는 부분과 이어서 대우노조와 기아노조의 조합비 용도를 구체적 금액과 함께 기재하고 있는 부분이다.

첫째, 위 기사에서 원고 현대노조의 조합비 용도에 대하여 “대한민국 체제파괴활동과 공작비”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 현대노조가 원고 민노총에 가입한 단체로서 원고 민노총의 정치투쟁에 동참하여 함께 총파업투쟁을 벌인 이상 피고가 원고 민노총에 대한 평가자료를 들어 원고 현대노조를 동등하게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가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1)의 (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둘째, 위 기사의 “한총련에 1억2천2백40만원” 중 ‘한총련’은 ‘현총련’의 착오기재임을 피고측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 ‘한총련’과 ‘현총련’은 중대한 차이로서 그 잘못된 기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사는 “민노총 등 상급단체 납부에 2억4천만원을 각각 쓰며”라고 사실을 적시한 후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위 부분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총련’은 현대노조의 상급기관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문장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한총련’은 ‘현총련’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고, ‘한총련’과 ‘현총련’의 명칭의 유사성과 위 기사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위 착오기재는 기사 작성과 교정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고 이로써 곧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위 원고들이 부분적으로만 제출한 갑 제18 내지 2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기사에서 적시한 위 원고들의 조합비 사용내역은 상당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의전활동비 등의 항목 명칭과 관련하여 다소 잘못된 표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 적시의 부분적 오류가 기사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위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위 기사의 제목이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라는 점과 연결하여 위 기사는 원고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의 노조간부가 판공비, 기밀, 의전활동비를 거둬들여 용도 외 유용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이를 명예훼손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기사 전체의 문맥에서 이해한다면 위 기사는 원고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의 조합비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의문만을 제기하였을 뿐 노조간부들이 조합비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기사의 제목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만일 위 기사에서 다른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면 제목에서 말한 ‘호화생활’이라는 표현과 결합하여 원고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의 조합비 사용용도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간접적 우회적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위 기사는 위 원고들의 조합비 사용용도에 관한 의문 제기와 별도로, “자동차노조의 위원장, 택시노조, 화학노련 위원장 등은 그랜저를 굴리며, 섬유노조의 김 , 선원노련의 권 씨 등은 포텐샤를 타고 다닌다. 이들도 월 1백만~3백만원의 판공비를 쓰고 있다. 이들은 또 대기업 임원실보다 큰 40~50평 규모의 조합장 사무실과 수 명의 여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기사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가 ‘호화생활’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 중 원고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의 조합비 사용용도에 관한 의문 제기가 위 노조간부들이 조합비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유용하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기사가 위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원고 언론권

한국논단 1997년 3월호 기사내용 중 원심이 원고 언론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부분은, “더욱 한심한 것은 언론노조의 형태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8층에 ‘상황실’이라는 것을 차려놓고 산하 각 언론매체 노조에게 매우 파괴적인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들은 특하면 정치투쟁 대열에 끼지를 않나, 편파적인 보도와 논쟁을 하지 않나, 세계 수준을 웃도는 임금인상투쟁을 벌이지 않나 … 그야말로 배부른 돼지들의 고약한 난장판을 보는 것 같다.”라는 부분, “이들은 언필칭 ‘공정보도’를 내세워 실은 정부·여당의 입장이나 발표는 묵살하고 민노총의 발표만을 보도하도록 각 산하 언론노조에 지령했다.”라는 부분과 “이런 지령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의 하나가 지난 1월 14일 일부 KBS노조원들의 조선일보사 급습사건이었다”라는 부분이다.

위 기사 중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8층에 ‘상황실’이라는 것을 차려놓고 산하 각 언론매체 노조에게 매우 파괴적인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라는 부분과 “이들은 언필칭 ‘공정보도’를 내세워 실은 정부·여당의 입장이나 발표는 묵살하고 민노총의 발표만을 보도하도록 각 산하 언론노조에 지령했다.”라는 부분은 피고측의 평가적 표현이 가미된 사실적시로서 ‘공정보도’가 언론종사자들의 명예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서 명예훼손적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봐도 이 부분의 사실적시가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입증을 찾아볼 수 없다. 위 기사는 원고 언론권이 “조합대의원대회에서 ‘언노련투쟁동참결의’를 하면서 ‘1만6천 언론조합원의 투쟁은 이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밝힌다.’고 극언했다.”라는 사실을 함께 적시하고 있는데, 원고 언론권의 투쟁과정에서 이러한 과격한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편파보도 지시사실을 정당하게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기사내용을 원고 언론권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논단 1997년 8월호 기사내용 중 원심이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부분은, “전국연합의 인권운동사랑방(대표)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말’ 지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생활상을 수시로 게재, 그들이 마치 부당하게 복역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사망자를 ‘애국자’로 미화하기도 한다. 예컨대 ‘말’ 지 97년 5월호에는 출소 공산주의자 소외 1이 최근 사망하자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미화한 것이 그것이다.’라는 부분이다.

위 기사 내용은 ‘말’ 지 1997년 5월호 중 소외 1에 관한 기사에 관한 논평에 해당하는바, 이 논평이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위 ‘말’ 지 1997년 5월호 기사의 내용을 조사해 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말’ 지 1997년 5월호 기사의 내용이 위 한국논단 논평 기사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위 한국논단의 기사가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되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조사방법도 용이한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그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심으로서서는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말’ 지의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게 한 후 그 기사의 내용이 한국논단의 위 논평 기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이 월간 ‘말’ 지 1997년 6월호(5월호의 착오기재인 것 같다)에 소외 1에 관한 기사를 쓴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기사 내용을 심리하여 보지도 않은 채 형식적으로 그 기사가 출소 공산주의자인 소외 1을 “평생 조국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표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국논단의 위 기사를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민노총,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언노련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 재 윤
서 성
주 심 이 용 우
배 기 원

鏞

III.헌법재판소 결정사례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1. 8. 30.자 결정 (2000헌바36)

사실개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001년 8월 30일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방송이 제기한 위헌소원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민·형사책임이나 반론보도 내지 추후보도의 청구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굳이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민·형사책임의 추궁이나 반론보도 내지 추후보도의 청구는 모두 인격권 침해의 사후적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이미 훼손된 명예의 회복 등 원상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는 이미 발생하여 지속하는 침해행위의 정지·제거, 즉 방해배제청구와 함께 침해의 사전억제, 즉 방해예방청구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이에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보호수단으로서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회와 이 ○ 은 문화방송이 제작 중이던 「PD수첩」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 ○ 과 여자신도들간의 성추문 관련부분의 방영을 금지한다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자, 문화방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사 건 : 2000헌바36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김 ○ 배

소송대리인 : 변호사 한 상 호, 최 정 수, 이 석 연, 박 성 하

당 해 사 건 : 서울고등법원 99나27783 방영금지가처분

주 문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MBC TV로 방영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을 통하여 1999. 4. 15.경부터 ○○○대한연합성결교회 ○○○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와 그 대표자인 당회장 이○록에 대한 이단성 문제, 당회장과 여자신도들 사이의 성추문 및 도박문제 등을 방영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었는데, ○○○교회와 이○록은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1999. 4.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9카합1131호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11. 이○록과 여자신도들 사이의 성추문 관련부분의 방영을 금지한다는 일부 인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99나27783호로 항소하면서, 같은 해 12.경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99카956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 바, 2000. 4. 20.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되 이○록과 여자신도들 사이의 성추문관련 부분은 방영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위 신청도 기각되자, 같은 해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0. 5. 8.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2000다22980호로 상고하였고 현재 계속 중이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를 포함한 같은 법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714조【가처분의 목적】 ①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다.

②가처분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여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이 제작, 방영되기 전에 그 방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심판 대상 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방영되기 전에 그 방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결국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이 사건 심판 대상 규정이 위헌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처분에 위와 같은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심판 대상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5. 25. 91헌바20, 판례집 7-1, 615, 626; 헌재 1998. 7. 16. 97헌바23, 판례집 10-2, 243, 251-252 참조).

5. 본안 판단

가. 사안의 쟁점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①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민사소송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가처분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같은 법조 제2항)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후자는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때문에 현재 채권자가 겪고 있는 생활관계상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그 해결시까지 기다리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상태를 형성하거나 그 사실적 실현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실무상으로 가장 흔한 형태인 부작위의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를 구하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와 동일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채무자에게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그 유형으로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금지

또는 단순한 부작위의 가처분,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에 착안점을 두어 채무자가 여기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수인의무를 지움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하려는 방해금지의 가처분, 채무자가 이루려는 법률상 절차의 진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려는 절차정지의 가처분 등이 있고,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가처분은 바로 금지 또는 단순한 부작위의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TV 방송 역시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이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헌법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를 따로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이다.

다만, 여기서의 “검열”은, 개인이 사상이나 의견 등을 발표하기 이전에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다 (헌재 1992. 6. 26. 90헌바26, 판례집 4, 362, 370-371;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59-760;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2-223;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403;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125-126).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한계 이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에 따른 제한도 가능하다.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처분제도가 언론의 자유만을 제한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의거, 방영금지가처분이 가능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민·형사 책임이나 반론보도 내지 추후보도의 청구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굳이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가 공적 이해에 관계된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편견과 독단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보도, 논평 등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의 훼손, 성명권이나 초상권,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권 침해와 같이 타인의 법익 내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정한 표현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바로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우리 법에 있어서 인격권의 보호수단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의 명예훼손죄와 제313조의 신용훼손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이 있고, 특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보호절차로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 및 추후보도청구권(제20조)과 방송법 제91조의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민·형사 책임의 추궁이나 반론보도 내지 추후보도의 청구는 모두 인격권 침해의 사후적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이미 훼손된 명예의 회복 등 원상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서는 이미 발생하여 지속하는 침해행위의 정지·제거, 즉 방해배제청구와 함께 침해의 사전억제, 즉 방해예방청구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이에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보호수단으로서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가 허용된다 하여도 그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 이외의 다른 간접적 방법에 의한 의사표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가처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특히 금지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충돌하는 두 법익(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비교·형량 등 엄격하고 명백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전금지 가처분의 허용에 의한 언론의 자유 제한의 정도는 위 가처분의 필요성 및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권보다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 또한 충족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침해되는 인격권의 주체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익 균형의 원칙과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그 심사기준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인격권의 주체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헌재 1999. 6. 24. 97헌마265, 판례집 11-1, 768, 777), 본건에 있어서 ○○○○교회 대표자 이○록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바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인격권의 내용 및 그 침해 정도, 두 가치 사이의 비교·형량 등 사전금지청구권에 관한 여러 가지 요건을 법원이 엄격히 심사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적 인물과 사인간에 심사기준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근거로 주장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처분에 방영금지가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

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30.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주심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희

〈별지〉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관한 규정으로서, 만약 방영금지가 처분이 이에 포함되어 TV를 통한 방영 전에 법원이 그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면, ①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에 법원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방영내용을 사전 억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방송, 방영의 자유를 포함하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② 방영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당사자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현행법상 반론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형사상 처벌 등 다양한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의 허용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개별적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방영금

지청구권 등 사법상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심리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한다 하여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가처분제도의 특성상 다소의 불명확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논리라면 모든 가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된다.

(2) 가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① 사전억제 내지 검열금지의 원칙은 부당한 행정권의 행사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립된 이론일 뿐,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개인의 입장에서 일단 피해를 수용한 다음 사후구제조치를 취하하는 의미의 원칙이 아니고, 가처분제도는 임시적, 잠정적 조치로서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그에 따른 사후 방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사전억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② 또한, 방영금지가처분에 의하여 보호되는 당사자의 인격권과 비교할 때 위 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鏞

IV.기 타 사 례

원고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자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른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1. 7. 26.자 판결 (2001가단43456)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이환승 판사는 2001년 7월 26일 대한민국이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에게 9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원고와 피고는 각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자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른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와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와 경과, 특히 검사 박 의 수사결과 발표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히는 데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고 기자들에게 수사자료를 배포하는 등 언론에의 보도를 전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와 그 표현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한 조선일보사는 검사로부터 직접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데, 피고 소속 기자인 홍 가 검사 박 에게 직접 위 기사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기사내용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재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을 70:30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991년 1월 11일 서울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소
외 이 씨가 경쟁업체에 스카우트되기 위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이 밝혀졌
다는 내용의 수사경위를 발표하자 조선일보 소속 기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1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다. 그 후 중앙일보 소속 기자가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
를 읽고 같은 취지의 기사를 중앙일보와 중앙경제신문에 새로이 게재하자 이 씨는 대
한민국,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검사 박 은 직무상 알게 된 이 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판청
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그 피의사실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고, 중앙일보 소속 기자는
이 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한 외에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는 이
유로 대한민국과 중앙일보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만 조선일보의
경우는 소속 기자가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기사화 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더라도 종래의 취재관행에 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관련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98 126면 참조).

이에 대한민국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이 씨에게 지급한 후 연대책임자인 중앙일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단43456 구상금

원 고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최 경 원

소송수행자 이 정 환, 유 형 영

피 고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석 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이 춘 원, 문 광 명)

변론종결 : 2001. 7. 5.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9,059,178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1. 27.부터 2001. 7. 26.까지
는 연 5%, 2001. 7.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1,138,08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1. 2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코리아 세븐의 대표이사인 문 ○○은 1991. 1. 11. 서울지방법검찰청에 위 회사의 직원인 이 ○○가 위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 기밀서류를 경쟁업체에 넘겨주는 등 회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이 ○○를 고소하였다.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 박 ○○은 문 ○○과 위 고소사실을 제보한 위 회사의 직원인 조 ○○을 소환 조사한 다음 1991. 1. 22. 이 ○○를 소환하여 신문하고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를 구속하였다.

나. 검사 박 ○○은 같은 날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실에서 조선일보사 기자인 김 ○○ 등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이 ○○에 대한 피의사실을 요약, 정리한 수사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 ○○가 경쟁업체에 스카우트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수사경위와 앞으로의 수사방침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다. 김 ○○는 1991. 1. 22. 서울지방법원 영장계에서 이 ○○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하여 이 ○○에 대한 혐의사실을 알게 된 후 검사 박 ○○을 찾아가 위와 같이 수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이 ○○에 대한 피의사실을 취재한 다음 이를 기초로 1991. 1. 23. 조선일보에 『회사기밀유출 간부 구속』, 『경쟁사에 자사 유통조직 등 알려』, 『코리아 세븐 30대 차장』이라는 제목 하에, 이 ○○가 자신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마트와 주식회사 유공에 자기 회사의 유통조직개요, 사업계획서, 물품판촉일정표 등의 사본을 넘겨주고 그 밖의 회사 기밀사항을 구두로 알려 준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라. 피고 소속 기자인 홍 ○○는 1991. 1. 23. 조선일보에 게재된 위 기사를 읽고 이 ○○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한 다음, 이 ○○나 그 밖에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 기사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취재를 하지 않

은 채, 같은 날짜 중앙일보와 중앙경제신문에, 이 가 유공과 동양마트 2개 업체가 새로 유통업계에 진출하려는 것을 알고 이들 회사 관계자들에게 코리아 세븐의 조직개요와 사업계획서 등을 문서 또는 구두로 유출시킨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검찰 수사결과 이 는 최근 회사로부터 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질책을 받자 유리한 조건으로 위 업체들에 스카우트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비밀서류를 유출시켰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마. 그런데 검사 박 이 위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고소인 문 은 이 가 회사기밀을 유출한 현장에 동행하였다는 조 으로부터 이 의 범행을 전해들었을 뿐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조 은 이 가 주식회사 코리아 세븐의 조직개요, 마케팅 전략 등이 수록된 책자를 넘겨주고 회사경영방법, 91월별판매촉진 계획 등에 관한 기밀서류를 보여주면서 구두로 회사기밀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서류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나아가 그것이 회사의 기밀사항에 속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와 함께 고소를 당한 박 도 이 가 2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는 회사 기밀사항을 누설한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었다. 검사 박 은 위와 같이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로부터 서류나 기밀을 넘겨받은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있는 소외 채 과 유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위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바. 이 는 업무상 알게 된 주식회사 코리아 세븐의 영업기밀을 유출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회사기밀문건을 복사하여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서울지방법원 91고단 786호로 업무상배임죄 및 절도죄로 기소되었다가, 위 공소사실 중 영업기밀을 유출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고 절도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92노673호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1993. 5. 11. 상고기각, 확정되었다.

사. 이 는 서울지방법원 94가합63176, 63183호로 원고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및 피고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97. 1. 17. 위 법원 96나4659, 4666호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1999. 1. 26. 대법원 97다10215, 10222호로 상고기각, 확정되었다.

① 검사 박 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 에 대한 피의사실을 법령에 위배하여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그 피의사실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고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에 위와 같은 신문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이 의 명예를 훼손당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공무원인 검사 박 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조선일보가 게재한 위 기사의 취재원은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이고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사건당사자인 이 가 구속되어 있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이 에 대한 직접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의 취재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선일보 기자 김 가 검사가 발표한 위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 소속 기자 홍 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위 기사를 읽고 이 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한 외에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여 기사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 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1. 1. 23.부터 1997. 1. 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1999. 11. 26. 이 에게 위 판결 원리금 30,197,26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에 대하여 각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금액 중 자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른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의 경위와 경과, 특히 검사 박 의 수사결과 발표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히는데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고 기자들에게 수사자료를 배포하는 등 언론에의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피고와 그 표현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한 조선일보사는 검사로부터 직접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데, 피고 소속 기자인 홍 가 검사 박 에게 직접 위 기사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기사내용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재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을 70:30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059,178(=30,197,260원×30%)과 이에 대하여 1999. 11. 27.부터 갚는 날까지의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1. 7. 26.

판사 이 환 승

鏞

방송사 사정으로 통상의 방영시간과 달리 반론보도문이 방송되었더라도 판결이 정한 방송순서에 따라 방송하였다면 이는 판결주문의 적법한 이행이라 할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3. 22.자 판결 (2000가합14997)

서울고등법원 2001. 11. 22.자 판결 (2001나21023)

대법원 2002. 3. 12.자 판결 (2001다81450)

사실개요

대법원 1부(주심 박재운 대법관)는 2002년 3월 12일 만민중앙교회가 문화방송 PD수첩의 이단파문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문을 제때 방송하지 않았다”며 방송사측을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소송의 판결 주문에서 방송시간을 정한 것에 대해 “통상의 방송 개시시각을 표시한 데 불과하므로 당해 프로그램이 방송사의 사정 등으로 통상의 방영시간과 달리 방송될 경우에 당해 프로그램 내에서 판결이 정한 방송순서에 따라 방송하였다

면 반론보도 방송의 적법한 이행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뉴스의 제목 방송 후 광고방송을 하기에 앞서 위 각 반론보도를 방송하였더라도 ‘뉴스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방송할 것을 명한 판결의 주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교회의 신도들은 1999년 5월 11일 23시경 문화방송 <PD수첩>에서 ‘이단 파문, 이 목사 - 목자님 우리 목자님’ 제하의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문화방송 사옥에 침입하여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단시킨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 문화방송사측은 각종 프로그램에서 20여 회에 걸쳐 원고 교회와 원고 이 및 프로그램의 방영 중단과 관련한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반론보도심판청구를 하여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21:00경에 방송하는 MBC뉴스데스크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그 다음 날 21:00경 방송하는 MBC뉴스데스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1회씩”, “위 뉴스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방송”하라는 인용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방송사는 축구시합의 생중계 방송을 하였던 관계로 반론보도문을 방송한 첫날의 9시 뉴스를 정규시간이 아닌 22:43경부터, 다음날에는 편성관계로 20:51경부터 반론보도문을 각 방송하면서 배경화면으로 원고 교회의 예배전경이나 원고 이 의 기도장면 이외에 원고 교회 신도들이 피고의 사옥에 난입한 당시의 사진을 사용하였고 반론보도문 방송 직후에 반론보도를 방송하게 된 사실 및 원고들을 비난하는 취지 등이 담긴 보도를 방송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반론보도문이 방송되는 취지를 몰각시켜 원고들의 반론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반론보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판결에서 명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금전배상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에서는 방송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론보도청구소송 판결 주문에서 반론보도문의 방송시간 및 프로그램을 정한 취지는 “당해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당해 프로그램 내에서 방송하라는 취지인 것이고 프로그램 방영시간을 기재한 것은 당해 프로그램을 특정하기 위한 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프로그램 내에서 판결이 정한 방송순서에 따라 방송하였다면 이는 판결에서 명한 반론보도 방송의 적법한 이행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배경화면의 이용 및 반론보도 이후의 관련 방송으로 반론보도의 취지가 몰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 교회의 신도들이 피고의 사옥에 난입한 당시의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상이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의 반론보도 이행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며, 반론보도를 하는 방송사로서는 반론보도의 방송효과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청자들에게 반론보도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반론보도의 경위에 대한 보도 및 반론보도 제도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보도를 하였다 하여 반론보도의 방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한편, 추가판단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뉴스 프로그램의 제목을 방송한 뒤 광고방송을 하기에 앞서 각 반론보도문을 방송한 것이 ‘뉴스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 순서로’ 방송할 것을 명한 반론보도심판 사건에 관한 판결의 주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1심 판 결 문

사 건 : 2000가합14997 집행문부여

원 고 : 1.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서울

대표자 당회장

2.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승 준, 김 오 수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성 하

변론종결 : 2001. 3. 8.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99나61271, 61288, 61295 반론보도심판 사건의 판결 중 금원지급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

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녹화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만 한다)는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단체이고, 원고 이 은 위 교회의 대표자 겸 목사이며, 피고는 방송매체를 운영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교회의 신도들은 1999. 5. 11. 23:00경 피고의 방송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이단파문, 이 목사! -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제하의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옥에 침입하여 위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단시킨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날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사이에 피고의 TV 및 라디오의 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20여 회에 걸쳐 원고 교회와 원고 이 및 위 프로그램의 방영중단과 관련한 보도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1999. 6.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9카합1694, 1754(병합), 1755(병합)호로 반론보도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9. 10. 14. ‘1. 피청구인(피고)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방송시간과 프로그램에서 같은 목록 기재 방송순서 및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목록 기재 반론보도문 내용을 방송하라. 2. 만일 피청구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들(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각 1회 방송분 반론보도문에 대하여 1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1999. 10. 23.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1주일 이내인 1999.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였으나, 다만 ① ‘위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21:00경 방송하는 「MBC 뉴스데스크」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그 다음날 21:00경 방송하는 「MBC 뉴스데스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1회씩’, ‘위 뉴스의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 순서로 방송 하도록 되어 있는 별지 제1목록 라.항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함에 있어서, 피고의 「MBC 뉴스데스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평소에는 21:00경 방송이 시작되는 것인데, 1999. 10. 29.에는 당일 한국 대 중국의 축구시합의 생중계 방송을 하였던 관계로 22:43경부터, 다음날인 같은달 30.에는 편성관계로 20:51경부터 각 방송이 시작되었고, 피고는

위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 순서로 위 반론보도문을 각 방송하였으며, ② ‘ 위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18:00경 방송하는 「화제집중 6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위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 순서로 방송 하도록 되어 있는 별지 제1목록 바.항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함에 있어서, 피고의 ‘ 「화제집중 6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평소에는 18:00경 방송이 시작되는 것인데 1999. 10. 27.에는 편성관계로 17:52경부터 방송이 시작되었고, 피고는 위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 순서로 위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판결문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가. 다. 라. 마. 사. 항의 반론보도문을 각 방송하면서 배경화면으로 원고 교회의 예배전경이나 원고 이 의 기도장면 이외에 원고 교회 신도들이 피고의 사옥에 난입한 당시의 사진들을 사용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1999. 10. 29. 별지 제1목록 기재 라. 항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한 이후에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내용을 방송하였고, 같은달 30, 위 라.항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한 이후에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내용을 방송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99나61271, 61288(병합), 61295(병합) 호로 항소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0. 7. 13. 1심판결에서 인용한 반론보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방송을 명하고,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각 1회 방송분 반론보도문에 대하여 1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1심판결을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가. 다. 라. 마. 사. 항의 반론보도문의 방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면서 배경화면으로 원고 교회의 예배전경이나 원고 이 의 기도장면 이외에 원고 교회 신도들이 피고의 사옥에 침입한 당시의 사진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원고 교회의 신도들이 하였던 위법한 행위를 시청자들로 하여금 연상시키는 효과를 내어 원고들을 비난함과 동시에 위 각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는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결국 그로 인하여 새로이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고, ② 별지 제1목록 기재 라. 바.항의 반론보도문의 방송과 관련하여, 2회의 반론보도를 하여야 하는 위 라.항의 반론보도문은 피고의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인 21:59경에 방송하여야 함에도 1999. 10. 29.에는 예정시간보다 늦은 22:44경 방송하였고, 같은 달 30.에는 예정시간보다 빠른 20:51경 방송하였으며, 위 바.항의 반론보도문은 피고의 「화제집중 6시」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인 18:00경에 방송하여야 함에도 예정시간보다 빠른 1999. 10.

27.17:52경 방송하였는데, 이는 위 1심판결에서 명한 방송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 시간에 방송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각 반론보도가 원보도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도 없었으며, ③ 별지 제1목록 기재 라.항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한 직후에 위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게 된 사실 및 원고들을 비난하는 취지 등이 담긴 보도를 편성하여 방송함으로써 위 반론보도문이 방송되는 취지를 몰각시켜 원고들의 반론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피고가 한 반론보도를 위와 같은 이유로 위 1심판결에서 명한 반론보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항소심판결에서 명한 반론보도의무도 역시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항소심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금전배상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 부여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방송시간 미준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1심판결에서 위 반론보도문의 방송시간 및 프로그램을 정하면서 ‘21:00경 방송하는 「MBC 뉴스데스크」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18:00경 방송하는 「화제집중 6시」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정한 취지는 당해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당해 프로그램 내에서 방송하라는 취지인 것이고 프로그램 방영시간을 기재한 것은 당해 프로그램을 특정하기 위한 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프로그램이 방송사의 사정 등으로 통상의 방영시간과 달리 방송될 경우에 당해 프로그램 내에서 위 1심판결이 정한 방송순서에 따라 방송하였다면 이는 위 1심판결에서 명한 반론보도 방송의 적법한 이행이라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라.항의 각 반론보도문이 위 1심판결에서 정한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방송순서에 따라 방송되었음은 위의 기초사실의 인정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반론보도문의 방송이 1심판결에서 정한 방송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경화면의 이용 및 반론보도 이후의 관련방송에 관한 판단

(1) 반론보도는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방송사에게 반론보도를 명한 경우 방송사로서는 법원에서 방송할 것을 명한 반론보도문을 정하여진 방송시간에 방송순서에 따라 방송을 하면 그로써 족한 것이며, 다만 반론보도문을 형식적으로 방송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시청자나 청취자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이행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반론보도 방송 당시 사용된 배경화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반론보도 당시 사용한 배경화면의 내용이 피해자의 반론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이를 암시하여 피해자의 반론내용이 충실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반론보도의 적법한 이행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위의 기초사실의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교회의 신도들이 피고의 사옥에 난입한 당시의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1심판결에서 명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고 교회의 신도들이 피고의 사옥에 난입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러한 영상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가. 다. 라. 마. 사.항의 각 반론보도 방송이 허위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 피고의 반론보도의 이행이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반론보도문을 방송한 직후 원고들을 비난하는 취지 등이 담긴 보도를 편성하여 방송하였으므로 위 반론보도문의 방송은 부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반론보도를 하는 방송사로서는 반론보도의 방송효과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청자들에게 반론보도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반론보도의 경위에 대한 보도 및 반론보도 제도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보도를 하였다 하여 반론보도의 방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위의 기초사실의 인정에서 본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도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1심판결에서 명한 반론보도의 방송효과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보도를 이유로 피고의 반론보도 이행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반론보도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3. 22.

재판장 판사 조 용 연
판사 김 현 석
판사 박 준 민

2심 판 결 문

사 건 : 2001나21023 집행문부여

원고, 항소인 : 1.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서울

대표자 당회장

2.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승 준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 중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 성 규

변 론 종 결 : 2001. 10. 11.

제1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3. 22. 선고 2000가합14997 판결

주 문 :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99나 61271, 61288, 61295 반론보도심판사건의 판결 중 금원 지급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의 ‘2. 원고들의 주장’ 과 ‘3. 판단’ 부분 중 각 해당 부분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들은, 반론보도심판 사건에 관한 제1심 판결(항소심 판결에서 유지된 부분)은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의 반론보도문 방송(이 사건 제1심 판결 별지 제1목록 가., 다., 라.,마.,사. 기재 부분에 해당)과 관련하여 그 방송순서를 ‘뉴스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 순서로’ 하도록 명하였는 바, 이는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광고방송을 마친 후 첫번째 순서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뉴스 프로그램의 제목만 방송한 뒤 광고방송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반론 보도문을 먼저 방송함으로써 방송순서에 관한 위 판결의 주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명한 취지를 몰각시켰으므로, 이는 결국 반론보도를 명한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뉴스 프로그램의 제목을 방송한 뒤 광고방송을 하기에 앞서 위 각 반론보도문을 방송한 것이 ‘뉴스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 순서로’ 방송할 것을 명한 위 반론보도심판사건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1. 22.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정 진 경
판사 권 기 훈

대법원 판 결 문

사 건 : 2001다81450 집행문부여

원고, 상고인 : 1. 예수교대한연합성경교회 만민중앙교회

서울

대표자 당회장

2.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조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승 준, 신 성 철, 김 오 수, 이 해 수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 중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류 홍 섭, 김 성 규, 정 대 학, 한 상 혁, 김 택 수, 박 경 홍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1. 11. 22. 선고 2001나21023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원심은, 원고 1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는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단체이고, 원고 2 이 은 위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인데, 원고 교회의 신도들이 1999. 5. 11. 23:00경 피고의 방송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 이단파문, 이 목사! - 목사님 우리 목사님! ’ 제하의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옥에 침입하여 위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단시킨 사건을, 피고가 기사화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사이에 피고의 TV 및 라디오의 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20여 회에 걸쳐 보도를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1999. 6.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9카합 1694, 1754, 1755(병합)호로 반론보도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법원은 1999. 10. 14. ‘ 1. 피청구인(피고)은 판시 각 방송시간과 프로그램에서 판시 각 순서 및 방법에 따라 판시 각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 2. 만일 피청구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들(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각 1회 방송분 반론보도문에 대하여 1일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1999. 10. 23.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정해진 기간 내인 1999. 10. 30.까지 사이에 위 판결에 따른 원심판결의 별지(이하 같다) 제1목록 기재의 각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였으나, 다만 첫째, ① 위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21:00경 방송하는 「MBC 뉴스데스크」 TV 프로그램 및 그 다음날 21:00경 방송하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1회씩 각 뉴스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방송 하도록 되어 있는 제1목록 라.항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함에 있어서, 피고의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은 평소에는 21:00경 방송이 시작되는 것인데, 1999. 10. 29.에는 당일 한국 대 중국의 축구경기의 생중계 방송을 하였던 관계로 22:43경부터, 다음날인 10. 30.에는 편성관계로 20:51경부터 각 방송이 시작되었고, 피고는 위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 순서로 위 반론보도문을 각 방송하였으며, ② 위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18:00경 방송하는 「화제집중 6시」 TV 프로그램에서 위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 순서로 방송 하도록 되어 있는 제1목록 바.항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함에 있어서, 피고의 「화제집중 6시」 프로그램은 평소에는 18:00경 방송이 시작되는 것인데 1999. 10. 27.에는 편성관계로 17:52경부터 방송이 시작되었고, 피고는 위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 순서로 위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였으며,

둘째, 위 판결에 따라 제1목록 기재 가. 다. 라. 마. 사.항의 반론보도문을 각 방송하면서 배경화면으로 원고 교회의 예배전경이나 원고 이 의 기도장면 이외에 원고 교회 신도들이 피고의 사옥에 난입한 당시의 사진들을 사용하였고, 셋째, 1999. 10. 29. 별지 제1목록 기재 라.항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한 이후에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내용을 방송하였고, 10. 30. 위 라.항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한 이후에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내용을 방송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이어서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 즉 피고가 반론보도문을 방송함에 있어서 방송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방송에 있어서 뉴스프로그램에서는 제목만 방송한 후 광고방송 전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였으며, 배경화면으로 원고측 신도들의 방송사 난입장면을 사용하였고, 반론보도문의 방송 직후에 위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게 된 경위와 다시금 원고들을 비난하는 제2목록 기재의 각 보도를 함으로써 반론보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여 결국 위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판결의 항소심 판결이 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위 판결에서 위 「MBC 뉴스데스크」 및 「화제집중 6시」의 방송시간을 정한 것은 당해 프로그램을 특정하기 위하여 통상의 방송개시시각을 표시한 데 불과하므로 당해 프로그램이 방송사의 사정 등으로 통상의 방영시간과 달리 방송될 경우에 당해 프로그램 내에서 위 판결이 정한 방송순서에 따라 방송하였다면 이는 위 1심판결에서 명한 반론보도 방송의 적법한 이행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뉴스의 제목방송 후 광고방송을 하기에 앞서 위 각 반론보도를 방송하였더라도 ‘뉴스시작과 동시에 첫번째 순서로 방송할 것을 명한 위 판결의 주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둘째, 피고가 반론보도 당시 사용한 배경화면의 내용이 피해자의 반론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이를 암시하여 피해자의 반론내용이 충실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반론보도의 적법한 이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위 판결에서 명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고측 신도들의 피고 사옥 난입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러한 영상이 위 각 반론보도 방송이 허위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 피고의 반론보도의 이행이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셋째, 반론보도를 하는 방송사로서는 반론보도의 방송효과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청자들에게 반론보도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반론보도의 경위에 대한 보도 및 반론보도 제도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반론보도방송 후에 한 제2목록 기재 각 보도의 그 내용에 비추어 위 판결에서 명한 반론보도의 방송효과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3. 법원이 방송사에게 반론보도를 명한 경우에 방송사가 판결에 정하여진 방송시간에 방송순서에 따라 정하여진 방송보도문을 방송하였다면,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어떠한 사정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였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송보도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서 실시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수긍되고 특별히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 때문에 반론보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였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내용 또는 반론보도의 적법한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3. 12.

재판장 대법관 이 용 우
 대법관 서 성
 대법관 배 기 원
 주 심 대법관 박 재 윤

鏞